2025.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부처별 II)

기 획 재 정 위 원 회
교 육 위 원 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기 획 재 정 위 원 회

❖ 기획재정부

Ⅰ. 개 관 ····· 3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6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14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6

Ⅱ. 사업별 검토 ····· 17

【총 괄】

1. 국세수입: 국세수입 오차 최소화 및 추계의 신뢰성 제고 필요 ····· 17
2. 조세지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산정방식 개선 필요 ····· 24

【일반회계】

<세 입> ····· 29

3.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주)NXC 주식 매각 대금의 증액 조정 검토 필요 ····· 29

4. 정부출자수입: 2025년 하반기 경제상황을 고려한 예산 증액 조정 검토 필요 ····· 34
5. 한국은행 잉여금: 10월까지의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실적을 고려하여 증액 조정 검토 필요 ····· 40

<세 출> ····· 44

6.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 일시차입 물량의 적정 소요를 고려한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44
7. 예비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 검토 필요 ····· 48
8.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신규): 국가재정 외의 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검토 필요 ····· 52
9.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신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 56
10.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59
11.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사업: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62

【복권기금】

<지 출> ····· 66

12.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 국가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66
13.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사업: 법정 전출금의 여유자금운용 편성 개선 필요 ····· 72

【공공자금관리기금】

<지 출> ····· 78

14. 국고채 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 포함) 사업: 국고채 조달금리 및 시장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78

【대외경제협력기금】

<총 괄> ····· 81

15. 대개도국차관 및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 수원국 미정 사업의 예산 최소화 검토 필요 ····· 81

【국유재산관리기금】

<총 괄> ····· 86

16. 신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86

17.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안 감액 조정 검토 및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 89

<지 출> ····· 93

18. 비축토지매입 사업: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필요 ····· 93

【기후대응기금】

<수 입> ····· 96

19.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수입 목표 달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 96

<지 출> ····· 99

20. 투자지원 사업: 예상 협약체결 건수를 고려한 일정 금액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99

21.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103

❖ 국 세 청

Ⅰ. 개 관 ····· 106

1. 예산안 개요 ····· 106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08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09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09

Ⅱ. 사업별 검토 ····· 110

【총 괄】

1. 포상금(310-03): 신설된 부과·징수 포상금의 공정한 운용 필요 ····· 110
2.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사업(신규): 사업의 성과·이력 관리를 위해 이관 편성 지양 필요 ····· 114
3.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신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 철저 필요 ····· 117
4.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세금신고 지원 인력의 비수도권 배치 확대 필요 ····· 122

❖ 관 세 청

Ⅰ. 개 관 ····· 125

1. 예산안 개요 ····· 12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27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28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28

Ⅱ. 사업별 검토 ····· 129

【일반회계】

<세 입> ····· 129

1. 과태료: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조정 검토 필요 ····· 129

<세 출> ····· 131

2.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사업(신규):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의 조기 구축을 위한 집행관리 필요 ····· 131
3.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사업: 단기적 재정절감을 위한 임차방식 전환 지양 필요 ····· 135
4. 2026 K-Customs Week 개최 사업(신규): 우리 수출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138

❖ 조 달 청

Ⅰ. 개 관 ····· 141

1. 예산안 개요 ····· 14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43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44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45

Ⅱ. 사업별 검토 ····· 146

【조달특별회계】

<세 입> ····· 146

1.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 세입예산 편성 필요 ····· 139

<세 출> ····· 150

2.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 보조사업 수행방식 및 일반용역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 150
3. 공공혁신조달사업(해외실증): 사업 성과관리체계 마련 필요 ····· 154
4. 회전자금 전출금 사업: 비철금속 재고 산정방식 개선 필요 ····· 157
5. 비축 마스크 재고순환비용 사업(신규): 마스크 재고의 효율적 관리 필요 ····· 160

❖ 국가데이터처

Ⅰ. 개 관 ····· 163

1. 예산안 개요 ····· 16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65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66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67

Ⅱ. 사업별 검토 ····· 168

【일반회계】

<세 입> ····· 168

1.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 편성 필요 ····· 168

<세 출> ····· 171

2. 품질관리 사업: 통계품질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이행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 ····· 171
3. 국제기구 통계협력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증액 필요성 검토 필요 ····· 176
4. 경제총조사 사업: 온라인조사 확대 필요 ····· 180

교 육 위 원 회

❖ 교 육 부

Ⅰ. 개 관 ····· 187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8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91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193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94

Ⅱ. 사업별 검토 ····· 195

【총 괄】

1. 특별회계 신설·연장 :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 ····· 195
2.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사업: 다양한 사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 필요 ····· 198

【일반회계】

<세 출> ····· 202

3.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재원부담주체들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국고지원비율에 대한 검토 필요 ····· 202
4. CAMPUS Asia(한일중) 사업: 사업단 조기 선정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205
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최근 지급실적 및 직업계고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 반영 필요 ····· 208

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 인건비 및 경상비의 기관운영출연금(350-01)으로 비목 전환 필요 ····· 212
7.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운영 사업: 다음연도 예산으로 전년도 부족분을 충당하는 사례 재발 방지 필요 등 ····· 214
8.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 등 : 사회부총리 미겸임에 따른 교육부 직제 변경 반영 필요 ····· 217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 출> ····· 219
9. 대학혁신지원 사업: 비수도권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에 대한 면밀한 세부계획 수립 필요 ····· 219
1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RISE 이관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등 ····· 222
11.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사업(신규): 합리적인 지원대상 선정기준 마련 등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226
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이자 사업: 학자금대출 예상액 추계 재검토 필요 등 ····· 228
13.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필수의료 당직비 지원 관련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체계 등 검토 필요 ····· 235
14. 대학 AI 기본 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신규): 예산의 중복 투입 방지를 위한 대안 검토 필요 ····· 238
15.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AI 사업단 대규모 신규 선정 관련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241
16.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관리 필요 ····· 244
17.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신규): 신학기 적용을 위한 신속한 준비 필요 ····· 247

❖ 국가교육위원회

Ⅰ. 개 관 ····· 250

1. 예산안 개요 ····· 250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52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252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53

Ⅱ. 사업별 검토 ····· 254

【일반회계】

<세 출> ····· 254

1.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교육정책 숙의·공론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 25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개 관 ····· 261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6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66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274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76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 277

Ⅱ. 사업별 검토 ····· 279

【일반회계】

<세 입> ····· 279

1. 과태료: 법률 제·개정을 고려한 세입예산 편성 필요 ····· 279

<세 출> ····· 282

2.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사업: 참여자 모집실적 제고 필요 ····· 282
3.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 GPU 활용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 287
4.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실제 과업수행 기간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293

5. AI+S&T 혁신 기술개발(R&D) 사업(신규): GPU 자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298
6. AGI 준비 프로젝트 사업(신규): 사전 기획 및 구체적인 설립 방안 마련 필요 ····· 300
7.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 사업(신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 302
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인건비 적정 규모 재검토 필요 등 ····· 306
9. 개인기초연구(R&D) 사업: 유형 개편 및 과제 수 확대에 대응한 관리강화 방안 마련 필요 ····· 314
10.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사업(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 319
11. 국가 양자팹 혁신 생태계 조성(R&D) 사업(신규): 사업 초기 장비구축 완료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323
12.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R&D) 사업(신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328
13.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신규): 수요기관 선정 시 관련 기술 보유 기업 현황 검토 필요 ····· 331
14.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전년도 실적을 고려한 개인형 신규 과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333
15.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R&D) 사업: 과제 선정 현황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336
16.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박사 장학생 선정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339
17. 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Data-X) 지원 사업(신규): 면밀한 사업기획 후 사업 추진 필요 ····· 342

18.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 사업(신규): GPU임차 비용 과다 편성 등 ····· 346
19. AI 전사양성 사업(신규): AI 전임교원 확보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 351
20.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 355
21.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 사업(신규): ISP 수립 이후 구축 예산 반영 필요 ····· 35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입> ····· 360
22. 기타경상이전수입: 수입 전망을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필요 ····· 360

<세 출> ····· 362
23.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신규): 선행절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 362
24.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신규):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367
25.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사업(신규):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370

【고등 · 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 출> ····· 373
26.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 전년도 실적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373
27. AI중심대학 사업(신규): 전환 대상 대학의 조속한 선정 필요 ····· 377

【과학기술진흥기금】

<지 출> ····· 380

28.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380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수 입> ····· 383

29.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실적 및 수입 전망을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필요 ····· 383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Ⅰ. 개 관 ····· 386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86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89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391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92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 393

Ⅱ. 사업별 검토 ····· 395

【일반회계】

<세 출> ····· 395

1.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 중복지원 예산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395

2.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구축·운영 사업: 사례집 제작 예산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399
3.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사업: 면밀한 수요검토에 기반한 예산편성 필요 ····· 402

【방송통신발전기금】

<지 출> ····· 407

4.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신규): 실제 업무수행 기간을 고려한 예산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407
5. 디지털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신규): 실제 업무수행 기간을 고려한 예산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410

❖ 원자력안전위원회

Ⅰ. 개 관 ····· 413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41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416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418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 419

Ⅱ. 사업별 검토 ····· 420

【일반회계】

<세 출> ····· 420

1.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 일반회계 사업을 통한 원자력기금 R&D의 기획평가관리비 지원 부적정 ····· 420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계정)】

<지 출> ····· 422

2. 원자력분야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자 포상금 사업: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422
3.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사업(신규): 국내 비경수형 SMR 개발 현황을 고려한 규제검증 기술 개발 필요 ····· 425

❖ 우주항공청

Ⅰ. 개 관 ····· 428

1. 예산안 개요 ····· 428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430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433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34

Ⅱ. 사업별 검토 ····· 435

【총 괄】

1. 지출구조조정 사업: 지출구조조정 실적에 대한 검토 필요 ····· 435

【일반회계】

<세 출> ····· 439

2.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신규): 투자실적 및 수요를 고려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439

3. 우주항공청 청사 관리 및 기관 운영사업(신규): 유사목적 예산의 단일 세부사업 편성 필요 ····· 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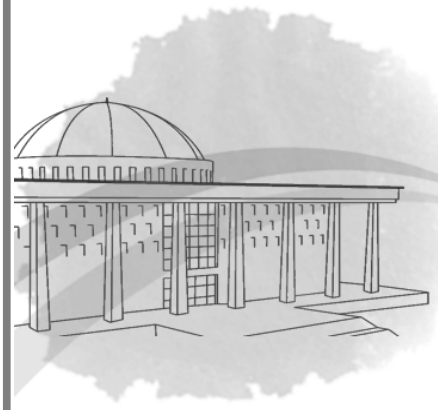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4.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신규): 고도화 R&D 지원 전 기술이전 관련 논의 필요 ····· 445

5.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R&D) 사업(신규): 조속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448

6. 차세대발사체개발(R&D)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452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기술료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456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은 403조 758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 9,505억원(2.0%) 증가함.

예산은 390조 7,052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6,867억원(1.7%) 증가하고, 기금은 12조 3,70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638억원(11.4%) 증가함.[1)]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3,840,185	3,749,230	3,907,052	66,867	1.7
기 금	111,068	111,218	123,707	12,638	11.4
총수입	3,951,253	3,860,448	4,030,758	79,505	2.0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은 46조 7,792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 3,187억원(18.5%) 증가함.

예산은 5조 7,207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840억원(71.4%) 증가하고, 기금은 41조 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9,347억원(13.7%) 증가함.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33,367	50,085	57,207	23,840	71.4
기 금	361,239	376,850	410,585	49,347	13.7
총지출	394,605	426,935	467,792	73,187	18.5

나. 예산안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519조 2,973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조 5,767억원(8.7%) 증가함.

[2026년도 기획재정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4,638,148	4,871,212	4,976,228	338,080	7.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39,089	153,808	216,745	77,657	55.8
합 계	4,777,236	5,025,020	5,192,973	415,767	8.7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46조 1,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 2,590억원(12.8%) 증가함.

[2026년도 기획재정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409,310	440,780	461,900	52,590	12.8
합 계	409,310	440,780	461,900	52,590	12.8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7개 기금(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후대응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489조 3,041억원으로, 전년 대비 26조 579억원(5.6%) 증가함.

[2026년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복권기금	88,685	88,685	95,863	7,178	8.1
공공자금관리기금	3,048,300	3,397,263	3,348,530	300,230	9.8
대외경제협력기금	23,527	22,727	23,797	270	1.1
기후대응기금	26,217	25,997	29,057	2,840	10.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19	8,019	7,763	△256	△3.2
외국환평형기금	1,402,894	1,372,894	1,351,347	△51,547	△3.7
국유재산관리기금	34,820	34,824	36,685	1,865	5.4
합 계	4,632,462	4,950,409	4,893,041	260,579	5.6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61개(1조 1,349억 3,7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사업은 바이오분야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협력 및 민·관 소통을 주도하고, 바이오 주요 정책·규제·R&D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원단 운영비로, 2026년 예산안은 21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및 한·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대출·보증 등에 대한 재정 보강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0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기획재정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 운영	2,129
2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10,000
3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700,000
[대외경제협력기금]		
4	협조융자사업관리(ODA)	1,895
[국유재산관리기금]		
5	관세청 관사시설 리모델링	1,303
6	대법원 청주지법 제천지원 신축	370
7	문체부 베트남 코리아센터 건립	9,009
8	법무부 대전소년원 리모델링	432
9	법무부 무주 외국인출국지원센터 신축	598
10	법무부 서울구치소 수용동 증축	340
11	국립대전현충원 청사	156
12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신축	933
13	산림청 관사시설 취득	125
14	주뉴욕(총) 통합청사 매입	330
15	주멕시코(대) 통합청사 신축	1,100
16	부천통합청사 신축	100
17	영월 청년직원 통합관사 리모델링	660
18	경찰청 경기남부 부천원미경찰서 신축	11
19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동 신축	268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20	경찰청 서울청 제1기동단 신축	94
21	경찰청 경북청 기동대・수사부서 통합청사 신축	293
22	경찰청 울산청 경찰특공대 신축	47
23	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신축	446
24	경찰청 강원 화천경찰서 신축	165
25	경찰청 전남 고흥경찰서 신축	82
26	대법원전주지법남원지원신축	110
[기후대응기금]		
27	국가NDC달성기여를위한토양기반환경기술개발(R&D)	2,000
28	국제협약대응형불소계온실가스저감기술개발사업기획연구(R&D)	4,100
29	자생생물 활용 CO2 저감 및 유용물질 전환 기술개발사업(R&D)	6,050
30	축산자원 활용 탄소중립 바이오 융합기술 개발(R&D)	5,000
31	글로벌탄소규제대응수요연계형기술개발(R&D)	2,000
32	급속충전용 내구성 고안전 리튬이온 이차전지 소재 및 셀 개발(R&D)	4,500
33	다중 배출원 적용 CO2 전처리-액화-벙커링 허브 실증 기술개발(R&D)	4,400
34	바이오유래 고분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원료 생산 및 제품 고부가화 기술 개발(R&D)	6,000
35	지속가능항공유(SAF)의 신원료 확보 및 전처리 기술개발(R&D)	5,000
36	탄소제로 섬유패션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R&D)	3,800
37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개발(R&D)	50,146
38	화학산업친환경규제선제적대응을위한신격차소재기술개발(R&D)	6,000
39	자동차 핵심부품용 탄소배출 저감 특화 철강 판재 기술개발사업(R&D)	4,500
40	탄소저감을위한건식기반음극전극소재및공정기술개발(R&D)	5,500
41	데이터센터탄소중립을위한열관리기술개발(R&D)	1,600
42	순환경제형미활용흑연고부가소재화기술개발(R&D)	4,000
43	극한지스마트광역탐사를위한로봇-ICT융합기술개발(R&D)	3,500
44	연안하구인간-자연시스템관리기술개발(R&D)	1,900
45	차세대 해양・극지의 환경 및 생태계에 관한 기후예측시스템 개발(R&D)	4,500
46	해초대(잘피밭) 스마트 자동조성 기술개발(R&D)	2,450
47	저탄소 사료산업을 위한 바다고리풀 대량생산시스템 및 사료화 기술개발(R&D)	2,350
48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201,218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49	탄소 네거티브 DAC 기술 고도화 사업(R&D)	5,000
50	수소융합혁신기술개발(R&D)	4,000
51	Net-zero 구현 초격차 태양전지 개발(R&D)	5,000
52	청정수소원천기술밸류업(R&D)	4,500
53	AI기반무탄소에너지활용화학기술개발(R&D)	3,400
54	토양기반기후회복력진단및강화기술개발(R&D)	1,625
55	CO2동시포집-전환(RCC)융합기술개발사업(R&D)	4,500
56	H2GATHER(R&D)	5,055
57	글로벌 C.L.E.A.N(R&D)	5,366
58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R&D)	7,000
59	민관합작 차세대원자로 개발 프로젝트(R&D)	6,716
60	전기자동차안전성평가및통합안전기술개발(R&D)	12,165
61	한-미 공동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개발(R&D)	9,100
총지출		1,134,937

한편,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국고채 이자상환’, ‘예비비’ 등 총 122개임.[3)]

[2026년도 기획재정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출연	10,000	50,000	40,000	400.0
2	협동조합활성화사업	1,580	3,130	1,550	98.1
3	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	750	1,200	450	60.0
4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592	1,130	538	90.9
5	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	5,589	9,942	4,353	77.9
6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정보화)	2,911	3,886	975	33.5
7	미래융복합경제교육	1,928	4,157	2,229	115.6
8	기후행동강화 지원(ODA)	11,114	21,417	10,303	92.7
9	예비비	2,400,000	4,200,000	1,800,000	75.0
10	일시차입금이자상환	99,209	171,032	110,000	10.9
[복권기금]					
11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1,285	2,570	1,285	100.0
12	저소득층 장학사업	25,825	37,097	11,272	43.6
13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165,738	350,000	184,262	111.2
[공공자금관리기금]					
14	지방채 인수(융자)	10,000	100,000	90,000	900.0
15	기타경비(총괄계정)	3,205	6,891	3,686	115.0
16	국고채 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	29,977,898	34,389,999	4,412,101	14.7
[국유재산관리기금]					
17	국회 헌정회관 신축	260	2,664	2,404	924.6
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시설 취득	196	298	102	52.0
19	대법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신축	1	100	99	9900.0
20	대법원 수원법원청사 신축(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12,800	30,000	17,200	134.4
21	대법원 창원가정법원 신축	154	2,410	2,256	1464.9
22	대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제3생활관 신축	390	615	225	57.7
23	통계청 청사시설 취득	1,296	3,850	2,554	197.1
24	행정안전부 대전지방합동청사 신축	1,660	2,267	607	36.6
25	통계청 관사시설 취득	353	871	518	146.7
26	비축토지매입	100,000	300,000	200,000	200.0
27	외교부 재외공관국유화 사업	5,882	17,611	11,729	199.4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28	주호놀룰루총영사관 청사 신축	1	2,178	2,177	217700.0
29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청사 신축	1,230	1,908	678	55.1
30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청사 매입	1,000	3,000	2,000	200.0
31	법무부 창원지검 거창지청 신축	110	196	86	78.2
32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12,543	16,402	3,859	30.8
33	법무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1,032	2,367	1,335	129.4
34	법무부 대구고지검 이전신축	11,791	28,301	16,510	140.0
35	법무부 서울검찰청사 증축	1	315	314	31400.0
36	법무부 수원고지검 신축(위탁개발임차료 정부지급금)	12,000	38,574	26,574	221.5
37	법무부 창원교도소 이전신축	2,260	36,587	34,327	1518.9
38	법무부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100	4,280	4,180	4180.0
39	법무부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신축	3,989	13,261	9,272	232.4
40	법무부 남원교도소 신축	1,300	5,490	4,190	322.3
41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 취득	1,937	11,994	10,057	519.2
42	농촌진흥청 기타시설 취득	1,273	7,211	5,938	466.5
43	식의약 규제과학센터 신축	1,349	2,742	1,393	103.3
44	국토교통부 청사시설 신축	1,575	4,516	2,941	186.7
45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청사 신축	476	1,427	951	199.8
46	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6,894	29,674	22,780	330.4
47	국세청 송파세무서 청사 재건축	1	53	52	5200.0
48	인천세관 청사 신축	1	2,551	2,550	255000.0
49	국세청 강동세무서 청사 신축	2,382	8,738	6,356	266.8
50	관세청 기타시설 취득	1,394	8,536	7,142	512.3
51	경찰청 청·관사시설 리모델링	683	15,108	14,425	2112.0
52	경찰청 경찰서 청사시설 증축	15,039	36,623	21,584	143.5
53	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	50,660	66,769	16,109	31.8
54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청사시설 취득	6,051	9,741	3,690	61.0
55	경찰청 훈련시설 취득	2,064	11,040	8,976	434.9
56	경찰청 청사점유 토지 취득	198	600	402	203.0
57	경찰청 부산해운대 경찰서 신축	1,105	8,310	7,205	652.0
58	경찰청 양산동부경찰서 신축	108	333	225	208.3
59	경찰청 인천검단경찰서 신축	562	7,229	6,667	1186.3
60	경찰청 혜화경찰서 신축	1,369	5,196	3,827	279.5
61	경찰청 경주경찰서 신축	581	3,395	2,814	484.3
62	경찰청 거제경찰서 신축	547	3,500	2,953	539.9
63	경찰청 울릉경찰서 이전신축	1	203	202	20200.0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64	경찰청 경북청 경찰특공대 신설 신축	679	1,796	1,117	164.5
65	경찰청 경기남부청 사건기록관 신축	167	605	438	262.3
66	경찰청 강원인제경찰서 신축	158	221	63	39.9
67	경찰청 인천영종경찰서 신축	57	91	34	59.6
68	경찰청 경기평택경찰서 신축	2,580	4,096	1,516	58.8
69	경찰청 관사시설 취득	7,481	13	5,519	73.8
70	경찰청 기타시설 취득	16,336	25,420	9,084	55.6
71	경찰청 수사연수원 수사교육동 증축	2,259	4,617	2,358	104.4
72	산림청 청사시설 취득	2,531	7,618	5,087	201.0
73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제2전산동 증축	3,892	17,981	14,089	362.0
74	소방청 소방심신수련원 신축	1	3,673	3,672	367200.0
75	해양경찰청 훈련시설 취득	2,709	5,967	3,258	120.3
76	해양경찰청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임차시설 대체 신축	1,139	7,081	5,942	521.7
77	해양경찰청 관사시설 취득	5,006	12,837	7,831	156.4
78	해양경찰청 동해청 강릉항공대 격납고 신축	228	403	175	76.8
79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정보서비스센터 신축	178	1,825	1,647	925.3
80	천안통합청사 신축	7,360	10,752	3,392	46.1
81	성남 3개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복합개발	1,335	4,714	3,379	253.1
82	용인통합청사 신축	713	1,746	1,033	144.9
83	창원통합청사 신축	471	1,304	833	176.9
84	수원세무서복합청사 신축	340	794	454	133.5
85	천안세관 복합개발 신축	408	589	181	44.4
86	강남통합청사 신축	661	993	332	50.2
87	영등포 복합창업허브 신축	233	503	270	115.9
88	관악복합관사 신축	952	4,199	3,247	341.1
[기후대응기금]					
89	산업은행출자(녹색금융)	50,000	90,000	40,000	80.0
90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3,858	8,607	4,749	123.1
91	녹색전환보증	140,000	150,000	10,000	7.1
92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45,604	59,155	13,551	29.7
93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53,967	66,488	12,521	23.2
94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16,018	30,853	14,835	92.6
95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환경부)	17,550	25,143	7,593	43.3
96	수열에너지 활용기술 및 에너지 믹스 기술개발(R&D)	2,500	7,500	5,000	200.0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97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통합관리 기술개발사업(R&D)	7,836	12,600	4,764	60.8
98	국산재 활용 한국형 목구조물 혁신 기술개발(R&D)	2,667	6,767	4,100	153.7
99	투자연계형기후테크에너지초격차 기술개발사업(R&D)	1,500	3,000	1,500	100.0
100	폐지석탄화력발전활용장주기카르노 배터리기술개발사업(R&D)	2,500	9,200	6,700	268.0
101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대규모・차세대 CCUS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R&D)	2,500	4,000	1,500	60.0
102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산업부)	152,527	185,080	32,553	21.3
103	이산화탄소반응경화시멘트제조 기술(R&D)	2,765	5,529	2,764	100.0
104	세라믹분야 스마트그린 제조혁신 지원사업(R&D)	1,233	2,052	819	66.4
105	제조공정미활용수소혼합가스기반 청정연소기술개발(R&D)	3,500	6,250	2,750	78.6
106	글로벌진출형 탄소순환 바이오산업소재 제품 개발 및 실증(R&D)	2,670	3,560	890	33.3
107	석유화학 무탄소 연료기반 NCC 공정기술 개발사업(R&D)	4,410	8,152	3,742	84.9
108	지식재산 기반 탄소중립 지원	1,209	3,509	2,300	190.2
109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중기부)	13,955	19,055	5,100	36.5
110	건축물에너지디지털진단및설계(R&D)	2,585	3,417	832	32.2
111	공기액화기반에너지저장및활용 시스템기술개발(R&D)	5,200	8,233	3,033	58.3
112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R&D)	4,856	8,498	3,642	75.0
113	대용량 청록수소 공급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R&D)	3,000	4,600	1,600	53.3
114	한국형GreenNCAP평가기술개발(R&D)	7,380	10,520	3,140	42.5
115	수소도시용수소배관망국산화및실증 기술개발(R&D)	3,918	7,441	3,523	89.9
116	고강도무시멘트콘크리트재료및설계 시공기술개발(R&D)	2,100	5,400	3,300	157.1
117	해양CCS중규모실증을위한해양환 경평가・감시체계및기반기술개발 (R&D)	2,020	2,960	940	46.5
118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R&D)	4,230	6,296	2,066	48.8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119	해양탄소재순환가치사슬 실현을 위한 해상 메탄올 생산 및 운송기술 개발(R&D)	5,100	9,250	4,150	81.4
120	탄소저감형해양플랜트전환기술개발 및실증(R&D)	3,400	14,500	11,100	326.5
121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선박연료 공급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기반 조성(R&D)	4,150	7,650	3,500	84.3
122	한계돌파형 4대 차세대이차전지 핵심 원천기술개발(R&D)	6,200	9,500	3,300	53.2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기획재정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복권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기후대응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외국환평형기금·국유재산관리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12조 3,985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1조 3,348억원, 기후대응기금으로 1조 1,488억원이 각각 전출될 예정이고, 조달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계정)로부터 1,624억원이 전입될 예정임.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타부처 특별회계로부터 5조 6,586억원을 전입받을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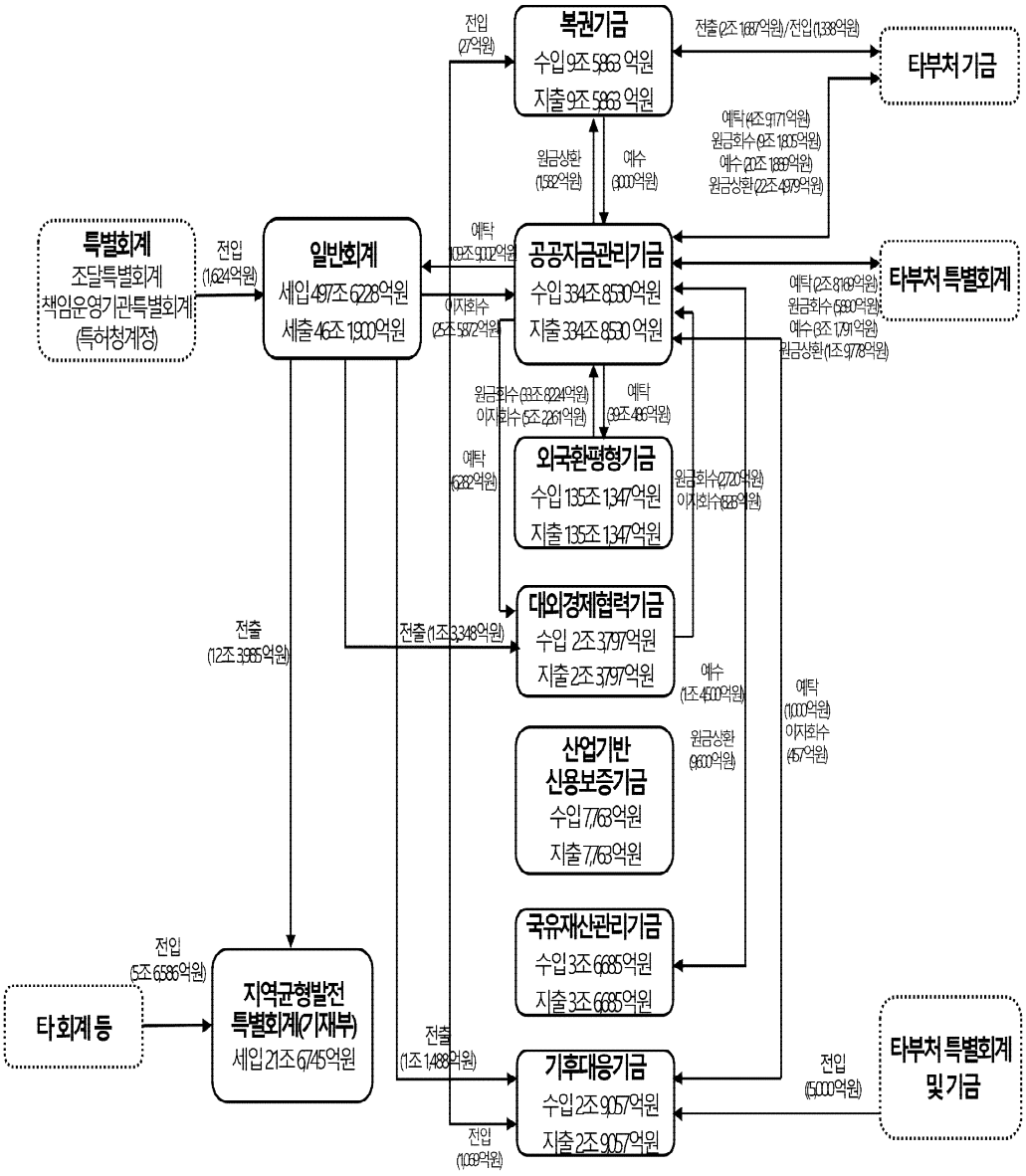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 109조 9,002억원, 외국환평형기금으로 39조 486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 6,282억원, 기후대응기금으로 1,000억원 등 총 157조 4,110억원을 예탁할 예정이고,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33조 8,224억원,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2,720억원 등 총 43조 8,639억원의 예탁원금을 회수할 계획이며, 일반회계로부터 25조 5,872억원, 타 회계·기금으로부터 7조 3,058억원 등 총 32조 8,929억원의 예탁이자를 회수할 예정임.

또한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부터 1조 4,500억원, 복권기금으로부터 3,000억원, 타부처 기금으로부터 20조 1,889억원, 타부처 특별회계로부터 3조 1,791억원 등 총 25조 1,179억원이 예수할 예정이고,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9,600억원, 복권기금으로 1,582억원, 타부처 기금으로 22조 4,979억원, 타부처 특별회계로 1조 9,778억원 등 총 25조 5,939억원의 예수원금을 상환하고, 타 회계·기금으로 총 9,623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할 계획임.

복권기금은 기후대응기금으로 1,069억원, 타부처 기금으로 2조 1,687억원을 각각 전출하고, 타부처 기금으로부터 1,365억원을 전입받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3,000억원을 예탁할 계획임.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1조 3,348억원이 전입될 예정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6,282억원을 예수할 계획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원금 2,720억원 및 828억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할 예정임.

외국환평형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9조 486억원을 예수하고, 예수원금 33조 8,224억원 및 예수이자 5조 2,261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조 4,500억원을 예탁하고, 9,600억원의 예탁금을 상환받을 계획임. 기후대응기금은 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6,069억원이 전입될 예정임.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세입측면에서 국세수입 예산안이 전년도 제2회 추경 대비 4.9% 증가한 390.2조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지출 측면에서 미국 관세협상에 따른 통상 대응 지원을 위해 7,0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채 이자상환,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및 예비비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세물납주식매각대’는 ㈜NXC 물납주식의 매각이 2025년 중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2026년에도 적극적으로 매각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3.7조원의 매각대금을 다시 세입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은행 잉여금’은 2025년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역대 두 번째 실적을 나타낸 2024년의 월별 당기순이익을 이미 4월부터 추월하였고, 9월말 기준으로는 2024년 당기순이익을 7,795억원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10월까지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살펴보고 예산안의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은 2026년은 2023~2024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의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이에 따라 재정증권 발행이나 일시차입 규모는 2023~2024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예산안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예비비’는 2023년의 경우 4.6조원의 예비비 중 3.3조원이 불용(집행률 28.5%)되었고, 2024년은 4.2조원 중 2.5조원 이상의 예비비가 불용(집행률 39.0%)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2026년 예산안의 재해·재난대책비의 가용재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예비비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국고채이자상환’ 사업은 3.0%의 금리를 기준으로 편성된 이번 2026년도 계획안은 국고채 조달금리와 시장금리 수준 및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과다 편성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적정 이자상환 규모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국세수입: 국세수입 오차 최소화 및 추계의 신뢰성 제고 필요

가. 개 요

2026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대비 18.2조원(4.9%) 증가한 390.2조원이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78.6조원, 특별회계 11.6조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 실적	2025년 제2회 추경(A)	2026년 예산(B)	전년 예산대비 (B-A)	비율
○ 총 국 세	3,365,324	3,720,850	3,902,454	181,605	4.9
- 일반회계	3,261,793	3,614,604	3,786,015	171,412	4.7
(소득세)	1,174,180	1,268,192	1,321,175	52,983	4.2
(법인세)	625,113	835,671	865,474	29,803	3.6
(부가세)	822,358	833,292	865,750	32,457	3.9
- 특별회계	103,531	106,246	116,439	10,193	9.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정부는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부가세가 2025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4년 기업실적 호조세가 2025년까지 유지되어 법인세도 금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 하반기 이후 내수 및 경기회복에 따른 종합소득세 증가와 임금상승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2025년도 제2회 추경 대비 5조 2,983억원(4.2%)이 증가한 132조 1,175억원이 편성되었고, 법인세의 경우 2025년도 제2회 추경 대비 2조 9,803억원(3.6%) 증가한 86조 5,47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3조 2,457억원(3.9%)이 증가한 86조 5,750억원이 편성되었음.

대부분의 세목이 2025년도 제2회 추경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이자소득세(△3,003억원), 배당소득세(△334억원), 인지세(△1,103억원), 관세(△1조 1,879억원) 및 주세(△642억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26년도 세목별 국세수입 예산안]

(단위: 억원, %)

	2024년 실적	2025년 제2회 추경	2026년 예산안	2025년 제2회 추경 대비	
				증감액	%
총 국 세	3,365,324	3,720,850	3,902,454	181,605	4.9
○ 소 득 세	1,174,180	1,268,192	1,321,175	52,983	4.2
· 종합소득세	195,265	220,582	226,270	5,688	2.6
· 양도소득세	166,852	194,116	205,245	11,129	5.7
· 이자소득세	71,958	63,121	60,118	△3,003	△4.8
· 배당소득세	42,680	46,757	46,423	△334	△0.7
· 근로소득세	610,491	647,310	684,511	37,201	5.7
○ 법 인 세	625,113	835,671	865,474	29,803	3.6
○ 상 속 증 여 세	152,981	154,437	170,163	15,726	10.2
○ 부 가 가 치 세	822,358	833,292	865,750	32,457	3.9
○ 개 별 소 비 세	86,566	87,479	93,786	6,307	7.2
○ 증 권 거 래 세	47,602	38,454	53,753	15,299	39.8
○ 인 지 세	8,460	8,836	7,734	△1,103	△12.5
○ 과 년 도 수 입	65,334	65,156	61,178	△3,979	△6.1
○ 교통·에너지·환경세	113,891	140,012	164,122	24,110	17.2
○ 관 세	69,723	84,093	72,214	△11,879	△14.1
○ 교 육 세	53,738	57,765	64,433	6,668	11.5
○ 종합부동산세	41,847	41,215	46,233	5,018	12.2
○ 주 세	33,282	32,093	31,451	△642	△2.0
○ 농어촌특별세	70,249	74,153	84,988	10,835	14.6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나. 검토의견

첫째, 2025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본예산 대비 △12.5조원이 감소한 369.9조원으로,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전망이며, 그 규모를 합치면 지난 3년간 약 △100조원에 이르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정부는 2025년 9월 세수재추계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25년 국세수입은 전년(336.5조원) 대비 33.4조원 증가한 369.9조원으로, 본예산(382.4조원) 대비 12.5조원(△3.3%) 제2회 추가경정예산(372.1조원) 대비 2.2조원(△0.6%)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음.[4)]

[2025년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단위: 조원, %)

구 분	2024년 실적(A)	2025년			전년대비		추경대비	
		예산(B)	제2회 추경(C)	전망(D)	(D-A)	비율	(D-C)	비율
○ 총 국 세	336.5	382.4	372.1	369.9	33.4	9.9	△2.2	△0.6
- 일반회계	326.2	371.8	361.5	358.2	32.1	9.8	△3.2	△0.9
(소득세)	117.4	126.8	126.8	128.4	10.9	9.3	1.5	1.2
(법인세)	62.5	88.3	83.6	83.6	21.1	33.8	0.1	0.1
(부가세)	82.2	87.6	83.3	80.9	△1.3	△1.6	△2.4	△2.9
- 특별회계	10.4	10.6	10.6	11.7	1.3	13.0	1.1	10.1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소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5)]

최근 10년간 국세수입의 본예산 대비 결산 오차를 살펴보면, 2021년 61.3조원의 초과세수가 규모 면에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2023년 △56.4조원의 세수결손, 2022년 52.6조원의 초과세수, 2024년 △30.8조원의 세수결손 순임.

4) 기획재정부, 「금년 국세수입은 추경 대비 △2.2조원 예상」 보도자료, 2025.9.25.

5) 평균환율(원/달러) : (2025.1.~5.) 1,439 → (2025.6.~8.) 1,379 <△4.2%>
휘발유 △10%, 경유·부탄 △15% 탄력세율 인하(~2025.10.31.)

2025년의 경우 국세수입은 세수재추계 결과 369.9조원으로 예상되어 본예산 382.4조원 대비 △12.5조원(△3.3%)의 결손을 나타낼 전망인데, 이는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에 이어 3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 규모를 합치면 지난 3년간 약 △100조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15~2024년 국세수입 예·결산 및 오차율]

(단위: 조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본예산(A)	221.1	222.9	242.3	268.1	294.8	292.0	282.7	343.4	400.5	367.3
	추경예산(B)	215.7	232.7	251.1	268.1	294.8	279.7	314.3	396.6	341.4	337.7
결산(C)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344.1	395.9	344.1	336.5
차이	본예산 대비 (C-A)	△3.3	19.6	23.1	25.4	△1.3	△6.5	61.3	52.6	△56.4	△30.8
	추경 대비 (C-B)	2.2	9.8	14.3	25.4	△1.3	5.8	29.8	△0.7	2.7	△1.2
오차율	본예산 대비 [(C-A)/A]	△1.5	8.8	9.5	9.5	△0.5	△2.2	21.7	15.3	△14.1	△8.4
	추경 대비 [(C-B)/B]	1.0	4.2	5.7	9.5	△0.5	2.1	9.5	△0.2	0.8	△0.4

주: 2023년, 2024년 추경예산은 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하여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해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 및 시장자문단 신설을 통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법인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6]의 중간예납 시 가결산을 의무화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음.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물론 최근 3년간 세수오차 규모는 2023년 △56.4조원, 2024년 △30.8조원, 2025년 △12.5조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고, 본예산 대비 오차율도 2023~2025년 각각 △14.1%, △8.4%, △3.3%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2023년 및 2024년의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10조원 이상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 세수추계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둘째, 한·미 관세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2026년도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의 전제가 되는 경상성장률, 실질성장률 및 수출·수입 증가율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요인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음.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의 전제가 되는 정부의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보면, 2025년은 경상성장률 3.2%, 실질성장률 0.9%, 민간소비증가율 1.3% 및 환율 1,428(원/$) 등을 전제로 하였고, 2026년에는 경상성장률 3.8%, 실질성장률 1.7%, 민간소비증가율 1.6% 및 환율 1,380(원/$)을 기준으로 하였음.[7)]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의 전제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

구 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경상성장률(%)	3.2	3.8
실질성장률(%)	0.9	1.7
GDP 디플레이터	2.3	2.1
민간소비증가율(%)	1.3	1.6
소비자물가상승률(%)	2.0	1.9
취업자증감(만명)	19.7	17.3
명목임금 상승률(%)	3.2	2.5
수출 증가율(%)	0.2	△0.5
수입 증가율(%)	△0.6	0.5
환율(원/$)	1,428	1,380

주) 정부 전망(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8월) 및 KDI 경제전망(2025.8월) 반영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7)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5·2026년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이 0.9%·1.6%, 한국개발연구원(KDI)이 0.8%·1.6% 등으로 전망하고 있어, 정부가 전제하는 0.9%, 1.7%에 비해 한국은행은 2026년도 전망치를 0.1%p 낮게 전망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은 2025·2026년 모두 0.1%p 낮게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2025·2026년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0%·1.9%, OECD는 1.0%·2.2%, IMF는 0.9%·1.8%로 전망하고 있어, 2025년은 정부 전제보다 같거나 0.1%p 높게 전망하고, 2026년은 정부 전제보다 0.1%p~0.5%p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5·2026년 실질성장률 전망치]

구 분	정부 (2025.8.)	NABO (2025.9.)	한국은행 (2025.8.)	KDI (2025.8.)	OECD (2025.9.)	IMF (2025.10.)	ADB (2025.9.)
2025	0.9%	1.0%	0.9%	0.8%	1.0%	0.9%	0.8%
2026	1.7%	1.9%	1.6%	1.6%	2.2%	1.8%	1.6%

주) 각 기관 및 투자은행이 발표한 최신 전망치 기준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실질성장률과 물가 등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요인을 점검한 후 국세수입 전망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가 국세수입 추계 시 전제한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2025년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보다 경상·실질 모두 0.1%p 낮은 수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상 정부가 각 연도 6~7월 중 발표하는 정부 전망치를 국세수입 추계에 사용하여 온 것과는 차이가 있음.

[정부의 각 시점별 2026년 성장률 전망치]

구 분	경상성장률(%)	실질성장률(%)
2026년 국세수입 전망 (2026년도 예산안, 2025.9.)	3.8	1.7
2026년 경제전망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8.)	3.9	1.8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25.9. 및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8.

이에 대하여 정부는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관의 경제전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2026년 세입예산 편성시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변수를 정부 외에 한국개발연구원 등 외부 기관의 거시경제 전망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2025.8.22.)에서 제시한 경제전망 수치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서 계획 수립의 전제로 사용되고 있어, 2026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의 정합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음.

2. 조세지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산정방식 개선 필요

가. 개 요

조세지출이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되며,「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8]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 5,277억원으로, 2025년 국세감면액 76조 4,719억원 대비 4조 558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 국세감면율은 16.1%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024~2026년도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 국세감면액 (A)	705,171	100.0	764,719	100.0	805,277	100.0
• 조특법상 조세지출	366,782	52.0	402,762	52.7	421,999	52.4
•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336,173	47.7	359,766	47.0	380,934	47.3
•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	2,215	0.3	2,192	0.3	2,344	0.3
○ 국세수입총액[주1] (B)	3,656,829		4,003,076[3]		4,195,673	
○ 국세감면율 [A/(A+B)]	16.1		16.0		16.1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주2]	14.6		15.5		16.5	

주 1)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3) 세입예산액(2025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2026년 조세지출예산서」, 2025.9.

8)「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년 조세지출의 주요 증가 항목은 자녀세액공제(+0.6조원), 통합투자세액공제(+0.4조원),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0.4조원) 등임.[9)]

[2026년 주요 조세지출 증감 항목]

(단위: 억원, %)

항목	2025년 전망 (A)	2026년 전망 (B)	증 감	
			증감액(B-A)	증감률
자녀세액공제	8,787	14,951	6,163	70.1
통합투자세액공제	25,681	30,076	4,395	17.1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73,711	77,560	3,849	5.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9.

나. 검토의견

첫째, 국세감면율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2026년에도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이므로, 비과세·감면 등의 조세지출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이 높을수록 법정한도가 높아지는 현행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산정방식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10)]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세수입총액[11)]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국세감면율)이 당해연도의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값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9) - 자녀세액공제: 자녀 1인당 공제금액 10만원 상향(2024년 개정)
-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3~4%→10%, 2024년 개정)
-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공제대상 근로자 수 증가 및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공제금액 증가

10) 「국가재정법」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국세감면의 제한) ③법 제8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의 국세감면율의 합을 3으로 나눈 것에 1천분의 5를 더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1천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1) 국세수입 총액: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026년 국세감면 규모는 80조 5,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558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국세수입 총액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세감면액이 더욱 큰 비율로 증가하여 국세감면율은 전년 대비 0.1%p 증가한 16.1%를 기록할 전망임.

2023년 및 2024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각각 1.5%p씩 초과한 15.8%, 16.1%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은 법정한도를 0.5%p 초과한 16.0%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므로,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 등 비과세·감면 등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2023~2026년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실적 및 전망]

(단위: 억원, %, %p)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실적	2025년 전망(A)	2026년 전망(B)	증감 (B-A)
○ 국세감면액	697,664	705,171	764,719	805,277	40,558
○ 국세수입 총액[1] (B)	3,703,803	3,656,829	4,003,076[3]	4,195,673	192,597
○ 국세감면율 [A/(A+B)]	15.8	16.1	16.0	16.1	0.1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2]	14.3	14.6	15.5	16.5	1.0

주 1)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2)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3) 세입예산액(2025년의 경우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9.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6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 16.5%보다 0.4%p 낮은 16.1%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2026년 국세감면액이 전년 대비 4조원 이상 증가하고 국세감면율도 전년 대비 0.1%p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법정한도를 준수하게 되는 이유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전년 대비 큰 폭(1.0%p)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

이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산출하는 방식에서 기인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재정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하여 당해연도 법정한도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이 높을수록 법정한도 또한 연동되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임.

또한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도 법정한도는 그보다 0.5%p 높게 설정되도록 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도 점차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2018년 13.0%였던 국세감면율은 2026년 16.1%까지 증가하고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도 2018년 14.0%에서 2026년 16.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18년 이후 연도별 국세감면율 및 법정한도]

(단위: %)

구 분	2018 실적	2019 실적	2020 실적	2021 실적	2022 실적	2023 실적	2024 실적	2025 전망	2026 전망
국세감면율	13.0	13.9	14.8	13.5	13.0	15.8	16.1	16.0	16.1
법정한도	14.0	13.3	13.6	14.3	14.6	14.3	14.6	15.5	16.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국가에서 수용 가능한 국세수입 총액 대비 국세감면 한도라는 점과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세수입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어려운 국세수입 여건 속에서 조세지출을 정비하여야 하는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의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법률에서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현황을 보면, 2026년에도 고소득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귀착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조세지출 정책이 역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내외 경제상황·재정여건 및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2~2026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을 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2년 12조 5,080억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2026년 예산안에서는 18조 369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개인에 대한 조세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31.7%에서 2026년 35.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12)]

다음으로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귀착을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13)]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 2조 3,476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6년 예산안에서는 4조 7,073억원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9.8%에서 2026년 16.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14)]

12) 개인 - 근로소득자, 농어민 · 고령자 · 장애인 등 취약계층
① 중·저소득자 : 근로소득이 8,7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인 근로자 및 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② 고소득자 : 중·저소득자를 제외한 개인

13) 공시대상기업집단(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4조원(GDP의 0.5%) 이상인 기업

14) 기업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①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2022~2026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실적[주1)]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개인	중·저소득자	269,883	68.3	291,472	67.7	310,396	67.5	318,590	65.2	333,560	64.9
	고소득자	125,080	31.7	139,076	32.3	149,625	32.5	170,003	34.8	180,369	35.1
	계 (총계 대비)	394,963	100.0 (62.2)	430,547	100.0 (61.7)	460,022	100.0 (65.2)	488,593	100.0 (63.9)	513,929	100.0 (63.8)
기업	중소기업	160,895	68.1	180,546	68.8	180,614	75.1	194,015	71.9	202,456	71.1
	중견기업	9,378	4.0	10,194	3.9	9,852	4.1	10,698	4.0	11,315	4.0
	상호출자 제한기업	38,878	16.5	43,804	16.7	23,476	9.8	42,387	15.7	47,073	16.5
	기타기업	27,159	11.5	27,872	10.6	26,649	11.1	22,650	8.4	23,870	8.4
	계 (총계 대비)	236,311	100.0 (37.2)	262,417	100.0 (37.6)	240,591	100.0 (34.1)	269,751	100.0 (35.3)	284,713	35.4
구분곤란[주2)]			4,210		4,700		4,558		6,375		6,634
총 계			635,484		697,664		705,171		764,719		805,277

주 1) 2022~2024년은 실적치, 2025년 및 2026년은 「2026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전망치임
2) 비거주자 수혜 대상 항목, 귀착이 불분명한 양도소득세 등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이 중·저소득자에 비해 클 수밖에 없고,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AI 등 국가정책적인 지원과 기업실적 회복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현황을 조세지출예산서에 작성하고 있는 취지는 조세지출의 역진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대내외 경제상황·재정여건 및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③ 상호출자제한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
④ 기타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기업

【일반회계】

<세 입>

3.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주)NXC 주식 매각 대금의 증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국세물납주식매각대’ 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국세물납증권 매각대금의 정산 납입금을 국고에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조 6,803억 5,700만원(△71.6%)이 감액된 1조 637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15)]

[2026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세물납주식매각대	3,744,140	3,744,140	1,063,783	△2,680,357	△7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납세자가 상속세의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때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16)]

---

15) 일반회계-국세물납주식매각대(73-733)(국고국)

1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물납된 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17]에 위탁된 후 가치평가를 거쳐 매각을 위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게 되며,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절차를 진행함.

[국세물납주식 매각 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23년 4.7조원 규모로 물납된 ㈜NXC[18] 주식의 매각계획을 반영하여 2025년 예산안에 전체 규모의 약 80%인 3.7조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2026년 예산안에 나머지 1조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 및 2026년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예산안 세부내역
2025	3,744,140	- 최근 5년간 매각금액 평균(62,829)을 기초로 하되, 고액 물납주식 NXC 매각을 감안하여 조정
2026	1,063,783	- 1조원(NXC 매각대금) + 5년간 매각금액 누계(318,915 / 5 = 63,783)

자료: 기획재정부

1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관리·처분기관) ③ 총괄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포함한다.) 및 이미 처분된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국세물납에 따라 취득한 일반재산

18) ㈜NXC(NeXon Corporation), 2022년 넥슨그룹 회장 별세로 납부의무가 발생한 상속세 중 4.7조원을 주식으로 물납하였음(2023.5.).

나. 검토의견

첫째, 기획재정부는 4.7조원 규모의 ㈜NXC 물납주식의 매각이 2025년 중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2026년에도 적극적으로 매각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3.7조원의 매각대금을 다시 세입으로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국세물납주식매각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조 6,803억 5,700만원(△71.6%)이 감액된 1조 637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3년 4.7조원 규모로 물납된 ㈜NXC 주식을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3.7조원, 1.0조원으로 나누어 편성하였기 때문임.

그런데 2025.9월말 기준 기획재정부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IBK투자증권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올해 두 번의 입찰이 모두 유찰된 상황임.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시장에서의 매각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나, 2025년 내에 ㈜NXC 물납주식의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025년 중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026년에도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2025년 최종적으로 ㈜NXC 물납주식의 매각에 실패하는 경우, 2026년에도 매각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 1.0조원만 반영되어 있는 ㈜NXC 주식 매각 수입을 증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보유한 주식규모 대비 매각률은 ㈜NXC 주식 물납 이전인 2022년에도 4.4% 수준이었고 2025년 8월말 기준 0.6%에 불과한 상황이므로, 물납된 주식의 매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매각이 어려운 주식의 물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보유한 주식규모 대비 매각률은 2019년 9.3% 수준이었으나 2022년 4.4%까지 감소하였고, ㈜NXC 물납 이후 매각률은 2023년 2.4%, 2024년 1.0%, 2025년 8월 현재 0.6%에 불과함.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된 국세물납증권 매각현황]

(단위: 억원, 건, %)

구분		2019 결산	2020 결산	2021 결산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8. 실적
자산관리공사 위탁보유	규모(A)	5,502	5,668	9,265	9,046	55,469	57,031	58,426
	건수(a)	338	345	335	325	325	311	311
매각되어 국고에 귀속된 규모	규모(B) (물납금액)	549	420	515	400	1,340	551	326
	규모(C) (매각금액)	676	373	531	606	1,077	543	271
	건수(b)	11	11	19	19	13	14	4
매각률	**규모(B/A)**	**9.3**	**7.4**	**5.6**	**4.4**	**2.4**	**1.0**	**0.6**
	건수(b/a)	3.2	3.2	5.7	5.8	4.0	4.5	1.3
환가율	C/B	123.1	88.8	103.1	151.5	80.4	98.5	83.1

자료: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19)]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부동산·유가증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20)]

---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2.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이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보유된 물납주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매각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물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전에 매각이 어려운 주식의 물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5년 8월말 기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311건의 국세물납주식 중 휴·폐업,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평가금액이 0원인 주식은 148건임.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정부출자수입: 2025년 하반기 경제상황을 고려한 예산 증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정부출자수입’ 은 정부출자기관을 대상으로 「국유재산법」 및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각 기관별 배당액을 세입조치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46억 4,700만원(38.7%) 증액된 1조 4,500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음.[21]

[2026년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정부출자수입	1,045,447	1,045,447	1,450,094	404,647	38.7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재무제표 등 정부배당수입 결정 기초자료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정부의 재정여건, 민간배당수준, 자본금 규모 및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부배당대상기업과 배당수준을 협의한 후 배당규모를 확정함.[22]

---

21) 일반회계-정부출자수입(52-521)(국고국)

22) 「국유재산법」
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이 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부가 현물로 납입받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가 받는 배당(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재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정부 배당 결정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배당 여부 판단	**기관별 배당성향 도출**				**최종배당성향**
당기순이익 - 이월결손금액 - 법정적립금 > 0 → 배당가능	당기 순이익 (A)	기관별 목표배당성향 (B)	특이사안 반영(± α) (C)	실제배당 가능금액 (D=A×B-C)	계량지표 반영 ・전년 우수배당기업 (△1%) ・사회책임지표 등 (△0.2%) → 기업별 배당성향 확정
	→ 기업별 배당성향(D/A) 도출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첫째,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의 과소편성 경향이 2026년 예산안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5년 두 차례의 추경 편성 및 내수경제 회복 등 2025년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 추세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적정 배당수입 규모로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은 전년 대비 4,047억원(38.7%) 증액된 1조 4,50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정부 출자기관의 2025년 예상 당기순이익 8조 4,593억원과 평균 배당성향 33.52%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음.

[2024~2026년 예산안 산출근거 및 실제 정부배당액]

(단위: 억원, %)

연도	예상 당기순이익	평균 배당성향	예상 배당금 (예산안 편성액)	실제 정부배당액 (수납액)
2024년 예산안	53,502	35.97	9,823	16,033
2025년 예산안	56,165	35.13	10,454	17,126
2026년 예산안	84,593	33.52	14,501	-

자료: 기획재정부

2024~2026년 예산안 편성액과 실제 정부배당액을 보면, 2024년의 경우 예산안은 9,823억원이었으나, 실제 정부배당액은 1조 6,033억원(수납률 163.2%)이 수납되었고, 2025년은 1조 454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1조 7,126억원(수납률 163.8%)이 수납되어 60% 이상의 초과수납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2026년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되는 2025년 예상 당기순이익은 8조 4,593억원으로 2024・2025년 예산안 편성 시의 예상 당기순이익(5조 3,502억원, 5조 6,165억원)보다 각각 3.1조원, 2.8조원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상 배당금은 2024・2025년 실제 수납액보다 각각 1,532억원, 2,625억원 적게 편성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및 실제 정부배당액]

(단위: 억원, %)

기 관 명	2023년 예상 당기순이익(A)	지분율(B)	적용 배당성향(C)	예상 배당금 (D=A×B×C)	2024년 실제 정부배당액
한국토지주택공사	14,414	24.56	20.00	708	259
중소기업은행	22,000	59.50	30.48	3,990	4,668
한국산업은행	8,400	91.34	37.42	2,871	8,017
한국주택금융공사	627	65.24	33.79	138	-
한국수출입은행	5,330	72.18	36.58	1,407	1,826
부산항만공사	285	87.31	51.53	128	176
한국자산관리공사	513	70.88	40.44	147	293
울산항만공사	328	87.25	51.60	148	18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0	100.00	35.48	14	30
한국조폐공사	15	100.00	42.00	6	33
한국부동산원	78	49.40	39.72	15	37
한국농어촌공사	181	100.00	32.76	59	35
한국수자원공사	1,291	93.81	15.79	191	44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00.00	-	-	26
합계/평균	**53,502**		**35.97주)**	**9,823**	**16,033**

주) 평균 배당성향은 각 기관별 배당성향의 산술평균임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4[23]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4에 따라 각 기업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전망을 바탕으로 2026년 배당수입을

23) 「국유재산법」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소관 예산안의 세입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추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고, 2024년 및 2025년 배당수입 증가는 한국산업은행의 예측하기 어려운 비경상적 이익이 대규모 발생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24)]

그러나 2024년의 경우 9,8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예산 대비 6,210억원이 증가한 1조 6,033억원이 수납되어 한국산업은행의 예산 대비 초과 배당액(5,146억원)보다 1,064억이 초과 수납되었음.

2025년의 경우에도 1조 45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예산 대비 6,672억원이 증가한 1조 7,126억원이 수납되어 한국산업은행의 초과 배당액(4,096억원)보다 1,766억원이 초과 수납되어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의 과소편성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 산출근거 및 실제 정부배당액]

(단위: 억원, %)

기 관 명	2024년 예상 당기순이익(A)	지분율(B)	적용 배당성향(C)	예상 배당금 (D=A×B×C)	2025년 실제 정부배당액
한국토지주택공사	9,895	19.04	20.00	377	331
중소기업은행	23,000	59.50	31.49	4,309	5,053
한국산업은행	9,000	91.94	34.76	2,876	6,972
한국주택금융공사	1,443	59.76	33.95	293	557
한국수출입은행	6,228	75.64	34.98	1,648	2,801
한국가스공사	3,712	22.49	19.69	164	302
부산항만공사	209	87.31	51.53	94	265
한국자산관리공사	587	73.97	39.59	172	87
울산항만공사	331	87.25	50.97	147	163
인천항만공사	829	59.51	34.80	172	20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78	100.00	29.84	23	-
한국조폐공사	5	100.00	47.19	2	3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1	100.00	42.11	9	18
한국부동산원	67	49.40	41.43	14	37
한국농어촌공사	223	100.00	33.93	76	54
한국수자원공사	538	93.94	15.84	80	-
한국전력공사	-	18.20	-	-	249
합계/평균	**56,165**		**35.13주)**	**10,454**	**17,126**

주) 평균 배당성향은 각 기관별 배당성향의 산술평균임
자료: 기획재정부

24) <한국산업은행 비경상적 이익 발생 주요 요인>
- 2023회계연도 : 한화오션 대손충당금 환입(+1.0조원) 및 한화오션 주식 손상차손 환입(+0.4조원) 등
- 2024회계연도 : 한화오션 대손충당금 환입(+0.3조원) 및 한화오션 주식 손상차손 환입(+0.7조원) 등

한편 2024~2026년 예산안의 예상 당기순이익 대비 예산안 편성 비율을 보면, 2024년 예산안은 당기순이익의 18.4%가 예산안으로 편성되었고, 2025년 예산안은 18.6%가 편성되었으나, 2026년 예산안의 경우 17.1%로 2024·2025년 당기순이익 대비 예산안 편성 비율에 비해 1.3%p~1.5%p 낮게 편성되었음.

또한 각 연도별 평균 배당성향[25]을 보면, 2024·2025년 예산안은 각각 35.97%, 35.13%의 평균 배당성향을 나타냈으나, 2026년 예산안의 경우 33.52%로 1.61%p~2.45%p 낮게 편성되었음.

[2024~2026년 예상 당기순이익 대비 예산안 편성 비율]

(단위: 억원, %)

연도	예상 당기순이익(A)	평균 배당성향	예상 배당금(B) (예산안 편성액)	당기순이익 대비 예산안 편성 비율(B/A)
2024년 예산안	53,502	35.97	9,823	18.4
2025년 예산안	56,165	35.13	10,454	18.6
2026년 예산안	84,593	33.52	14,501	17.1

자료: 기획재정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의 과소편성 경향이 2026년 예산안에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25년 두 차례의 추경 편성 및 내수경제 회복 등으로 2025년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 추세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적정 배당수입 규모로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획재정부는 2026년 정부출자수입 예산안에 대한 기관별 세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기관별 세부내역 없이 총액만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경우 기관별 예상 배당금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충실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관별 예상 당기순이익, 배당성향 등 세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정부배당수입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2025년 추정당기순이익, 배당여력 등)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고만 설명할 뿐, 각 기관별 예상 당기순이익, 배당성향 등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개별 기업의 금년도 예상 당기순이익은 상장법인의 공시되지 않은 당기순이익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임.

25) 연도별 평균 배당성향은 각 기관별 배당성향의 단순 산술평균임.

그러나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에 예산안 편성의 세부 산출 근거를 제출하는 것은 예산안을 편성·집행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자료 제출만으로 대외 공개가 되는 것도 아니며, 세부내역이 아닌 총액으로만 심사하는 경우 기관별 예상 배당금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충실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부출자수입 예산안 산출의 세부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

5. 한국은행 잉여금: 10월까지의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실적을 고려하여 증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한국은행 잉여금’ 은 한국은행의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을 「한국은행법」에 따라 처분 후 그 잔여분을 다음 연도 정부 세입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조 2,190억 8,900만원(52.8%) 증액된 6조 4,190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26)]

[2026년도 한국은행 잉여금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한국은행 잉여금	4,200,003	5,449,101	6,419,092	2,219,089	52.8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27)]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며[28)], 최종 잔여분을 정부의 세입으로 납부함.

2026년도 한국은행 잉여금 예산안은 한국은행의 2025년도 상반기 당기순이익 4조 5,850억 6,600만원에 2를 곱하여 연간 기준으로 조정한 후 법정적립금 30%를 제외한 70%를 적용하여 산출되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액은 예산 규모 대비 소액으로 산출근거에서 제외하였음.

---

26) 일반회계-한국은행 잉여금(54-548)(국고국)

27) 「한국은행법」
제99조(이익금 처분)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8조 (이익금처분) ① 한국은행은 법 제9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순이익금을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025년 241억원)

[2025년 및 2026년 한국은행 잉여금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예산안 세부내역
2025	본예산	4,200,003	■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전망 × 7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출연예상액 = 6,034,500 × 0.7 - 24,100 = 4,200,003
	추경	5,449,101	■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 7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출연액 = 7,818,900 × 0.7 - 24,100 = 5,449,101
2026예산안		6,419,092	■ 한국은행 2025년도 상반기 당기순이익 × 2(연간기준 조정) × 70% = 4,585,066 × 2 × 0.7 = 6,419,092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2025년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역대 두 번째 실적을 나타낸 2024년의 월별 당기순이익을 이미 4월부터 추월하였고, 9월말 기준으로는 2024년 당기순이익을 7,795억원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10월까지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살펴보고 예산안의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한국은행(이하 “한은”) 잉여금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조 2,190억 8,900만원(52.8%) 증액된 6조 4,190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되는 2025년 한은 당기순이익은 2025년도 예산안까지는 한은에서 추정하는 ‘한은 전망치’를 사용하였으나, 2026년 예산안부터는 ‘상반기 당기순이익 × 2’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그간 한은의 보수적 전망 경향성으로 ‘한은 전망치’ 대비 초과수납이 지속[29]되었고, 이에 따라 ‘한은 잉여금 예산 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계속되어 산출 방식을 수정한 것이며,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상반기 당기순이익 × 2’ 방식을 통해서 산출된 예산안 6.4조원은 한은 전망치 6.1조원 대비 약 5% 높은 수준으로, 추계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있음.[30]

29) 한은 전망 대비 실제 당기순이익 초과율(%) : (’24) 29.7 (’23) 11.5 (’22) 40.1 (’21) 36.5 (’20) 29.8

30) 2024년도의 경우 ‘한은의 순이익 전망(6.03조)’ 대비 ‘상반기 당기순이익 * 2 방식(7.25조원)’이 실적(7.82조원)에 더 근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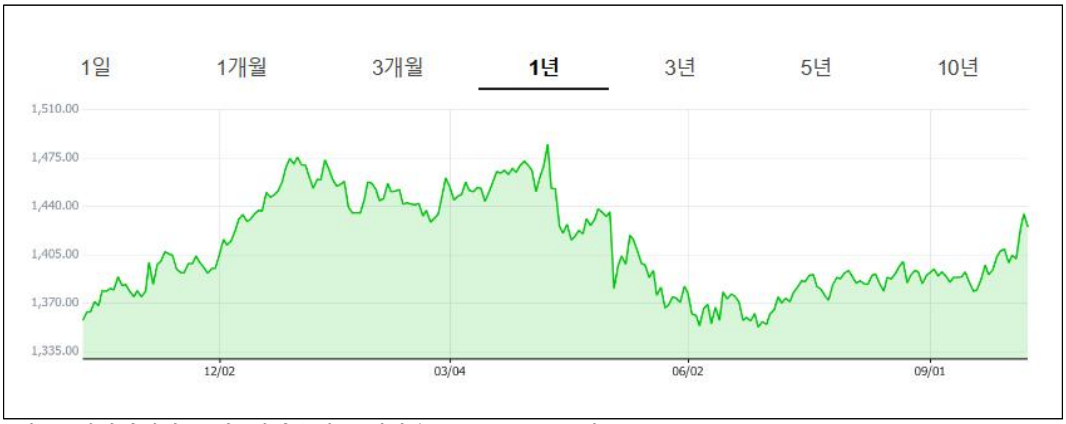
2024년 한은 당기순이익은 7조 8,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4,567억원 증가하였고, 이는 2021년(7조 8,638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한은은 이에 대하여 한은 자산은 외화채권 등 대부분 외화자산으로, 부채는 거의 원화로 구성되어 있어 당기순이익 자체가 국내외 금리 및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2024년은 금리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가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함.[31]

즉 한은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외화 자산의 원화 환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함.

2025년의 경우 2024년 12월 이후 2025년 5월 중순까지 1,400원/$ 이상의 환율이 지속되었고, 이후 1,400원/$ 아래로 유지되었으나, 10월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최근 1년간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네이버페이 증권, 하나은행 고시환율, 2025.10.13. 조회

2025년 월별 한은 당기순이익 현황을 보면, 역대 두 번째 실적을 나타낸 2024년의 당기순이익을 이미 4월부터 추월하였고, 9월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8조 5,984억원으로 2024년 연간 당기순이익을 7,795억원 초과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2025년 한은의 당기순이익은 2024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올해 10월까지의 당기순이익 현황을 면밀히 살펴 한은 잉여금 예산안의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1) 투데이코리아, “한국은행, 지난해 당기순이익 7조 8189억원···역대 두 번째 규모”, 2025.3.28.

[2020~2025년 월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누적)]

(단위: 억원)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1)]	△844	10,372	22,165	23,390	35,228	46,679	57,166	66,940	75,921	85,602	95,559	73,659
2021[2)]	5,594	15,729	22,098	27,762	32,153	39,945	48,901	54,800	61,988	65,657	72,618	78,638
2022	2,682	1,019	5,524	10,856	12,139	15,126	16,502	18,714	13,124	7,379	4,480	25,452
2023	236	3,363	3,262	5,406	7,895	8,808	11,468	13,792	13,293	12,102	12,928	13,622
2024	3,714	9,555	14,138	20,128	26,066	36,244	36,375	42,494	46,950	58,373	64,189	78,189
2025	4,182	6,069	13,874	20,986	28,418	45,851	57,119	66,573	85,984	-	-	-

주 1) 2020년 1~11월까지 공고내역은 현금주의에 기초한 세전 당기순이익이며, 12월은 발생주의에 기초한 세후 당기순이익

2) 2021년 공고내역부터는 매월 발생주의에 기초한 세후 당기순이익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각 연도 월별 대차대조표를 바탕으로 재작성

<세 출>

6.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 일시차입 물량의 적정 소요를 고려한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은 국고금 출납 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경우 그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7억 9,100만원(10.9%) 증액된 1,100억원이 편성되었음.[32)]

[2026년도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시차입금이자상환	99,209	99,209	110,000	10,791	10.9

정부는「국고금 관리법」제32조[33)]에 따라 국고금 통합계정 운용수익에서 우선 일시차입 이자비용을 지출하고, 운용수익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출예산으로 이자상환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50억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992억원을, 2026년 예산안에는 1,100억원을 편성하였음.

32) 일반회계-일시차입금이자상환(2272-561)(국고국)

33)「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자금이 필요한 각 회계 · 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2026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2026년 예상 일시차입 이자비용 2,499억원에서 2025년말 국고금 운용수익 차년도 예상이월액 488억원과 2026년 상·하반기 국고금 운용수익 예상액 911억원을 차감하여 1,100억원이 산출되었으며, 2026년 예상 이자비용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일시차입 연평균 잔액 10.2조원에 2026년 예상이자율 2.45%를 곱하여 산출되었음.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2026년도 일시차입 이자상환 예산 소요 : 1,100억원 (이자소요 - 국고금 운용수익)

- (산출) 2026년도 순이자비용(이자 - 운용수익) 소요 예상액 : 1,100억원
· '26년 총 예상 이자비용(A) : 2,499억원
(2022 ~ 2024년 일시차입 연평균 잔액 10.2조원 × 예상 이자율 2.45%)
· '25년말 운용수익금의 차년도 예상이월액(B) : 488억원
· '26년 상/하반기 운용수익금 등(C) : 911억원
· 이자비용(A) - 운용수익(B+C) = 1,100억원

※ 일시차입 물량은 '22~'24년 평균잔액, 이자율은 '25.7월 91일물 한은 통안증권 평균 금리 + 10bp 가정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2026년은 2025년에 비해 경기상황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3~2024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의 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이에 따라 재정증권 발행이나 일시차입의 규모는 2023~2024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한은 일시차입 이자상환 예산안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총 예상 이자비용 2,499억원은 2022~2024년 한국은행(이하 "한은") 일시차입 연평균 잔액 10.2조원에 2026년 예상 이자율 2.45%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음.

[2026년 총 예상 이자비용 산출내역]

○ 2026년 총 예상 이자비용(A): 2,499억원
- 2022 ~ 2024년 일시차입 연평균 잔액 10.2조원 × 예상 이자율 2.45%

※ 일시차입 물량: 2022 ~ 2024년 평균잔액
이자율은 2025.7월 91일물 한은 통안증권 평균 금리 + 10bp 가정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이자비용 산출의 전제가 되는 일시차입 물량을 최근 3년(2022~2024년) 한은 일시차입 연평균 잔액을 활용하였는데, 2023년과 2024년은 각각 △56.4조원, △30.8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재정증권 발행 및 일시차입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6~2025년 일시차입 및 이자상환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 일시차입 한도		30.0	30.0	30.0	30.0	30.0	40.0	40.0	40.0	40.0	40.0
■ 차입실적(누계)		29.9	9.9	2.0	84.7	142.5	36.4	50.5	162.1	214.8	182.5
- 한은차입		9.0	2.0	-	36.0	97.2	7.5	16.3	117.6	165.0	136.5
- 재정증권		20.9	7.9	2.0	48.7	45.3	28.9	34.2	44.5	49.8	46.0
■ 차입실적(평잔)		3.7	1.2	0.1	10.1	12.5	5.0	4.5	12.0	14.2	17.0
- 한은차입		0.2	0.02	-	2.3	4.8	0.1	1.8	4.4	5.9	5.9
- 재정증권		3.5	1.2	0.1	7.8	7.7	4.9	2.8	7.6	8.2	11.1
이자상환 (억원)	운용수익	555	160	24	1,648	951	212	668	4,244	2,758	1,090
	예산	-	-	-	-	182	81	-	-	2,107	1,427
	<합계>	555	160	24	1,648	1,133	293	668	4,244	4,865	2,517

주) '운용수익'은 국고금 운용수익에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재정증권 발행 및 한은 일시차입 실적은 누계 기준 50.5조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162.1조원, 2024년 214.8조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신속집행 및 2차례의 추경 실시로 8월말 기준 182.5조원의 차입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또한 연간 차입실적 평잔은 2022년 4.5조원 규모에서 2023년 12.0조원, 2024년 14.2조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의 경우 8월말 기준 17.0조원 규모임.

그러나 2026년은 정부 및 국내외 주요기관이 2025년에 비해 경기상황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2023~2024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이에 따라 재정증권 발행이나 일시차입의 규모는 2023~2024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이므로, 한은 일시차입 이자상환 예산안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25·2026년 실질성장률 전망치]

구 분	정부 (2025.8)	NABO (2025.9)	한국은행 (2025.8)	KDI (2025.8)	OECD (2025.9)	IMF (2025.9)	ADB (2025.9)
2025	0.9%	1.0%	0.9%	0.8%	1.0%	0.9%	0.8%
2026	1.7%	1.9%	1.6%	1.6%	2.2%	1.8%	1.6%

주) 각 기관 및 투자은행이 발표한 최신 전망치 기준
자료: 각 기관 발표자료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재정증권 발행이나 한은 일시차입은 세수결손의 발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세입과 세출의 미스매치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예상 일시차입 물량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했던 2021년(61.3조원)과 2022년(52.6조원)에는 연간 차입실적 평잔이 각각 5.0조원, 4.5조원으로 2023년 12.0조원, 2024년 14.2조원에 비해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16~2025년 연도별 차입실적(평잔)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 차입실적(평잔)	3.7	1.2	0.1	10.1	12.5	5.0	4.5	12.0	14.2	17.0
- 한은차입	0.2	0.02	-	2.3	4.8	0.1	1.8	4.4	5.9	5.9
- 재정증권	3.5	1.2	0.1	7.8	7.7	4.9	2.8	7.6	8.2	11.1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일시적 자금부족의 해결을 위해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총괄계정)[34]' 사업에서는 2026년 예상 이자율을 2.5%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의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의 이자율(2.45%)과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 - 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총괄계정)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한국은행 일시차입금(한도 10조원)에 대한 이자 소요
- 10조원 × 2.50%[1] × 15/365[2] ≒ 100억원

주 1) 최근 한은 기준금리
2) 일시차입기간 15일 수준 가정
자료: 기획재정부

34) 공공자금관리기금-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총괄계정)(1071-760)(국고국)

7. 예비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 검토 필요

가. 개 요

‘예비비’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자금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8,000억원(75.0%) 증액된 4조 2,0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목적예비비는 전년 대비 1조 8,000억원(112.5%) 증액된 3조 4,000억원, 일반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8,000억원이 편성되었음.[35)]

[202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비비	2,400,000	3,800,000	4,200,000	1,800,000	75.0
목적예비비	1,600,000	2,600,000	3,400,000	1,800,000	112.5
일반예비비	800,000	1,200,000	800,000	-	-

예비비는「대한민국헌법」제55조제2항[36)] 및「국가재정법」제22조[37)]에 근거하여 세부 사업별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며, 예산총칙에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하는 목적예비비와 별도의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예비비로 구분됨.

2018년 이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의 추이를 보면, 2018·2019년 각각 3조 500억원, 3조원 수준에서 2020년 5조 6,100억원, 2021년 9조 7,000억원, 2022년 5조 5,500억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비비 편성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

35) 일반회계-예비비(3069-300)(예산실)

36)「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7)「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이후 2023년에는 4조 6,000억원, 2024년 4조 2,000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5년의 경우 정부 예산안은 4조 8,000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2조 4,000억원으로 감액되었고, 2025년 제1회 추경에서 3조 8,000억원으로 증액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8,000억원(75.0%), 추경 대비 4,000억원(10.5%) 증액된 4조 2,0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목적예비비는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8,000억원(112.5%), 추경 대비 8,000억원(30.8%) 증액된 3조 4,000억원, 일반예비비는 전년 본예산과는 8,000억원으로 동일하며, 추경 대비로는 4,000억원(△33.3%) 감액 편성되었음.

[2018년 이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편성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18 예산	2019 예산	2020 예산	2021 예산	2022 예산	2023 예산	2024 예산	2025 예산	2026 예산안
합 계	30,500	30,000	56,100	97,000	55,000	46,000	42,000	38,000	42,000
목적예비비	18,500	18,000	42,100	81,000	37,000	28,000	22,000	26,000	34,000
일반예비비	12,000	12,000	14,000	16,000	18,000	18,000	20,000	12,000	8,000

주) 2018 ~ 2022년도, 2025년도 예비비는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안에서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38]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를 기존 일반예비비에서 목적예비비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음.

[2025년 및 2026년도 목적예비비 예산총칙]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2,6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3,400,000,000,000 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률 그리고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라 지급 해야하는 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안전보장 소요**, 전염병 대책 관련 경비, 국제부담금, 국제적 재난·위기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법률개정으로 인한 정부조직개편에 소요되는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예산안」, 2025.9.

38)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제2조 (예비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소관으로 한다.

나. 검토의견

2023년은 4.6조원의 예비비 중 3.3조원이 불용(집행률 28.5%)되었고, 2024년의 경우 4.2조원 중 2.5조원 이상의 예비비가 불용(집행률 39.0%)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과, 2026년 예산안의 재해·재난대책비의 가용재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예비비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회계 예비비의 집행실적을 보면, 2020년은 5조 6,100억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5조 4,467억원이 집행되어 97.1%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집행률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4년에는 4조 2,000억원의 예비비 중 1조 6,380억원의 집행에 그쳐 39.0%의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2023년의 경우 4조 6,000억원의 예비비 중 1조 3,091억원이 집행되고 3조 2,758억원이 불용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4조 2,000억원 중 1조 6,380억원이 집행되고 2조 5,595억원이 불용되어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이 저해된 측면이 있음.

[2020~2024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일반회계	편성액	56,100	97,000	55,000	46,000	42,000
	집행액	54,467	92,721	47,049	13,091	16,380
	집행률	97.1	95.6	85.5	28.5	39.0
특별회계	편성액	5	3	2	3	2
	집행액	-	-	-	-	-
	집행률	-	-	-	-	-
합계	편성액	56,105	97,003	55,002	46,003	42,002
	집행액	54,467	92,721	47,049	13,091	16,380
	집행률	97.1	95.6	85.5	28.5	39.0

자료: 「2024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6년 예산안의 행정안전부 등 개별 부처에 편성된 재해·재난대책비 편성 현황을 보면, 행정안전부의 재난대책비(보조) 사업 등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조 823억원(116.7%)이 증가한 2조 93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이 사업들의 가용재원 규모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행정안전부 등 재해·재난대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2026년도 예산안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보조)	360,020	1,010,000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재해대책비	232,000	400,000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해대책비	50,000	50,000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대책비	160,000	250,000
해양수산부	양식등 재해대책비	25,000	49,300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00,000	250,000
합계		927,020	2,009,300

자료: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는 연도별 재해 상황 등에 따라 집행률 변동이 크며, 예측하기 어려운 소요에 대한 예비적 재원인 예비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집행률을 고려한 예비비 규모의 조정은 부적절하며,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재해·재난대책비의 대부분은 2025년도에 발생한 재난의 복구 소요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202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2조 4,000억원(△50.0%) 감액하였고, 2022~2024년도 예산안의 경우 각각 1조 1,000억원, 6,000억원, 8,000억원 감액하였음.

[2022~2025년도 예비비 예산안 국회 심의결과]

(단위: 억원, %)

사업명	정부안(A)	국회 확정(B)	증감 (B-A)	(B-A)/A
2022년도 본예산 예비비	50,000	39,000	△11,000	△22.0
2023년도 본예산 예비비	52,000	46,000	△6,000	△11.5
2024년도 본예산 예비비	50,000	42,000	△8,000	△16.0
2025년도 본예산 예비비	48,000	24,000	△24,000	△50.0

자료: 연도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8.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신규): 국가재정 외의 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관리·운영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직·간접 투자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은에 특별투자재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9)]

[2026년도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	-	10,000	10,000	순증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2023.12.26. 제정, 2024.6.27. 시행)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지원하여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9월 수은에 설치한 기금임.

[공급망안정화기금 사업추진 현황]

- (지원현황) 출범(2024.9월) 이후 현재(2025.8월)까지 총 58건 사업에 대해 60,681억원 승인
- (지원대상) 경제안보품목 · 서비스의 ①확보 · 도입, ②국내외 시설투자, ③기술도입, ④피해기업 지원 등 공급망안정화 사업 지원
- (지원부문) 경제안보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4대 부문* 중점 지원
  * 4대부문 12대분야 : ①첨단전략산업(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②자원안보(핵심광물, 에너지), ③경제필수재(식량, 산업원료, 기계장비), ④물류·인프라(운송, 비축, 항만)
- (자금지원 방식) 대출, 보증 및 투자
- (기금 재원)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는 공급망기금채권 발행

자료: 기획재정부

39) 일반회계-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3236-303)(경제공급망기획관)

기금의 재원[40]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등이며,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하도록 하고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8조 및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41]

기획재정부는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충격에 취약한 상황으로 해운·물류 등 인프라, 핵심광물 등 전략적 분야 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 100억원의 출자금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향후 2029년까지 매년 100억원의 출자를 통해 총 4,000억원(연간 1,000억원)의 특별투자 한도를 조성하고 물류인프라, 핵심광물 등 전략적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공급망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특별투자 한도 신설(1,000억원) × 10%주) = 100억원

주) 수출입은행 목표 BIS 비율 13%, 금감원 권고 BIS비율 11.5% 등 고려
자료: 기획재정부

40)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1) 「대한민국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검토의견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9월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한 국가재정 외의 기금인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지원하는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 수단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하여 최근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투자 활성화 등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채권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손실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기업의 부도 등으로 발행 채권의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해당 채무가 곧바로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적극적 기금 운용이 곤란한 문제가 있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고 별도의 손실 감내 재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4년 최초 출범 시부터 국가재정 외로 운용하기로 결정되었고, 기금에서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증[42]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 외의 기금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손실 감내 재원을 국가재정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일반회계 재원에서 국가재정 외로 운용되고 있는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재정 내로 편입하여 예산 및 결산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다만 국가재정 내로 기금을 편입하여 공급망 관련 기업을 지원할 경우 향후 국제분쟁 리스크가 생길 우려가 있고, 최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일부 재정지원의 타당성도 있어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 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구체적 지원실적 및 수은의 출연금을 활용한 지원 내역 등 기금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43]

---

42) - 2024.2월 : 2024년 국가보증동의안(5조원) 국회 본회의 의결
- 2024.12월 : 2025년 국가보증동의안(10조원) 국회 본회의 의결

43)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참고로 수은의 자산 규모는 2021년 101조 4,517억원에서 2024년말 131조 3,39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2024년 1조 3,332억원으로, 2021년 대비 5,904억원(79.5%)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2024년 9,796억원을 기록하여 2021년 대비 4,321억원(78.9%) 증가하였음.

[한국수출입은행 재무건전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6월말(잠정)
자산	1,014,517	1,220,700	1,253,944	1,313,399	1,262,105
부채	860,987	1,066,344	1,074,436	1,100,151	1,023,906
자기자본	153,530	154,356	179,508	213,248	238,200
영업이익	7,428	5,695	10,611	13,332	9,050
당기순이익	5,475	3,869	7,228	9,796	6,711

자료: 기획재정부

수은의 BIS 비율은 2022년 13.38을 나타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16.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수은의 목표 BIS 비율인 13.0% 및 금감원 권고 BIS 비율인 11.5%를 각각 3.23%p, 4.73%p 초과할 전망임.

[한국수출입은행 BIS 비율 현황 및 전망]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
BIS자기자본	169,727	175,021	200,102	225,529	266,588
위험가중자산	1,144,007	1,308,231	1,382,604	1,533,565	1,642,399
BIS비율	14.84	13.38	14.47	14.71	16.23

자료: 기획재정부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됨(2025.9.30.)

9.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신규):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한미 간 관세협상(2025.7.31.)에 따라 대미 통상 관련 금융패키지 등에 대해 통상 대응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이를 통해 금융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4)]

[2026년도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	-	-	700,000	700,000	순증

2025년 7월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25%)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협상 결과, 미국이 당초 부과하기로 하였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미 조선협력 펀드(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 펀드) 1,500억 달러를 조성하고, 조선 분야 이외의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투자펀드를 2,000억 달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음.[45)]

2025년 10월 29일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는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한·미 조선협력펀드는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로 투자·대출·보증을

44) 일반회계-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3236-304)(대외경제국)

45)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건조 경쟁력을 보유한우리 조선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대미투자펀드도 2,000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대통령실, “관세 협상 타결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2025.7.31.)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설정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 등으로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을 발표함.[46]

[한·미 통상 협의 관련 진행경과]

ㅇ 미국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2025.4.2.) -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 및 철강·알루미늄, 자동차·부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 ㅇ 美 정부의 관세 발효 유예(2025.8.1.일까지, 90일간) 및 국가간 관세협상 진행(2025.4.~2025.7.) - 우리나라도 관세율 인하 및 최혜국 대우 보장을 위한 협상 지속 ㅇ 관세협상 타결(2025.7.31.) - 상호관세(25%→15%), 자동차 부품 품목관세 인하(25%→15%) 및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 여타 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합의 -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조선협력 펀드 $1,500억 조성 및 -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원자력 및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 투자·대출·보증 제공을 위한 대미투자펀드 $2,000억 조성 -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등 비관세장벽 완화 및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4년간 미국산 에너지 $1,000억 구매 약속 ㅇ 한·미 정상회담(2025.8.26.) - 전체적으로 투자 구매, 또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세부 내용에 대한 후속 협의 예정 -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려는 공감대 형성 ㅇ 통상교섭본부장 등 방미 지속(2025.9.~) - 관세 협상 세부협의,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내 한국인근로자 구금 문제 이후 비자 협의 등 ㅇ 기재부·산자부 장관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방미 지속(2025.10.) - 경주 APEC 정상회의(10.27.~11.1.) 내 협상 타결을 위한 실무협상 지속 ㅇ 한·미 정상회담(2025.10.29.) 및 관세협상의 세부내용 합의 - 대미투자펀드 $2,000억은 연간 납입한도 $200억으로 설정, 2029년 1월까지 투자약정 - 조선협력펀드 $1,500억은 한국 기업의 FDI로 추진 - 상호관세율은 15%로 설정, 자동차·부품 15%로 인하, 의약품 및 목재제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

자료: 금융위원회 설명자료 및 대통령실 브리핑자료 등을 재가공

46) 대미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소위 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상호관세는 7월 30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대통령실, “한미 오찬 정상회담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2025.10.29.)

참고로 이 사업은 수은이 대미 통상 관련 금융패키지 등에 대해 대출·투자·보증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통상 대응 프로그램의 조성 재원으로서 7,00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한·미 관세협상 세부내용을 반영한 통상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나. 검토의견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을 반영한 한·미 조선협력펀드 및 대미투자펀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자금조달 방식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한·미 관세협상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통상 관련 금융패키지가 운영될 것을 전제로, 2026년도 예산안을 7,000억원 편성하였으나, 금융패키지의 내용에 따른 통상대응 프로그램의 연차별 재정 투입 및 투자계획 등은 2025년 10월 현재 정해진 바가 없으며, 이에 따라 수은의 지원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미국 및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세부 투자계획 등이 확정될 예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투자처 및 투자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025년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대미투자펀드 및 조선협력펀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자금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인바, 특히 대미투자펀드의 연간 납입한도(200억 달러) 내 자금조달 방식, 한·미 조선협력펀드를 위한 대출·보증 등의 지원내용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방식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10.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가. 개 요

‘협동조합활성화’ 사업은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과 협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 5,000만원(98.1%) 증액된 3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47)]

[2026년도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협동조합활성화	1,580	1,580	3,130	1,550	98.1

이 사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출연,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기타사업비로 구성되며, 2026년 예산안의 증액분 15억 5,000만원은 모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이 증액된 것임.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25) 1,100 → (2026 예산안) 2,650
-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 및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지원사업 내실화
- ① 설립 및 운영지원 250 ② 판로지원 310, ③ 교육지원 200 ④ 감독 및 경영공시 지원 430 ⑤ 정책개발 지원 50 ⑥ 생애주기별 성장지원 1,320 ⑦ 협동조합 협업패키지 90

○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2025) 203 → (2026 예산안) 203
-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의 유지·운영 및 사용자 지원, 기능개선 등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운영 경비 203

○ 기타사업비 : (2025) 277 → (2026 예산안) 277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사회연대경제박람회 개최, 협동조합 정책연구 소요 등
- 일반용역비 200, 일반수용비·여비·업무추진비 등 27, 정책연구비 50 등

자료: 기획재정부

47) 일반회계 - 협동조합활성화(1331-302)(미래전략국)

나. 검토의견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2·2023년 74~75억원에서 2024·2025년 16억원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2026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31.3억원으로 증가하였는바, 협동조합의 판로지원·생애주기별 성장지원 등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 함께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주체로서 고용 창출 및 양극화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의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그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고,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2012.12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48]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설립 및 운영지원, 판로개척 및 교육지원 등 관련 인프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6년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예산안 증액·신규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설립 및 운영지원) 법률·회계 등 법인 운영의 일반분야 외 조직변경·합병·해산 및 자금조달 등 문의 영역 및 수요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현재 2개 분야(법률, 회계·세무)에 국한된 전문상시자문을 4개 분야(조직변경·합병, 자금조달 분야 추가)로 확대하여 협동조합 현장애로 해소 지원(+70)
- (판로지원) 협동조합의 판로 확보 및 매출 증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생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과 협력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농협 하나로마트, 4대 생협 매장, KTX역사 등) 및 소셜커머스(11번가 등)를 활용한 온라인 팝업스토어 등 개최 확대(5회→10회) 반영(+70)
- (생애주기별 성장지원) 기능별 지원을 벗어나 초기창업부터 사업 고도화 단계까지 협동조합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 컨설팅 지원에 대한 현장요구 등을 반영하여 생애주기별 특화 지원사업 신규 반영(1,320)
- (협동조합 협업패키지) 돌봄, 지역소멸, 주거 등 지역현안에 대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민간·정부 등이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공동과제 발굴 및 사업화 추진 지원(+90)

자료: 기획재정부

48) (2014) 4,904개 → (2017) 10,695개 → (2020) 17,595개 → (2023) 24,378개 → (2025.8월말) 27,390개

이 사업의 최근 5년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2022년 73억 6,400만원, 2023년 75억 800만원 수준에서 2024·2025년 15억 8,000만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2026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15억 5,000만원(98.1%) 증액된 3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2~2026년 협동조합활성화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예산	7,364	7,508	1,580	1,580	3,130

자료: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활성화는 새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규모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청년 등 창업지원 사업' 등 과거 추진 사업의 실적 저조 등의 지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장 수요에 기반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49)]

[2023~2025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추진 실적]

사 업	내 용	2023	2024	2025.6.
전문상시자문	자문건수	1,353건	1,703건	1,233건
설립인가 변경행정	설립지원	922건	992건	433건
	변경행정 지원 (개시, 2024.4.~)	-	343건	376건
판로지원	시장진입 지원	163개 조합	110개 조합	연말 집계 예정
	팝업스토어	130개 조합 (10회)	90개 조합 (7회)	28개 조합 (2회)
	판로지원 관련 매출	29억원	25억원	연말 집계 예정
교육	업종 특화교육	2,661명 (66개 과정)	568명 (30개 과정)	연말 집계 예정
	설립·운영 기초교육	2,102명 (38개 과정)	2,776명 (41개 과정)	785명 (41개 과정)
경영공시	공시조합 안내·검토	4,249개 조합	4,757개 조합	5,585개 조합

자료: 기획재정부

49)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자활기업 등 개별 조직간 협력·연대사업 지원 스케일업 컨설팅·교육 등 종합적 지원 추진
- 사회연대조직이 생산한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의무 신설,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 등 경영부담 경감

11.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사업: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가. 개 요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사업은 재정운용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3,800만원(90.9%) 증액된 1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50]

[2026년도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592	592	1,130	538	90.9

2026년도 예산안은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용역비 4억 9,000만원(전년 대비 1억 9,900만원 증액), 신규 반영된 홍보비 4,000만원, 홈페이지 운영 및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용역비 6억원(전년 대비 2억 9,900만원 증액)이 편성되었음.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490
-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용역비: 490 (전년 대비 +199)

○ 일반수용비(210-01): 40
- 국민참여예산제도 홍보비: 40 (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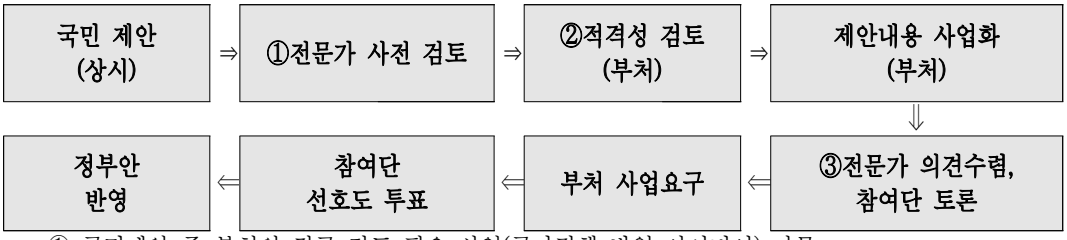
○ 관리용역비(210-15): 600 (전년 대비 +299)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비: 420 (전년 대비 +251)
- 클라우드 서비스 용역비: 180,000 (전년 대비 +48)

자료: 기획재정부

50) 일반회계 -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2712-304)(재정정책국)

국민참여 예산제도[51]는 예산 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연중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제안내용의 부처 적격성 검토, 전문가(지원협의회) 자문, 국민참여단 토론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됨.

[국민참여 예산제도 진행절차]



① 국민제안 중 부처의 적극 검토 필요 사업(국가정책 반영 아이디어) 자문
② 제안의 합법성, 타당성, 중앙정부 사무 여부 등 적격성 판단
③ 제안자, 국민참여단, 부처 담당자 등이 참석, 사업화 방향 등 논의

자료: 기획재정부

[2026년도 국민참여예산 운영 일정]

운영 준비	• 예산국민참여단 구성(2024.8월) • 국민참여예산 운영지침 부처 통보 (2024.11월)
국민제안 접수	• 국민제안 접수 (연중, 2024.5.1. ~ 2025.4.30.) * 마감일 이후 접수제안은 2027년도 참여예산 제안으로 검토
사업성 검토	• 제안사업 적격성 검토 및 사업숙성 (2025.2 ~ 5월) * 전문가 사전검토, 부처 적격성 검토 등 • 사업설명회 (부처↔국민참여단, 2025.5~6월) • 국민참여단 선호도 투표 (2025.6 ~ 7월) • 각 부처 예산안 요구 (2025.5.31.)
정부예산안 반영	• 기재부(예산실) 예산 심의 (2025.6~8월) •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확정 (~ 2025.8월)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	•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2025.9 ~ 12월)

자료: 기획재정부

51)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2026년 예산안은 신규로 반영된 홍보비 4,000만원을 제외하면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용역비 2억원,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비 및 클라우드 서비스 용역비 3억원 등 용역비만 5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국민의 의사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2017년 시범 도입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예산 규모는 18억 7,800만원이었으며, 이후 2020~2022년까지 20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24년 5억 1,600만원으로 급감한 후 2026년 예산안에서는 전년 대비 90.9% 증가한 1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17~2026년 국민참여 예산제도 예산편성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	-	1,878	1,697	2,135	2,435	2,276	1,762	516	592	1,130

주)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 규모의 급격한 감소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 주민 참여 활성화, 부처별 국민과의 소통 강화 등 최근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제도의 양적 확대보다 내실 있는 운영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6년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소요가 복잡·세분화되는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산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재정의 수혜자이자 주권자인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코자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다고 설명함.[52)]

그러나 2026년 예산안의 세부 증가내역을 보면, 신규로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제도 홍보비 4,000만원을 제외하면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용역비 2억원,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비 및 클라우스 서비스 용역비 3억원이 증액되어 용역비가 5억원 증가하였음.

52) 국민 참여 범위 확대를 위한 참여예산플랫폼 개편 및 국민참여단 확대·구성 다양화

이는 국민의 제안 범위를 신규사업 발굴 이외에도 재정제도 개선, 기타 재정관련 자유 제안을 확대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과, 국민참여단 운영 규모 및 업무 확대를 위한 것으로 판된되는바, 국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실질적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국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례]

회계연도	사업명 (소관부처, 예산액(억원))
2021년	▸ 디지털 병리기반의 암 전문 AI분석 솔루션 개발(복지부 72) ▸ 새일여성인턴(여가부 88)
2022년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국토부 402) ▸ 특수목적(음압) 구급차 보강(소방청 63)
2023년	▸ 정보소외지역 SW교육지원 강화(과기부 80) ▸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정비(환경부 38)
2024년	▸ AI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지원(과기부 60) ▸ 에듀테크 소프트랩 구축 및 운영(교육부 16)
2025년	▸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정책 기획·홍보(행안부 8) ▸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수당(여가부 6)

자료: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지 출>

12.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 국가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여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1,842억 6,200만원(111.2%)이 증액된 3,500억원이 편성되었음.[53]

[2026년도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165,738	165,738	350,000	184,262	111.2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기존 정부 출연금(복권기금, 일반회계) 및 민간 출연금으로 지원하던 6개 서민금융진흥원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햇살론 일반, 햇살론 특례, 햇살론 유스 등 4개 상품으로 통합 추진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개편을 지원하려는 것으로,[54] 서민금융진흥원은 정부 재정 총 4,500억원(일반회계 1,000억원 + 복권기금 3,500억원)을 출연받아 햇살론 특례보증에 4,039억원(일반회계 1,000억원 + 복권기금 3,039억원), 햇살론 유스에 461억원(복권기금)을 투입할 계획임.

---

53) 복권기금 -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6346-328)(복권위원회사무처)

54) (민간+정부) 근로자햇살론 + (민간) 햇살론뱅크 → (민간) 햇살론 일반보증
(민간+정부) 햇살론15 + (정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정부) 햇살론 특례보증
(정부) 햇살론유스 → (정부) 햇살론유스(현행 유지)
(민간) 햇살론카드 → (민간) 햇살론카드(현행 유지)

즉 복권기금 재원 3,5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어 햇살론 특례보증에 3,039억원, 햇살론유스에 461억원이 집행될 예정임.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햇살론 특례보증 303,900	(1) 햇살론 특례보증 보증재원 403,900 = 2.33조원(대출공급액) × 17.3%(사업손실률) × 100%(보증비율) * 사업손실률 = 순대위변제율(28.3%) - 보증료수입률(13.6%) + 운영비용(2.5%) (2) 일반회계로 조달하는 보증재원 100,000 ⇨ (1) - (2) = 303,900
햇살론유스 46,100	(1) 보증재원 44,100 = 300,000백만원(대출공급액) × 14.7%(사업손실률*) × 100%(보증비율) * 사업손실률 = 순대위변제율(15%) - 보증료수입률(2.8%) + 운영비용(2.5%) (2) 이차보전 재원 2000 = 600,000('25・'26년 대출공급액) × 20%(사회적배려자 비중) × 1.6%p(이차보전율) ⇨ (1) + (2) = 46,100

자료: 기획재정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체계 개편방향]

현행	**햇살론뱅크**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햇살론 카드**
소득・신용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10% 이하	19~34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청년사업자	연소득 600만원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재원	민간	민간 + 정부	민간 + 정부	정부	정부	민간
취급처 (업권)	은행	저축・상호・보험	은행	은행・저축	은행	여신전문금융 (카드)

⇩ ⇩ ⇩

개편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유스**	**햇살론카드**
소득・신용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	(현행 유지)	
재원	민간	정부		
취급처 (업권)	全 업권			

자료: 금융위원회

구체적으로는 민간과 정부재원을 모두 투입하던 ‘근로자햇살론’과 민간재원을 투입하던 ‘햇살론뱅크’를 합쳐 민간재원을 투입하는 ‘햇살론 일반보증’ 상품으로 통합하고, 민간과 정부재원을 모두 투입하던 ‘햇살론15’와 정부재원을 투입하던 ‘최저신용자특례보증’를 합쳐 정부재원을 투입하는 ‘햇살론특례보증’ 상품으로 통합하며, 정부재원을 투입하던 ‘햇살론 유스’와 민간재원을 투입하던 ‘햇살론 카드’는 현행 구조를 유지할 계획임.

나. 검토의견

정책서민금융상품 체계 개편은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고, 2026년 복권기금 출연금이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정부재정의 추가 부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햇살론의 정책목적이 사회적 약자가 불법 사금융을 활용하지 않고 제도적 금융에 지속적으로 편입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통폐합 및 전 업권에서의 금융상품 취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보다 용이하게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을 위한 2025년 예산은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925억원, 햇살론15 900억원이 편성되었고,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 사업으로 근로자 햇살론 1,750억원과 햇살론 유스 456억원이 편성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되었음.

이와 달리 2026년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햇살론 특례보증 1,000억원이 편성되고,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 사업으로 햇살론 특례보증 3,039억원 및 햇살론 유스 461억원이 편성됨.

즉 정부재정 투입규모가 4,031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였고,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사업은 1,825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복권기금 사업은 2,206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정부재정 및 공급규모 변화]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2026년(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유스	소계	햇살론 특례보증	햇살론 유스	소계
일반 회계	925	900	-	-	1,825	1,000	-	1,000
복권 기금	-	-	1,750	456	2,206	3,039	461	3,500
정부재정	925	900	1,750	456	4,031	4,039	461	4,500
공급규모	2,800	6,500 (10,500)[1)]	11,000 (33,300)[2)]	3,000	23,300	23,300	3,000	26,300

주 1)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한 공급규모(4,000억원) 합산 시 햇살론15의 총 공급규모는 10,500억원임
2) 금융회사 출연금을 통한 공급규모(2조 2,300억원) 합산 시 근로자 햇살론의 총 공급규모는 3조 3,300억원임
3) 2025년 예산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최저신용자특례보증(560억원→925억원), 햇살론유스(306억원→456억원) 증액을 반영한 것임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55] 정부재정 투입의 확대로 인해 금융권의 사회적 공헌 기여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56]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4. 상반기 (A)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2025. 상반기 잠정 (B)	1/4 분기	2/4 분기 잠정	증 감 (B-A)	증감률
국내은행	18.5	21.2	22.2	12.6	5.3	7.2	6.2	3.4	14.9	6.9	8.0	2.3	18.4
일반은행	13.2	13.6	14.8	7.8	3.4	4.3	4.9	2.2	9.4	4.2	5.3	1.6	21.9
시중은행[주)]	12.0	12.2	13.0	6.7	2.9	3.8	4.4	2.0	8.4	3.8	4.7	1.7	26.0
지방은행	1.2	1.1	1.2	0.7	0.4	0.4	0.4	0.1	0.6	0.3	0.4	△0.1	△11.8
인터넷은행	0.08	0.4	0.6	0.3	0.2	0.2	0.2	0.1	0.4	0.2	0.2	0.1	13.7
특수은행	5.3	7.7	7.4	4.8	1.9	2.9	1.3	1.2	5.4	2.7	2.7	0.6	12.7

주) 아이엠뱅크는 시중은행에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2025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2025.8.22.

55) 뉴시스, “4대 금융”, ‘역대 최대’ 실적 행진... 상반기 10조 순익, 2025.7.26.
아시아경제, “구조조정 통했다... 저축은행 상반기 순익 2,570억 흑자전환”, 2025.8.29.

56) 햇살론 상품의 당초 취지는 제도권 금융사의 여신 행위로부터 창출된 수익 중 일부를 출연하여 사회적 약자가 불법 사금융을 활용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권 역시 예대마진차 등을 통한 이익 확대에 부합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이 필요함.

한편 상대적으로 우량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햇살론은 기존에는 민간 및 정부 재원을 함께 활용하였으나, 2026년도부터 민간재원만을 활용하도록 하고, 복권기금은 서민금융상품 중에서도 가장 신용·소득이 낮은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신규상품햇살론 특례보증(舊 햇살론15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통합)을 집중 지원하게 됨.

기존의 햇살론15는 국민행복기금(민간 재원) 및 한시적(2024·2025년) 정부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에게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하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은 전액 정부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로 최근 3개월 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하고 있음.

이와 달리 통합된 햇살론 특례보증의 경우 전액 정부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자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려는 것임.

즉 현행 2단계 구조 하에서 정부재정은 햇살론15 일부와 햇살론15로도 구제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한정하여 소액의 자금을 대출하는 내용으로 불법 사금융을 막기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투입되었던 것과 달리, 햇살론 특례보증에서는 정부재정만으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대출지원이 수행되어 정부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햇살론 특례보증은 대출액에 대해 1년 거치(선택) 후 3년 또는 5년 이내 분할상환한다는 점에서 거치기간 동안은 부실 및 대위변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거치기간이 종료된 2027년부터 대위변제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임.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 보증 및 햇살론 특례보증 비교]

구분	현 행		변 경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사업 목적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저신용·저소득자를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	연체경험 등으로 기존 정책서민금융마저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완화 및 자금이용 기회 제공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여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부담을 완화
지원 대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로 최근 3개월 내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자
대출 한도	최대 2,000만원 (당초 1,400만원이나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으로 상향)	최대 1,000만원* * 최초 5백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시 추가대출 가능	최대 1,000만원
상환 방식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1년)	1년 거치(선택) 후 3년 또는 5년 이내 분할상환
보증 비율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
대출 금리	15.9%*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3년 약정 시 매년 3.0%p,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15.9%*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3년 약정 시 매년 3.0%p,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15.9% 이내* *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3년 약정 시 매년 3.0%p, 5년 약정 시 매년 1.5%p 인하)
보증 재원	(2025년 기준) 대출공급액(10,500억원) × 사업손실률(13.7%) × 보증비율(100%) = 1,448억원	(2025년 기준) 대출공급액(2,800억원) × 사업손실률(33%) × 보증비율(100%) = 925억원	(2026년 기준) 대출공급액(23,300억원) × 사업손실률(17.3%) × 보증비율(100%) = 4,039억원
예산	(2025년 기준) 1,448억원 (일반회계 900억원 + 금융회사 출연금 548억원)	(2025년 기준) 925억원 일반회계 925억원	(2026년 기준) 4,039억원 (일반회계 3,039억원 + 복권기금 1,000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13.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사업: 법정 전출금의 여유자금운용 편성 개선 필요

가. 개 요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사업은「복권 및 복권기금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복권기금에서 복권수익금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224억 7,300만원(△16.4%) 감액된 1,149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57]

[2026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137,447	137,447	114,974	△22,473	△16.4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5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1호[59]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은 복권수익금의 35% 중 12.583%를 기본 배분액으로 하고,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가감 조정액과 지난 연도 법정배분사업 정산금을 고려하여 편성되고 있음.

2026년도 계획안 1,149억 7,400만원은 기본배분액 1,443억 5,900만원에서 가감조정액 288억 7,200만원과 20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5억 1,300만원을 차감하여 산출되었음.

57) 복권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8910-890)(복권위원회 사무처)

58)「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과학기술기본법」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59)「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과학기술기본법」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2024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자금소요 평가 결과 등에 따른 가감조정, 2024년도 법정배분 정산 등으로 복권수익금 114,974(① + ② + ③) 배분 ① 기본배분액: 2026년 복권수익금(3,277,874)의 35% 중 12.583%인 144,359 ② 가감조정 : △28,872 ③ 2024년 법정배분액 정산금 : △513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첫째, ‘여유자금운용’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부합하는 복권수익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획재정부는 복권수익금이 여유자금 용도로 편성·운용되지 않도록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관련 규정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6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2항은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으로 하여금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복권수익금을 사용하여야 함.[61]

[[별표] 기금 등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용도(제23조제2항 관련)]

기금 등	용도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 다만, 같은 항 제4호의 사업 중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6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①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6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② 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은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사용 용도로 ①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②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열거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9.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그런데 2026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 계획안 세부내역을 보면,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않은 ‘여유자금운용’ 용도에 266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의 일부를 여유자금운용 명목으로 편성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여유자금운용’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부합하는 복권수익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2026년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 계획안에 편성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배분비율대로 복권수익금의 35% 중 12.583%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맞게 배분하되, 2021년 이후 복권수익금으로 조성된 ‘여유자금운용’ 자금은 복권기금에 반납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법정배분금으로 여유자금을 편성하는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에 따른 반납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복권위원회의 법률자문 결과(2021.8월), 여유자금은 이 조항에 따른 불용액 반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①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不用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

그러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을 반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운용의 특성상 사업의 취소·축소·중단이 발생하지 않는 것일 뿐 검토한 바와 같이 여유자금운용은 복권기금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획재정부는 복권수익금이 여유자금 용도로 편성·운용되지 않도록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관련규정의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출소요가 적은 상황에서 여유자금 적립분까지 복권수익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복권수익금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일반회계 사업 중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이관하거나 새로운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026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 계획안 세부내역을 보면, 1,149억 7,400만원의 전출금 중 '여유자금운용'에 266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의 일부를 여유자금운용 명목으로 편성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 여유자금 최소화를 위해 주요사업 예산을 적극 발굴·요구해 왔으나 기획재정부의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주요사업비 규모가 복권기금 법정배분액 대비 낮게 반영됨에 따라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62]

62) [과학기술진흥기금 예산 계획 및 반영 현황]

[2026년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B)		증감 (B-A)	
	당초	수정	과기부 요구안(A)	정부안 (B)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137,447**	**137,447**	**114,974**	**114,974**	-	-
① 아태이론물리센터지원	4,202	4,202	4,202	4,202	-	-
② 과학영재양성	14,425	14,425	17,025	17,025	-	-
③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지원(R&D)	12,045	12,045	11,004	11,004	-	-
④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원	3,138	3,138	3,624	3,624	-	-
⑤ 연구성과스케일업펀드	12,000	12,000	10,495	-	△10,495	순감
⑥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등지원	360	360	460	460	-	-
⑦ 연구산업기반조성	1,630	1,630	3,135	1,650	△1,485	△47.4
⑧ 과학문화확산사업	14,540	14,540	16,695	16,695	-	-
⑨ 여성과학기술인육성지원	19,684	19,684	20,737	20,737	-	-
⑩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지원	4,740	4,740	3,623	3,623	-	-
⑪ 우수과학자포상	1,622	1,622	1,622	1,622	-	-
⑫ 포용성장 전문연구인력 양성	1,450	1,450	1,800	1,500	△300	△16.7
⑬ 뉴스페이스투자지원사업	3,500	3,500	3,500	-	△3,500	순감
⑭ 뉴미디어활용과학문화 디지털콘텐츠제작확산	6,230	6,230	6,230	6,230	-	-
⑮ 여유자금운용	37,881	37,881	10,822	26,602	15,780	145.8

주) 2026년 과기부 요구안(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dBrain 요구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그러나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금 요구안을 보면, 최종 정부안과 총액은 1,149억 7,400만원으로 동일하나, 여유자금운용 항목은 최종 정부안보다 157억 8,000만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초 요구안에도 108억 2,200만원의 여유자금운용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단위: 백만원)

연도	(수입)복권기금 법정배분액	(지출) 주요사업비		
		최초 요구(a)	최종 정부안(b)	차이(b-a)
2023	109,957	131,623	87,047	△44,576
2024	125,055	154,535	90,085	△64,45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후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연구성과스케일업펀드 사업(104억 9,500만원)과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35억원)이 순감되는 등 조정을 거쳐 여유자금운용 항목이 266억 2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었음.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출소요가 많지 않고 재정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여유자금 운용 명목으로 전출금이 일부 편성되었으나, 향후 기금목적에 맞는 지출소요가 증가하는 경우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현재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지출소요가 적은 상황에서 미래 지출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적립분까지 복권수익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복권수익금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과학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회계 사업 중 일부를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이관하거나, 새로운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참고로「복권 및 복권기금법」제정 이후 20년 넘게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비율이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나,[63] 그동안 각 기금 및 기관별 재정여건과 지출소요 등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현행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63) 2004년 법 시행이후 2010년에 문화재보호기금 추가에 따른 변경 외에 동일한 상황임.

【공공자금관리기금】

<지 출>

14. 국고채 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 포함) 사업: 국고채 조달금리 및 시장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국고채이자상환’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4조 4,121억 100만원(14.7%) 증액된 34조 3,899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음.[64)]

[2026년도 국고채 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 포함)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국고채 이자상환 (개인투자용국채 포함)	29,977,898	30,409,038	34,389,999	4,412,101	14.7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6년 계획안은 2025년 7월까지 국고채 발행분에 대한 확정이자 28조 1,454억원과 2025년 7월말 이후 신규 국고채 발행분에 대한 이자 2조 2,137억원 및 2026년 국고채 발행 한도 232조원에 대한 이자 4조 310억원을 합하여 산출되었음.

[국고채이자상환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국고채이자상환 : 34조 3,900억원 (① + ② + ③)

① 2025년 7월까지 국고채 발행분에 대한 확정이자(28조 1,454억원): 1,071조원 × 과거 확정금리

② 2025년 7월 말 이후 신규 발행분에 대한 이자(2조 2,137억원): 73.8조원 × 3.0% × 12개월

③ 2026년 신규 발행분 이자(4조 310억원): 2026년 발행 한도 232.0조원 × 3.0% × 약 7개월

자료: 기획재정부

64) 공공자금관리기금-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 포함)(1071-780)(국고국)

나. 검토의견

3.0%의 금리를 기준으로 편성된 이번 2026년도 계획안은 국고채 조달금리와 시장금리 수준 및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과다 편성의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적정 이자상환 규모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3~2025.9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를 보면, 2023년 평균 조달금리는 3.57%였으나, 2024년은 3.22%로 하락하였고, 이후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2025년 9월 기준 2.61%의 평균 조달금리를 보이고 있음.

[2023~2025.9월 국고채 발행액 및 평균 조달금리]

(단위: 조원, %)

	'23	'24		'25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발행잔액	998.0	1,047.1	1,047.1	1,154.3	1,064.9	1,085.7	1,079.7	1,100.1	1,118.6	1,117.7	1,136.5	1,154.3	1,152.6
□ 발행액	165.7	157.7	1.4	166.0	18.3	21.3	20.7	20.9	19.0	23.6	21.2	21.0	21.5
□ 평균 조달금리	**3.57**	**3.22**	**2.59**	**2.61**	**2.71**	**2.69**	**2.65**	**2.56**	**2.47**	**2.64**	**2.60**	**2.55**	**2.61**
□ 평균 응찰률	271	321	288	266	286	305	252	274	257	251	251	259	264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2025.10.

그리고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 각 연물별 시장금리는 2024년 10월 2.844%~3.07% 수준에서 2025년 9월 2.28%~2.849%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고채 3년물의 경우 2024년 10월 2.911%에서 2025년 9월 2.464%까지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10년물의 경우 3.07%에서 2.849%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1년간 월평균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

(단위: %)

	2024/10	2024/11	2024/12	2025/01	2025/02	2025/03	2025/04	2025/05	2025/06	2025/07	2025/08	2025/09
국고채(1년)	2.857	2.861	2.709	2.637	2.654	2.612	2.482	2.306	2.29	2.308	2.263	2.28
국고채(2년)	2.93	2.901	2.694	2.669	2.683	2.67	2.45	2.343	2.435	2.426	2.365	2.42
국고채(3년)	2.911	2.858	2.59	2.571	2.611	2.59	2.395	2.331	2.441	2.465	2.427	2.464
국고채(5년)	2.974	2.909	2.683	2.694	2.71	2.665	2.492	2.469	2.601	2.622	2.584	2.615
국고채(10년)	3.07	3.006	2.771	2.821	2.83	2.795	2.658	2.71	2.842	2.84	2.815	2.849
국고채(20년)	2.962	2.939	2.708	2.745	2.746	2.688	2.6	2.678	2.826	2.835	2.838	2.844
국고채(30년)	2.921	2.865	2.635	2.696	2.669	2.581	2.507	2.584	2.737	2.738	2.74	2.754
국고채(50년)	2.844	2.785	2.537	2.587	2.56	2.451	2.363	2.447	2.637	2.634	2.623	2.635

주) 월평균(영업일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과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네 차례[65] 인하하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5년 10월 연 4.00%~4.25%였던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p 인하하였음.

또한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아 보임.[6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3.0%의 금리를 기준으로 편성된 2026년도 계획안은 국고채 조달금리 및 시장금리의 수준을 고려할 때 다소 과다 편성의 소지가 있어 보이며, 한국은행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이자상환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고금 출납 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경우 그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의 경우 2.45%의 이자율로 편성되어 있음.

[일시차입금이자상환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2026년도 일시차입 이자상환 예산 소요 : 1,100억원 (이자소요 - 국고금 운용수익)

- (산출) 2026년도 순이자비용(이자 - 운용수익) 소요 예상액 : 1,100억원
  · '26년 총 예상 이자비용(A) : 2,499억원
    (2022 ~ 2024년 일시차입 연평균 잔액 10.2조원 × **예상 이자율 2.45%**)
  · '25년말 운용수익금의 차년도 예상이월액(B) : 488억원
  · '26년 상/하반기 운용수익금 등(C) : 911억원
  · 이자비용(A) - 운용수익(B+C) = 1,100억원

※ 일시차입 물량은 '22~24년 평균잔액, 이자율은 '25.7월 91일물 한은 통안증권 평균 금리 + 10bp 가정

자료: 기획재정부

65) 2024년 10월 11일: 3.50% → 3.25% (0.25%p 인하)
2024년 11월 28일: 3.25% → 3.00% (0.25%p 인하)
2025년 2월 25일: 3.00% → 2.75% (0.25%p 인하)
2025년 5월 29일: 2.75% → 2.50% (0.25%p 인하)

66)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 2025.10.23.

【대외경제협력기금】

<총 괄>

15. 대개도국차관 및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 수원국 미정 사업의 예산 최소화 검토 필요

가. 개 요

‘대개도국차관’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위해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신시장 진출 및 사업 수주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2,527억 9,900만원(18.4%)이 증액된 1조 6,275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67]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은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 또는 현지 기업이 추진하는 개발목적의 사업 지원을 통한 개도국 민간부문의 육성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5,021억 4,900만원(△64.8%) 감액된 2,730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68]

[2026년도 대개도국차관 및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증감	
	당초 (A)	수정	계획안 (B)	(B-A)	(B-A)/A
대개도국차관	1,374,735	1,593,449	1,627,534	252,799	18.4%
아시아차관(융자)(ODA)	870,189	870,189	823,517	△46,672	△5.4%
아프리카차관(융자)(ODA)	380,458	607,172	622,965	242,507	63.7%
중동-CIS차관(융자)(ODA)	85,999	85,999	163,411	77,412	90.0%
중남미차관(융자)(ODA)	38,089	30,089	17,641	△20,448	△53.7%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775,215	476,501	273,066	△502,149	△64.8%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융자)(ODA)	775,215	476,501	273,066	△502,149	△64.8%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67) 대외경제협력기금-대개도국차관(3331)(개발금융국)

68) 대외경제협력기금-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3332)(개발금융국)

나. 검토의견

첫째, 2026년 대개도국차관 사업 및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의 계획안에는 총 75억원 규모의 사업이 수원국 등 구체적 사업내역이 정해지지 않은 채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한 계획안 편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세부사업별 수원국 미정 사업 내역을 보면, 아시아 차관 사업에서 15억원, 아프리카 차관 사업에서 15억원 등 총 75억원의 계획액이 구체적 사업내역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편성되었음.

[2026년 세부사업별 수원국 미정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국가	사업명	2026 계획액	예산편성 사유
아시아 차관	미정	아시아지역 개발사업차관	500	'26년 예산안 편성 시 미승인사업 제외에 따라, 수원국 사정 등으로 신속히 집행해야 할 예비소요 반영
	미정	아시아지역 기자재차관	500	
	미정	아시아지역 프로그램 차관	500	'26년 예산안 편성 시 미승인사업 제외에 따라, 수원국 사정 등으로 긴급히 편성해야 할 프로그램차관 예비소요 반영
	소계		1,500	-
아프리카 차관	미정	아프리카지역 개발사업차관	500	'26년 예산안 편성 시 미승인사업 제외에 따라, 수원국 사정 등으로 신속히 집행해야 할 예비소요 반영
	미정	아프리카지역 기자재차관	500	
	미정	아프리카지역 프로그램 차관	500	'26년 예산안 편성 시 미승인사업 제외에 따라, 수원국 사정 등으로 신속히 집행해야 할 프로그램차관 예비소요 반영
	소계		1,500	-
중동-CIS 차관	미정	중동-CIS지역 개발사업차관	500	'26년 예산안 편성 시 미승인사업 제외에 따라, 수원국 사정 등으로 신속히 집행해야 할 예비소요 반영
	미정	중동-CIS지역 기자재차관	500	
	미정	중동-CIS지역 프로그램 차관	500	'26년 예산안 편성 시 미승인사업 제외에 따라, 수원국 사정 등으로 신속히 집행해야 할 프로그램차관 예비소요 반영
	소계		1,500	-

(단위: 백만원)

세부 사업	국가	사업명	2026 계획액	예산편성 사유
중남미 차관	미정	중남미지역 개발사업차관	500	'26년 예산안 편성 시 미승인사업 제외에 따라, 수원국 사정 등으로 신속히 집행해야 할 예비소요 반영
	미정	중남미지역 기자재차관	500	
	미정	중남미지역 프로그램 차관	500	'26년 예산안 편성 시 미승인사업 제외에 따라, 수원국 사정 등으로 신속히 집행해야 할 프로그램차관 예비소요 반영
	소계		1,500	-
민간 국제 기구 협력 차관	미정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개발사업 차관	500	'26년 예산안 편성 시 미승인사업 제외에 따라, 수원국 사정 등으로 신속히 집행해야 할 예비소요 반영
	미정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기자재 차관	500	
	미정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프로그램 차관	500	'26년 예산안 편성 시 미승인사업 제외에 따라, 수원국 사정 등으로 신속히 집행해야 할 프로그램차관 예비소요 반영
	소계		1,500	-
합계			7,500	-

자료: 기획재정부

계획안 편성 시 사업의 목적, 집행 대상 및 집행 방법 등 구체적 내역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계획안에 편성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등에는 「국가재정법」[69]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가능함.

특히 ODA 사업의 특성상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보이므로, 구체적 사업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편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69)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참고로 수원국이 정해지지 않은 사업은 최근 10년 동안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아시아 차관, 아프리카차관, 중동-CIS차관, 중남미차관에서는 2017~2021년까지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한 후 감소하는 추세임.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 사업의 경우 2017년 30억원이 편성되었고, 2020년 1,000억원, 2023년 1,029억원 등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6년 15억원이 편성되었음.

[2017~2026년 세부사업별 수원국 미정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수원국 미정	아시아 차관	-	-	-	-	-	2,000	4,000	5,000	5,000	1,500
	아프리카 차관	-	-	-	-	-	1,000	2,000	5,000	5,000	1,500
	중동-CIS 차관	-	-	-	-	-	1,000	2,000	5,000	5,000	1,500
	중남미 차관	-	-	-	-	-	1,000	2,000	5,000	5,000	1,500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	3,000	-	-	100,000	40,000	60,000	102,900	9,000	4,000	1,500
	소계(A)	3,000	-	-	100,000	40,000	65,000	112,900	29,000	24,000	7,500
대개도국차관 계획액(B)		954,468	1,058,101	1,141,231	1,184,879	1,258,196	1,333,423	1,502,976	2,031,979	2,149,950	1,900,600
비중(A/B)		0.3%	0.0%	0.0%	8.4%	3.2%	4.9%	7.5%	1.4%	1.1%	0.4%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대외경제협력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대규모 프로그램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연간 누적 변경금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2025년 8월말 기준 기금운용계획변경 현황을 보면, 아프리카차관은 2,267억원(59.6%),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은 2,987억원[70](△38.5%)을 변경하고 있는데, 하나의 세부사업에서 2,267억원 규모의 변경을 기획재정부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당초 계획안 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70) 2,987억원은 2025년도 제2회 추경 감액분을 포함한 금액이며, 자체변경 규모는 2,267억원임.

[2025.8월말 기준 대외경제협력 지원 프로그램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5.8.			
			당초(A)	수정(B)[3]	C=B-A	C/A
[3300] 대외경제협력 지원			2,209,755	2,129,755	△80,000	△3.6
	[3331] 대개도국차관		1,374,735	1,593,449	218,714	15.9
		[301] 아시아차관	870,189	870,189	-	-
		[303] 아프리카차관	380,458	607,172	226,714	59.6
		[305] 중동-CIS차관	85,999	85,999	-	-
		[306] 중남미차관	38,089	30,089	△8,000	△21.0
	[3332-309] 민간·국제기구협력차관[1]		775,215	476,501	△298,714	△38.5
	[3337] 경협증진자금지원		3,853	3,853	-	-
		[301] 경협증진자금 이차보전	2,308	2,308	-	-
		[641] 경협증진자금 사업진행컨설팅	1,545	1,545	-	-
	[3376] 대개도국차관지원		55,952	55,952	-	-
		[302] 사업진행컨설팅	45,746	45,746	-	-
		[632] 사업심사평가연구	2,251	2,251	-	-
		[633] 개발협력증진	4,928	4,928	-	-
		[634] 협조융자사업관리[2]	3,027	3,027	-	-

주 1) 2026년부터 신규 단위사업으로 분리
2) 2026년부터 사업심사평가연구 항목에서 분리
3) 추경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 지원 프로그램은 2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국가재정법」[71]에서 규정하는 사업성 기금의 자체변경 규모 한도인 20%가 4,000억원을 초과함.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그램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연간 누적 변경금액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국회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71)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국유재산관리기금】

<총 괄>

16. 신규 사업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개 요

202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신규 사업 수는 전년 대비 60개가 감소한 22개 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전년 당초 계획액 145억 5,200만원 대비 24억 2,000만원(16.6%) 증액된 169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신규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계획안
1	관세청 관사시설 리모델링	1,303
2	대법원 청주지법 제천지원 신축	370
3	문체부 베트남 코리아센터 건립	9,009
4	법무부 대전소년원 리모델링	432
5	법무부 무주 외국인출국지원센터 신축	598
6	법무부 서울구치소 수용동 증축	340
7	국립대전현충원 청사	156
8	국립산림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신축	933
9	산림청 관사시설 취득	125
10	주뉴욕(총) 통합청사 매입	330
11	주멕시코(대) 통합청사 신축	1,100
12	부천통합청사 신축	100
13	영월 청년직원 통합관사 리모델링	660
14	경찰청 경기남부 부천원미경찰서 신축	11
15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동 신축	268
16	경찰청 서울청 제1기동단 신축	94
17	경찰청 경북청 기동대·수사부서 통합청사 신축	293
18	경찰청 울산청 경찰특공대 신축	47
19	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신축	446
20	경찰청 강원 화천경찰서 신축	165
21	경찰청 전남 고흥경찰서 신축	82
22	대법원전주지법남원지원신축	110
총지출		16,972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신규 사업은 대부분 정부 기관의 청사 신축·리모델링 등 건축 사업으로, 사전타당성 조사·환경영향평가·부지매입·설계 등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 전 거쳐야 할 사전절차가 많아 사업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함께 철저한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관리기금의 2024년 신규 사업은 총 106개 사업이었는데, 이 중 2024년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61개 사업으로, 전체 신규 사업의 57.5%가 당해연도 집행률 50%를 넘지 못하였고, 2025년의 경우 전체 82개의 신규 사업 중 8월말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54개로, 전체 신규 사업 중 65.9%를 차지하고 있음.

[2025년 신규 사업의 8월말 기준 집행 현황(당해연도 집행률 50% 미만)]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당초 계획	집행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부산청 사건기록관 리모델링	127	-	-	'25. 6월 공공건축 심의 완료, '25. 10월 설계 계약 및 착수 예정
인천 연수경찰서 연수지구대 리모델링	30	-	-	설계 용역 진행 중('25. 2월~)
강원 양구경찰서 국토정중앙파출소 리모델링	22	4	19.6	설계 용역 진행 중('25. 2월~)
강원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리모델링	25	6	23.1	설계 용역 진행 중('25. 2월~)
충북 보은경찰서 마로파출소 리모델링	34	1	2.4	설계 용역 진행 중('25. 4월~)
충남 공주경찰서 유구파출소 리모델링	33	2	5.4	설계 용역 진행 중('25. 4월~)
충남 서천경찰서 서림지구대 리모델링	44	1	1.8	설계 용역 진행 중('25. 4월~)
전남 장흥경찰서 읍내지구대 리모델링	21	9	44.8	설계 용역 진행 중('25. 2월~)
경남 고성경찰서 영오파출소 리모델링	30	-	1.0	설계 용역 진행 중('25. 4월~)
경남 의령경찰서 칠곡파출소 리모델링	25	-	1.7	설계 관련 실사용자 협의 기간 소요, 설계 용역 진행 중('25. 7월~)
경남 합천경찰서 가야파출소 리모델링	25	9	36.6	설계 관련 실사용자 협의 기간 소요,설계 용역 진행 중('25. 7월~)
서울 남대문경찰서 태평로파출소 이전 신축	1,100	-	-	부지 확보 관련 협의(지자체, 한전) 진행 중
서울 중부경찰서 충무파출소 이전 신축	94	-	-	사업 부지(사유지) 명도 해소 기간 소요
인천 강화경찰서 송해파출소 재건축	10	4	39.2	설계 용역 진행 중('25. 2월~)
강원 춘천경찰서 사북파출소 재건축	46	-	-	설계 용역 진행 중('25. 3월~)
전남 해남경찰서 화산파출소 이전 신축	53	-	-	부지 확보(교환) 관련 지자체 1협의 결렬, 대체부지 물색 중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생림파출소 재건축	45	1	2.0	설계 용역 진행 중('25. 5월~)
경남 마산중부경찰서 구산파출소 재건축	10	1	8.9	설계 용역 진행 중('25. 4월~)
경남 산청경찰서 단성파출소 재건축	45	-	0.7	설계 용역 진행 중('25. 5월~)
충북 괴산경찰서 칠성파출소 재건축	28	1	4.0	설계 용역 진행 중('25. 4월~)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상안지구대 이전 신축	255	-	-	설계 용역 진행 중('25. 4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통합청사 신축	87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24. 11월~)

(단위: 백만원, %)

사업명	당초 계획	집행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부산 연제경찰서 재건축	350	-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24. 9월~)
강원 인제경찰서 이전 신축	158	-	-	부지 조성(지자체 주도) 기간 소요
강원청 경찰특공대 신설 신축	260	-	-	부지 조성(지자체 주도) 기간 소요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축	243	-	-	부지 확보(교환) 관련 협의 기간 소요
인천 중부경찰서 덕적도 직원관사 재건축	17	-	-	설계 용역 진행 중('25. 2월~)
인천 중부경찰서 장봉도 직원관사 재건축	13	-	-	설계 용역 진행 중('25. 2월~)
법무부 청주지검 충주지청 이전	390	-	-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법무부 대검찰청 별관 증축	881	-	-	입찰 진행중
부산보호관찰소동부지소 리모델링	150	-	-	입찰 진행중
전주보호관찰소 청사 증축	101	1	1.0	입찰 진행중
대구보호관찰소 청사 증축	266	-	-	발주전 지자체 인허가 사전 협의
법원공무원교육원 제3생활관 신축	390	-	-	신축 기본계획 수립 후에 설계공모절차 진행 중으로 연말에 집행 예정
창원지법 통영지원 신축	296	-	-	신축 기본계획 수립 후에 설계공모절차 진행 중으로 연말에 집행 예정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청사 신축	1,000	-	-	사업계획적정성평가 실시에 따른 사업 지연
주필리핀대사관 관저 리모델링	56	-	-	총사업비 조정 협의에 따른 설계사 선정 지연
태안서 신진파출소 증축	45	-	-	설계 지연
사천서 남해파출소 증축	41	15	36.6	실시설계 진행
울산서 진하파출소 증축	42	-	-	실시설계 진행
울진서 죽변파출소 증축	27	-	-	부지 재협의
태안서 구도출장소 이전신축	26	-	-	설계 지연
해경청 XR 단속·구조 훈련센터 신축	163	-	-	설계 지연
서특단 용기포항 승조원시설 신축	375	-	-	부지 재협의
인천서 하늘바다파출소 부지매입	130	-	-	부지 계약체결 진행
영등포 복합 창업허브 신축	233		-	사업계획승인 협의
대구수성통합청사 신축	714	-	-	KDI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부산영도통합청사 신축	512	-	-	사업계획승인 협의
관세인재개발원 탐지견훈련센터 증축	184	-	-	설계공모 중, 4분기 집행 소요 발생
연곡양묘사업소 청사 신축	32	12	37.5	건축구조 검토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
홍천국유림관리소 청관사 신축	68	24	35.3	건축구조 검토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
중앙위원회 청사 민원동 신축	6	-	-	관계기관 협의기간 소요
충남 공주시선관위 청사 재건축	68	-	-	설계비 조정('25.8월)에 따른 설계발주 지연
중앙 선거연수원 생활관 재건축	196	-	-	설계비 조정('25.8월)에 따른 설계발주 지연

자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신규 사업은 대부분 정부 기관의 청사 신축·증축 및 리모델링 등 건축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부지매입·설계 등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 전 거쳐야 할 사전절차가 많아 사업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7.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안 감액 조정 검토 및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가. 개 요

202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 당초 계획액 대비 1,864억 6,200만원(5.4%) 증액된 3조 6,684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수입·지출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	2025 계획		2026 계획안
			당초	수정	
수입	○ 자체수입	2,186,269	2,042,888	2,042,888	2,034,925
	- 재산수입	195,043	198,222	198,222	194,083
	- 경상이전수입	42,080	66,788	66,788	54,305
	- 관유물매각대	1,949,146	1,777,878	1,777,878	1,786,537
	○ 정부내부수입	558,973	978,278	978,638	1,081,758
	- 예탁원리금회수	558,973	978,278	978,638	1,081,758
	○ 여유자금회수	323,162	460,829	460,829	551,774
	- 정부예금회수	323,162	460,829	460,829	551,774
합계		**3,068,404**	**3,481,995**	**3,482,355**	**3,668,457**
지출	○ 사업비	986,160	1,082,624	1,097,053	1,296,096
	- 공용재산취득	848,899	909,072	953,501	961,722
	- 통합청관사	69,207	73,552	73,552	34,374
	- 비축토지 매입	79,996	100,000	70,000	300,000
	○ 기금운영비	2,779	2,686	2,686	2,919
	- 인건비	1,814	2,053	2,053	2,316
	- 경상운영비	965	633	633	603
	○ 정부내부지출	1,500,000	1,350,000	1,380,000	1,45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500,000	1,350,000	1,380,000	1,450,000
	○ 여유자금운용	584,413	1,046,685	1,002,666	919,442
	- 통화금융기관 예치	172,155	5,500	5,500	5,500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412,258	1,041,185	997,116	913,942

자료: 기획재정부

나. 검토의견

첫째, 2026년도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 중 24개 사업의 경우 2025년 8월말 기준 105억 4,200만원이 이월, 127억 8,1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2026년 계획안에 421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안 조정을 검토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 중 2025년 8월말 기준 확정 예산의 20% 이상이 이월 또는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총 24개 사업으로, 총 332억 5,600만원의 계획액 중 105억 4,200만원이 이월되고 127억 8,1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2026년 계획안에 421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별로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편성 사업 중 20% 이상 이월·불용 예상 사업]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5년도 8월말 기준			이·불용 사유	2026 계획안
	계획 현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구로세무서 청사 신축	3,149	-	2,318	공사계약 불가 전망	3,281
화성세무서 청사 신축	1,919	-	1,749	공사계약 불가 전망	2,614
중부산세무서 청사 신축	6,222	2,880	-	시공사 선금 제외 이월	9,366
광주세무서 청사 신축	6,979	3,586	-	시공사 선금 제외 이월	1,766
동대구세무서 청사 신축	968	-	735	공사계약 불가 전망	1,176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 청사 신축	69	69	-	설계 차년 완료 예정	332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 청사 신축	116	116	-	설계 차년 완료 예정	610
송파세무서 청사 재건축	319	-	319	통합발주 검토	53
잠실세무서 청사 재건축	387	-	387	통합발주 검토	1
북대구세무서 청사 재건축	493	311	-	설계 차년 완료 예정	37
대통령경호처 업무시설 신축	1,169	-	1,169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 예상	1,169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5년도 8월말 기준			이·불용 사유	2026 계획안
	계획 현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법원공무원교육원 제3생활관 신축	390	390	-	'25년 12월 설계용역계약 체결 예정이므로 기본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이월	615
부산지법 동부지원 별관 신축	709	478	-	'25년말공사계약 및 감리계약 체결 예정이므로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이월	1,089
창원지법 마산지원 이전 신축	402	402	-	'25년 12월 설계용역계약 체결 예정이므로 기본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이월	984
창원지법 통영지원 별관 신축	296	296	-	'25년 12월 설계용역계약 체결 예정이므로 기본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이월	337
강원지원 청사 이전 신축	622	188	0	설계공모 지연으로 25년 11월 설계계약 예정에 따라 기본설계비 이월	4,384
소방심신수련원 신축	692	-	211	건설보상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불용 예정	3,673
중앙전파관리소 청사 증축	4,202	-	4,202	총사업비 협의 지연	4,784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재건축	767	727	40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진행에 따른 후속 설계공정 추진 제한	424
부산통합관사 신축	1,821	-	1,415	설계완료 및 공사발주 지연	692
정책연수원 통합관사 건립	234	-	229	연수원 운영계획에 따라 통합관사 사업규모 변경 예정으로 설계용역 중지	11
옥천분소 청사 신축	800	717	-	BF예비인증 심의 지연 및 총사업비 조정 협의로 착공 지연	2018
영월사무소 관사 신축	353	353	-	설계내역 검토 및 공사 착공지연	871
해양수산부 항로표지 정보서비스센터 신축	178	29	7	기본·실시설계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불용처리, 기본·실시설계에 필요한 기간과 각종 심의·인증에 시간이 소요되어 차년도 준공 불가피	1,825
합계	33,256	10,542	12,781		42,112

자료: 기획재정부

둘째, 2026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성된 계속사업 중 2025년 8월말 기준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은 총 291개에 이르고 있고, 이 사업들의 2026년 계획안은 4,941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안의 조정을 검토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6년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편성된 계속사업 중 2025년 8월말 기준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은 총 291개로, 3,137억 4,400만원의 계획액 중 227억 700만원 집행에 그치고 있음. 이 중 집행실적이 없는 사업은 총 158개에 이르며,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은 96개, 10~20% 미만인 사업은 23개, 20~30% 미만인 사업은 14개 사업임.

그럼에도 2026년 계획안에는 2025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1,709억 6,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은 2,087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등 올해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이 2026년도 계획안에 4,941억 5,500만원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안의 조정을 검토하고, 2025년에 발생한 사업지연이 2026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편성 사업 중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2025년 8월말 기준				2026 계획안
	사업수	계획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률 0%	158	73,046	-	-	170,969
집행률 10% 미만	96	130,674	1,958	1.5	208,749
집행률 10~20% 미만	23	73,867	11,151	15.1	71,988
집행률 20~30% 미만	14	36,157	9,598	26.5	42,449
합계	291	313,744	22,707	7.2	494,155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 출>

18. 비축토지매입 사업: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필요

가. 개 요

‘비축토지매입’ 사업은 중앙관서의 장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활용 및 개발할 수 있는 비축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2026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 계획액 대비 2,000억원(200.0%) 증액된 3,000억원이 편성되었음.[72)]

[2026년도 비축토지매입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비축토지매입	100,000	70,000	300,000	200,000	200.0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6년 계획안에는 중기재정계획상 해외부동산 등의 매입 대상 확대에 따라 책정한 비축매입소요 2,000억원과 민간유휴자원 및 노후청관사 활용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등 이전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소요 1,000억원을 반영하여 총 3,0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5년 당초 계획액 대비 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수정 계획액 대비 4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준임.

[비축토지매입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중기재정계획상 해외부동산 등 매입 대상 확대에 따라 책정한 2026년 비축매입소요 2,000억원
+ 2026년 신규소요 1,000억원(민간유휴자원, 노후청관사 활용 공공주택 공급 등 이전소요 대응)

자료: 기획재정부

[비축토지매입 사업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4 ~ ’28	8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5 ~ ’29		1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자료: 기획재정부

72) 국유재산관리기금-비축토지매입 (2035-300)(국고국)

나. 검토의견

2026년 비축토지매입 계획안은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4배 이상의 규모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장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 및 부동산 매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2~2026년 비축토지매입 사업의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22년 이후 800억원 규모를 유지하였으나, 2025년 추경에서 700억원으로 감소하였고 2026년 계획안에서는 3,000억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328.6% 증가하였음.

[2022~2026년 비축토지매입 사업 연도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예산	80,000	80,000	80,000	70,000	300,000

주) 추경 편성 연도는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재외공관 확보를 위한 국외부동산 비축 소요가 확대되었고, 노후청·관사 복합개발 사업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추진을 위한 비축부동산의 사전적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3조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의 기본원칙으로 ①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②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③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④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등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음.[73)]

그러나 최근 5년간 비축토지매입 예산은 약 800~1,0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된 반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비축토지매입 예산의 확대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반영하여 2026년 계획안이 크게 증액된 것으로 판단됨.

---

73)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연도별 매입예산과 매각수입 비교]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최근 5년 평균
매입예산	700	700	1,000	800	800	800
매각수입	10,398	11,010	14,694	17,099	19,491	14,538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2026년 비축토지매입 계획안은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4배 이상의 규모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장래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토지 및 부동산 매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기후대응기금】

<수 입>

19.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수입 목표 달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외수입’ 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계획」(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 월별 1회 유상할당배출권 경매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수입을 세입조치 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4,164억 2,300만원(119.4%) 증액된 7,651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74]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기타재산이자외수입	348,700	348,700	765,123	416,423	119.4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운영 중이며, 1차 계획기간(2015~2017)과 2차 계획기간(2018~2020)을 거쳐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이 진행 중임. 2026년부터 시행되는 4차 계획기간(2026~2030)에 앞서 정부는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제4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야 함.[75]

---

74) 기후대응기금-기타재산이자외수입(54-547)(미래전략국)

7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10년을 단위로 하여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2026년 계획안에는 2025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7,651억원의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편성되었는데, 2024년의 경우 당초 계획액 대비 수납률은 64.8%에 불과하고, 2025년 9월말 기준 수납률은 22.8%에 그치고 있으므로, 2026년 배출권 유상할당수입이 당초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2024년 및 2025년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결산 내역을 보면, 2024년 당초 계획액 2,896억 9,4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876억 7,700만원(수납률 64.8%)에 그쳤고, 2025년에도 당초 계획액 3,487억원 중 2025.9월말 기준 796억 2,700만원이 수납되어 22.8%의 저조한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음.

[2024~2025년 9월말 기타재산이자외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A)							
2024	289,694	202,121	202,121	187,677	187,677	92.9	100.0	-	-
2025.9.	348,700	348,700	348,700	79,627	79,627	22.8	100.0	-	-
2026(안)	765,123	765,123	-	-	-	-	-	-	-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 연도별 톤당 매각단가를 보면 2020년 30,385원에서 2024년 10,355원까지 하락하였고, 2025년에도 10,000원 이하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9월에는 10,000원에 낙찰되어 2020년 평균 매각단가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함.

[2020~2024년 온실가스 배출권 연도별 평균 매각단가]

(단위: 원/톤)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매각단가	30,385	26,373	23,243	10,672	10,355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1년간 경매월별 온실가스 배출권 낙찰가격 현황]

(단위: 원/톤)

연월	2024.10	2024.11	2024.12	2025.03	2025.05	2025.06	2025.07	2025.08	2025.09
낙찰가격	10,600	11,600	10,100	9,100	8,900	8,790	9,070	8,950	10,000

자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 계획안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7,651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당초 계획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정부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2025.9.12.)에서 배출권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문제를 해소하고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여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은 15%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지 출>

20. 투자지원 사업: 예상 협약체결 건수를 고려한 일정 금액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투자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 고효율, 저탄소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76] 향후 설비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 계획액 대비 90억원(△40.9%)이 감액되었으나, 순감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 계획액 대비 130억원이 증액되었음.[77]

[2026년도 투자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온실가스 국제감축	30,425	8,425	21,545	△8,880	△29.2
투자지원	22,000	-	13,000	△9,000	△40.9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은 2030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 대비 투자지원금의 비중에 따라 분배량을 산정하는 지분방식과 연간 투자지원금 상환액과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분배량을 산정하는 금액방식을 통해 실적을 산정하게 됨.

또한 지원규모는 소규모・중규모・대규모로 구분되고, 대규모를 기준으로 프로젝트당 최대 100억원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함.

---

76) <지원 대상 예시>

발전	열 공급	연료 교체/효율	기타
풍력, 태양광, 소수력, 조력, 바이오매스 발전, 매립가스 발전 등	태양열, 지열, 폐열회수, 바이오매스 열병합, 소각열 열병합 등	LNG 연료 교체, 고효율 모터, 교통체계 개선 등	시멘트, HFCs 등

자료: 산업통상부

77) 기후대응기금-온실가스 국제감축(산업부)(6131-311)(미래전략국,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관)

[투자지원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 고효율, 저탄소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향후 설비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회수

ㅇ 투자지원금 기준: 파리협정 6.4조 사업의 등록비 기준에 따른 사업 규모 구분

구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감축량 기준 (tCO2-eq/yr.)	15,000 톤 이하	15,000 톤 초과 30,000 톤 이하	50,000 톤 초과
소요예산 기준 (1년 기준)	연간 3억원 (= 1.5 만톤 x 20,000원*)	연간 6억원 (= 3.0 만톤 x 20,000원)	연간 10억원 (≒ 5.0 만톤 x 20,000원)
	* 할당배출권(KAU) 2022년 평균가 22,048원, 3년 평균(2020~2022) 24,546원		
총 규모(10년 기준)	30억원	60억원	100억원

ㅇ 지원규모: 프로젝트당 최대 10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최대 2년까지)

ㅇ 지원분야: 산업·발전부문*을 포함하는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감축설비 설치투자를 지원하고 그에 상당하는 국제감축실적 회수
* 태양광・바이오매스・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제조공정 에너지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연료전환 등

ㅇ 지원비율: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50% 이내 지원

ㅇ 지원범위: 감축설비(부대・계측설비 포함)의 구매, 설치공사(설계비 포함), 감리, 시험 운전 등을 포함하는 취득설비 투자비 대상

ㅇ 분배기준: 투자지분방식과 투자금액방식으로 분류
- 지분방식: 총 사업비 대비 투자지원금의 비중에 따라 수탁기관 분배량을 산정
- 금액방식: 연간 투자지원금 상환액과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수탁기관 분배량을 산정

ㅇ 기대효과: 국내 감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 국제감축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개도국 시장 진출 지원

자료: 산업통상부

‘투자지원’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은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1건과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 1건을 계획하여 총 130억원이 편성됨.

[2026년도 투자지원 사업 세부계획]

○ 투자지원 : (2025 추경) - → (2026 계획안) 130억원, 순증
(2025 당초 계획 220억원 → 제2회 추경 순감)
- (요구) 외부 지적사항(재정사업자율평가, 기재위 2024 결산, 예결위・기재위 2025 추경 등)을 반영,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지출 구조조정
- (산출) 대규모(연간 5만톤 이상) 100억원 × 1건, 소규모(연간 1.5만톤 이하) × 30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나. 검토의견

투자지원 내역사업은 협력국의 승인 지연으로 2024년도 예산이 이월·미집행된 가운데, 향후 확정되지 않은 2건의 국제감축사업이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가정하더라도 최대 227억 3,300만원의 지원금만 필요할 예정이나, 2025년 계획현액과 2026년도 계획안은 총 383억 5,100만원이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투자지원 사업은 2024년 계획현액 296억 2,900만원 중 42억 7,800만원을 실집행(집행률 14.4%)하고, 2025년에는 당초 계획액 220억원이 순감되었음에도 2024년도 이월액 253억 5,1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상황임.

[2024~2025년 투자지원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						
투자지원	2024년	33,000	29,629	-	29,629	4,278	25,351	-	14.4
	2025년	22,000	-	25,351	25,351	-	(연말 집계)		-

주) 2025년 8월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부

이 사업을 통해 체결된 협약은 2023년에 체결된 베트남과의 협약 3건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약 1건과 2024년에 체결된 캄보디아와의 협약 1건 등 총 5건임.

협약 체결액은 총 119억 2,000만원이고, 협약 체결과 동시에 국비지원 총액의 70%에 해당하는 선금 및 10~15%에 해당하는 중도금은 현재 지급된 상황이나, 상대국의 관련 규정 미비로 최종 사업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23~2024년 체결된 협약 현황]

(단위: 백만원)

협약 체결국	선금	중도금	잔금	국비지원금액
베트남 ①	2,100	450	450	3,000
베트남 ②	1,050	225	225	1,500
베트남 ③	364	78	78	520
우즈베키스탄	630	90	180	900
캄보디아	4,200	-	1,800	6,000
계	8,344	843	2,733	11,920

자료: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 제15조제4항에 따라, 중간평가에 따른 중도금 지급된 상황임

그 외에 G2G 협력을 위한 MOU가 몽골 대기질 개선 부문과 캄보디아 수송부문에서 체결됨에 따라 향후 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위 사례처럼 구체적인 협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님.

즉, 기 체결된 5건 계약의 잔금 27억 3,300만원이 상대국의 관련규정이 정립되면 지급될 예정이고, 그 외에는 체결 예정인 협약 및 지급 예정인 지원금이 없는 상황임.

만약 MOU만 체결된 상황인 몽골 및 캄보디아 2건의 계약이 확정되어 그것이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최대 200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2025년 계획현액 253억 5,100만원과 2026년도 계획안 130억원을 합한 금액은 383억 5,100만원이므로, 잔금 27억 3,300만원과 200억원을 합한 227억 3,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78)]

78)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2025년 계획현액 253억 5,100만원은 국가재정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반납 예정이며, 2025년 4분기에 사전검토 중인 사업 및 캄보디아·몽골 MoU 후속 사업이 2026년 연내에 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2026년도 계획안은 향후 프로젝트 협약 계획을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 규모라는 입장임.

21.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사업지연 방지를 위한 집행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 사업은 LFP배터리[79]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핵심광물 확보로 연료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23억 4,000만원(35.3%) 증액된 8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80]

[2026년도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	24,836	24,836	12,680	△12,156	△48.9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6,630	6,630	8,970	2,340	35.3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여 LFP배터리 재활용 설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2년간 총 156억원을 투입할 예정임.[81][82]

이에 따라 2025년 계획안은 실시설계비와 공사비 선금으로 66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고, 2026년 계획안에는 공사비인 8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8,970백만원 - LFP배터리 재활용설비 구축(8,97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79) LFP 배터리: 리튬(Lithium), 철(Fe), 인산(Phosphate)으로 구성되는 전기차 배터리

80) 기후대응기금-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6233-400)(자원순환국)

81) 공사비 130억원 및 설계·감리 등 부대비용 26억원

82) 공사비: 전처리 공정(열처리, 파분쇄 등)으로 30억원, 후처리 공정(습식공정)으로 100억원

나. 검토의견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은 조달청과 협의 과정이 지연되어 당초 2025년에 마무리 될 예정이었던 실시설계가 2026년 3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기반이 미비하여 단순 처분되는 경향이 있는 LFP 배터리로 인해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LFP 배터리 재활용 기반 구축사업을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 설계비로 8억 2,000만원, 공사비로 51억 1,900억원 등 총 6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조달청과 협의 과정이 지연되어 실시설계가 늦어져 2025년 8월말 기준 실집행액이 7억 300만원(10.6%)에 불과함.

[2025년 8월말 기준 LFP 배터리 재활용 기반 구축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계획안 편성액	2025년 8월말 기준 실집행액	2026년 계획안 편성액
설계비	820	699	-
공사비	5,119	-	7,561
감리비	398	-	1,052
시설부대비	50	-	46
운영비	29	1	30
여 비	21	3	20
일반관리비	193	-	261
합 계 (실집행률)	6,630	703 (10.6%)	8,97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5년 9월 기준으로 실시설계가 2026년 초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공사비 선금은 2025년에 집행되지 못하고 2026년으로 이월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의 준공을 목표로 부대비용과 공사비 전액인 89억 7,000만원을 2026년 계획안에 편성하였는바, 이 사업이 공사비 선금조차 2025년에 집행되지 않을 예정임을 감안하면, 2026년에 편성된 공사비도 이월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83]가 2026년에도 연장적용될 경우 선금으로 공사

8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주요내용

비를 100%를 지급하여 예산 전액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해당 고시의 연장을 전제하고 조건부로 계획안을 편성한 것으로서, 이미 계획 내에 시설 준공이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하여 고시의 연장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이월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LFP 배터리 재활용체계 구축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기한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선금지급한도 확대)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제1항의 선금지급한도를 100분의 70 → 100분의 100으로 확대*

* '25.6.30. 선금 신청분까지 적용

국세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총수입은 3,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원(4.9%) 증가함.[1)]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2,964	-	3,110	146	4.9
총수입	2,964	-	3,110	146	4.9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총지출은 2조 995억원으로, 전년 대비 955억원(4.8%) 증가함.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20,040	-	20,995	955	4.8
총지출	20,040	-	20,995	955	4.8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3,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원(4.9%) 증가함.

[2026년도 국세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2,964	-	3,110	146	4.9
합 계	2,964	-	3,110	146	4.9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2조 995억원으로, 전년 대비 955억원(4.8%) 증가함.

[2026년도 국세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20,040	-	20,995	955	4.8
합 계	20,040	-	20,995	955	4.8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세청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2개(45억 7,3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사업은 국제거래 분석에 이용되는 데이터베이스(DB)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1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청사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폭행·협박 등 악성민원에 노출된 세무관서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인과 종사직원 보호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세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1,183
2	청사 안전관리 지원	3,390
총지출		4,573

한편, 국세청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압류재산공매’ 사업 1개임.[3)]

[2026년도 국세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압류재산공매	4,254	17,257	13,003	305.7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국세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보전거래는 없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비와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징수포상금'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 징수를 지원하기 위해 징수활동 관련 소요예산을 확대한 것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세청은 2026년 5건의 부과·징수포상금을 신설하였으나, 국세청 본연의 업무임에도 급여 외의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급여 인상의 우회적인 수단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으므로,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포상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사업은 타 사업예산과 기본경비에 분산되었던 국제거래 DB 예산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였으나, 이렇게 될 경우 DB별 예산편성 이력, 국회·감사원 등의 외부 지적사항 등을 모두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사업의 성과·이력 관리를 어렵게 하는 예산 편성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어 국회의 법률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2026년 3월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포상금(310-03): 신설된 부과·징수 포상금의 공정한 운용 필요

가. 개 요

‘포상금’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 및 민간인(또는 기관)을 격려·포상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국세청 소관 포상금 예산안은 전년 대비 56억 2,000만원(△19.9%) 감액된 226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국세청 소관 포상금(310-03)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포상금(310-03)	28,263	28,263	22,643	△5,620	△19.9

2026년도 국세청 소관 포상금 수는 전년 대비 5건이 증가한 26건으로, 2026년 신설된 포상금은 ‘압류재산공매’ 사업의 ‘징수포상금’ 등 5건(13억 1,800만원)임.

전년 대비 포상금 규모가 감소한 포상금은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의 ‘미발급 신고포상금’(△8억 9,900만원) 등 3건임.

2026년 국세청 소관 포상금 중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은 현금영수증제도 미발급 신고포상금 등 15건이고, 공무원 대상 포상금은 승소장려금 등 17건이며, 민간과 공무원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포상금은 7건임.

4) 일반회계-포상금(310-03)

[2025년 및 2026년 국세청 소관 포상금(310-03)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포상금명	2025년 예산액(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포상 대상자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미발급 신고포상금	3,744	2,845	△899	민간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지원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261	159	△102	민간
조사활동지원	탈세제보 포상금 차명계좌신고포상금	22,236	16,268	△5,968	민간
소송수행비용	승소장려금	582	582	-	공무원
압류재산공매	은닉재산신고포상금	1,056	1,088	32	민간
압류재산공매	**징수포상금**	-	639	639	공무원
납세안내 및 세금교육 지원	공모전 상금	30	30	-	민간
근로·자녀장려세제 운영	장려금 수기 공모전 상금	8	8	-	민간
기관운영 기본경비	유공공무원 포상(기관장)	137	137	-	공무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부조리신고 포상금	3	3	-	공무원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29	29	-	민간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부과포상금**	-	7	7	공무원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명의위장신고포상금	40	40	-	민간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부과포상금**	-	362	362	공무원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부과포상금**	-	171	171	공무원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부과포상금**	-	139	139	공무원
교육원 기본경비	유공공무원 포상(기관장)	1	1	-	공무원
서울청 기본경비	유공공무원 포상(기관장)	46	46	-	민간/공무원
중부청 기본경비	유공공무원 포상(기관장)	27	27	-	민간/공무원
대전청 기본경비	유공공무원 포상(기관장)	16	16	-	민간/공무원
광주청 기본경비	유공공무원 포상(기관장)	15	15	-	민간/공무원
대구청 기본경비	유공공무원 포상(기관장)	14	14	-	민간/공무원
부산청 기본경비	유공공무원 포상(기관장)	25	25	-	민간/공무원
인천청 기본경비	유공공무원 포상(기관장)	18	18	-	민간/공무원
국세상담센터 기본경비	유공공무원 포상(기관장)	1	1	-	공무원

자료: 국세청

나. 검토의견

국세청은 2026년 5건의 부과·징수포상금을 신설(포상대상자가 모두 공무원)하였으나, 국세청 본연의 업무임에도 급여 외의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급여 인상의 우회적인 수단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으므로,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포상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신설된 포상금은 징수포상금 1건과 부과포상금 4건으로 총 13억 1,800만원 규모임.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신설 포상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포상금명	2026년 예산안	편성근거
압류재산공매	징수포상금	639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
개인납세국 기본경비	부과포상금	362	
자산과세국 기본경비	부과포상금	139	
법인납세국 기본경비	부과포상금	171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부과포상금	7	
합계		1,318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세청은 징수포상금과 부과포상금 신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5가 신설·시행되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거나 분야별 부과·징수에 대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에게 적극적 부과·징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신설하였다고 설명함.[5)]

---

5) 「국세기본법」
제84조의3(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국세청장은 국세의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지급 한도, 선정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확인 등을 통해 국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2. 국세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판결을 받는 데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
② 포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부과·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 소송목적의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국세청이 부과·징수 포상금의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국세기본법」제84조의3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법적 근거 없이 편성된 ‘승소장려금’에 대한 지적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나, 포상금의 지급 대상 업무가 ‘부과·징수·송무’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것임.

최근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되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잠복, 수색업무 등 세무공무원의 강도 높은 업무가 요구되고 있고,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독려를 통해 국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부과·징수 포상금의 지급 필요성은 있어 보임.

다만, 국세의 부과 및 징수 사무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임에도 적극적 업무 독려를 위해 급여 외의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급여 인상의 우회적인 수단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고, 타 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으므로, 국세청은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포상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대상과 포상금 지급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포상금 지급액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의 내용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인 경우 등 소송의 성질상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④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사업(신규): 사업의 성과·이력 관리를 위해 이관 편성 지양 필요

가. 개 요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사업은 기존 사업예산·기본경비에 분산되어 있던 예산 중 국제거래분석에 이용되는 데이터베이스(DB) 사용 관련 예산을 이관하여 별도 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1억 8,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

[2026년도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	-	1,183	1,183	순증

국세청은 납세자 해외진출·국제거래의 빈도가 증가하고 조세탈루 유형이 고도화·다변화되고 있어 국제조세 분야 분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사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신용평가모형 DB 사용료 3억 5,300만원
○ 차입거래 DB 사용료 1억 4,000만원
○ 기업데이터 사용료 6억 700만원
○ 기업정보 서비스 사용료 8,300만원

자료: 국세청

‘신용평가모형 DB’는 무디스 신용평가모형 DB를 활용해 국내 다국적기업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 지급보증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차입거래 DB’는 국내 다국적기업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 후 수취 이자의 적정여부 검토를 위한 것임.

6) 일반회계-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2138-300)(국제조세관리관)

‘기업데이터’는 무디스의 Orbis[7]를 통해 얻은 해외 관계사 및 국외 기업데이터를 국제거래 분석 및 조사에 활용하며, ‘기업정보서비스’는 국내 최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등 최신 기업정보를 제공받아 다국적기업 국내법인의 탈루혐의 분석 시 활용함.

[데이터베이스별 필요성 및 증액사유]

(단위: 백만원)

구 분		필요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신용평가모형 DB		국내기업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 지급보증 수수료 수취 적정여부 등 검증을 위한 정상가격 산출에 활용	단일 단가계약 353	조회수 700건 → 3,000건
차입거래 DB		국내기업과 국외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에 대해 과세기준이 될 수 있는 정상가격 적정 이자율 결정	단가 17.5 × 회선(ID) 8개	회선 4개 → 8개 본청·각 지방청 회선 1개씩 배정
기업 데이터	국외 기업 DB	내국법인의 해외 관계사 및 국외 제3자 기업정보를 통한 적절한 비교대상기업 선정	단가 53 × 회선(ID) 10개	회선 8개 → 10개 본청·각 지방청 회선 1개씩 배정, 서울청·중부청 1개씩 추가 배정
	국내 기업 DB	국내상장기업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등 기업공시정보를 통해 기업 분석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단일 단가계약 77	2025년과 동일
기업정보서비스		국내 제3자 기업의 정보를 통한 적절한 비교대상기업 선정 및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의 분석	비즈라인 단가 7.4 ×회선(ID) 10개 +밸류서치 단가 9 ×회선(ID) 1개	

자료: 국세청

나. 검토의견

국세청은 타 사업예산과 기본경비에 분산되었던 국제거래 DB 예산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였으나, 이렇게 될 경우 DB별 예산편성 이력, 국회·감사원 등의 외부 지적사항 및 성과평가 정보 등을 모두 알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사업의 성과·이력 관리를 어렵게 하는 예산 편성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7) 대표적인 기업 데이터베이스로 전 세계 기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공개 기업정보에 중점을 두고 비교 가능한 형식으로 기업정보를 제공함.

국세청은 그간 역외탈세 대응활동(2132-300) 사업에 편성되어 있던 신용평가모형 DB 및 차입거래 DB 사용료와 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7111-253)에 편성되어 있던 기업데이터 및 기업정보서비스 사용료를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이관 편성하였음.

[2026년도 국제거래 세원관리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역						2026년도 편성내역(안)	
세부사업명	구분	2023	2024	2025		구분	편성액
역외탈세 대응활동	신용평가모형 DB	165	104	170	⇒	신용평가모형 DB	353
	차입거래 DB	70	-	70		차입거래 DB	140
국제조세 관리관실 기본경비	기업데이터	444	444	513		기업데이터	607
	기업정보서비스	83	83	83		기업정보서비스	83
합계		762	631	836		합계	1,183

자료: 국세청

이에 대해 국세청은 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투명한 예산 관리를 위해 2026년 예산안에서는 타 사업예산과 기본경비에 분산되었던 국제거래 DB 예산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 기능의 사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이관하여 통합 편성하는 것은 기능별 예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기존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이 신설되면서 사업별 성과·이력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이 사업의 경우 11억 8,300만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년 대비 3억 4,700만원(41.5%)이 증액된 것임. 구체적으로는 신용평가모형 DB는 전년 대비 1억 8,300만원(107.6%)이 증가하였고, 차입거래 DB는 전년 대비 7,000만원(100%)이 증가하였으며, 기업데이터 사용료는 전년 대비 9,400만원(18.3%) 증가하였음.

또한, 국세청이 제출한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통해서는 각 DB별 예산편성 이력, 국회·감사원 등의 외부 지적사항, 성과평가 정보 등을 모두 알 수 없게 되므로,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사업을 이관하여 통합 편성하는 등 성과·이력 관리를 어렵게 하는 예산 편성 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3.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신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 철저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은「국세 체납관리단」조직을 설치·운영하여 체납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25억 4,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8)]

[2026년도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압류재산공매		4,254	4,254	17,257	13,003	305.7
	국세 체납관리단	-	-	12,547	12,547	순증

국세청은 체납자를 직접 대면하여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국세 체납관리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2026년 예산안에는 인건비 86억 5,600만원, 임차료 24억 700만원, 운영비 14억 8,400만원 등 총 125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안	세부내역
인건비	8,656	500명, 주5일, 1일 6시간,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10,320원), 4대보험 등
임차료	2,407	차량, 사무실, 사무기기 임차료
운영비	1,484	문자발송비용, 홍보비, 소모품비, 근무복, 공과금 등
합계	12,547	-

자료: 국세청

8) 일반회계-압류재산공매(2232-301)(징세법무국)

「국세 체납관리단」은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여 모든 체납자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며, 총 3년간(2026~2028년) 모든 체납자(2024년말 기준 133만명)를 1회 이상 방문하여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임.

유형 분류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는 관련 복지부처와 연계하는 등 재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수색・민사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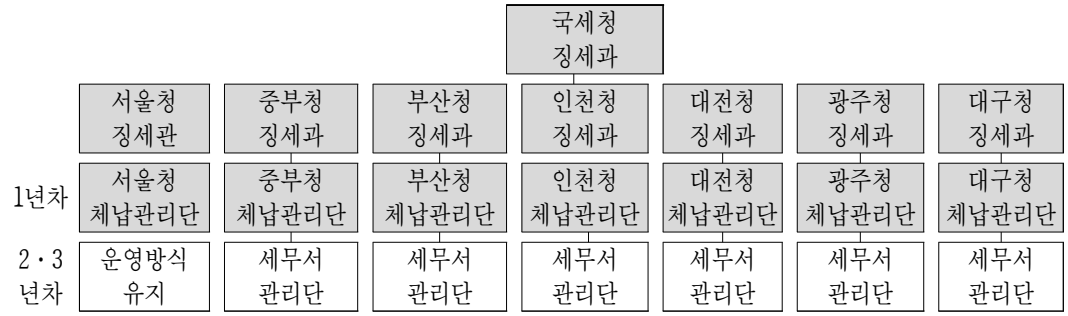
[실태조사에 따른 유형 분류 및 조치사항]

구 분	유 형	조치사항
생계형 체납자	재산·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복지연계 등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실시
일시적 납부곤란자	일시적 어려움으로 체납 중이나, 납부의지가 있고 경제활동을 통해 완납이 가능한 경우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 보류, 분납 등 납부유도
고의적 납부기피자	호화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으나, 재산을 타인명의로 이전하는 등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추적조사 등 가능한 모든 조치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2026년에는 7개 지방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국세 체납관리단」을 설치・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하여 실태확인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

[「국세 체납관리단」 조직 구성(단계적 확대)]



자료: 국세청

나. 검토의견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은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국회의 법률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2026년 3월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바, 국세청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 선발, 실태조사 대상자 선정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국세청은 그간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경기부진 및 조직·인력 부족 등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규모[9]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행정의 전산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세무행정이 증가하여 체납자의 실거주지 및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체계적인 국세 체납관리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 사업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법률안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의안번호 2212652)

제10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 현황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9) (체납액) (2021) 99.9조원 → (2022) 102.5조원 → (2023) 106.1조원 → (2024) 110.7조원
(체납자 수) (2021) 127.6만명 → (2022) 132.6만명 → (2023) 133.7만명 → (2024) 133.0만명

한편 2026년 예산안의 비목별 산출내역을 보면, 2026년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이 출범되는 것을 전제로 혹서기(8월)와 혹한기(12월)를 제외한 8개월을 근무 기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2026년 3월 출범을 위해서는 500명의 기간제 근로자의 선발 및 교육, 실태조사 대상자 선정, 사무실 공사 및 사무기기 설치 등 사전 준비작업이 2개월 동안 완료되어야 하므로, 국세청은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10)]

[2026년도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안의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안	산출내역
일용임금 (110-04)	7,840	- 근로자 급여: 500명×219일×6시간×10,320원('26년 최저임금) = 6,780 - 정액급식비 (440): 500명×11,000원×8개월 = 440 · 14,000원(공무원 정액급식비)×(6시간/8시간) ≒ 11,000원 - 초과근무수당: 500명×10시간×8개월×15,480원 = 619
일반수용비 (210-01)	134	- 홍보비: 4(팜플릿, 행사 관련 비용)×7개 지방청 = 28 - 소모품비: 1,177천원×10개(7개 지방청+3개 1급지 지방청)×9개월 = 106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145	- 공공요금: 1,000천원×10개(7개 지방청+3개 1급지 지방청)×11개월 = 110 - 문자발송비용(CI비용): 100원×350천명(1차 체납자수) = 35
피복비 (210-03)	28	- 피복비: 50천원(조끼 및 조사원증 등)×570(실태확인원 500명 + 7개 지방청별 여분 10개씩) = 28
임차료 (210-07)	2,407	- 사무실 임차료: 85,000천원(7개 지방청 한달 임차료)×11개월 = 935 - 차량 임차료: 1,050천원×122대×9개월 = 1,142 - 사무기기 임차료: 30,000천원×11개월 = 330
유류비 (210-08)	305	- 차량유류비: 2,500천원(3만㎞ 주행시)×122대 = 305
관리용역비 (210-15)	385	- 사무실 관리비 : 3,500천원×11개월×10개(7개 지방청+3개 1급지 지방청) = 385
사업추진비 (240-01)	7	- 사업추진비: 1,000천원×7개(지방청수) = 7
고용부담금 (320-09)	817	-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급여 6,780,240천원 + 초과근무수당 619,200천원) × 11.04% (4대보험비율) = 817
공사비 (420-03)	479	- 공사비: 3,400천원×(전화상담원 122명+보조인원 12명+담당공무원 7명) = 479
합계	12,547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실태확인원은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체납 상담·납부 안내 등의 현장형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실태확인원의 안전(폭설·빙판길 사고 등)과 방문 업무의 효율성(폭염 시 방문 자제)을 감안하여 혹서기(8월)와 혹한기(12월)를 제외한 총 8개월을 근무 기간으로 계획함.

참고로, 국세청은 2025년 9월「국세 체납관리단」시범운영을 실시하였고, 납세자 불편 야기·대민 마찰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향후 운영과정에 반영할 계획임.

[2025년「국세 체납관리단」시범운영]

■(운영지역) 서울,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7개 지역)
■(운영기간) 2025.9.3. ~ 2025.9.16. (3주)
■(실태확인 대상인원) 약 4,000여명
■(활동시간) 전화상담·실태확인 활동은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자료: 국세청

4.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세금신고 지원 인력의 비수도권 배치 확대 필요

가. 개 요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은 세법지식이 부족하고 세금 신고방법 등을 모르는 납세자의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 세무서에 위탁인력을 배치하여 납세자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1,100만원(5.5%)이 증액된 40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음.[11)]

[2026년도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3,828	3,828	4,039	211	5.5

이 사업은 각 세무서에 위탁인력을 배치하여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에게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을 상담・안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국민이 제안하여 예산이 편성된 국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예산 규모는 2019년 25억원에서 2026년 40억 3,9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예산	2,500	2,500	2,663	2,798	3,413	3,828	4,039

자료: 국세청

2026년 예산안에는 인건비 26억 4,900만원, 연차・연장수당・퇴직적립금 4억 4,100만원, 4대 보험 경비 등 4억 3,000만원, 일반관리비 5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11) 일반회계-납세자 세금신고 지원(3134-300)(개인납세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 운영비: (2025) 38억 2,800만원 → (2026) 40억 3,900만원
- 인건비(기본급) 26억 4,900만원
- 연차 · 연장수당 · 퇴직적립금 4억 4,100만원
- 경비(4대보험 등) 4억 3,000만원
- 일반관리비 등 5억 1,900만원

자료: 국세청

나. 검토의견

국세청은 납세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배치된 위탁인력을 비수도권으로 재배치하는 등 위탁인력 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19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위탁인력을 배치하여 왔고, 2024년부터 비수도권 세무관서로 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2021~2025년 위탁인력 배치 현황]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년 10월
수도권[주] (위탁인력)	49 (100명)	50 (100명)	50 (100명)	50 (100명)	50 (98명)
비수도권 (위탁인력)	-	-	-	10 (20명)	29 (32명)

주) 서울·경기·인천 세무서
자료: 국세청

2025년 10월 기준 전체 수도권 68개 세무서 중 50개 세무서(73.5%)에 위탁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65개 세무서 중 29개 세무서(44.6%)에만 배치되어 있어 수도권 세무서에 지원인력 배치율이 높은 상황임.

[2025년 10월 기준 지방청별·관서별 위탁인력 배치 현황]

청 별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세무서 (인원)	22개 (41명)	15개 (27명)	13개 (23명)	6개 (6명)	6개 (6명)	6개 (6명)	11개 (14명)
3명 배치	도봉	-	-	-	-	-	-
2명 배치	노원, 종로, 은평, 강서, 동작, 중랑, 성북, 구로, 동대문, 관악, 강동, 마포, 영등포, 금천, 중부, 삼성, 서대문	성남, 수원, 동수원, 용인, 시흥, 안산, 동안양, 평택, 구리, 하남지서, 원주, 동화성	의정부, 부천, 남동, 계양, 김포, 서인천, 부평, 고양, 동고양, 파주				진주, 북부산, 김해
1명 배치	성동, 용산, 양천, 반포	이천, 화성, 남양주	광명 남부천 인천	천안 대전 서대전 북대전 청주 아산	광산 전주 북전주 서광주 목포 익산	수성 남대구 서대구 동대구 북대구 구미	동래 부산진 금정 마산 울산 창원 제주 서부산
7명	세금신고지원센터(센터장 및 각 팀장, 서울청 정보화센터 3층)						

자료: 국세청

2026년도 예산안에는 비수도권 세무서에 위탁인력을 확대 배치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2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2026년에 비수도권에 위탁인력의 배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예산 증액에 따른 추가 인력은 비수도권 8개(광주, 북광주, 동울산, 수영, 해운대, 동청주, 세종, 통영) 세무서에만 배치할 예정이므로, 2026년 예산안을 감안하더라도 비수도권 위탁인력 배치율은 56.9%에 불과한 수준인바, 여전히 수도권의 위탁인력 배치율이 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세청은 수도권 세무서의 배치인력을 비수도권 세무서로 재배치하는 등 비수도권 세무서 배치비율을 상향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납세환경이 열악한 비수도권 세무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총수입은 4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3억원(△51.1%) 감소함.[1)]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003	1,003	490	△513	△51.1
총수입	1,003	1,003	490	△513	△51.1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총지출은 6,8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0억원(4.3%) 증가함.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6,583	6,583	6,863	280	4.3
총지출	6,583	6,583	6,863	280	4.3

문의 : 정원철 예산결산조사관 jungwc@assembly.go.kr (02-6788-567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49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3억원(△51.1%) 감소함.

[2026년도 관세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003	1,003	490	△513	△51.1
합 계	1,003	1,003	490	△513	△51.1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6,8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80억원(4.3%) 증가함.

[2026년도 관세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6,583	6,583	6,863	280	4.3
합 계	6,583	6,583	6,863	280	4.3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관세청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 없음.[2)]

한편, 관세청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특송화물 통관지원’,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R&D)’, ‘청사시설관리’ 사업 등 총 3개임.[3)]

[2026년도 관세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특송화물 통관지원	6,582	12,022	5,440	82.6
2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R&D)	2,135	3,267	1,132	53.0
3	청사시설관리	11,194	19,109	7,915	70.7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관세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보전거래는 없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폭증하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해외직구 전용 통관 플랫폼 구축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마약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장비 보강, 여행자 우범 정보와 X-ray 이미지를 동시 표출하는 시스템 확대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관세행정에 AI 기술 적용 확대 추진을 위한 ISP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관세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과태료’는 2021년 이후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5년 7월말 기준 수납액이 이미 2026년 예산안 규모보다 46억원 이상 초과수납되고 있으므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증액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사업은 세관검사센터가 준공될 때까지 운영될 임시 검사장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세청은 세관검사센터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셋째,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사업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분석장비 도입방식을 임차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자산취득 방식에 비해 총 7억 2,300만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 방식으로의 전환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과태료: 수납실적을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과태료’는 「관세법」·「외국환거래법」 및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9,800만원(15.6%) 증액된 126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과태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과태료	10,917	10,917	12,615	1,698	15.6

2026년도 과태료 예산안은 2023년 및 2024년 수납실적 평균에 10%를 증액하여 편성되었음.

[과태료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최근 2개년(2023년, 2024년) 수납실적 평균에 10% 증액하여 편성
= (10,780 + 12,156) / 2 × 1.10 = 12,615

자료: 관세청

4) 일반회계-과태료(56-563)(심사국)

나. 검토의견

관세청 소관 과태료 수납액은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5년 7월말 기준 과태료 수납액이 이미 2026년 예산안 규모보다 46억원 이상 초과수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간 관세청 소관 과태료 결산 내역을 보면, 수납액은 2021년 52억 7,900만원에서 2022년 104억 2,100만원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5년 7월말 기준 172억 2,900만원이 수납되었음.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2017년 36.3% 수준이었으나, 2022년 216.5%로 급격하게 증가한 후 2025년 7월말까지 매년 100% 이상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제 수납액에 비해 예산액이 과소편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2025년 7월말 기준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57.8%로, 63억 1,200만원이 초과수납되고 있음.

[과태료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2017	16,791	16,791	16,791	13,325	6,089	36.3	45.7
2018	16,791	16,791	16,791	16,369	7,211	42.9	44.1
2019	10,322	10,322	10,322	17,532	8,573	83.1	48.9
2020	8,978	8,978	8,978	16,061	5,280	58.8	32.9
2021	9,247	9,247	9,247	41,469	5,279	57.1	12.7
2022	4,813	4,813	4,813	54,887	10,421	216.5	19.0
2023	7,426	7,426	7,426	64,433	10,780	145.2	16.7
2024	8,892	8,892	8,892	87,678	12,156	136.7	13.9
2025.7.	10,917	10,917	10,917	79,325	17,229	157.8	21.7

자료: 관세청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예산안은 126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1년 이후 과태료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5년 7월말 기준 과태료 수납액이 이미 2026년 예산안 규모보다 46억원 이상 초과수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사업(신규):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의 조기 구축을 위한 집행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사업은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 등 불법 물품 차단과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0억 2,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

[2026년도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특송화물 통관지원	6,582	6,582	12,022	5,440	82.6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	-	5,026	5,026	순증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공사비(420-03) : 4,749
- **입시 검사장 구축비용(489)**, 세관검사센터 설계비용(444)
- 주요장비 제작: SORTER 도입(3,816)

○ 감리비(420-04) : 200
- 세관검사센터 구축 감리비용(200)

○ 시설부대비(420-05) : 77
- 세관검사센터 구축사업 조달수수료(77)

자료: 관세청

5) 일반회계-특송화물 통관지원(1131-302)(통관국)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이하 “세관검사센터”) 구축 사업은 2026~2027년 기간 동안 총사업비 144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2026년에는 임시 세관검사장 구축 운영 4억 8,900만원, 자동분류시스템 도입 등 인프라 구축 38억 1,600만원, 설계비 4억 4,400만원 등 50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연도별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구축 계획]

(단위: 백만원)

과업내용		2026년	2027년	합계
1. 임시 검사장 구축 운영		489	-	489
2. 세관 검사 인프라 구축		3,816	3,802	7,618
- 자동분류시스템 도입		3,816	3,671	7,487
- 챔버도입		-	131	131
3. 마약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		-	481	481
- X-ray 통합 판독실 구축		-	90	90
- 마약검사실 구축		-	287	287
- 세관검사장 환경 개선		-	104	104
4. 전자상거래 물량 증가 대응		-	4,695	4,695
- 고속 X-ray 검색기 교체 도입(4대)		-	3,204	3,204
- 저속 X-ray 추가 증설(1대 → 3대)		-	236	236
- 고정식 스캐너 성능개선, 화물분류체계 개선		-	868	868
- 보세구역 보안강화 시설 구축(보안출입, CCTV)		-	387	387
※ 설계비		444	-	444
※ 부대비용	감리비	200	396	596
	조달수수료	77	-	77
합계		5,026	9,374	14,400

자료: 관세청

나. 검토의견

기존 국제우편물류센터의 우편 분류시설 철거 후 세관검사센터 준공 사이의 기간 동안 운영될 임시 검사장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세청은 세관검사센터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물류센터의 기능 변경 및 발송장 증축 사업 일정에 맞춰 국제우편물의 세관검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처리물량의 한계[6] 및 노후화 등으로 우편 도착라인과 발송라인을 분리하는 증축사업[7]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축사업을 통해 기존 도착라인의 우편 분류기능을 지방 집중국으로 이관하고, 기존의 우편 분류시설은 철거할 예정임.

이에 따라 국제우편물류센터 내에 새로운 세관검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관세청은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 전자상거래 물량증가 대응을 위한 통관·검사 시설인 세관검사센터를 구축할 계획임.[8]

[우정사업본부 증축사업 및 관세청 세관검사센터 구축 일정(안)]

<table>
<tr><th>구 분</th><th>2024년</th><th>2025년</th><th>2026년</th><th>2027년</th></tr>
<tr><td>우정사업본부
증축</td><td colspan="2">'25. 7. ~ '26. 8. (26M)</td><td></td><td></td></tr>
<tr><td>세관검사센터</td><td></td><td>예산확보
(12M)</td><td>세관검사센터 계약 · 구축
'26. 1 ~ '27. 8 (20M)</td><td>시운전 등
(4M)</td></tr>
</table>

자료: 관세청

다만 우정사업본부 증축사업과 관세청 세관검사센터 구축 일정을 보면, 우정사업본부 증축 사업은 2026년 8월까지, 기존 분류시설 철거는 2026년 말까지 진행되는데 반해, 세관검사센터는 2027년 말에 구축될 계획이어서 2026년 말부터 2027년 말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됨.

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사업기간 중 우편 통관업무를 위해 2026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임시 검사장을 구축하여 2026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6) 우편물 반입건수(천건) : (2008, 국제우편물류센터 개장) 1,500→ (2023) 4,274→ (2024) 5,578

7) 기존시설은 도착전용으로 활용, 발송전용 시설은 신설 증축(6,500㎡) 2025.7~2026.8

8) 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 실적 : (2022) 461건→ (2023) 329건→ (2024) 420건 (마약 밀수경로 중 1위)
전자상거래(통상우편) 반입물량(천건) : (2022) 1,908 → (2023) 1,972 → (2024) 3,549

그러나 임시 검사장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물량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세청은 세관 검사센터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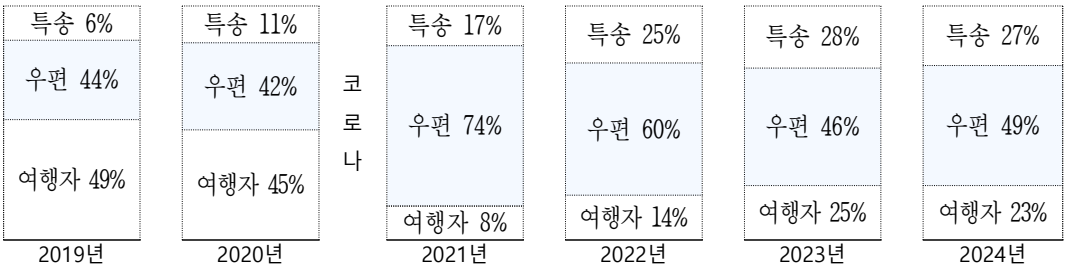
[최근 5년간 통상우편(전자상거래) 물량 변화]

(단위: 천건,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반입량	3,143	2,487	1,908	1,972	3,549
증감	-	△20.9	△23.3	3.4	80.0

자료: 관세청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밀수 적발 비중(건수기준)]



자료: 관세청

3.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사업: 단기적 재정절감을 위한 임차방식 전환 지양 필요

가. 개 요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사업은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과 신종 마약류 등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통해 불법·위해물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억 1,200만원(△39.0%) 감액된 22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6년도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3,623	3,623	2,211	△1,412	△39.0
분석장비도입 및 교체	1,183	1,183	-	△1,183	△100.0
임차방식 분석장비	1,154	1,154	925	△229	△19.8
기타 일반분석장비	85	85	85	-	-

관세청은 분석장비 도입 및 노후 장비 일시교체를 위해 2026년도부터 자산취득방식에서 임차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25년 11억 8,300만원이 편성된 자산취득비를 2026년에는 편성하지 않고 시험연구비 내의 임차료로 9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음.

한편, 2025년 기타 일반분석장비 교체 및 도입을 위해 편성된 자산취득비 8,500만원은 2026년에도 동일하게 편성되었음.

9) 일반회계-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1231-301)(중앙관세분석소)

[2025년 및 2026년 분석장비도입 관련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안	산출내역
1,183	○ 자산취득비(430-01) : 1,183 - 분석장비 도입 및 노후 장비교체 : 분석장비 11대 × 107.5 = 1,183	925	○ 시험연구비(210-13) : 925 - 임차방식 도입 분석장비 임차료 (925) :**'26년임차 분석장비 32대×7.2×1회=228** :'23년임차 분석장비 17대×10.3×4회=697
85	○ 자산취득비(430-01) : 85 -기타 일반분석장비 교체 및 도입(85) : 분석장비 11대×7.7 = 85	85	○ 자산취득비(430-01) : 85백만원 - 기타 일반분석장비 교체 및 도입 (85) : 분석장비 10대×8.5 = 85

자료: 관세청

나. 검토의견

관세청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분석장비 도입방식을 자산취득 방식에서 임차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자산취득 방식에 비해 총 7억 2,300만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향후 분석장비 도입 시 단기적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 방식으로의 전환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관세청은 2026년 분석장비 도입방식을 자산취득 방식에서 임차 방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하여 2026년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급증하는 분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가의 노후 장비 교체와 신규 첨단 장비 도입이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으로, 대규모 초기자금 소요를 분산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산취득 방식에서 임차 방식으로 전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6년에 도입하는 분석장비 17종 32대에 대한 도입 방식별 비용을 비교해 보면, 자산취득 방식은 총 38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임차 방식은 2026년부터 5년간 총 45억 6,000만원의 상환액이 발생하여 자산취득 방식에 비해 총 7억 2,300만원(18.8%)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자산취득 방식의 분석장비 도입 비용]

(단위: 대, 백만원)

구분	장비명(17종)	수량	단가	예상가	설치세관
해외직구 유해성	X-선 형광분석기(XRF)	3	313	939	서울, 인천, 평택
	X-선 형광분석기(ED-XRF)	1	125	125	중앙
	마이크로웨이브	1	132	132	중앙
마약류 안전성	기체질량분석기(GC/MS)	3	150	450	공항, 부산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2	115	230	중앙, 공항
공산품	X-선 회절분석기(XRD)	1	220	220	서울
	주사전자현미경(SEM)	2	212	424	부산, 인천
	적외선 분광기(FT-IR)	3	110	330	중앙, 서울, 평택
	비중계	2	35	70	중앙, 인천
	회전점도계	2	28	56	중앙, 인천
	표면장력계	2	50	100	중앙, 인천
	석유증류기	1	62	62	부산
농식품	전위차적정기	2	102	204	서울, 평택
	지방추출기	2	56	112	중앙, 인천
	근적외선분광기(FT-NIR)	1	191	191	중앙
	당도계	2	65	130	중앙, 서울
유전자	세포핵산추출기	2	31	62	부산, 인천
합계		32	120	**3,837**	

자료: 관세청

[임차 방식의 분석장비 도입 비용]

(단위: 백만원)

임대기간(5년) (2026.11~2031.11)	횟수	회차	분기별 상환 금액				합계
			1/4	2/4	3/4	4/4	
2026년	1	1	-	-	-	228	228
2027년	4	2~5	228	228	228	228	912
2028년	4	6~9	228	228	228	228	912
2029년	4	10~13	228	228	228	228	912
2030년	4	14~17	228	228	228	228	912
2031년	3	18~20	228	228	228		684
총 납입횟수	20		**총 상환금액**				**4,560**

주) 상환금 산출 : 최근5년 최고금리[회사채(AA-), 5.736%]+조달투찰금리(1.8%)=7.536% 적용

자료: 관세청

즉,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분석장비 도입방식을 임차 방식으로 전환한 것인데, 자산취득 방식에 비해 향후 5년간 총 7억 2,300만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향후 분석장비 도입 시 단기적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 방식으로의 전환은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2026 K-Customs Week 개최 사업(신규): 우리 수출기업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2026 K-Customs Week 개최’** 사업은 주요국 관세청장 및 국제기구를 초청하여 미국 관세정책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국가별 정책 현황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억 3,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0)]

[2026년도 2026 K-Customs Week 개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FTA 및 국제협력	2,149	2,149	1,950	△199	△9.3
국제회의개최 및 참가 지원	775	775	726	△49	△6.3
2026 K-Customs Week 개최	-	-	437	437	순증

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고관세 시대로 무역환경이 전환되면서 비특혜원산지[11)] 등 생소한 수출여건에 직면한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자국우선주의 등 보호무역에 대응한 관세당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2026 K-Customs Week 개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10) 일반회계-FTA 및 국제협력(1531-300)(국제관세협력국)

11) 기존 FTA 특혜 원산지기준과 달리 상호관세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美 CBP에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건별로 원산지국을 판정함.
(예) 중국산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을 사용하여 국내 제조한 TV의 경우,
한미FTA 0% → ‘실질적 변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37.5% 고관세 부과

[2026 K-Customs Week 개요]

○ (명칭)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2026 K-Customs Week
○ (주제) 미국發 글로벌 통상 파고 극복을 위한 전략적 관세협력 강화
○ (일정) 2026년 상반기 / 한국, 서울
○ (예산) 4억 3,700만원
○ (참석) 해외 관세당국, 국제기구, 관련 기관, 수출입기업, 학계 등
① 주요교역국 관세당국* 대표단(15개국 40여명)
* 미국 CBP, 핵심 글로벌 공급망 당사국, 우리나라 경유 대미 수출국 관세당국 등
② WCO·WTO 등 국제기구(10여명)
③ 대미 수출기업(500여개 이상)
○ (구성) 4개 분야
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12] 전문가 초청 설명회, ② 고위급 양자회의, ③ 세미나,
④ 민관협력회의

자료: 관세청

나. 검토의견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만큼, 미국 관세정책 설명회 등에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도 긴밀히 협력하는 등 2026 K-Customs Week 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K-Customs Week 사업은 2023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당시 관세청장 등 78개국 관세당국 대표단,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전문가, 국내외 기업인 등 650여명이 참여하여 관세청장 회의(전체・양자・다자), 정책 세미나(8개 세션), 비즈니스 미팅(해외관세당국-우리기업), 관세기술전시회 등의 행사가 추진되었음.

관세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대응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2026 K-Customs Week'에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전문가를 직접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정책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국가별 대응 방안 공유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함.

12)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최근 관세청의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13]를 보면, 대미 수출 기업들은 미국 통관절차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 수출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66.3%), 비특혜원산지 판정(11.1%), 품목분류(10.5%) 등 실무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개요]

○ 설문기간/주관 : 2025.8.14.(목)~8.27(수), 9일간 / 관세청
○ 설문대상 : 대미 수출(2024년 ~ 2025년 상반기) 중소·중견기업 중 응답기업 667개사
○ 설문내용 :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식, 대응방안 구비 현황과 수출 전망 미국 통관절차 상 애로사항, 정부 지원분야와 관세청 기업지원 효과

자료: 관세청

따라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현직 전문가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요성·시급성을 고려하여 2026 K-Customs Week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2026 K-Customs Week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13)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5.9.8.

조달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은 3,92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3억원(7.2%) 증가함.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3,664	3,664	3,927	263	7.2
총수입	3,664	3,664	3,927	263	7.2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은 2,961억원으로 전년 대비 509억원(20.8%) 증가함.[1)]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2,452	2,452	2,961	509	20.8
총지출	2,452	2,452	2,961	509	20.8

문의 : 김선영 예산결산조사관 olive114@assembly.go.kr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은 1개 회계(조달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7,783억원으로 전년 대비 406억원(5.5%) 증가함.

[2026년도 조달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조달특별회계	7,377	7,377	7,783	406	5.5
합 계	7,377	7,377	7,783	406	5.5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7,783억원으로 전년 대비 406억원(5.5%) 증가함.

[2026년도 조달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조달특별회계	7,377	7,377	7,783	406	5.5
합 계	7,377	7,377	7,783	406	5.5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조달청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1개(4억 6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조달인프라 구축’ 사업은 조달품질원에 직원 관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조달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조달특별회계]		
1	조달인프라 구축	406
총지출		406

한편, 조달청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 등 총 5개임.[3)]

[2026년도 조달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조달특회계]					
1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49,706	82,706	33,000	66.4
2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14,436	18,854	4,418	30.6
3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2,968	10,000	7,032	236.9
4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CDA)	2,644	4,534	1,890	71.5
5	공급망 대응 인프라 구축	477	3,072	2,595	544.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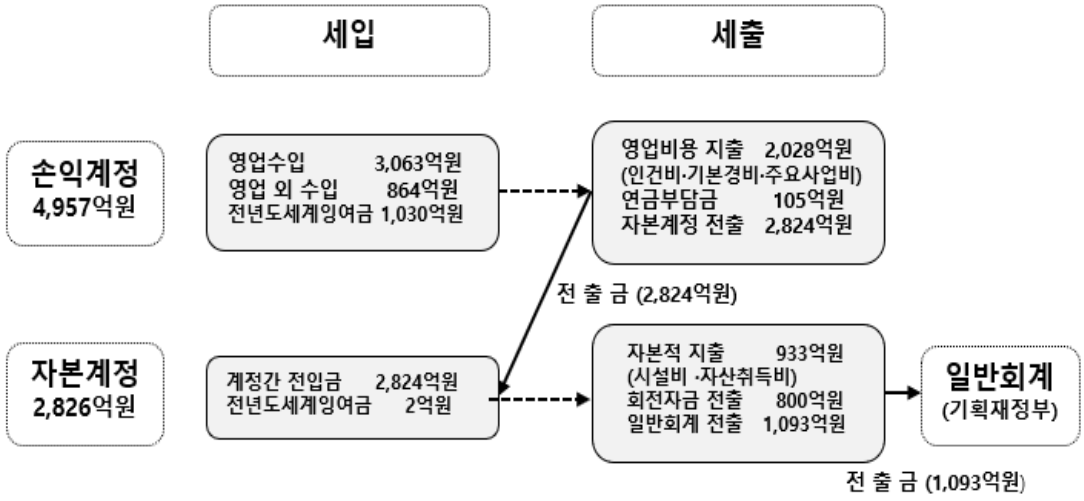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조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조달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조달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손익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내부거래 재정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계정 간 거래인 자본계정 전출 2,824억원, 회계 기금간 거래인 공무원연금부담금 105억원, 여유자금운용으로 회전자금 전출금 800억원, 회계 간 거래인 일반회계 전출 1,09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조달청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중소·벤처・창업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혁신조달 강화, 원자재 비축 역량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을 들 수 있음.

혁신조달 강화와 관련하여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실증 및 해외실증 예산을 각각 624억원,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R&D 예산을 10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음. 또한 원자재 공급망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철금속 비축재고 확대를 위한 원자재 비축자금 800억원과 경남비축창고 신축을 위한 예산 31억원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조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 및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은 지속적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미계상되고 있으므로 조달청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공공혁신조달사업(해외실증)은 해외 공공기관의 시범사용을 통해 국내 혁신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고 수출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조달청은 시범사용 이후 후속구매 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 효과성 검증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시범사용과 후속구매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조달청은 비철금속 목표재고일수를 단순 산술평균으로 관리하여 일부 금속의 초과 확충이 다른 금속의 부족분을 상쇄하는 착시 효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목표재고일수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조달특별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 세입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 은 정부 출연금·국고보조금 등의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급여 환급금, 과오지급금 회수금 등이 수납되는 세입과목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음.[4)]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 은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등 정부의 재산·금융·자산·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이자수입이 수납되는 세입과목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편성되지 않았음.[5)]

[2026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	-	-	-	-	-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	-	-	-	-	-

4) 조달특별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59-596)(기획조정관)

5) 조달특별회계-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54-546)(기획조정관)

나. 검토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 및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은 지속적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 미계상되고 있으므로 조달청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 및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예산에는 미계상되고 있는 상황임.

먼저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의 경우 매년 8억원 이상이 징수결정되어,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9,000만원까지 수납되었으며 2024년에는 2,500만원이 수납되었음.

[2021년~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	-	-	-	865	25	-	0.3	840	-
2022	-	-	-	-	846	6	-	0.7	840	-
2023	-	-	-	-	930	90	-	9.6	840	-
2024	-	-	-	-	865	25	-	2.8	840	-

자료: 조달청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은 2023년 이후 매년 2,000만원 이상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발생하고 있고, 2024년에는 2,400만원이 수납되었음.

[2021년~2024년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	-	-	-	1	1	-	100.0	-	-
2022	-	-	-	-	2	2	-	100.0	-	-
2023	-	-	-	-	21	21	-	100.0	-	-
2024	-	-	-	-	24	24	-	100.0	-	-

자료: 조달청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 및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의 세입예산 미편성에 대해 조달청은 예산 편성 당시 수납액 발생 여부 등을 예상하기 곤란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임.

조달청의 설명과 같이 과오지급금 반납금 등은 세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연구개발비 출연금, 보조사업비 교부금에 대해 발생 이자와 사업비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실제 관련 비용이 반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 편성이 필요함.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 연구개발비 잔액·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지원 사업 사업비 이자 반납 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내역	징수결정일	수납일	수납액
기타경상 이전수입(손익)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사업 2023년도 사업비 반납	2024. 12. 17.	2024. 12. 26.	2,727,380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사업 2023년도 사업비 반납	2024. 12. 17.	2024. 12. 26.	7,549,990
기타재산 이자수입(손익)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이자 반납	2024. 12. 17.	2024. 12. 26.	4,269,430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2024년) 이자 징수	2024. 12. 31.	2025. 1. 2.	430,020

자료: 조달청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2023년부터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6]을 실시하고 있고, 2024년에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잔액 및 이자가 반납되어 연구개발비 잔액은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으로, 이자는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으로 각각 수납처리되었음.

또한 2024년 신규 반영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7]에서는 사업비 이자가 반납되어 2025년에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 계정으로

6) 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본예산(A)	추경	
2,000	2,968	2,968	10,000

자료: 조달청

7)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1233-331) 내내역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본예산(A)	추경	
995	2,200	2,200	2,000

자료: 조달청

세입처리되었음.

따라서 조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국고보조사업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손익)과 기타재산이자수입(손익)에 대한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 보조사업 수행방식 및 일반용역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은 국내 우수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원(100%) 증액된 20억원이 편성되었음.[8)]

[2026년도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4,505	4,505	4,195	△310	△6.9
우리기업의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2,409	2,409	3,299	890	36.9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1,000	1,000	2,000	1,000	100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사업: 20억원
- 일반용역비: 2억원
- 민간경상보조: 18억원

자료: 조달청

이 사업은 절차가 복잡·다양하고 진입에 장기간 소요되는 해외조달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진출·계약·납품·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달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입찰(또는 벤더)등록, 입찰·계약서류 작성 지원, 인증·규격 취득, 시제품 제작, 물류·통관, 마케팅, 법률 지원 등임.

8) 조달특별회계-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1233-331)(기획조정관)

조달청은 한국조달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조달청은 주관기관으로서 사업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한국조달연구원은 관리기관으로서 참여기업 선정·평가, 사업 운영·관리, 정산, 사업비 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기관별 업무범위]

구분	조달청	한국조달연구원
역할	주관기관	관리기관
임무	종합지원사업을 총괄 운영·관리하는 기관	조달청장이 종합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해 위탁 선정한 기관으로, 참여기업 선정·평가, 사업 운영·관리, 정산, 사업비 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업무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2.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3. 참여기업 선정, 협약, 평가 등에 대한 총괄·지도 감독 및 지원금 교부	1.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홍보 2. 참여기업 모집, 선정 등에 관한 업무 3.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4. 참여기업과의 협약체결, 변경, 해지 등 사업관리 등에 관한 업무 5. 참여기업 중간점검, 최종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참여기업의 정산, 지원금 집행 지원 7. 참여기업의 민원 처리 8. 참여기업이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9. 참여기업의 사업 결과보고서 총괄 검토·점검·평가 10. 참여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11.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자료: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관리지침」(2024. 12.)

나. 검토의견

해외조달시장 진출 종합 지원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조달청이 보조사업자(참여기업)를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실제로는 보조사업 대부분의 업무를 일반용역계약을 통하여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 수행 방식 및 일반용역비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조달청이 보조사업자인 참여기업을 직접 관리해야 하나, 조달청은 기본계획 수립·관리기관 감독 및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업무만 수행하고, 이외에 보조사업 관련 대부분의 업무는 일반용역계약을 통해 한국조달연구원[9]에서 수행하고 있음.

9) 한국조달연구원은 국내외 각종 조달 정보를 수집 · 분석하고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조달관련 문제를 종합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 및 예산 목적과의 적합성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난 후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10)]

조달청의 실제 보조사업 운영 방식을 보면 보조사업자인 참여 기업이 한국조달연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조달연구원이 신청 서류 검토·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종 후보 기업을 선정하며, 조달청이 이를 최종 승인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선정절차 흐름도]

❶ 신청·접수	❷ 신청 서류 검토	❸ 타당성 평가	❹ 최종 검토·승인
한국조달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청
참여기업이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	제출 서류 검토를 통해 참여기업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해당 확인	서비스별 적정성, 지원타당성 평가로 최종 후보 기업 선정	관리기관의 검증을 종합 판단 후, 최종 지원 대상 확정

자료: 조달청

한국조달연구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조사업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보조사업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보조사업 수행방식이 간접보조사업이 아님에도 간접보조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으로 조사·분석하여 공공조달분야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6년 1월에 설립된 민간연구기관임.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정보공시를 하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자 관련 다양한 규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달청의 이러한 보조사업 수행 방식은 사실상 보조사업자의 역할을 하는 한국조달연구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보조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한국조달연구원 위탁 없이 조달청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 또는 한국조달연구원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조사업 수행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용역비(2억원)는 보조사업 수행 방식을 결정한 후 반영 필요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공공혁신조달사업(해외실증): 사업 성과관리체계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공공혁신조달사업(해외실증)’** 사업은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한 뒤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실제 사용환경에서 제품 성능과 품질을 검증받고, 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0억원(42.9%) 증액된 200억원이 편성되었음.[11)]

[2026년도 공공혁신조달사업(해외실증)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	49,706	49,706	82,706	33,000	66.4
공공혁신조달사업(해외실증)	14,000	14,000	20,000	6,000	42.9

[공공혁신조달사업(해외실증)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공공혁신조달사업(해외실증): 200억원 - 제품당 평균금액 약 2억 3,400만원 × 85개 제품

자료: 조달청

이 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이하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① 혁신기업이 조달청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② 조달청은 해외 공공기관과 혁신기업을 매칭하여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③ 혁신기업이 해외 공공기관에 시범구매용 제품을 납품하여 ④ 해외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시범사용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11) 조달특별회계-조달물자 구매 및 관리지원(자본)(1237-433)(신성장조달기획관)

나. 검토의견

공공혁신조달사업(해외실증)은 해외 공공기관의 시범사용을 통해 국내 혁신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고 수출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조달청은 시범사용 이후 후속구매 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 효과성 검증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시범사용과 후속구매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공공혁신조달사업(해외실증)은 조달청이 2019년부터 시작한 공공혁신조달사업(국내실증)을 해외로 확장한 것임. 해외 공공기관을 테스트베드 삼아 혁신제품의 기술·사용성을 검증하여 제품의 현지화 및 판로지원을 위한 초기실적(Track Record)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2023년 시작되었음.

조달청은 이 사업을 통해 2023년 7개 제품, 2024년 29개 제품을 지원하였고, 2025년 8월 현재 40개 제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85개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임.

[공공혁신조달사업(해외실증)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23	2024	2025. 8.	2026(안)
제품 수	7	29	40	85
예산액	1,200	7,000	14,000	20,000
지원액	1,096	6,493	8,374	20,000

자료: 조달청

이 사업의 목표는 단순히 국내 혁신제품을 해외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성능 및 품질평가를 통해 해외 수출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에 있음.

그러나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해 시범사용 후 후속구매 결과를 파악하고 있는 국내 실증사업과는 달리, 해외 공공기관의 시범구매 이후 후속구매 실적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조달청은 해외실증 전·후, 참여 기업의 수출실적 비교 및 실증 국가에 대한 후속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해외실증 참여 이후 기업의 수출실적 증감률이 약 168%이고 2023년 지원한 7개 제품이 해외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6월까지 총 665만 달러(약 98억원)의 해외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 자료는 기업 전체의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수출 증가가 해외

실증사업의 직접적인 결과인지, 제품 자체의 경쟁력에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해당 자료만으로는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조달청은 2026년 예산안을 2025년에 비해 60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사업 확대에 앞서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혁신제품의 수출(후속구매) 실적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시범사용 결과와 후속구매, 수출 성과 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성과관리 및 추적조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회전자금 전출금 사업: 비철금속 재고 산정방식 개선 필요

가. 개 요

‘회전자금 전출금’ 사업은 조달특별회계의 잉여금 일부를 회전자금으로 적립하여 조달물자대금 대지급 및 원자재 비축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800억원이 편성되었음.[12)]

[2026년도 회전자금 전출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회전자금 전출금	80,000	80,000	80,000	-	-

[회전자금 전출금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회전자금 전출금: 800억원
- 비철금속 구매자금: 800억원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당초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2024. 12. 19.,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027년까지 6대 비철금속 60일분을 확보할 계획(2025년 55일분 → 2026년 58일분 → 2027년 60일분)이었으나, 이 일정을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60일분(2025년 58일분 → 2026년 60일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2026년 목표비축일수 달성에 필요한 자금은 총 2,548억원으로, 이 중 1,746억원은 회전자금 전출금(비철금속 구매자금), 희소금속 이관금액, 지급예비 시재액을 활용하여 확보하였고, 2026년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800억원이라는 설명임.

12) 조달특별회계-회전자금 전출금(9701-971)(공공물자국)

[회전자금 전출금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억원)

목표비축량 (60일분) 필요자금(A)	2025년 확보 비축자금				2026년 필요자금 (A-B)
	회전자금 전출금	희소금속 이관금액	지급예비 시재액	소계 (B)	
2,548	700	83	965	1,748	800

주) 2025년 회전자금 전출금 예산액은 총 800억원으로 비축물자 구매자금 700억원, 긴급조달 자금 1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조달청

나. 검토의견

비철금속 중 구리와 주석의 재고 확충량 실적이 예산상 목표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철금속 전체의 목표재고일수상으로는 연간 재고확충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목표재고일수의 산정 방식 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조달청은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조달청은 2024년 결산 심사 시 비철금속 전체의 재고량이 계획된 목표재고일수 53일을 충족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향후 순차적으로 60일분까지 재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2024년에는 알루미늄(△1일), 구리(△2일) 등 주요 금속의 재고가 목표에 미달하였음에도, 전체 평균 재고일수는 53일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음.

[비철금속 재고일수]

(단위: 일)

품명	2024년			2025년			2026년
	목표 재고일수 (53일분)	연말 재고일수	과부족	목표 재고일수 (58일분)	2025. 8. 재고일수	과부족	목표 재고일수 (60일)
알루미늄	65	64	△1	70	70	-	73
구리	50	48	△2	57	56	△1	60
납	31	33	1	26	28	2	25
아연	36	36	-	48	58	10	55
주석	69	70	1	76	75	△1	80
니켈	70	70	-	72	78	6	70
평균	53	53	-	58	60	2	60

자료: 조달청

2025년 8월 현재 구리(△1일), 주석(△1일) 등 일부 품목은 목표(58일분)에 미달했으나 전체 평균 재고일수는 60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반면 아연(+10일), 니켈(+6일) 등은 목표치를 크게 초과해 품목별 재고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조달청이 비철금속 전체 재고일수를 단순 산술평균으로 관리하는 데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산정 방식은 일부 금속의 초과 확충이 다른 금속의 부족분을 상쇄하는 착시 효과를 초래하여 실제 주요 금속의 재고 확충 부족이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또한 금속별 재고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도 존재함.

따라서 조달청은 금속별 목표재고일수를 개별적으로 설정·관리하는 등 현행 목표재고일수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비철금속의 재고목표 및 실제 달성 여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5. 비축 마스크 재고순환비용 사업(신규): 마스크 재고의 효율적 관리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비축 마스크 재고순환비용’** 사업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비축마스크를 폐기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9,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3)]

[2026년도 비축 마스크 재고순환비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5,007	15,007	15,625	618	4.1
비축물자 보관 및 관리 지원	2,069	2,240	3,483	1,414	68.3%
비축 마스크 재고순환비용	-	-	95	95	순증

[비축 마스크 재고순환비용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비축 마스크 재고순환비용: 9,500만원
- 마스크 1,900만장 × 5원 = 9,500만원

자료: 조달청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 · 국가위기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축품목은 비철・희소금속류, 방산물자용 원자재, 긴급수급조절물자, 경제안보품목 등임.[14)]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공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발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2020. 4.)되었고, 2025년 9월 기준 마스크 비축목표량은 3,700만장임.

13) 조달특별회계-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1235-334)(공공물자국)

14) 「비축대상물자 고시」(기획재정부고시)

나. 검토의견

마스크는 감염병 위기 상황 등에 대비하여 일정 수량 비축할 필요성이 있으나 유통기한이 있는 품목 특성상 현행 구입·보관·방출·폐기 체계로는 효율적 재정운용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요 예측에 기반한 탄력적 비축과 연간공급계약 도입 등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조달청은 회전자금으로 마스크를 구매하여 민간 창고에 보관·관리[15]하고 있으며, 마스크는 비철·희소금속 등과 달리 유통기한(3년)이 있어 유통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공공기관 등에 유상 방출하고 있음.[16]

[연도별 마스크 매입량·방출량·재고량]

(단위: 만장,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9.
매입량	수량	14,019	1,200	6,576	5,900	1,000	-
	금액	98,634	1,653	7,036	5,936	613	-
방출량	수량	-	9,813	11,776	1,801	628	996
	금액	-	36,575	27,418	4,322	1,012	1,097
재고량	수량	14,019	5,406	205	4,304	4,676	3,680
	금액	98,634	15,976	485	10,158	4,483	3,386

주 1) 비축량·재고량은 재고원가(이동평균법), 신규 추가 비축량은 계약금액, 방출량은 판매금 기준으로 산정
2) 2020년도는 정책물량, 공적마스크 판매 제도 등을 통해 운영하여 비축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자료: 조달청

그런데 2023년 5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이후 마스크 수요가 줄면서 방출량이 2023년 1,801만장에서 2025년 9월 기준 996만장으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비축 마스크 3,680만장의 절반 가량인 1,851만장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월 사이에 유통기한이 만료되어 폐기해야 하는 상황임.

[유통기한 만료 마스크 수량(2025. 10. ~ 2026. 1.)]

(단위: 만장)

구분	2025. 10.	2025. 11.	2025. 12.	2026. 1.	합계
유통기한 만료 마스크	115	388	1,346	2	1,851

자료: 조달청

15) 비축마스크 보관 비용은 2024년 기준 7억 5,700만원임.

16) 2023년 평균 매입비용은 80.5원(1장당)이었고, 2025년 판매금액(1장당)은 1월 44원, 2월 37원, 3월 21원, 4월 21원이었음.

또한 잔여 유통기한이 1년 내외(만료일 2026. 2. ~ 2027. 1.)인 마스크 재고는 1,868만장으로, 이 역시 방출이 되지 않을 경우 2027년에 폐기되어야 함.

마스크는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의 특성상 강제적으로 유상방출・신규구매라는 재고 순환을 해야 하고, 유상방출이 되지 않을 경우 전량 폐기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구입・보관・방출・폐기 체계로는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감염병 위기 시 대응 역량을 유지하면서 유통기간 만료로 인한 폐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스크 재고의 일정 비율을 안전재고로 두되 나머지는 수요 예측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현행 최저가 입찰을 통한 일괄구매방식을 연간공급계약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마스크 적정 비축 규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국가데이터처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총수입은 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2.9%) 증가함.[1)]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36	36	37	1	2.9
총수입	36	36	37	1	2.9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총지출은 4,5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1억원(△19.2%) 감소함.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5,628	5,628	4,547	△1,081	△19.2
총지출	5,628	5,628	4,547	△1,081	△19.2

문의 : 김선영 예산결산조사관 olive114@assembly.go.kr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억원(2.9%) 증가함.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36	36	37	1	2.9
합 계	36	36	37	1	2.9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4,5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1억원(△19.2%) 감소함.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5,628	5,628	4,547	△1,081	△19.2
합 계	5,628	5,628	4,547	△1,081	△19.2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가데이터처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사업은 편성되지 않았음.[2)]

한편,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경제총조사’, ‘국제통계협력강화’ 사업 등 총 4개임.[3)]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경제총조사	1,427	66,256	64,829	4,543.0
2	동북 수입대체경비	17	27	10	58.8
3	국제통계협력강화	2,315	3,153	838	36.2
4	개도국 다자 통계지원(ODA)	2,812	3,690	878	31.2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국가데이터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5년 주기의 경제총조사 실시, 데이터 활용지원 강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및 AI 기반의 데이터 연계 · 분석 등에 예산을 확대 편성한 점임.

2026년도 국가데이터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은 통계인재개발원 교육비 및 시설 사용료 수입 추이를 반영하여 증액할 필요가 있고, 통계생산대행 수입액(수입대체경비)이 세출액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통계품질진단 및 품질개선 컨설팅의 개선과제 이행률이 낮은 상황이므로, 개선과제의 조기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사후관리 강화 및 이행점검 체계 정비가 필요함.

셋째,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경제총조사의 온라인조사 비중을 10%로 설정했으나 이는 과거보다 낮은 수준이며, 통계조사원의 과다한 중도 포기로 조사에 차질이 있었던 2021년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원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온라인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적정 규모의 세입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은 통계인재개발원 교육비 및 시설 사용료(수입대체경비), 통계생산 대행료(수입대체경비), 지역통계조사 대행료(수입대체경비)가 수납되는 세입과목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00만원(1.4%)이 증액된 11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1,151	1,151	1,166	15	1.4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예산안 세부내역]

○ 통계인재개발원 교육비 및 시설 사용료 수입: 3억 3,600만원
○ 통계생산대행 수입: 6억 2,500만원
○ 지역통계조사대행 수입: 2억 500만원

자료: 국가데이터처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중 통계인재개발원의 교육비 및 시설 사용료 수입의 예산액은 2022년 4억 4,700만원이었다가 2023년에는 3억 5,4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2024년부터 2026년 예산안까지는 3억 3,600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음.

4) 일반회계-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69-691)(운영지원과)

반면 수납액은 2022년 3억 600만원이었다가 2023년에는 3억 5,000만원, 2024년은 3억 9,6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7월까지 2025년 예산액의 78.3%인 2억 6,300만원이 수납되었음.

[통계인재개발원 교육비 및 시설 사용료 예산액 및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수납액(B)	수납률(B/A)
2022	447	306	68.5
2023	354	350	98.9
2024	336	396	117.9
2025. 7.	336	263	78.3
2026(안)	336		

자료: 국가데이터처

나. 검토의견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은 통계인재개발원 교육비 및 시설 사용료 수입 추이를 반영하여 증액할 필요가 있고, 통계생산대행 수입액(수입대체경비)이 세출액과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중 통계인재개발원 교육비 및 시설 사용료 수입은 집합교육 시 교육생이 납부하는 교육비·숙박비, 외부 기관에 강의실 등을 대여하고 받는 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집합교육 교육생이 납부하는 교육비·숙박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통계인재개발원 교육비 및 시설 사용료 수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수납액	집합교육생 교육비	집합교육생 숙박비	시설 대여료 등
2022	306	180	99	27
2023	350	197	141	12
2024	396	211	106	79
2025. 7.	263	124	68	16

자료: 국가데이터처

최근 4년간 통계인재개발원의 집합교육 과정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참여하는 교육생은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3,852명에서 2024년 3,983명으로 늘어났음. 통계인재개발원은 2025년 99개 과정을 개설하여 4,433명이 교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025년 7월 현재 81개 과정이 실시되어 2,46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음. 2026년에는 90개 과정에 4,40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음.

[통계인재개발원 집합교육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집합교육 과정 수	교육인원
2022	106	3,852
2023	108	3,890
2024	97	3,983
2025(예상)	99	4,433
2026(예상)	90	4,400

자료: 국가데이터처

그런데 국가데이터처는 이와 같은 교육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비 등 수입액 증가를 반영하지 않고 2026년 통계인재개발원 수입액을 2024년 및 2025년과 동일하게 3억 3,6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집합교육 관련 수입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통계인재개발원의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음.

한편, 통계생산대행 수입은 국가데이터처가 정부부처 등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에 대한 조사기획·현장조사·자료처리 등을 대행하면서 얻는 수입금으로, 지출은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로 계상됨.

통계생산대행 사업은 수입액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이므로 수입과 지출은 같은 금액으로 계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예산안의 수입액은 6억 2,500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3,6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수입액을 지출액과 동일하게 6억 3,600만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예산안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세입예산 및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지출예산]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사업명	수입액	사업명	지출액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69-691)	625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3036-652)	636

자료: 국가데이터처

<세 출>

2. 품질관리 사업: 통계품질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과제 이행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품질관리'** 사업은 통계이용자들이 고품질의 국가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의 전반적 과정(기획, 자료수집, 분석, 통계표작성, 공표 등)에 대한 품질진단 및 개선과제 관리,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2,000만원(8.6%) 증액된 27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6년도 품질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통계정책추진	6,673	6,673	6,790	117	1.8
품질관리	2,559	2,559	2,779	220	8.6%

품질관리 사업은 통계품질진단과 품질개선 컨설팅으로 구분됨.

통계품질진단은「통계법」제9조부터 제1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진단 대상 및 주기에 따라 정기통계품질진단, 수시통계품질진단, 자체통계품질진단으로 나뉨.

품질개선 컨설팅은 통계작성기관이 전문성 부족 등으로 기관 스스로 품질개선이 곤란한 경우 국가데이터처가 개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품질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임.

5) 일반회계-국가통계정책추진(1031-301)(통계정책국)

[통계품질진단 체계]

구분	정기통계품질진단	수시통계품질진단	자체통계품질진단
대상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 (인구총조사, 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등)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품질이 저하된 통계 (콘텐츠산업조사, 어업경영자금소요액조사, 옥외광고통계 등)	모든 통계 (국가데이터처에서 작성한 품질진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통계작성기관 스스로 소관 통계의 품질 사항을 점검)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환경부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등)
실시주체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통계작성기관
실시주기	5년	수시	매년
근거	「통계법」 제9조	「통계법」 제10조	「통계법」 제11조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품질관리 사업은 정기통계품질진단, 수시통계품질진단 및 품질개선 컨설팅 지원, 자체통계품질진단 등 3개의 내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2026년 예산안에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진단종수 확대, 품질개선컨설팅 지원종수 확대 계획에 따라 각각 2억원과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는 「제5기(2025~2029) 국가통계 품질관리 기본계획」(2024. 8. 수립)에서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를 개편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 종수를 기존 338종(4기, 2020~2024)에서 412종으로 확대하고, 품질진단 사후관리를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컨설팅 종수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에 따른 것임.

[2026년도 품질관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증감사유
품질관리		2,559	2,779	220	8.6	
	정기통계품질진단	2,344	2,544	200	8.5	진단종수 확대 (2025년 81종 → 2026년 90종)
	수시진단 및 품질개선 컨설팅 지원	174	194	20	11.5	품질개선 컨설팅 지원 종수 확대 (2025년 6종 → 2026년 7종)
	자체통계품질진단	40	40	-	-	

나. 검토의견

통계품질진단 및 품질개선 컨설팅의 개선과제 이행률이 낮은 상황이므로, 개선과제의 조기 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사후관리 강화 및 이행점검 체계 정비가 필요함.

국가데이터처는 국가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통계품질진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의 품질진단 개선과제 이행 현황을 보면, 품질진단을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미완료 상태임.

[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제시 현황]

(단위: 건, %)

연도	정기통계품질진단				수시통계품질진단				자체통계품질진단			
	진단 대상	개선과제 제시 건수	완료 (비율)	미완료 (비율)	진단 대상	개선과제 제시 건수	완료 (비율)	미완료 (비율)	진단 대상	개선과제 제시 건수	완료 (비율)	미완료 (비율)
2022	70	273	217 (79.5)	56 (20.5)	1	15	9 (60.0)	6 (40.0)	712	750	588 (78.4)	162 (21.6)
2023	67	240	148 (61.7)	92 (38.3)	1	9	9 (100)	-	745	760	465 (61.2)	295 (38.8)
2024	60	195	26 (13.3)	169 (86.7)	1	13	7 (53.8)	6 (46.2)	777	761	72 (9.5)	689 (90.5)

주) 2025년 8월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대상이 되는 통계는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평가,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주요한 통계로, 통계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 이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기통계품질진단 이후 공표주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제가 여전히 다수 존재함.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과제 미이행 건수(통계작성주기별)]

(단위: 건)

연도	개선과제 미이행 건수	통계 작성 주기								
		월	반기	분기	1년	2년	3년	4년	5년	기타
2022	56	3	0	0	23	3	19	2	5	1
2023	92	9	2	2	49	11	10	0	9	-
2024	169	7	1	4	115	9	10	0	20	3

주) 2025년 8월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품질개선 컨설팅의 경우에도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4종의 통계에 대해 12건, 9건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나 이 중 7건, 5건의 개선이 완료되지 않았고, 2024년에는 4종의 통계에 10건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으나 2025년 8월 현재 10건 모두 개선이 완료되지 않았음.

[품질개선 컨설팅 개선과제 제시 현황]

(단위: 건, %)

연도	진단대상	개선과제 제시 건수	완료(비율)	미완료(비율)
2022	4	12	5(41.7)	7(58.3)
2023	4	9	4(44.4)	5(55.6)
2024	4	10	-	10(100)

주) 2025년 8월 기준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품질진단결과에 따른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취소, 통계작성 승인 취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음.[6)]

그런데 2020년 이후 2025년 9월 현재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을 한 경우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대한 통계작성기관 지정 취소 1건[7)]으로, 개선요구 이행 확보

6) 「통계법」
제12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제16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9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① 통계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의 중지·변경 요구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41조(과태료) ③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 또는 재발 방지 조치계획 수립 요구(같은 항 제9호의 위반행위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를 위한 수단이 「통계법」에 마련되어 있음에도 국가데이터처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예산안에 정기통계품질진단 종수 및 품질개선 컨설팅 종수를 확대하여 반영한 만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출한 이행결과나 이행계획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개선의 이행이나 이행계획의 수정·보완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통계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 통계작성 승인 취소, 과태료 부과를 통해 통계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통계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7)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사업통계조사에 대한 정기통계품질진단 개선요구 미이행으로 인해 통계작성기관 지정이 취소되었음[통계청 고시 제2023-266호(2023. 7. 3.)]

3. 국제기구 통계협력 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증액 필요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제기구 통계협력’** 사업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개발도상국가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모니터링 역량 강화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통계 작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5,400만원(233.3%) 증액된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6년도 국제기구 통계협력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개도국 양자 통계지원(ODA)	4,766	4,766	2,610	△2,156	△45.2
국제기구 통계협력	66	66	220	154	233.3

[국제기구 통계협력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제기구 통계협력: 2억 2,000만원
- 일반수용비: 2,100만원
- 일반용역비: 1억 4,700만원
- 국내여비: 200만원
- 국외업무여비: 4,500만원
- 사업추진비: 500만원

자료: 국가데이터처

나. 검토의견

국제기구 통계협력 사업은 연수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직접 수행하던 방식에서 용역방식으로 변경할 계획 하에 예산을 4배 이상 증액 편성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일반회계-개도국 양자 통계지원(ODA)(7031-304)(기획조정관)

국제기구 통계협력 사업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가의 통계·교육 공무원을 초청하여 유엔 아시아·태평양 통계연수소(UNSIAP, United Nations Statistical Institute for Asia and the Pacific) 등과 공동으로 통계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에는 빅데이터 과정, SDG5 과정(재해통계 과정) 등 2개 과정 수행을 위한 사업비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5년 국제기구 통계협력 사업 내역]

구분	빅데이터과정	SDG5 과정(재해통계 과정)
개요	아태 지역의 성 통계를 위한 빅데이터 및 데이터사이언스 교육 과정 (Regional Training on Big Data and Data Science for Gender Statistics in Asia and the Pacific)	재해 위험 및 영향 측정에 관한 지역 훈련 과정 (Regional Workshop on Measuring Disaster Risks and Impacts)
교육내용	-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개념 및 기술 이해 - 공공 통계 및 SDG 성 지표에 적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유형 학습 -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 데이터 격차 해소 사례 분석 - 성 관련 개발 성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배양 - 빅데이터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한계와 윤리적 문제 의식	-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 관련 통계 - 재해 통계 작성 및 개발 사례 - 한국의 재해 통계작성 및 활용사례 - 문화체험
교육대상 및 인원	아시아·태평양지역 13개국 22명	아시아·태평양지역 14개국 30명
교육기간	2025. 4. 21.(월) ~ 4.25.(금) / 5일간	2025. 10. 27.(월) ~ 10. 31.(금) / 5일간
교육방법 및 장소	집합교육/ 통계인재개발원	집합교육 / 통계인재개발원
강사	- UNSIAP 1명 - UN Women 4명 - 국내 내부강사 1명	- IMF 및 UNSIAP 강사 - 국내 내부강사
주관	국가데이터처, UN Women Centre, UNSIAP	국가데이터처, UNSIAP, IMF
집행액	2,300만원	4,300만원(예정)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에는 연수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사업수행방식도 직접 수행에서 용역업체 위탁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임.

사업 확대 및 수행방식 변경 사유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우리나라가 제81차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총회(2025. 4.)에서 7회 연속 UNSIAP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선거 공약으로 아·태지역 통계발전에 지속적인 기여를 약속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국제기구(UNSAIP, UN Women 등)에서의 협력사업 요청에 따른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사업 확대가 필요하며, 사업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 수행방식을 직접 수행에서 용역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2026년 국제기구 통계협력 사업 계획(안)]

구분	공식 통계를 위한 데이터 과학 방법론	범죄 통계	2025년 국민계정체계(SNA) 도입	다차원 빈곤 통계
교육대상 및 인원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통계업무 담당 공무원 25명 내외	좌동	좌동	좌동
교육기간	5일	좌동	좌동	좌동
교육방법 및 장소	집합교육/ 통계인재개발원	좌동	좌동	좌동
소요예산	5,500만원	좌동	좌동	좌동

주) 대상국, 인원, 교육내용, 시기 등 세부사항은 향후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자료: 국가데이터처

이 사업은 2023년에는 3개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6,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2개 과정에 6,6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임.

그런데 2026년 예산안은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연수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 예산이 기존 4,5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

[2023년 이후 국제기구 통계협력 사업 현황]

(단위: 회, 백만원)

연도	연수 횟수	수행방식	예산액(집행액)	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 예산액(집행액)
2023	3	직접	66(64)	45(44)
2025	2	직접	66(66)	45(45)
2026(안)	4	용역	220	168

주 1) 2023년은 당초 2회 계획에서 UN Women 요청으로 1회 추가 실시(국가데이터처는 해당 연수 비용의 대부분은 UN Women에서 부담했다는 설명임)
2) 2024년은 통계역량강화 연수 미개최
3) 2025년은 집행예정액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사업수행을 직접 수행에서 용역 방식으로 전환 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관리의 효율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나 2회 ~ 3회 연수를 직접 수행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4,500만원이, 4회 연수를 용역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1억 6,800만원이 소요된다면 비용 증가의 폭이 과도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보기 어려움.

[국제기구 통계협력 사업 2025년 예산 대비 2026년 예산안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사유
일반수용비 (210-01)	37	21	△16	사업수행방식(직접→용역)에 따라 연수 운영비(강사료, 보조인력, 기념품 등) 일부가 용역사업비에 포함되어 감액
일반용역비 (210-14)	8	147	139	사업횟수(2→4회) 증가 및 수행방식 변경(직접→용역)에 따른 일반용역비 증액
국내여비 (220-01)	2	2	-	
국외업무여비 (220-02)	15	45	30	국제사회 협력사업 수요 증가로 국제기구 업무협의 국외여비 증액
사업추진비 (240-01)	4	5	1	사업횟수(2→4회) 증가에 따른 오・만찬비 증액
합계	66	220	154	

자료: 국가데이터처

따라서 2026년에 실시할 연수는 국제기구와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내용과 규모가 최종 확정되므로, 국제기구와의 협의가 완료된 후 교육내용・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경제총조사 사업: 온라인조사 확대 필요

가. 개 요

‘경제총조사’ 사업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경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매출·비용 등 경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경제·산업 정책 수립 및 GDP·GRDP 등 주요 경제통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5년 주기의 총조사가 실시되는 해라는 점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648억 2,900만원(4,543.0%) 증액된 662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6년도 경제총조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경제총조사	1,427	1,427	66,256	64,829	4,543.0

[경제총조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경제총조사: 662억 5,600만원
- 조사요원 인건비: 448억 1,200만원
- 조사표 및 조사용품,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임차료 등: 124억 2,400만원
- 일반용역비, 기타운영비: 90억 6,400만원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총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인 19개 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사업체명·대표자명·매출액·영업비용·종사자 수 등 37개 항목임. 조사방식은 조사원이 사업체에 직접 방문하는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PC·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한 온라인조사와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조사도 병행됨.

9) 일반회계-경제총조사(3033-306)(경제통계국)

나. 검토의견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경제총조사의 온라인조사 비중을 10%로 설정했으나 이는 과거보다 낮은 수준이며, 통계조사원의 과다한 중도 포기로 조사에 차질이 있었던 2021년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원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온라인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21년 실시한 경제총조사는 통계조사원의 중도 포기(중도포기율 17.5%)와 추가 모집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통계조사 인력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 수행에 문제가 있었음.

이에 대해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2021년에 실시한 경제총조사에 대해 통계조사 인력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비대면조사 활용 증대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음.

국가데이터처는 국회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2026년 경제총조사의 온라인조사 목표치를 10%로 설정하고, 대면조사를 위한 통계조사원을 기존 10,840명에서 9,797명으로 줄이는 대신 온라인조사의 통계품질 유지를 위해 스마트조사 관리자 263명과 데이터 프로파일링[10] 전담인력 14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2021년 대비 2026년 경제총조사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1년 경제총조사	2026년 경제총조사
현장조사 규모	약 53%(620만개 사업체 중 330만개)	약 44.4%(718만개 사업체 중 319만개)
온라인조사 목표 도입	-	온라인 조사 10% 의무 적용
스마트조사 관리자	-	신규 인력 263명(25일간 담당) (통계품질 유지 및 온라인 자료 검토)
프로파일링 도입	-	프로파일링 전담인력 14명 (5개월간 2,746개 기업 조사)
통계조사원	10,840명	9,797명 (온라인조사, 업무량 조정 등으로 1,043명 감소)
조사원 1일 업무량	사업체 수 9개(평균)/1일	사업체 수 10개(평균)/1일
예산	약 571억원	약 663억원

자료: 국가데이터처

10) 데이터 프로파일링(Data Profiling)은 데이터를 분석해 그 안에 담긴 구조·패턴·품질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 미리 점검하는 작업임.

그런데 과거 경제총조사의 온라인조사 응답률은 2011년 7.4%, 2016년 12.4%, 2021년 8.1%로 이미 2016년에 10%를 초과한 적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스마트조사 관리자 등 온라인조사 관리 인력을 대규모로 증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데이터처가 설정한 온라인조사 목표치는 기존 최고 실적에 미치지 못하는 다소 소극적으로 설정된 목표로 보임.

[경제총조사 온라인조사 응답률]

(단위: %)

연도	2011	2016	2021	2026(목표)
비율	7.4	12.4	8.1	10.0

자료: 국가데이터처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경제총조사 통계조사원의 중도포기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경제총조사의 경우 신규 채용 조사원이 많아 중도포기 인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조사항목의 난이도가 높고 응답 확보가 어려운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한 바 있었음.[11)]

2026년 조사에서는 통계조사원 수가 2021년에 비해 1,043명 감소함에 따라 1인당 담당 사업체 수가 1일 평균 9개에서 10개로 늘어날 예정임. 이에 따라 난이도가 높은 조사를 수행하면서 업무량까지 증가할 경우, 통계조사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2021년과 같은 중도포기 사례가 재발할 우려가 있음.

통계조사원의 중도포기는 조사원 재채용·재교육 등의 추가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조사 지연과 통계품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계조사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통계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도 온라인 조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12)]

참고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인터넷조사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일본은 우편조사 회수율이 90%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온라인·우편 등을 이용한 비대면조사가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11) 2021회계연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2022. 9.) p.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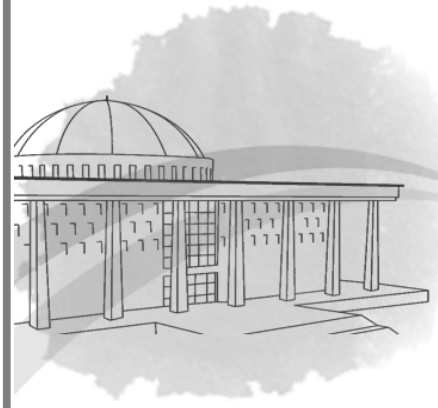
12) 이에 대해 국가데이터처는 통계조사원의 담당 사업체 수는 늘었으나, 행정자료 활용 증가(2021년, 12개 기관 37종 → 2026년, 15개 기관 41종)로 조사원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임.

[경제총조사 외국 사례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주기	매 5년	매 5년	매 5년
대상	약 620만개 중 330만개	약 800만개 중 420만개 (표본)	약 558만개
조사방법	전수 + 표본	표본조사	전수조사
응답방법	- 현장조사는 대면조사 - 인터넷조사 병행(인터넷 조사 품질 저하 등으로 현장 재확인 필요)	- 대면조사 하지 않음 - 약 420만개 표본 사업장 온라인 조사(인터넷, 이메일, 전화조사)로 데이터 수집	(기초조사) 사업체 운영 여부, 사업 종류 및 유형(면접조사 + 온라인, 우편) (활동조사) 매출액, 비용 등 조사(현장조사, 온라인)
프로파일 전담조직	프로파일 전담조직 없음	프로파일 전담조직 운영 (약 50여명)	프로파일 전담조직 운영 (약 30여명)
온라인조사 응답	인터넷조사 응답률이 낮고 입력자료 품질이 부실함	인터넷조사 응답이 보편화되어 응답률이 높음(2017년 99.9% 응답)	우편조사 회수율 90% 이상

자료: 국가데이터처

교육위원회



교육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은 7조 2,141억원으로, 전년 대비 7,983억원(△10.0%) 감소함.

예산은 5,414억원으로 전년 대비 491억원(10.0%) 증가한 반면, 기금은 6조 6,728억원으로 전년 대비 8,474억원(△11.3%) 감소함.[1)]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4,923	4,923	5,414	491	10.0
기 금	75,202	75,202	66,728	△8,474	△11.3
총수입	80,125	80,125	72,141	△7,983	△10.0

문의 : 고정철 예산결산조사관 gojc31@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은 106조 2,6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979억원(1.3%) 증가함.

예산은 99조 2,9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070억원(1.2%) 증가하고, 기금은 6조 9,6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909억원(2.8%) 증가함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980,896	958,458	992,966	12,070	1.2
기 금	67,788	67,978	69,697	1,909	2.8
총지출	1,048,684	1,026,436	1,062,663	13,979	1.3

주)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5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나. 예산안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4개 회계 26조 6,777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5,353억원(32.4%) 증가함

[2026년도 교육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3,717	3,717	1,307	△2,410	△64.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	50	73	23	45.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020	31,020	-	△31,020	순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6,636	163,068	173,163	6,527	3.9
영유아특별회계	-	-	92,233	92,233	순증
합 계	201,424	197,856	266,777	65,353	32.4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4개 회계(일반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 126조 4,324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 5,554억원(6.4%) 증가함.

[2026년도 교육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993,221	970,784	1,003,507	10,286	1.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256	3,256	2,333	△923	△28.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1,273	157,705	166,251	4,978	3.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1,020	31,020	-	△31,020	순감
영유아특별회계	-	-	92,233	92,233	순증
합 계	1,188,770	1,162,765	1,264,324	75,554	6.4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교육부 소관 2개 기금(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직원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은 14조 6,489억원으로 전년 대비 3,705억원(2.6%) 증가함.

[2026년도 교육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사학진흥기금	5,650	5,650	4,098	△1,552	△27.5
사립학교직원연금기금	137,133	137,133	142,391	5,257	3.8
합 계	142,783	142,783	146,489	3,705	2.6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교육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9개(4,986억 5,400만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됨.[2)]

그 중,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은 국가책임형 유아교육 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하며, 유지원, 어린이집 재원 3~5세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유아교육비, 방과후과정비, 기타필요경비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4,70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사업은 대학생들이 윤리적 AI 활용, AI정보의 비판적 평가 역량, AI를 이용한 실질적 문제해결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118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교육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대안교육 패널조사	400
2	교육기부 포털운영 및 기반조성	410
3	민간보육시설지원 이차 및 손실보전금	23
4	AI 디지털 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305
5	글로벌 교육지원 다자협력(ODA)	9,96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6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11,840
7	청년정책총괄지원	3,823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스템 고도화 사업(정보화)	1,555
[영유아특별회계]		
9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470,335
총지출		498,654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교육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대학혁신 지원’ 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 등 총 26개임.[3)]

[2026년도 교육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고등학교 무상교육	5,267	578,528	573,261	10,884.0
2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67,409	1,261,926	194,517	18.2
3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3,100	15,000	11,900	383.9
4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	82,778	93,490	10,712	12.9
5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12,400	18,943	6,543	52.8
6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4,265	7,540	3,275	76.8
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5,298	7,055	1,757	33.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8	국립대학육성사업	424,300	873,550	449,250	105.9
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001,000	2,140,335	139,335	7.0
10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182,700	262,461	79,761	43.7
11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658,772	699,616	40,844	6.2
12	전문대학 혁신 지원	555,500	590,725	35,225	6.3
13	인문사회 기초연구(R&D)	256,981	286,667	29,686	11.6
14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	593,048	620,798	27,750	4.7
15	국립대병원 지원	117,057	141,538	24,481	20.9
16	대학혁신지원	796,111	819,211	23,100	2.9
17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522,478	541,546	19,068	3.6
18	한국장학재단 출연	407,913	421,051	13,138	3.2
19	대학정보공시 제도 운영(정보화)	2,816	10,531	7,715	274.0
20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수입대체경비)	6,407	8,719	2,312	36.1
[영유아특별회계]					
21	영유아보육료 지원 ※ ‘25년 일반회계	3,240,039	3,644,273	404,234	12.5
2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25년 일반회계	1,961,911	2,138,316	176,405	9.0
[사학진흥기금]					
23	행복기숙사지원사업(융자)	29,737	67,907	38,170	128.4
24	학교경영 지원사업(수입대체경비)	1099	1843	744	67.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25	연금급여	4,921,681	5,266,435	344,754	7.0
26	생활안정자금대여	524,594	552,609	28,015	5.3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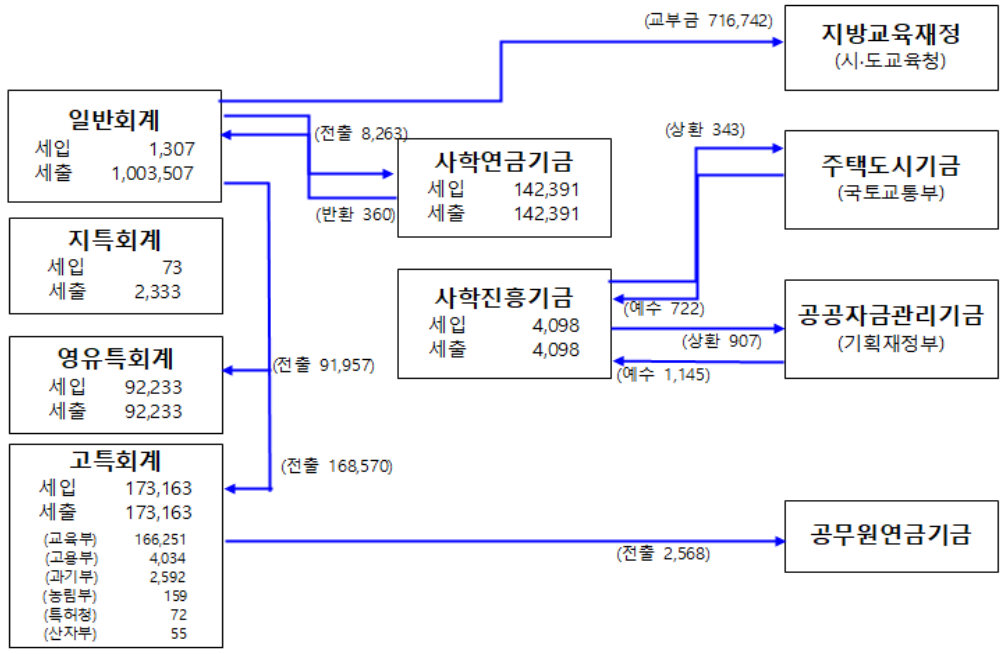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2개의 기금(사학진흥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영유아특별회계로 9조 1,956억 6,200만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16조 8,570억 4,800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8,262억 7,200만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567억 9,300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360억 3,600만원이 전출되었음

또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사학진흥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906억 82만원, 주택도시기금으로 342억원 6,500만원이 예수원금 및 이자로 상환되었음.

[교육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단위: 억 원)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를 위하여 기존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된 재원을 통합하여 「영유아특별회계」(9개 사업 9조 2,233억원)를 신설하는 점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 확충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6년도 예산안은 영유아특별회계가 신설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이 연장되며, 교육세 세입재원의 배분방식이 종전과 변경된다는 점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관련 법안의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은 연구중심대학 사업, RISE 사업, 글로컬대학 사업, AI 거점대학사업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사업추진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중복 투자 또는 투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각 사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교육부는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사업 등 종래 별도 사업으로 편성되어 오다가 2026년도에 RISE 사업으로 이관된 사업들이 RISE 사업체계에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고, 한편 향후 국회의 RISE 사업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RISE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통해 추진되는 정책과제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도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넷째, 2026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이자 예산은 제도 변경에 따른 학자금 대출 증가분과 2026년 재단채 조달금리를 적정한 수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한편 2026년 신규사업인 AI/SW 분야 학업장려대출 사업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인 AI/SW 관련 학과 선정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특별회계 신설·연장 :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교육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영유아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영유아특별회계는 2026년 신설되는 특별회계로서 그 세출예산안은 2025년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나누어져 있던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교육부 사업을 모아 편성됨에 따라 2025년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비해 그 규모가 크게 증액되어 9개 세부사업, 9조 2,233억원이 편성되었음.

한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현재 2025년 12월 일몰 예정이나, 그 유효기간이 연장될 것을 전제로 2026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출예산안(교육부 소관)은 2025년도에 비하여 5,032억원(3.2%) 증액된 16조 3,667억원임.

[영유아특별회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내역]

구분	2025년	2026년
영유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조 1,020억원 (1개 세부사업)	9조 2,233억원 (9개 세부사업)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15조 8,635억원 (54개 세부사업)	16조 3,667억원 (55개 세부사업)

주) 내부거래(연기금 전출)를 제외한 총지출 기준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첫째, 2026년도 예산안은 영유아특별회계가 신설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이 연장되며, 교육세 세입재원의 배분방식이 종전과 변경된다는 점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관련 법안의 심사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예산안에는 세출예산 기준 9조 2,233억원 규모의 영유아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영유아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없음.

한편 2026년도 예산안에는 세출예산 기준 16조 3,667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이 특별회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4)]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교육세 세입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분의 배분비율이 현행법 규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5)]

참고로, 2025년 9월 16일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25년 9월 25일에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연장하되, 그 세입예산 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음.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과 관련이 있는 법률안]

법률안	발의일자	주요내용
「영유아특별회계법안」 (의안번호 제2213036호, 문정복의원 대표발의)	2025.9.16.	- 이 특별회계 세입은 교육세 세입 예산 일부와 그 밖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며, 세출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소요비용 지원금 등으로 함 - 이 특별회계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3294호,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2025.9.25.	- 이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교육세 세입 중 금융·보험업자 징수분을 이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함

따라서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결과에 따라 특별회계 신설 여부 및 교육세 세입 배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안 심사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4) 예산안이 제출된 9월 2일 기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상설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4건 발의되어 있었음.

5) 현행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2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금액은 이전 연도 정산금을 제외할 경우 같아야 하나, 2026년도 예산안은 이와 다르게 편성되어 있음.

둘째,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바, 2026년 영유아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교육세 세입을 제외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각각 약 70%, 약 90%에 달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4조[6]에서는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

영유아특별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세 세입재원을 각각 영유아 교육·보육 사업 및 고등·평생교육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음.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에서 영유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교육세 세입 전입분은 2조 6,380억원(28.6%)에 불과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경우 교육세 세입 전입분은 2조 466억원(11.8%)에 불과함.

즉 영유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70% 이상은 영유아 교육·보육 세출사업과 연계성이 없는 (교육세 세입을 제외한)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교육세 세입을 제외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중이 거의 90%에 이른다는 점에서 사실상 일반회계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된 재원을 통합해 영유아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오히려 일반회계-특별회계 간 내부거래가 커짐에 따라 재정체계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7]도 있음.

---

6) 「국가재정법」
제7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7)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검토보고(2024.11.)

2.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사업: 다양한 사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 필요

가. 개 요

2026년도 예산안에는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4,777억원 증액된 8,733억원이 편성되었음.

주요 신규 또는 증액사업으로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내역사업 또는 내내역사업인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1,200억원, 신규), ‘AI 거점대학’(300억원, 신규) 및 ‘글로컬 거점국립대 지원’(2,340억원, 글로컬대학 사업예산 이관)과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거점국립대 지원분 1,200억원 신규 반영)이 있음.

[2026년도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관련 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사업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
국립대학육성사업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	1,200	2,836
	AI 거점대학	-	300	
	글로컬 거점국립대 지원	3,626	2,340	
	거점국립대 지원		2,622	
RISE	(지역혁신허브화)[8]	-	1,200	1,200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330	1,071	741
계		3,956	8,733	4,777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재구성

구체적으로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사업은 지역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분야에 학부, 석·박사, 연구소까지 ‘대학 안의 대학(혁신 단과대학/학부+대학원)’을 패키지 지원하는 것으로 2026~2030년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2026년에는 3개 대학에 각 400억원을 투자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비수도권 거점국립대학 9개 대학을 모두 지원한다는 계획임.

8) 2026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은 내역사업 구분 없이 단일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지역혁신허브화’가 RISE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나, 교육부는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별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개 대학에 지역혁신 허브화를 위한 예산 총 1,200억원이 신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AI 거점대학’ 사업은 AI 단과대학을 설치·운영하고, AI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며 GPU·NPU 등 AI 핵심인프라와 실습공간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 출연연 등과 산학연 협력 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6~2030년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2026년에는 3개 대학에 각 100억원을 투자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함.

한편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사업’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종래 선정된 글로컬대학 중 거점국립대 지원예산은 ‘국립대학육성사업’에, 국가중심대·사립대 지원예산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각각 편성되었으며, 거점국립대에 대한 글로컬대학 사업은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특성화 연구중심대학’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임.

그 밖에 RISE 사업에 지역혁신허브화를 위한 거점국립대 지원분 1,200억을 신규 반영할 계획이며, 거점국립대학에 투입되는 실험실습기자재 확충·국가연구소 지원·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거점-중소연합형 교육연구단 지원·대학원생 펠로우십 예산은 2025년 총 330억원에서 2026년 총 1,071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음.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사업 추진계획]

□ 사업 개요
 ㅇ (추진목표) 거점국립대를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연구·교육 허브로 혁신하여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 및 국가균형성장 달성
 ㅇ (지원기간/규모) 2026~2030년(5년), 2026년 1,200억
 ㅇ (추진내용) 지역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분야에 학부, 석·박사, 연구소까지 ‘대학 안의 대학(혁신 단과대학/학부+대학원)’ 패키지 지원

□ 주요 추진내용
 ㅇ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집중 육성분야 혁신 단과대학 육성
 ㅇ 거점국립대 중심의 지역 연구 생태계 활성화
  - 집중 육성분야 관련 임무 중심 R&D 프로젝트 수행, 정출연·과기원 등과 연구개발 전주기 협력 및 연구성과의 산업계 이전체계
  -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펠로우십 확대
  - 거점국립대 중심 학연산 연구혁신 클러스터 조성(캠퍼스 혁신파크 등 연계)
 ㅇ 대학 교육·연구력 제고를 견인할 우수교원 유치
  - 집중 육성분야 신규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학내 제도 개선 추진
  - 우수교원 유치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운영

자료: 교육부

[AI 거점대학 사업 추진계획]

□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지역 거점 국립대학(2026년 3개교)
  ○ (지원 예산) 2026년 총 300억(1개교당 100억원)
    ※ 사업관리비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전체 사업관리비 34.5억에 포함
  ○ (지원 기간) 2026 ~ 2030년, 5년(2+3)
□ 주요 내용
  ○ (교육체계) 지역 전략산업 등을 고려하여 AI 단과대학을 설치·운영*하고, 단과대학 내 학부-대학원이 연결된 체계 구축
    * AI 분야 뿐 아니라 모빌리티, 바이오 등 AI 융합가능 분야를 연계한 단과대학 구성 등
  - 전 학문 분야의 AI 융합교육, 전 학생의 AI 기본교육 등 AI 기반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전담기구를 구성·운영
  ○ (교육과정) AI 기술을 중심으로 기초수학-핵심이론-응용 프로젝트가 연계된 AI 전문 교육과정 개발
  - 다층적인 인재양성을 위해 AI 기초와 다양한 도메인 전공이 결합된 AI+X 교육과정 개발·운영 병행
  ○ (교육기반) AI 분야 실습 중심 교육과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GPU·NPU 등 핵심 인프라 및 실습공간 구축
  -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산업계·연구계와 인력교류를 통한 겸임교원 활성화 등을 추진
  ○ (연계지원) 학부생이 연구소에서 연구경험을 쌓을 수 있는 학부연구생 운영, 학·석·박 패스트트랙 신설(5.5년)을 통해 석·박사 진학 유도
  - AI 대학원에서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AI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기업, 출연연 등과 산학연 협력 활동 추진
  - AI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원)생 예비 창업가의 우수 프로젝트에 대한 AI 인프라 및 창업활동 비용 지원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사업은 연구중심대학 사업, RISE 사업, 글로컬대학 사업, AI 거점대학사업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각 사업추진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중복 투자 또는 투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교육부는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각 사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6년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사업 예산은 전년에 비하여 4,777억원(120.8%) 증액되었는바, 수도권 일극체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우수인재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각 대학이 산학연 협력의 핵심기반으로서 각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국가균형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점국립대 9개 대학[9]을 집중 지원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9)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그런데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1,200억원), ‘AI 거점대학’(300억원), ‘글로컬 거점국립대 지원’(2,340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내 지역혁신허브화 지원분(1,200억원)은 그 사업추진체계가 서로 다름.

구체적으로 보면,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사업은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10]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종래의 연구중심대학 지원사업[11]과 연계하여 추진될 것으로 보임.

‘AI 거점대학’ 사업은 국내 AI인프라 구축, AI기본교육과 AI실무인재・핵심인재양성 및 AI 산학연협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될 것으로 보임.

한편 ‘글로컬 거점국립대 지원’ 사업은 사업예산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이관하였으나, 종래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각 대학이 수립한 글로컬대학 사업계획의 틀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사업액 일부를 부담하며 각 지역의 대학・산업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RISE 거버넌스를 통해 각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지역의 특성과 이익에 최적화되도록 진행될 것임.

즉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을 위한 각 사업들은 그 사업추진체계나 사업목표, 정책적 고려사항 등이 서로 다른 측면이 있어 중복투자나 투자공백 또는 대학의 과도한 행정력 소모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12]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등 각 사업들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1조(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 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1)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2303-300) 등

12) 교육부는 2025년 9월 30일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열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을 논의하였음.

【일반회계】

<세 출>

3.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재원부담주체들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국고지원비율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732억 6,100만원(10,884%) 증액된 5,785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음.[13)]

[2026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고등학교 무상교육	5,267	5,267	578,528	573,261	10,884.0

이 사업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용 도서구입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것임.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 고등학교 무상교육
- 2026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30%)를 시도교육청에 교부
  - 2026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 581,983백만원
    - 학생수 1,212,464명× 단가 1,600천원 × 분담비율 30%
  - 2024년 정산액 : △3,455백만원

※ 지원 대상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자사고 등)

자료: 교육부

13) 일반회계 - 고등학교 무상교육(1602-300)(학생건강정책국)

나. 검토의견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비율에 대해 재원부담주체들의 재정여건, 현행법 규정의 취지와 일몰기한, 향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부담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9년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14] 후 2020학년도에 고등학교 2·3학년 대상으로, 2021학년도부터는 전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15]에 따라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고에서 지원해왔으나, 2024년 12월 동 규정이 일몰된 후 2025년도 본 예산에는 이전 연도 정산액 외에 2025학년도에 대한 무상교육 지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음.

[2020~2024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배분]

(단위: 억원)

연도	국가 (47.5%)	교육청 (47.5%)	일반지자체 (5%)	계 (100%)
2020년	6,460	6,460	680	13,600
2021년	9,431	9,431	993	19,855
2022년	9,146	9,146	963	19,254
2023년	9,097	9,097	958	19,152
2024년	9,447	9,447	994	19,889

14)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무상)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6673호(2019.12.3.)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그러나 2025년 8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16]가 신설되었으며, 이후 2025년 2학기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예비비 4,676억 8,200만원이 승인되었음.

2026년 예산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예산으로 필요비용의 30%가 편성되었는데, 이는 종래와 달리 비용의 47.5%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규정의 취지와 2025년에 결과적으로 연간 비용의 23.75%가 국고 지원[17]되었으므로 그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관련하여 각 재원부담주체들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국고지원 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21029호(2025.8.26)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17) 2025년 1학기에는 국고지원이 없었으며, 2학기에는 예비비 승인을 통해 47.5% 지원.

4. CAMPUS Asia(한일중) 사업: 사업단 조기 선정 등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CAMPUS Asia 사업(한일중)'** 사업은 동아시아 3국 대학 간 글로벌 학생 교류 및 공동·복수학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3,000만원(34.4%) 증액된 40억 2,5000만원이 편성되었음.[18)]

[CAMPUS Asia 사업(한일중)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글로벌 교육교류(비ODA)	19,398	19,398	20,826	1,428	7.4
CAMPUS Asia사업	4,449	4,449	5,479	1,030	23.2
(한일중)	2,995	2,995	4,025	1,030	34.4

이 사업은 한일중 대학 간 학생 교류 사업단 운영과 우리측 파견 학생의 체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보조사업임.

[CAMPUS Asia 사업(한일중) 사업예산 산출내역]

- (산출) 4,025백만원
  ※ CAMPUS Asia-한일중 4단계('26~'30) 추진에 따른 사업단 확대(20개→30개)
  • 사업단 지원(학생교류비) : 1,173백만원(30개 사업단×39.1백만원) (+391백만원)
  • 사업단 지원(프로그램 운영비) : 2,639백만원(30개 사업단×88백만원)(+639백만원)
  • 사업평가·운영비 : 213백만원(1식×213백만원)(전년동)

< 사업단 주요 지원내용 >

① 학생 지원 : 파견학생 대상 체재비·정착지원금·긴급보조비 지원
- 사업단별 파견학생 체재비 지원(학부생 월 90만원, 대학원생 월 100만원)
- 필요시 정착지원금 및 긴급보조비* 편성·지원 가능
- 파견학생에 대한 항공료 지원(학위 및 학기 교류 대상자 지원 원칙)

② 프로그램 운영 : 학생·사업단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
- 공동교육과정 개발비, 전문인력고용비, 세미나·워크샵 등의 행사개최비, 컨소시엄 간 회의비등

자료: 교육부

18) 일반회계 - 글로벌 교육교류(비ODA)(4333-302)(글로벌교육기획관)

나. 검토의견

교육부는 CAMPUS Asia(한일중) 사업의 4단계 사업단(2026~2030년) 선정이 지체되지 않고 이 사업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3국 실무협의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한일중 대학 간 사업단을 구성하여 학생교류 및 공동·복수학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1년 3국 합의에 따라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5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4단계 사업(2026~2030)이 시행될 예정임.

교육부는 한일중 3국이 4단계 사업단을 확대(20개→30개)하기로 합의[19]한 점을 반영하여 2026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0억 3,000만원(34.4%) 증액 편성되었다고 설명함.

다만 4단계 사업단은 3국 공동 공고 및 선정절차를 거쳐 확정되므로 4단계 사업 개시 시점(사업단 확대 시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데, 종래 사례를 살펴보면, 시범사업 사업단(10개)은 2011년 11월 선정되었고, 2단계 사업단(9개)은 2016년 10월에 선정되었으며, 3단계 사업단(20개)도 2021년 11월에 선정되었음.

[CAMPUS Asia(한일중) 사업 추진 경과]

시범사업 (2011~2015)	-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CAMPUS Asia 시범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2010.5.) - CAMPUS Aisa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2011.5.) - 3국 공동심사를 통해 CAMPUS Asia **시범사업 사업단(10개) 선정 (2011.10)**
2단계 (2016-2020)	- 제1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CAMPUS Asia 본 사업 확대 시행 합의(2016.1, 서울) - CAMPUS Asia 한일중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심사(2016.6) 및 3국 공동심사(2016.7~9.)를 통해 **9개 사업단 선정(2016.10)**
3단계 (2021-2025)	-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CAMPUS Asia 사업의 성과 확인(2019.12, 중국) - 제3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CAMPUS Asia 사업 발전방향 논의(2020.1, 중국) - **CAMPUS Asia-한일중 확장사업 신규사업단 선정(2021.11.1, 20개)**

자료: 교육부

이와 같이 시범사업(2011~2015)부터 3단계(2021~2025)까지 각 사업기간 개시연도의 연도말에서야 사업단 선정이 완료되어 온 데 대해 교육부는, 4단계(2026~2030)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개시 이전인 2025년 12월에 3국 공동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3월 신규사업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기존 사업단 사업기간 연장 등 탄력적인 지원방안도 3국간 협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19)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2024.6.15.)」 "2030년까지 CAMPUS Asia 참여 대학생 수 3만명 달성을 목표로 적극 지원", 「제8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2025.2.18.)」 "2030년까지 참가학생수 2배(3만명) 확대 합의"

이 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620명이 복수학위를 취득하고 11,108명이 교환·단기 교류에 참여하는 등의 성과가 있어 3국이 사업단 확대를 합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부는 실무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학생교류가 중단되거나 4단계 사업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최근 지급실적 및 직업계고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 반영 필요

가. 개 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은 고졸 기술·기능인재가 사회초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참여수당 및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0.1%) 증액된 1,02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20)]

[2026년도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102,380	102,380	102,530	150	0.1
취업연계 장려금	83,616	83,616	83,616	-	-
현장실습 지원금	17,670	17,670	18,000	330	1.9

내역사업인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청년의 초기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 고등학교(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포함) 3학년 학생에게 5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836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은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현장실습 참여수당(1일 3만원, 최대 1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3,000만원(1.9%) 증액된 180억원이 편성되었음.

20) 일반회계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4606-300)(평생교육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예산은 최근 장려금 지급실적, 직업계고 학생 수 변화 추세 및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으로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직업계고[21] 3학년 학생의 중소·중견 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총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국장학재단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은 매년 5~6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근무하면 20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9개월 근무하면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 사업의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중소·중견기업 3개월 재직 시 200만원이 지원되는 1차분 지급대상을 20,400명으로, 추가 9개월 재직 시 300만원이 지원되는 2차분 지급대상을 14,272명으로 설정하고 소요예산 83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음.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 취업연계 장려금 : (2025 본예산) 83,616백만원 → (2026 요구) 83,616백만원, **전년동**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고졸자의 사회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후 3개월 경과시 2백만원 + 12개월 경과시 추가 3백만원 지원
- (산출) **20,400명** x 2백만원 + **14,272명(70%수준)** x 3백만원(2차 지급분) = 83,616백만원

자료: 교육부

그러나 2024년 동 장려금 지급인원은 15,885명이었고, 2025년 10월 현재 2025년 1차분 지급인원이 12,431명(지원금 248억 6,200만원)에 그치고 있는 등 최근 집행실적을 감안하면, 2026년도 1차분 20,400명, 2차분 14,272명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2~2025년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9.
예산	금액	102,000	102,000	102,000	83,616
	산출 기준인원	20,400	20,400	20,400	1차 20,400명 2차 14,272명
결산	금액	102,000	102,000	**79,425**	**24,862**
	집행률	100%	100%	77.9%	29.7%
	실제 지원인원	20,400	20,400	**15,885**	**(1차분) 12,431** **(2차분) 0**

자료: 교육부

21) 일반고 3학년 중 직업교육 6개월(180일) 이상 위탁과정에 참여한 학생도 지원대상임.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6년 주 지원대상인 2025학년도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수가 79,610명으로 2025년 지원대상인 2024학년도 3학년 74,274명보다 7.2% 증가[22]한다는 점과 최근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2026년에는 2025학년도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자)뿐만 아니라 2024학년도 졸업자(2025년 2월 졸업자) 일부에 대한 2차분 지급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23]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2022~2026년 연도별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 명)

2022	2023	2024	2025	2026
85,744	77,274	**74,274**	**79,610**	74,556

주) 일반계고 직업계열학과 포함 (유초중등 통계 기준)
자료: 교육부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2025년 10월 현재 1차분 지급실적이 당초 계획(20,400명)의 60.9%에 불과하여 2025년 상당한 규모의 예산 불용이 예상된다는 점[24]에서 2025년과 동일한 산출 근거에 따라 편성된 2026년도 예산이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적정 규모라고 볼 수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22) 황금돼지띠인 2007년 출생아 수가 496,822명으로 전년(451,759명)에 비해 10.0% 증가한 데 기인함.

23) 2023학년도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매년 5~6월 장려금을 신청한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향후 12개월 의무종사를 조건으로 500만원 장려금을 선지급하였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한 학생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하면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 9개월 재직이 확인되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구 분	2023학년도 이전	2024학년도 이후
신청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매년 5~6월에 신청	
지급	장려금을 신청한 학생이 중소·중견기업 취업 시 500만원 지급 이후 12개월 의무종사 미이행시 환수	장려금을 신청한 학생이 졸업한 해 9월까지 중소·중견기업 3개월 근무 시 200만원 지급 1차분 수령 이후 추가 9개월 근무 시 300만원 추가 지급

따라서 2025년도 예산에는 2024학년도 졸업자(2025년2월 졸업자)에 대한 2차분 지급 예산소요만 감안하면 되는 반면, 2026년도 예산은 2025학년도 졸업자(2026년 2월 졸업자)뿐만 아니라, 2024학년도 졸업자(2025년2월 졸업자) 일부가 2차분 재직요건을 뒤늦게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분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임.

24) 2025년 1차분은 9월 30일까지 3개월 재직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바, 교육부는 9월까지 3개월 재직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고용보험DB 연계 과정의 시차 등으로 인해 아직 1차분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1차분 지급실적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함.
다만, 일부 증가되더라도 당초 계획인원(20,400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 2차분은 1차분 지급 후 9개월 추가 근무 시 지급되므로 2025년 2차분 지급인원도 당초 계획인원(14,272명)에 상당한 규모로 미달될 것으로 예상됨.

둘째,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 예산은 최근 지급실적과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수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실습수당(1일 3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원대상을 15,000명으로 산정하고 180억원이 편성되었음.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 현장실습 지원금
: (2025) 17,670백만원 → (2026) 18,000백만원, 330백만원 증액
- (요구)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 및 취업연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장실습생에게 월 최저임금의 30% 수준의 실습수당을 지원
- (산출) 일당 3만원 × 40일 × **15,000명**

자료: 교육부

그러나 최근 현장실습 학생 수가 2022년 16,433명, 2023년 13,983명, 2024년 13,499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이 사업 집행액도 2022년 179억 7,000만원에서 2024년 159억 6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2026년도 지원인원과 예산액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2~2025년 현장실습 지원금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9.
예산	금액	24,000	20,528	18,000	17,670
결산	금액	17,907	16,119	15,906	0
	집행률	74.6%	78.5%	88.4%	0 %
	지원인원	**16,433명**	**13,983명**	**13,499명**	-

자료: 교육부

특히,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2025년 현재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은 79,610명이나, 2026학년도 3학년 학생은 74,556명[25]으로 오히려 감소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의 예산은 최근 지급실적과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수 추이를 감안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25) 앞 페이지 '2022~2026년 연도별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수 변화 추이' 참조

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 인건비 및 경상비의 기관운영 출연금(350-01)으로 비목 전환 필요

가. 개 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은 국민의 평생교육기회 확대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 단위 평생교육 추진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5,700만원(33.2%) 증액된 70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26)]

[2026년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5,298	5,298	7,055	1,757	33.2

나. 검토의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사업출연금(350-02) 예산안 중 인건비와 경상비는 기관운영출연금(350-01)으로 비목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 2026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33.2% 증액된 70억 5,500만원으로 편성된 배경을 살펴보면, 2024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자체수입 예산액은 172억 5,200만원이었으나, 2024년 결산액은 153억 800만원에 불과함에 따라 2026년 자체수입 예산안이 감액 편성되었고, 수지차보전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예산이 그만큼 증액된 것임.

구체적으로, 이 기관의 주된 자체수입인 학점은행제 수수료, 독학학위제 수험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각각 124억원, 5.5억원 내외로 비교적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2020~2022년에는 자체수입 예산액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매년 이월결산 잉여금 규모가 증가했던 반면, 2023~2025년에는 자체수입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고 출연금 예산이 그만큼 감액되면서 이월금 규모가 줄어들었으므로 2026년 예산안에 최근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6) 일반회계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4135-300)(평생직업교육정책관)

[2021~2025년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체수입 예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9.		2026안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사업수입	학점은행제 수수료	10,333	12,596	11,175	12,390	12,035	11,795	12,693	12,321	12,693	9,116	12,169
	독학학위제 수험료	539	606	559	542	629	520	577	539	577	466	533
	계(A)	10,872	13,202	11,734	12,932	12,664	12,315	13,270	12,860	13,270	9,582	12,702
사업외수입	이자수입	150	53	223	115	150	207	180	126	180	48	180
	잡수입 등	502	236	224	188	221	190	206	320	206	222	202
	계(B)	652	289	447	303	371	397	386	446	386	270	382
전년도이월금(C)		1,300	2,560	1,707	2,808	2,969	3,303	3,596	2,002	3,596	562	1,367
수입 합계(A+B+C)		12,824	16,051	13,888	16,043	16,004	16,015	17,252	15,308	17,252	10,414	14,451

자료: 교육부

한편, 이 사업 예산은 인건비 72억 5,500만원, 경상비 35억 9,100만원, 사업비 106억 6,000만원이 전액 사업출연금(350-02)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사업출연금(350-02)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된 경우 기관운영출연금(350-01)으로 비목 전환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상비는 기관운영출연금(350-01)으로 비목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7.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운영 사업: 다음연도 예산으로 전년도 부족분을 충당하는 사례 재발 방지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운영’** 사업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5억 4,300만원(54.5%) 증액된 185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27)]

[2026년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12,400	12,400	18,943	6,543	52.8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운영	12,000	12,000	18,543	6,543	54.5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관리	400	400	400	0	0

이 사업은 직업계고[28)] 3학년 2학기에 진행되는 산업체 현장실습에서 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기업현장교사)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장학재단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음.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운영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운영>
(2025 본예산) 12,000백만원 → (2026 예산안) 18,543백만원, 6,543백만원 증액
- (산출) 12,000명 × 50만원 × 2개월 + 6,543백만원(2025학년도 대상인원에 대한 미지급분)

자료: 교육부

27) 일반회계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4606-302)(평생직업교육정책관)

28) 일반고 3학년 중 직업교육 6개월(180일) 이상 위탁과정에 참여한 학생도 지원대상임.

나. 검토의견

첫째, 2023년 기업현장교사 수당을 인상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 증액소요를 반영하지 않고 예산 부족분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충당해오다가 부족분 규모가 누적됨에 따라 2026년 예산안에서 비로소 증액 편성하였는바, 향후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 2026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54.5% 증액 편성된 사유를 살펴보면, 2023년 기업현장교사 수당이 1일 2만원에서 3만원[29]으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사업예산은 오히려 종래 예산집행실적 등을 이유로 감액 편성됨에 따라 이후 당해 연도 예산으로 부족한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 일부로 충당해오다가 그 규모가 점점 커지자 이를 정리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임.

구체적으로 2023학년도에는 기업현장교사 11,397명에게 147억 9,700만원을 지급해야 했으나, 2023년도 예산이 140억원에 불과하여 부족액 7억 9,700만원은 2024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였고, 2024학년도에는 현장교사 11,277명에게 148억 9,8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2024년도 예산 잔액이 112억 300만원이어서 나머지 36억 9,500만원은 2025년도 예산으로 지급하였으며, 2025년 8월 말 기준 예산잔액은 83억 500만원에 불과하여 2025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예산 부족이 예견되고 있음.

[2022~2025년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운영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8
예산		14,000	14,000	12,000	12,000
결산	당해 학년도 현장실습 지원액(지원인원)	10,179 (12,167명)	14,000 (10,765명)	11,203 (8,470명)	-
	이전 학년도 현장실습 지원액(지원인원)	-	-	797 (632명)	3,695 (2,807명)

자료: 교육부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이 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과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교육부가 2023년 기업현장교사 수당을 인상한 후 2024년 및 2025년 예산 요구 시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소요를 반영하지 않고, 당해 연도 현장실습 예산을 이전 연도 미지급분 지급에 사용해오다가 예산 부족분이 과다해지자 비로소 2026년도 예산안을 증액 편성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교육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9) 학생 2인 지도 시 3만 5천원

둘째,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지원 예산 중 학생 지원금은 최근 매년 일부 미집행되고 있는 반면, 현장지도교사 수당은 예산이 부족하여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충당해오고 있는바, 국가재정의 효과적·체계적 활용을 위해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 지원금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4606-300)' 사업의 내역사업인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으로 편성하고,

기업체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는 지급하는 수당은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4606-302)' 사업의 내역사업인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운영' 사업으로 각각 달리 편성하고 있음.

최근 각 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현장실습 지원금'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 감소 등의 영향으로 매년 한국장학재단에 교부된 예산 일부가 실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국고 반납되고 있는 반면,[30]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은 전술한 바와 같이 2023년 이후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다음 년도 예산 일부를 선집행하는 실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동일한 실습과정 지원 예산이 한 쪽에서는 남고, 다른 한 쪽에서는 부족한 것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과정 관련 예산 현황]

구분	현장실습 지원금	현장지도교사 수당
예산사업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4606-300)' - '현장실습 지원금'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4606-302)'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운영'
사업내용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실습수당(1일 3만원) 지급	현장실습 지도 기업체 담당자에게 지도수당(1일 3만원) 지급
최근 집행추이	2022~2024년 실집행율 74.6%~88.4%로 미집행분 차년도 국고 반납	2023년 이후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 예산 일부로 충당

자료: 교육부

따라서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그 집행내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31]

30)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분석 참조

31) 참고로 현재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과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사업에 각각 사업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학생 지원금과 현장교사 수당을 동일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업관리비를 통합할 경우 중복 여지가 예방되는 효과도 있을 것임.

8.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 등 : 사회부총리 미겸임에 따른 교육부 직제 변경 반영 필요

가. 개 요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사업은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100만원(△38.8%) 감액된 2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고,[32]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대상)’** 사업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0만원(△37.5%) 감액된 500만원이 편성되었음.[33]

[2026년도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415	415	254	△161	△38.8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대상)	8	8	5	△3	△37.5

‘본부 인건비’ 사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7,000만원(0.4%) 증액된 678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34]

[2026년도 본부 인건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본부 인건비	67,574	67,574	67,844	270	0.4

32) 일반회계-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7011-252) (사회정책협력관)

33) 일반회계-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대상)(7011-202) (사회정책협력관)

34) 일반회계-본부 인건비(7001-100) (정책기획관)

나. 검토의견

2025년 10월「정부조직법」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지 않게 되면서 차관보와 사회정책협력관이 폐지되는 등 교육부 직제가 변경되었으므로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와 본부 인건비 예산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예산안은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어 있으나, 2025년 10월 1일 교육부장관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정부조직법」이 개정[35]되었고, 같은 날「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도 이를 반영하여 개정되었음.

구체적으로, 사회정책 분야 협력 사항 등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는 차관보와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는 사회정책협력관이 각각 폐지[36]되면서 이와 관련된 교육부 정원 16명(고위공무원단 2명 등)이 감축[37]되는 등 변화가 있었으므로 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와 본부 인건비 예산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음.

---

35)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1.
참고로, 동 법률 부칙 제1조에서 일부 규정에 대한 시행일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겸임과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에 관한 제19조제3항·제5항은 공포한 날(2025.10.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36) 종래「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차관보 및 사회정책협력관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2025.10.1.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음.
제4조의2(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1. 사회정책 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2.· 3. (생 략)
제7조의2(사회정책협력관) ① 사회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사회정책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 7. (생 략)

37) 다만, 정원 감축으로 인한 초과현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며, 2025년 10월 30일 기준, 직제 개정으로 감축되는 교육부 정원(부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원 중 1인(차관보)이 퇴직하였고,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부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인원(6인)은 모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였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부칙(대통령령 제35,802호, 2025.10.1.)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부의 정원(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정원은 제외한다) 10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기관에서 파견받아 충원하는 교육부의 정원 중 감축되는 정원 6명(행정안전부 소속 5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5급 1명, 보건복지부 소속 5급 1명, 고용노동부 소속 5급 1명, 성평등가족부 소속 5급 1명, 국무조정실 소속 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의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정원이 당초 소속된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 출>

9. 대학혁신지원 사업: 비수도권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에 대한 면밀한 세부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대학이 자체 여건 및 특성화 전략에 따라 교육,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6억원(3.0%) 증액된 8,191억원이 편성되었음.[38)]

[2026년도 대학혁신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대학혁신지원	796,111	796,111	819,211	23,100	2.9
대학혁신지원	795,500	795,500	819,100	23,600	3.0

이 사업은 사립대(135개), 국립대법인(2개), 공립대(1개)에 대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 출연사업임.

[2026년도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 대학혁신지원 (2025) 795,500백만원 → (2026) 819,100백만원, 23,600백만원 증액(2.9%) - (산출) 일반재정지원대학 138교 × 평균 5,935백만원 = 819,100백만원 ※ 대학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물량, 단가 변동 가능 ※ 비수도권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 85,000백만원 포함 (대학 특성화 및 학과 구조개편 등을 병행한 적정규모화 집중 지원)

자료: 교육부

3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대학혁신지원(2301-300)(지역인재정책관)

나. 검토의견

교육부는 2026년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정성평가 항목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비수도권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 제도가 당초 기대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사립대 등에 대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인 이 사업은 2025년도에는 정량평가(50%)와 정성평가(50%)를 통해 학교별 지원액을 배분하였으나, 교육부는 2026년도에 정량:정성 비율을 4:6으로 하되 정성평가 중 ‘비수도권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850억원)를 도입할 계획임.

[비수도권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 설명자료]

〈 2026년도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배분(안) 〉

정량성과(40%)			정성성과(60%)							
기준 포뮬러	기회균형 포뮬러	+	교육 혁신 (80%)	자체 성과관리 (20%)	+	적정 규모화 지원금	+	특성화 (비수도권)	=	대학별 지원액

▸ 재학생 수·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 배분

〈비수도권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

○ 국립대와의 동반성장, 지방소멸위기 대응 등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방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성화 인센티브 신설

○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구조개편 등 특성화에 우수한 성과를 내는 대학에 인센티브 부여 예정

- (특성화대학) **15교 내외(권역별 3~4교) × 평균 56.6억원(추가 지원) = 850억원**

※ 기존 등급에 SS등급을 신설하여 평가를 통해 특성화대학에는 SS등급 부여하여 지원 예정

❖ 특성화대학 추진 과제(예시)
-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 중심으로 **학과 구조조정**
- 학생 수요에 맞게 마이크로디그리, 집중이수제,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사구조 유연화
- 거점국립대와 기초·인문사회·교양교육 및 AI-X 등 연계 공유 활성화
-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대학 등은 구조조정 적극 추진 등

※ 2026년도 사업비 배분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예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교육부

비수도권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구조개편 등에 우수한 성과를 내는 대학(15개 내외)을 선정하여 교당 평균 56.6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각 대학의 구조개편을 유도하고 일부 우수 대학을 집중 지원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다만 학과 구조개편은 단기 과제가 아니고, 특히 2026년에는 과거실적이 아닌 향후 계획에 대한 평가로 지원대학을 선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성화 지방대학(글로컬대학) 지원사업과의 관계(중복지원 가부 또는 중복지원 시 조건 등) 등을 고려하여 이 인센티브 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세부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임.

1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RISE 이관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별 강점 및 특성을 고려한 대학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이 지역혁신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93억 3,500만원(7.0%) 증액된 2조 1,40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39)]

[2026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2,001,000	1,941,000	2,140,335	139,335	7.0

나. 검토의견

첫째, 교육부는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사업 등 종래 별도 사업으로 편성되어 오다가 2026년도에 RISE[40)] 사업으로 이관된 사업들이 RISE 사업체계에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 사업 등 8개 사업은 2024년 이전에는 각각 별도 세부사업 또는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사업 등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5년 RISE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이관되었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별도 내역사업이 아니라 RISE 사업 안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3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2301-400)(지역인재정책관)

4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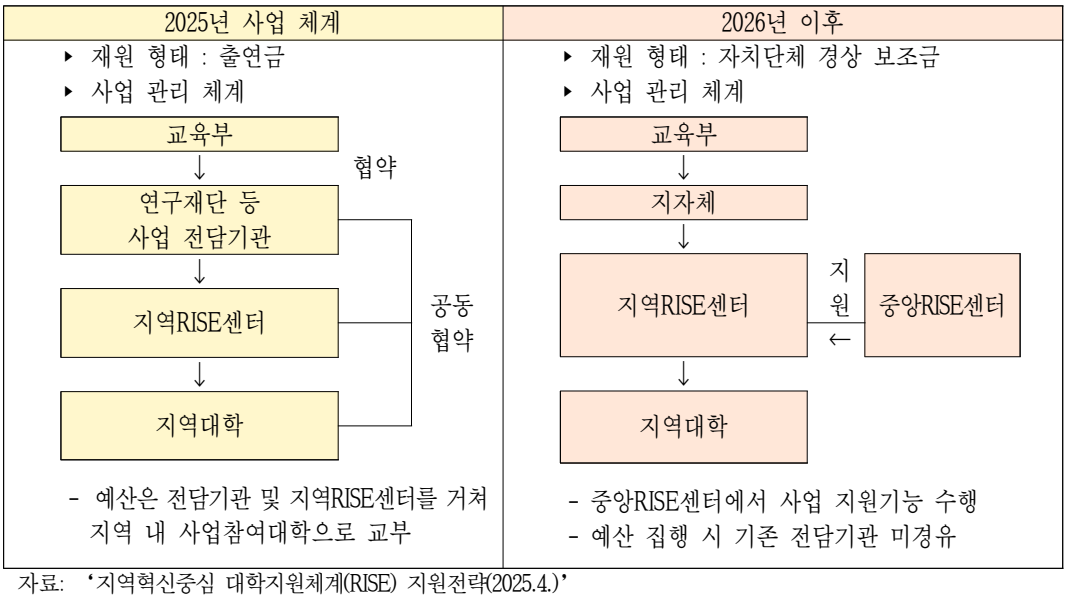
[2025년 RISE 내역사업(출연금)에서 2026년 RISE 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내로 이관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사업기간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 (RISE)	2,001,000	2,140,335	-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 (RISE)	1,704,651	2,140,335	-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BRIDGE3.0)	21,000	(RISE 이관)	~2026.2
마이스터대 지원	4,750	(RISE 이관)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전문대학	14,200	(RISE 이관)	~2027.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전문대)	9,600	(RISE 이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일반대)	25,800	(RISE 이관)	~2028.2
창업교육선도대학(SCOUT)	5,998	(RISE 이관)	
첨단분야 혁신 융합대학(COSS)	201,001	(RISE 이관)	
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14,000	(RISE 이관)	유동적

이 중 6개 사업은 그 사업기간이 2026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교육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RISE 체계에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지원될 것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 2025년에 이미 각 사업추진체계에 RISE센터를 포함시켜 지역RISE센터는 각 사업의 지역별 예산집행·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중앙RISE센터는 중앙단위의 사업관리를 총괄하는 등 이행기를 거쳤으므로 해당 사업의 계속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함.

[8개 내역사업의 RISE 시행 이후 사업체계(안)]



자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2025.4.)'

그러나 2025년에는 각 사업예산이 출연금(350-02)으로 편성되어 교육부, 지역RISE센터, 지역대학이 협약을 맺은 사업수행기관(한국연구재단 등)을 통해 각 사업이 수행될 수 있었던 반면, 2026년도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로 편성되므로 소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음.

즉, 2026년에는 한국연구재단 등에 사업비를 출연하지 않고 각 지자체와 RISE센터에서 사업 참여대학을 지원하는 등 사업체계에 변화가 있으므로 교육부는 각 사업이 종래와 같이 원활하게 집행되는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41]은 각기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이 전국 단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각 지역의 특성과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에 특화된 RISE 체계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해 보임.

41)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COSS, Convergence and Open Sharing System) 사업은 인공지능·지능형 로봇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수 대학(최대 5~7개교, 수도권·비수도권 각각 40% 이상, 전문대 1개교 포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각 대학의 교육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모듈형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컨소시엄 구성현황은 아래와 같음.

연번	분야	주관대학	참여대학
1	인공지능	전남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서울과학기술대, 경북대, 전주대, 영진전문대
2	빅데이터	서울대	경상국립대, 서울시립대, 숙명여자대, 전북대, 한동대, 경기과학기술대
3	차세대반도체	서울대	강원대, 대구대, 숭실대, 중앙대, 포항공과대, 조선이공대
4	미래자동차	국민대	계명대, 선문대, 아주대, 인하대, 충북대, 대림대
5	바이오헬스	단국대	상명대, 홍익대, 대전대, 우송대, 동의대, 원광보건대
6	실감미디어	건국대	경희대, 계명대, 배재대, 전주대, 중앙대, 계원예술대
7	지능형로봇	한양대(ERICA)	광운대, 국립부경대, 상명대, 조선대, 한국공학대, 영진전문대
8	에너지신산업	고려대	서울대, 한양대, 강원대, 부산대, 전북대, 경남정보대
9	항공드론	한국항공대	인하대, 경북대, 한서대, 연암공과대
10	반도체소부장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국공학대, 대림대
11	이차전지	충북대	부산대, 가천대, 인하대, 경남정보대
12	차세대통신	국민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한국항공대, 울산과학대
13	에코업	고려대(세종)	고려대, 건국대, 영남대, 전주비전대
14	그린바이오	충남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연암대
15	첨단소재나노융합	중앙대	강원대, 한남대, 국립금오공과대, 인하공업전문대학
16	데이터보안활용융합	강원대	아주대, 충남대, 한양대(ERICA), 영남이공대
17	차세대디스플레이	단국대	경희대, 한서대, 호서대, 충북보건과학대
18	사물인터넷	세종대	대전대, 동국대, 제주대, 제주한라대

둘째, 향후 국회의 RISE 사업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RISE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통해 추진되는 정책과제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도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RISE 사업예산은 각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교부된 후 각 지자체 부담분(20% 매칭)을 더해 각 지역의 RISE 사업추진체계를 통해 집행되고, 각 지자체에 배분되는 보조금액은 (중앙) RISE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됨.

2025년 지자체별 보조금 배분 방식을 살펴보면, ㉠ 직전 연도에 각 지자체와 해당 지역 소재 대학에 배분되었던 RIS[42] 사업예산액 등[43]을 기초로 ㉡ 각 지역의 RISE 계획 및 체계 구축·운영, 시도 매칭률, 시범지역 성과 등을 반영하고, 이에 더하여 ㉢ 중앙·지역 협업이 필요한 사항 일부를 추가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이 중 2025년 중앙·지역 협업 사항으로 ① 글로컬대학(총 약 3,364억원[44]), ② 의대 교육혁신(총 552억원), ③ 늘봄 프로그램 개발(총 212억원), ④ 산학연 분야 2025년 RISE 이관사업(8개, 총 2,963억원)이 있었는바,[45] 각 지역별 RISE 보조금에 이 사항들과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배분되었고, 교육부는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의대교육혁신이나 늘봄 프로그램 개발 관련사항을 명기함으로써 해당 예산이 정해진 목적에 사용되도록 담보하였음.[46]

교육부는 2026년에도 종전 연도 지역별 예산액을 기초로 지역 RISE 성과를 반영한 후 이른바 중앙·지역 협업 사항을 추가하여 지자체별 보조금을 배분한다는 입장으로 2026년에도 의대교육혁신 관련 예산이나 지침을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한편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집중육성 방안의 일부로 2026년도 RISE 예산을 통해 거점국립대에 총 1,2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하였음.

다만 교육부는 현시점에서 RISE 예산을 통한 의대교육혁신이나 거점국립대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 단계라고 밝히고 있으나, 적어도 2026년 각 지역에 RISE 예산을 교부할 때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명기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는 해당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세부내용이 심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4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43) 2024년 특수목적재정지원 사업에서 2025년 RISE 사업으로 이관된 사업의 2024년 각 대학별 지원예산액 등 포함

44) 2025년 9월 본지정이 완료된 7개 대학에 대한 지원금에 따라 변동 가능

4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전략(2025.4.)' 참고

46) 각 지역 RISE 계획에 중앙·협업영역 관련사항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과제 수행을 담보하는 방안도 검토됨.

11.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사업(신규): 합리적인 지원대상 선정기준 마련 등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사업은 유망 이공계 학생을 조기 선발하여 학부–대학원-박사후까지 전 주기 성장경로를 국가가 책임지는 전략적 엘리트를 육성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84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7)]

[2026년도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522,478	523,764	541,546	19,068	3.6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	-	8,480	8,480	순증

이 사업은 우수한 이공계 학부생과 박사후 연구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한국연구재단 출연사업임.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ㅇ (목적) 우수 공학인재의 학부-대학원-박사후까지 전 주기 성장 경로를 국가가 책임지는 전략적 엘리트 육성
- ㅇ (사업기간) 2026년~2027년(2년 시범 운영)
- ㅇ (규모) 10개 대학에서 교당 45명(학부생 40명, 박사후 5명) 선발
  ※ 박사후 과정생(연구생)은 2026.下. 선발 후 2027년부터 지원 예정
- ㅇ (운영 방식) 대학 선정(교육부) → 학생 선발 및 멘토 매칭 → 실무교육 및 대학원-산업계 진입 → 박사후 정착 유도
- ㅇ (수행기관) 한국연구재단 ※ 산업체·교수진 멘토 DB 관리 및 성과관리, 진로탐색 캠프 등 총괄

□ 주요 특징
- ㅇ (엘리트 육성) 2026년 한 차례 10개 공과대학에서 교당 40명씩 총 400명의 학부생 선발, 조기부터 ‘국가책임 엘리트 경로’ 제시
- ㅇ (연계)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BK21 우선 배정 및 석박사 진학 연계
- ㅇ (정착 유도) 박사후 국내 진입시 월 500만원 인센티브 제공, 연봉 6,000만원 수준의 보상 체계 마련(2027년~)
- ㅇ (운영) 교수 1인당 학생 4명 밀착지도 체계 구축 및 관리비 최소화
- ㅇ (차별성) 기술 분야 구분 없이 전국 공과대학 대상으로, 학부~박사후 전 주기 연계 및 경쟁력 있는 보상체계를 통해 국내 정착 유도

자료: 교육부

4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4단계 두뇌한국21 사업(2303-300) (인재정책기획관)

나. 검토의견

교육부는 이 사업이 향후 이공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26년 시범사업에서부터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멘토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며, 다른 이공계 지원책과 상호보완 관계 등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관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최상위권 학생이 이공계 우수인재로 성장하고 국내 정착할 수 있도록 학부생 장려금(연간 2,000만원), 박사후 연구원 지원금(연간 6,000만원, 2027년부터 지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이공계 학부 재학 중 의대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박사학위 취득 후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됨.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에게는 BK21 사업을 통한 지원을 비롯하여 2025년 신설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석사우수장학금[48]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학부생과 박사후 연구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재 2년 시범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기간 계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공계 현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1인당 지원금액이나 학부생-박사후연구원 지원 비율, 멘토 역할 및 BK21 등과 구체적 연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꾸준히 모색될 필요가 있음.

한편 교육부는 2026년 학부생 장려금 지원대학·학생 선정기준이나 절차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2026년 1학기(3월)부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부 방안을 조속히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10개 학교 선정 후 학교당 일괄적으로 40명을 선정하는 방식보다는 BK연구단 수, 석·박사 학생 수, 연구실적 등에 비례하여 학교별 지원인원을 차등 배분[49]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교수(멘토) 1인당 학부생 4명 밀착지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므로 2026년 1학기부터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확정 즉시 멘토 선정에 나아갈 수 있도록 멘토 선정기준이나 활동지침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48) 2025년 신설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석사우수장학금’ 사업은 이공계 전일제(full-time) 석사과정생 1,000명에게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지원(타 장학금, R&D 참여 인건비 등과 중복수혜 허용)하는 사업임.

49) 참고로, ‘석사우수장학금’ 사업에서는 권역별 선발비율을 설정하여 수도권 250명 내외, 비수도권 750명 내외를 선발하되, 각 대학원별 선발규모는 참여 대학원별 1명씩 기본 배정 후 잔여 인원은 참여대학원별 이공계 총 재학생 합계와 이공계 석사 재학생 비율 등에 기초하여 배정하고 있음.

1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이자 사업: 학자금대출 예상액 추계 재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이자’** 사업은 대학(원)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ICL’)을 공급하기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억 3,400만원(1.1%) 증액된 2,272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50)]

[2026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이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한국장학재단 출연	407,913	407,913	421,051	13,138	3.2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이자	224,733	224,733	227,267	2,534	1.1
AI/SW 분야 학업장려대출	-	-	2,923	2,923	순증

내내역사업인 **‘AI/SW 분야 학업장려대출’** 사업은 AI/SW 분야 학생들이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 외의) 학업장려대출(취업 후 상환방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9억 2,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이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2026년 예산(2,272억 6,700만원) 산출내역>
○ 기존분(2011~2025년) 채권 이자 : 191,374백만원
- 2011~2024년 채권 이자 : 143,552백만원=4,980,397백만원×2.88%
- 2025년 채권 이자 : 47,822백만원=1,564,885백만원×3.05%
○ 신규분(2026년) 채권 이자 : **32,970백만원** (= 1,766,273백만원 × 3.20% × 7/12)
○ AI/SW 분야 학업장려대출(신설) : **2,923백만원** (= 156,600백만원 × 3.20% × 7/12)

※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이자면제 60,359백만원 포함

<ICL 2026년 신규분(1조 7,662억원) 세부 산출내역>
○ 학자금대출 신규채권분 산정방식 : 신규대출공급 - 상환예상액 + 만기도래 차환채권
→ 2026년 신규채권 1,766,273백만원 = **2026년 신규대출공급 1,678,569백만원*** - 2026년 상환예상액 932,296백만원 + 2026년 차환채권 1,020,000백만원

자료: 교육부

5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한국장학재단 출연(2638-300)(평생직업교육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채권이자 사업 예산에서 제도 변경에 따른 학자금 대출 증가분이 적정한 규모로 산정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2026년 ICL 신규대출규모를 1조 6,785억 6,900만원으로 예측하고 2026년 신규분 채권이자 32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ICL 신규대출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 8,264억원, 2023년 7,918억원, 2024년 8,762억원이었다는 점에서 대출규모를 적정하게 추계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0~2024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실행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취업후상환 (ICL)	8,215	7,953	**8,264**	**7,918**	**8,762**
일반상환	8,940	8,610	8,082	10,950	12,352

자료: 교육부

이에 대해 교육부는 2025년에는 신규대출규모가 9,402억원[51]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 ICL 대출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2026년부터 학부 등록금 ICL 신청대상을 소득구간 10구간까지 확대하고 이자면제구간을 6구간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할 계획으로, 제도개선에 따른 ICL 증가액을 5,656억 9,100만원으로 추계하였다고 설명함.

[2026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제도개선 계획]

구분	신청대상				이자면제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9구간	8구간	4구간	4구간	1~5구간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 상환기준소득(2025년 2,851만원) 발생 전까지
개선	10구간	8구간	10구간	6구간	1~6구간	상환기준소득(2025년 2,851만원) 발생 전까지

자료: 교육부

51) 2025년 학자금 대출 1~3분기 공급실적과 4분기 예상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

2025년	1학기		2학기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예상)	
ICL	3,871	655	4,100	776	**9,402**
일반	6,850	171	5,587	202	12,810
합계	10,721	826	9,687	978	22,212

자료: 교육부

[2026년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추계내역]

(단위: 백만원)

항 목			추계액	
2025년 예산				1,555,972
증감요인	취업후-일반 수요 현행화			△467,703
	학령인구증감			△12,430
	등록금 및 물가상승률			20,419
	제도 개선	❶ 대학원생 등록금 全구간 확대	565,691	76,162
		❷ 대학원생 생활비 6구간 확대		5,513
		❸ 학부생 등록금 全구간 확대		33,942
		❹ ICL 제도개선에 따른 신규 수요 반영		450,074
	예비비			16,620
2026년 대출 공급예상액(2025년 예산 + 증감 요인)				1,678,569

〈❹ ICL 제도개선에 따른 신규수요 세부내역〉

- 지원확대반영 전, 대출지원실적(b)을 토대로 제도개선 전 예상 대출 지원 인원 산정 후, 제도 개선에 따른 신규 수요 증가율* 적용

* 2024년 2학기 이자면제 지원 확대(1~5구간 신규 도입, 기초·차상위 이자면제 기간 확대) 당시 대출 공급 증가 실적(14%)을 고려, ’26년 1학기부터 도입 가정하여 수요증가율 32% 가정 (=2024년 한 학기 증가 실적 14% × 2학기 + 지원 구간 확대 가수요 4%)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26년 예상 재학생 수(a)	2026년 대출 예상 지원 인원 비중(b)	2026년 대출 예상 지원 인원 (c=a×b)	ICL 지원구간 및 이자면제 확대 등에 따른 수요 증가율(d)	신규 예상 수요인원 (e=c×d)	2024년 단가 (f)	예상 금액 (g=e×f)
학부생 (등록금)	1,959,067	10.04%	196,690	32%	63,330	2.45	155,159
학부생 (생활비)		12.88%	252,328		81,250	1.81	147,063
대학원생 (등록금)	314,891	24.99%	78,691		25,340	4.56	115,550
대학원생 (생활비)		16.96%	53,406		17,200	1.88	32,302
증감액 합계							450,074

자료: 교육부

구체적 추계내역을 살펴보면, ① 대학원생 등록금 全구간 확대 관련 761억 6,200만원, ② 대학원생 생활비 6구간 확대 관련 55억 1,300만원, ③ 학부생 등록금 全구간 확대 관련 339억 4,200만원의 신규 대출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보면서 이와 별도로 ④ ICL 제도개선에 따른 신규수요 4,500억 7,4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④의 경우 2024년 이자면제 확대(2학기부터 적용) 당시 대출 증가율이 14%였다는 점을 근거로 2026년 제도개선(1년간 적용)으로 인한 대출 증가율을 32%라고 산정한 후 전체 예상대출 실적에 이를 곱하여 대출증가액이 4,500억 7,400만원이라고 추계하였음.

그러나 ㉠ 2024년 대출 공급 증가율 14%는 (이자면제와 관련이 있는) 기초~5구간 대출실적 증가율[52]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체(全구간) 대출실적에 대입해 2026년 예상증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 즉, 이자면제와 관계가 없는 7~10구간 대출은 왜 증가한다고 보는지 또는 ICL 신청대상 확대에 따른 증가분이라면 ①~③과 ④에 중복계상된 것이 아닌지,

㉢ 1~5구간의 경우 2024년에는 이자면제 제도가 신규 도입된 반면, 2026년에는 지원기간이 확대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같은 비율 또는 그 이상의 신규대출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음.

[2024년 및 2026년 ICL 제도개선 비교]

구분	2024년(2학기)	2026년
이자면제 기간 확대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전까지	**(1~5구간)** "졸업 후 2년 이내" 삭제하여 의무상환 개시전까지 이자면제
이자면제 대상 확대	**1~5구간 확대(신규)** :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	**6구간 확대(신규)**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면제
등록금 대출 신청대상 소득구간 폐지	-	학부생 9구간, 대학원생 4구간 → **학부생·대학원생 모두 全 소득구간 대출**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 정리

52) 2024년 2학기부터 ① 종래부터 이자면제 지원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에 대한 이자면제 기간을 종래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② '1~5구간'에 대한 이자면제를 신규 도입하였으며, 2024년 **기초~5구간 대출실적**은 전년 대비 **720억원(14.2%) 증가**하였음.

(단위: 억원)

구분	2023년	2024년	증감	증감율
기초	561	657	96	17.1%
차상위	670	779	109	16.3%
1구간	1,112	1,249	137	12.3%
2구간	801	923	122	15.2%
3구간	762	899	137	18.0%
4구간	840	935	95	11.3%
5구간	342	366	24	7.0%
합계	5,088	5,808	**720**	**14.2%**

자료: 교육부

요컨대 2023년 7,918억원, 2024년 8,762억원, 2025년 9,402억원(예상)이었던 ICL 대출실적이 대출구간 및 이자면제구간 확대 등 제도개선에 힘입어 2026년 1조 6,785억 6,900만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ICL 신규분 채권이자 예산 329억 7,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적정한 규모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3.2%의 금리를 기준으로 편성된 2026년 발행 한국장학재단 채권(이하 "재단채")의 이자 예산은 최근 재단채 발행금리와 국고채 시장금리의 추세, 기준금리 동향 및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적정 규모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이 사업 예산안에서는 취업후상환대출 및 AI/SW 분야 학업장려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재단채의 평균 발행금리를 3.2%로 산정하고 채권이자 소요비용을 산출하였음.

그러나 2023년 이후 재단채 발행금리(가중평균)를 살펴보면, 2023년 3.85%에서 2024년 3.32%로 하락했고, 이후 하락 추세가 지속되어 2025년 9월 기준 2.729%의 평균 발행금리를 보이고 있음.

[2023~2025.8월 한국장학재단 재단채 발행액 및 평균 조달금리]

(단위: 억원, %)

구분	'23	'24		'25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발행액	16,000	15,100	500	14,400	1,500	3,000	1,600	1,800	700	500	1,300	2,400	1,600
발행금리 (가중평균)	3.85	3.323	2.839	2.729	2.816	2.801	2.833	2.568	2.627	2.687	2.692	2.670	2.761

자료: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제출자료 재정리

한편 재단채는 정부보증채[53]로서 그 시장금리는 국고채와 연동되는데, 최근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 각 연물별 시장금리는 2024년 9월 3.011%~ 2.83% 수준에서 2025년 10월 2.906%~2.307%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고채 5년물의 경우 2024년 9월 2.918%에서 2025년 10월 2.692%까지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10년물의 경우 3.011%에서 2.906%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53) 정부는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의 발행)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근 1년간 월평균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

(단위: %)

구분	2024/09	2024/10	2024/11	2024/12	2025/01	2025/02	2025/03	2025/04	2025/05	2025/06	2025/07	2025/08	2025/09	2025/10
국고채(1년)	2.939	2.857	2.861	2.709	2.637	2.654	2.612	2.482	2.306	2.29	2.308	2.263	2.280	2.307
국고채(2년)	2.929	2.93	2.901	2.694	2.669	2.683	2.67	2.45	2.343	2.435	2.426	2.365	2.420	2.502
국고채(3년)	2.868	2.911	2.858	2.59	2.571	2.611	2.59	2.395	2.331	2.441	2.465	2.427	2.464	2.561
국고채(5년)	2.918	2.974	2.909	2.683	2.694	2.71	2.665	2.492	2.469	2.601	2.622	2.584	2.615	2.692
국고채(10년)	3.011	3.07	3.006	2.771	2.821	2.83	2.795	2.658	2.71	2.842	2.84	2.815	2.849	2.906
국고채(20년)	2.963	2.962	2.939	2.708	2.745	2.746	2.688	2.6	2.678	2.826	2.835	2.838	2.844	2.865
국고채(30년)	2.912	2.921	2.865	2.635	2.696	2.669	2.581	2.507	2.584	2.737	2.738	2.74	2.754	2.789
국고채(50년)	2.83	2.844	2.785	2.537	2.587	2.56	2.451	2.363	2.447	2.637	2.634	2.623	2.635	2.638

주) 월평균(영업일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그리고 한국은행은 최근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과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네 차례[54] 인하하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25년 9월 연 4.25%~4.50%였던 기준금리를 4.00%~4.25%로 0.25%p 인하하였음.

또한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당분간 크지 않아 보임.[55]

따라서 3.2%의 금리[56]를 기준으로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은 최근 재단채 발행금리와 국고채 시장금리 추세, 기준금리 동향 및 한국은행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적정 규모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54) 2024년 10월 11일: 3.50% → 3.25% (0.25%p 인하)
2024년 11월 28일: 3.25% → 3.00% (0.25%p 인하)
2025년 2월 25일: 3.00% → 2.75% (0.25%p 인하)
2025년 5월 29일: 2.75% → 2.50% (0.25%p 인하)

55)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보도자료, 2025.8.28.

56) 참고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 포함) 사업’에서는 2026년 국고채 조달금리를 3.0%으로 보고 계획안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조달금리 추이 등에 비추어 다소 과다 편성 우려가 있어 감액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음. (이 보고서 해당 사업 부분 참조)

셋째, AI/SW 분야 학업장려대출 사업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인 AI/SW 관련 학과 선정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교육부는 2026년부터 AI/SW 분야 학생들이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 외의) 학업장려대출(취업 후 상환방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2026년도 대출인원을 78,300명으로 보고 2026년 예산안에 해당 대출분에 대한 채권이자 지원금 29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음.

다만 현재 구체적 지원대상인 AI/SW 분야 및 학과 등을 선정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가 진행중인바,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AI/SW 분야 학업장려대출 신규추진 개요

□ (추진배경) AI 강국 도약 및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대출제도 신설

ㅇ (국정과제 89)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 모든 AI/SW 분야 대학(원)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ㅇ (전략과제 8-2) 안정적 지원과 충분한 예우로 인재유출 방지
- 전체 AI/SW 분야 대학(원)생에게 학업장려금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추가 지원

□ (사업개요) AI/SW분야 대학(원)생 학업장려대출 신규 지원(안) ※ 변동가능

ㅇ (지원방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 유예)
ㅇ (지원금액) 연간 2백만 원 한도(재학 기간 중 개인 총한도 1,000만 원)
ㅇ (지원대상) AI/SW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ㅇ (연령조건) 학부생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만 40세 이하
ㅇ (소득요건) 소득 고려하지 않음
ㅇ (지원금리) 1.7%(변동금리)
ㅇ (소요예산) 첫해 29.23억 원 예산 소요 예상

<AI/SW분야 학업장려대출 관련 연도별 소요 예산안>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물량	78,300명	78,800명	79,700명	80,600명	81,200명	-
단가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국비(억 원)	29.23	79.53	130.3	181.64	233.45	654.15

□ (추진경과)

ㅇ (사업계획 수립) AI/SW 분야 대학 및 학과 등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대출지원 절차 및 심사요건 검토 등 사업계획 수립 중

ㅇ (시스템 구축) AI/SW분야 학업장려대출 신설을 위해 신규 시스템 구축(신청-심사-실행-상환-사후관리) 추진

자료: 교육부

13.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필수의료 당직비 지원 관련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체계 등 검토 필요

가. 개 요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은 국립대병원 신축, 개·보수, 장비 구입 및 교체 등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의학교육·연구 및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4억 8,100만원(20.9%) 증액된 1,415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음.[57)]

[2026년도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립대병원 지원	117,057	117,057	141,538	24,481	20.9
정책사업	26,988	26,988	23,636	△3,352	△12.4

내역사업인 **‘정책’** 사업은 의학교육·연구 및 진료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억 5,200만원(△12.4%) 감액된 236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시설 확충 및 보수 (100,773 백만원) · 계속사업(12개) 95,655 백만원 / 신규사업(9개) 5,118 백만원
○ 장비 구입 및 교체 (17,129 백만원) · 계속사업(1개) 2,737 백만원 / 신규사업(7개) 14,392 백만원
○ 정책사업 (23,636,000천원)
·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4개소) 7,036 백만원
·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지원(31명) 4,000 백만원
· **필수의료 당직비 지원(신규) (120명) 12,600 백만원**

자료: 교육부

5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국립대병원 지원(2743-301) (의대교육지원관)

나. 검토의견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당직비 지원과 관련하여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인력운용이나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체계 등 제반 사항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정책’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당직비’ 사업에 126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교육부는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중 권역책임의료기관인 12개 병원에 필수의료 당직비를 각 10억 5,000만원씩 지급하여 지역의료 중추인 비수도권 국립대병원이 24시간 필수의료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구체적 예산액은 2024년 보건복지부의 비상진료 의료인력 당직비 지원 단가를 준용하여 산출하였다고 설명함.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당직비 사업(신규) 개요]

○ (지원 대상) 지역 국립대병원 12개소 ※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중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 ○ (주요 내용) 필수의료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당직비 지원 ○ (사업 기간) 2026~2027년 (한시사업) ○ (2026년 예산액) 126억 - 12개소×10개 과목*×1명(전문의 1인)×2.1억(당직비 단가)**×50%(보조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당직전문의가 필요한 중증·응급 배후 진료과목 ** 365일 당직비 : 평일 45만원·휴일 90만원(**2024년 복지부 비상진료 의료인력 당직비 지원 단가 준용**) ○ (지원 근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 교육부

그 동안 필수의료 당직비 지원 경위를 살펴보면, 2024년 의대정원 증원 갈등 속에 전공의가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교수·전임의 등의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580억원)한 바 있음.[58)]

따라서 필수의료 당직비의 계속 지원 여부와 지원대상, 적정단가 등은 전공의 복귀 후 병원 인력운용계획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권역책임의료기관 등에 대한 필수의료 당직비 지원예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이 사업예산을 통해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소 중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12개소에만 필수의료 당직비가 국고 지원되고, 그 밖의 5개소에는 필수의료 당직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58) ‘비상진료체계 가동 위해 예비비 1,254억원 신속 지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3.6.)

[권역책임의료기관 현황]

권역	책임의료기관	권역	책임의료기관	권역	책임의료기관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세종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대구	경북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길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경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주) 음영 :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으로 당직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병원

14. 대학 AI 기본 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신규): 예산의 중복 투입 방지를 위한 대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대학 AI 기본 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은 대학생들이 윤리적 AI 활용, AI 정보의 비판적 평가 역량, AI를 이용한 실질적 문제해결력을 갖추 수 있도록 기본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93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9)]

[2026년도 대학 AI 기본 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	-	11,840	11,840	순증
대학 AI 기본 교육과정 개발 지원	-	-	9,360	9,360	순증

이 사업은 각 대학이 AI 기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교육협의회 보조사업임.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 대학 AI 기본 교육과정 개발 지원 (93.6억원)
- 3억원 × 30개교 + 사업관리비(3.6억원)

자료: 교육부

5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2232-323) (인재정책기획관)

한편, 이 사업이 편성된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사업은 2026년 신규 편성되었음.

[2026~2030년 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학 AI 기본교육 과정 개발 지원	9,360 300백만원 ×30교 +360(관리비)	9,360 300백만원 ×30교 +360(관리비)	9,360 300백만원 ×30교 +360(관리비)	5,760 300백만원 ×18교 +360(관리비)	5,760 300백만원 ×18교 +360(관리비)	39,600
교원양성기관 교육 과정 개발 지원	2,480	2,480	2,480	-	-	7,440
합계	11,840	11,840	11,840	5,760	5,760	47,040

주 1)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은 초기(2026~2028년) 대학 AI 교육 저변 확대와 AI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모두 지원하되, 후반기(2029~2030년)에는 전공 융합과목 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임.
2)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은 2026~2028년 지원 후 성과 및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 또는 재구조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함.

자료: 교육부

나. 검토의견

대학 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30개 대학에 각 3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나, 각 대학이 유사한 내용의 AI 기본교육과정을 개발할 경우 예산 중복 투입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30개 대학을 선정하고 각 대학에 3억원씩 교부하여 AI 기본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나, 각 대학에서 유사한 내용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경우 예산의 중복 투입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집행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교육부는 AI 자체를 교육하는 교양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에서 AI를 접목하거나 활용하는 과정도 개발하고자 하며, 각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부에서 제공된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이용할 경우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고 학습 참여도와 만족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가령, AI 윤리나 AI의 비판적 활용 등 AI 기본교육과정은 전문기관에서 생산·제공하도록 하고, 세부 전공별 AI 활용 과정은 각 대학에서 자체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이 세부사업에 편성된 또 다른 내역사업인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교원양성기관 AI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각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5. 첨단분야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AI 사업단 대규모 신규 선정 관련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첨단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인증 등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81억 7,500만원(99.9%) 증액된 1,34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60]

[2026년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	182,700	184,950	262,461	79,761	43.7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66,000	68,250	134,175	68,175	99.9

이 사업은 급변하는 신기술·첨단분야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현장성 높은 단기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각 부트캠프는 선정 후 5년(3년+2년 연장)간 매년 15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사업임.

나. 검토의견

신규 선정되는 AI 분야 부트캠프가 향후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정과정부터 사업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3년 부트캠프 운영대학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150억원을 지원한 후 2024년 42개 대학 630억원, 2025년 47개 대학 682.5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왔는데, 2026년에는 88개 대학 1,341억 7,500만원으로 크게 확대한다는 계획임.[61]

---

6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산학연협력 고도화 지원(2256-300) (인재정책기획관)

61) 이 사업을 통해 2023년 159개의 단기 집중교육과정이 개발되어 1,255명이 이수하였고, 2024년에는 367개 단기

[2023~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현황]

(단위: 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신규	총	신규	총	신규	총	신규	총
부트캠프 운영대학 수	10	10	32	42	5	47	41	88
・반도체	10	10	18	28	-	28	-	28
・디스플레이	-	-	3	3	-	3	-	3
・이차전지	-	-	4	4	-	4	-	4
・바이오	-	-	4	4	-	4	-	4
・항공우주	-	-	3	3	-	3	-	3
・미래차	-	-	-	-	2	2	2	4
・AI	-	-	-	-	3	3	37	40
・로봇	-	-	-	-	-	-	2	2
지원금액	150억원		630억원		682억 5,000만원		1,341억 7,500만원	
성 과	- 161개 기업 협력 - 159개 과정 - 1,255명 이수		- 780개 기업 협력 - 367개 과정 - 5,451명 이수		(진행중)		-	
비 고	- 사업 개시		- 사업 확대		- 추경 증액으로 AI 부트캠프(3개) 추가 운영(하반기)		- AI 분야 외 일부 AI 융합과정(5억원) 지원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정리

부트캠프 분야를 살펴보면, 2025년 10월 기준 반도체(28개), 이차전지(4개), 바이오(4개), 디스플레이(3개), 항공우주(3개), 미래차(2개), AI(3개) 등 총 47개 사업단이 있는데, 2026년에는 AI 사업단 37개, 미래차 사업단 2개, 로봇 사업단 2개를 신규 선정할 것이며, 이와 함께 기존 부트캠프(AI 3개 제외) 44개 중 10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AI 융합과정을 위해 5억원씩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함.

집중교육과정이 개발되어 5,451명이 이수하였으며, 분야별 실적은 아래와 같음.

연도	분야	주요 참여기업	교육 분야	양성
2023년	반도체	원익IPS,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안 등	설계, 소재, 검사・측정 등	1,255명
2024년	반도체	DB하이텍, 실리콘마이터스, 네패스 등	반도체 설계, 소부장 등	3,708명
	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AP시스템, 원익IPS 등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공정 등	348명
	이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금양 등	이차전지 소재, 공정, 평가, 리사이클	486명
	바이오	롯데바이오로직스, 한림제약, 수젠텍 등	생산공정, 품질관리, 생산 등	438명
	항공・우주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첨단항공・우주비행체 제조 등	471명

자료: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350-02) : 134,175백만원
- 대　학 : 88개 x 1,425백만원 = 125,400백만원
- AI융합 : 10개 x 500백만원 = 5,000백만원
- 협약기관 : 1개 x 100백만원 + 5개 x 150백만원 + 1개 x 200백만원 + 2개 x 300백만원 + 1개 x 400백만원 = 2,050백만원
- 사업관리비 : 1식 x 1,725백만원 = 1,725백만원

자료: 교육부

2025년 이전 첨단분야 부트캠프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 등 주로 특정 제조업 분야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2026년에 37개 사업단을 신규 선정할 예정인 AI 분야는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최근에 다양한 영역에서 AI 기술의 접목이 시도되면서 관련 기업이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특징이 있음.

교육부는 산업현장에서 AI 실무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2025년 추가경정예산 반영 후 3개의 AI 부트캠프를 신규 선정할 당시 56개 학교가 사업설명회에 참여하고 36개 학교가 신청서를 내는 등 대학측 관심도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2026년 대규모 신규 선정에 앞서 2025년 하반기에 구체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향후 AI는 산업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므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2026년 한 해에만 37개나 되는 대학의 사업단이 한꺼번에 AI 부트캠프로 신규 선정될 예정인데, 한번 선정되면 향후 5년간 매년 15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만큼,

교육부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실무역량의 구체적인 내용, 단기 집중과정을 통한 양성 효과, 산업체 채용 및 대학의 일반 교육과정과 연계 등에 대해 면밀하게 준비한 사업단이 선정되어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임.

16.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관리 필요

가. 개 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은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27년 3~5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703억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2)]

[2026년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	-	470,335	470,335	순증

이 사업은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중인 3~5세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유아교육비, 방과후과정비, 기타필요경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자치단체교부금(330-02)임.

2024년 12월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수정안에서 목적 예비비 배정 근거(2,681억원)를 마련한 후 2025년 7월 예비비 1,288억 5,200만원을 승인하여 2025년 하반기 만 5세 유아 27.8만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만 4~5세 유아 50.3만명 지원을 위해 이 사업 예산안 4,733억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2027년도에는 만3~5세 유아 74.2만명 지원을 위해 6,960억 6,300만원이 편성될 예정임.

[2026년도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사업의 예산안 세부내역]

○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비 : 101,902명 × 2만원 × 12개월 = 24,456백만원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 226,221명 × 11만원 × 12개월 = 298,612백만원
○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 175,318명 × 7만원 × 12개월 = 147,267백만원

자료: 교육부

62) 영유아특별회계-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1631-301) (영유아정책국)

나. 검토의견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추진에 따라 학부모 부담분이 실제 감소로 이어지는지 추적관리하고, 유치원 수업료 인상 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감쇄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63]에 따르면 유치원·어린이집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은 무상으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1601-300) 사업예산(2026년도 2조 8,386억 2,0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63)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한편「유아교육법」제25조 및「영유아보육법」제38조[64]에서는 수업료·보육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부모에게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업 예산안은 해당 부담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다만, 사립유치원 수업료 등은 해당 유치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65]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고 지원만으로는 학부모 부담 해소를 담보할 수 없는 측면도 있으므로, 교육부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추진에 따라 학부모 부담분이 실제 감소로 이어지는지 추적관리하고, 유치원 수업료 인상 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감쇄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64)「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① 유치원의 설립 · 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후단 생략)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 · 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65)「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2. 공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 금액을 따른다.
3.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유치원을 신설하는 경우 등 각 유치원별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정한 때에는 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해당 유치원의 지도 ·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한 수업료 및 입학금과 공립 및 사립유치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신규): 신학기 적용을 위한 신속한 준비 필요

가. 개 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은 민간 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의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511억 7,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6]

[2026년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영유아보육료 지원	3,240,039	3,353,124	3,644,273	291,149	8.7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	-	251,175	251,175	순증

한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개선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50억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7]

[2026년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961,911	1,961,911	2,138,316	176,405	9.0
보육교직원 인건비	1,169,743	1,169,743	1,329,289	159,546	13.6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	-	75,012	75,012	순증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어린이집 등(이하 “인건비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고,

66) 영유아특별회계-영유아보육료 지원 (1633-331) (영유아정책국)

67) 영유아특별회계-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40-404) (영유아정책국)

그 밖에 민간 어린이집 등(이하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나, 이 중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면서 일정한 요건[68]을 충족할 경우 기관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2026년에는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예산 2,511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에 0세 아동 1인당 47만 4,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예산 750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추가 배치교사 5,03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2026년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지원대상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2026년 0세반 아동	62,994명	30,200명
지원예산	251,175 백만원	75,012 백만원
산출근거	아동 1인당 474천원 × 63천명	5,033명(추가배치교사 수) × 34,091천원(2025 지원단가) × 2026 처우개선율(3.5%) × 영아반 지원비율(80%) × 국고보조율(52.8%) ※ 0세반 비율 개선에 따른 추가배치교사 : (30,200명(2026년 인건비 지원기관 0세아 수)÷2) - (30,200명÷3) = 5,033명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정리

나. 검토의견

교육부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각 어린이집에서 2026년 신학기에 이를 적용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 정비와 현장 홍보·소통 등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68) <기관보육료 지원 요건>(2025 보육사업안내, p.372)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회계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교육부는 2026년에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0세반부터 교사-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향후 1세반, 2세반 등의 비율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바, 어린이집 교사-아동 비율 개선은 그 동안 보육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되어 왔으나,[69] 2005년[70] 이후 정부 제출 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21년만에 처음임.

[현행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1:3	1:5	1:7	1:15	1:20	1:20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26년 어린이집 0세반[71] 아동을 93,194명[72]으로 예측하고 있으므로 교사 비율 개선(1:3 → 1:2)을 위해 대략 15,532명[73]의 보육교사가 추가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 사업 예산이 통과될 경우 각 어린이집은 2026년 학기가 개시되는 3월에 0세반 보육 프로그램 및 교사 배치를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계획[74]을 확정하고 필요할 경우 신규 교사 충원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조속히 정비하고[75] 각 지자체[76]와 어린이집에 해당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는 등 교사 비율 개선을 위한 제반 조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69) 참고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이전 정권 국정과제(46-2.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2024년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 이번 정부 국정과제(101-3.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모두 반영되어 있음.

70) 2004년 이전에는 0세반・1세반 구분 없이 1:5 비율이 적용되었으나, 2005년 1월 전부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3으로 되어 있으며,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음.

71) '2025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2026년 0세반 인원은 2025.1.1.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구성될 것임.

72)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 0세반 아동을 62,994명으로,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0세반 아동으로 30,200명으로 각각 예측하고 있음.

73) 0세반 아동 93,194명에 대하여 현행 비율 1:3을 적용하면 보육교사 31,065명이 필요하나, 개선비율 1:2를 적용하면 보육교사 46,597명이 필요하고 그 차이는 15,532명임. 다만, 예를 들어, 0세반 아동이 2명 또는 4명인 경우에는 현행비율에 따른 교사 수와 개선 비율에 따른 교사 수에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는 다를 수 있음.

74) '2025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는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신학기 입소예정자를 2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권장되며(p.76), 각 어린이집에서는 아동 및 학부모 보육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간대별 보육프로그램과 교사 배치를 포함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은 매 학기 시작 시점에 수립・실시하여야 하고(p.80), 한편,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매년 3월에 확정된 영아반 및 유아반 교사 수 범위에서 다음 연도 2월까지 그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p.337)하고 있음. 즉, 매년 3월 초에는 영아반 및 유아반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1년간 교사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75)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보육사업 안내' 등의 개정이 필요함.

76)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등은 각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하는 자치단체 경상 보조 예산임.

국가교육위원회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없음.[1)]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10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억원(△1.8%) 감소함.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03.4	-	101.5	△1.9	△1.8
총지출	103.4	-	101.5	△1.9	△1.8

문의 : 고정철 예산결산조사관 @assembly.go.kr (02-6788-568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 예산안은 없음.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0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억원(△1.8%) 감소함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03.4	-	101.5	△1.9	△1.8
합 계	103.4	-	101.5	△1.9	△1.8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2]이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3]도 해당 사항이 없음.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개로 구성되어 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성 성격의 세부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사업 1개로, 이 중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연차별 적용에 따른 교육과정 연구센터 및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예산과 국민의견 수렴·조정 예산을 확대한 것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은 법 개정 논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 숙의·공론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교육정책 숙의·공론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사업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소관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8,200만원(102.5%) 증액된 5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	4,617	4,617	4,386	△161	△3.5
국민의견수렴 및 현장소통 활성화	540	540	669	159	29.4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275	275	557	282	102.5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법 개정 논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사업 예산이 교육정책 숙의·공론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 일반회계-국가교육위원회 운영지원(7031-316)(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해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5]로서 2023년 6월 1기 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2년간 활동[6] 후 2025년 6월 임기를 종료하였고, 2기 참여위원회는 2025년 9월 현재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음.

2026년 예산안에서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02.5% 증액된 5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가교육위원회는 동 기구를 (가칭)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고 숙의·공론화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구체적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숙의토론(6회 내외), 주제별·직능별·권역별 소그룹 토론(4회 내외), 배심위원회 운영(4회 내외)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2026년도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 증액사유]

○ 예산 : (2025) 275백만원 → (2026 예산안) 557백만원 (+282백만원, +102.5%)
○ 증액사유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인 사회적 합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배심제도 도입(국민참여배심위원회 개편 등), 숙의·공론화 기능 활성화 등 추진 필요
- 주제별·직능별 소그룹 운영, 권역별 오프라인 토론회 활성화 등 국민참여위원들의 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공론화 기법을 활용한 숙의토론을 위해 예산 증액 필요

기존	변경
온라인 중심의 자유·숙의토론 (6회 내외)	- 온·오프라인 병행 숙의토론(6회 내외) - 주제별·직능별·권역별 소그룹 토론(4회 내외) - 배심위원회 운영(4회 내외)
예산 범위 내 일부 토론회 대상 수당 (10만원)	모든 토론회 참여 시 수당(10만원)

자료: 국가교육위원회 제출자료 정리

교육정책 숙의·공론화 기능 강화는 국가교육위원회 제도 취지[7]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나, 국민참여위원회를 (가칭)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거나 배심위원회를 연 4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

5)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민참여위원회) 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국민참여위원회는 위원회가 제10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국민의견 수렴과 관련된 자문을 수행한다.
③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및 직능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국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1기 국민참여위원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음.

왜냐하면, 현행법에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배심”은 “자문”보다 강한 구속력이 있다고 이해되며, 소관 사항이나 절차, 국가교육위원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국민참여위원회 또는 배심위원회를 통한 숙의·공론화의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연도	행사	일시 / 참석자	논의 주제
2023년 (6회)	발대식	‘23.6.23. 228명	① 국민참여위원회 소개 및 활동 안내
	온라인 워크숍	‘23.8.12. / 8.16 / 8.17. 296명	①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과 개선과제 논의
	2028 대입개편시안 토론회	(1차) ‘23.11.11. / 11.15. 215명	①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내용 중 공감가는 내용 ②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내용 중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
		(2차) ’ 23.11.22. / 11.25. 190명	③ 수능의 통합과목 체계로 전환에 따른 장단점 ④ 내신 상대평가 9등급에서 5등급 개편에 따른 장단점 ⑤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3차) ‘23.11.29. / 12.2. 189명	⑥ 고교 내신에서 논·서술형 평가 강화 및 평가의 신뢰성 확보 방안 ⑦ 내신에서 절대·상대 평가 병기 시 기대 효과 ⑧ 심화수학의 수능 선택과목 도입여부
		(종합토론회) ‘23.12.5. 154명	⑨ 미래형 대입정책수립에서 고려해야할 사항
2024년 (6회)	2024년 워크숍	‘24.4.23. 134명	① 미래교육비전 관련 토론
	제1차 토론회	‘24.6.26 / 6.28. 167명	① 우리나라 교육의 한계와 그 이유 ②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 및 과제 ③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미래모습
	제2차 토론회	24.9.30. / 10.10. 145명	①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방향(안)」 논의 ②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방향 비전(안) 논의
	제3~5차 토론회	(1차) ‘24.11.29. / 12.2. 176명	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학 정원 조정 ② 교원 자격의 개방성
		(2차) ’ 24.12.6. /12.10. 131명	③ 고교내신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 방안 ④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⑤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체계 구축
		(3차) ‘24.12.12. / 12.19. 133명	⑥ 대학수학능력시험 내 서·논술형 문항 도입 ⑦ 진로형 수능 체제 도입 등 수능 체제 이원화 여부
2025년 (5회)	제1~3차 토론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1차) ‘25.4.28. / 4.29. 145명	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합리성 제고
		(2차) ’ 25.5.7. / 5.8. 132명	② 사교육 과열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
		(3차) ‘25.5.12. / 5.14. 108명	③ 지역의 특수성·교육수요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학교 운영 ④ 적정 학급당 학생 수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역별 교육여건 조성
	1기 성과토론회 및 성과공유회	(성과토론회) ‘25.6.18. 43명	① 1기 활동 소감 공유, 2기 운영을 위한 제언
		(성과공유회) ‘25.6.25. 130명	① 1기 활동 내용 공유, 우수 위원 시상, 활동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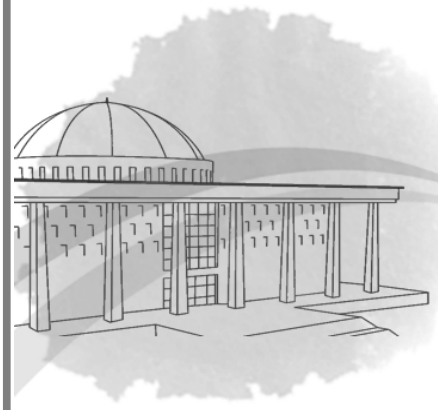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7)「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5년 9월 현재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시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구성, 소관사항, 의결 방법·효과 및 회의록 작성·공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이 2건[8] 발의되어 있음.

따라서 이 사업 예산은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개편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법 개정 논의 경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예산이 교육정책 숙의·공론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8)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0호,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2025.6.12.),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2090호,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25.8.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1)]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수입은 10조 4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999억원(4.1%) 증가함.

예산은 8조 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4억원(△2.0%) 감소한 반면, 기금은 2조 421억원으로 전년 대비 5,663억원(38.4%) 증가함.[2)]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81,736	81,736	80,072	△1,664	△2.0
기 금	14,758	14,758	20,421	5,663	38.4
총수입	96,494	96,494	100,493	3,999	4.1

문의 : 김영빈 예산결산조사관 kyb@assembly.go.kr (02-6788-5698)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정부안 제출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이관사업 현황은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참조

2)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지출은 23조 6,671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7,704억원(25.2%) 증가함.

예산은 21조 8,883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9,585억원(28.8%) 증가한 반면, 기금은 1조 7,7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1억원(△9.6%) 감소함.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69,298	189,178	218,883	49,585	29.3
기 금	19,669	20,658	17,788	△1,881	△9.6
총지출	188,967	209,836	236,671	47,704	25.2

나. 예산안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은 총 10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7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12조 4,621억원으로 전년대비 2,941억원(△2.3%) 감소함.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3,923	3,923	3,952	29	0.7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20	120	127	7	5.8
우편사업 특별회계	53,784	53,784	54,107	323	0.6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57,868	57,868	55,567	△2,301	△4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11,059	11,059	9,994	△1,065	△9.6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국립 중앙과학관)	407	407	430	23	5.7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국립 과천과학관)	401	401	444	43	10.7
합 계	127,562	127,562	124,621	2,941	△2.3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0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27조 3,59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5,379억원(19.9%) 증가함.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85,931	105,571	129,251	43,320	50.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207	4,207	4,648	441	10.5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4,258	4,258	4,695	437	10.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204	9,443	11,862	2,658	28.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092	1,092	2,592	1,500	137.4
우편사업특별회계	53,784	53,784	54,107	323	0.6
우체국예금특별회계	57,868	57,868	55,567	△2,301	△4.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11,059	11,059	9,994	△1,065	△9.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407	407	430	23	5.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401	401	444	43	10.7
합 계	228,211	248,090	273,590	45,379	19.9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4개 기금(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계획안은 2조 5,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4억원(7.7%) 증가함.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2,631	2,631	2,879	248	9.4
과학기술진흥기금	1,986	1,986	1,230	△756	△38.1
정보통신진흥기금	10,010	10,893	11,030	1,020	10.2
방송통신발전기금	8,705	8,805	9,987	1,282	14.7
합 계	23,332	24,315	25,126	1,794	7.7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5개 기금(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기후대응기금)의 지출계획안은 2조 6,591억원으로 전년 대비 2,426억원(10%) 증가함.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2,631	2,631	2,879	248	9.4
과학기술진흥기금	1,986	1,986	1,230	△756	△38.1
정보통신진흥기금	10,010	10,893	11,030	1,020	10.2
방송통신발전기금	8,705	8,805	9,986	1,281	14.7
기후대응기금	832	832	1,465	633	76.1
합 계	24,164	25,147	26,590	2,426	10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110개(9,182억 3,1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3)]

그 중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 사업은 AI 바이오 분야의 기술축적·인재양성·산업확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AI바이오 혁신 거점을 시범 조성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2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 사업은 고신뢰성 융합데이터 및 LAM 원천기술 확보로 우리나라 피지컬 AI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AX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 지원(R&D)	1,000
2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사업	1,400
3	차세대 광기반 연산 반도체 핵심기술개발(R&D)	4,632
4	차세대 융복합 프리폼 디스플레이 핵심기술개발(R&D)	4,700
5	반도체첨단세라믹소재부품공정혁신기술개발(R&D)	3,200
6	AI+S&T 혁신 기술 개발(R&D)	4,500
7	차세대 AI+S&T 기반기술개발(R&D)	2,000
8	민관협력기반AI휴머노이드원천기술고도화(R&D)	6,400
9	자원순환형 초고에너지 밀도 주유형 알루미늄 공기전지(R&D)	4,000
10	미래 혁신 선도형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R&D)	5,000
11	양자공정선도기술개발(R&D)	2,000
12	국방양자암호통신·복합센서기술개발(R&D)	2,280
13	국가양자팹혁신생태계조성(R&D)	16,850
14	디지털 AI세포 구축(R&D)	3,750
15	AI-네이티브 첨단바이오 자율실험실(R&D)	13,500
16	생체노화리프로그래밍원천기술개발(R&D)	7,500
17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R&D)	19,980
18	공공기관임무중심감염병연구다부처협력(R&D)	1,300
19	첨단신약 타겟 발굴 검증 및 기반기술 개발(R&D)	3,675
20	치매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R&D)	1,650

3)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21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	10,200
22	치안신산업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R&D)	820
23	해양기초생산량 기반 탄소감축 연구(R&D)	1,762
24	극한지 스마트 광역탐사를 위한 로봇-ICT 융합기술개발(R&D)	1,400
25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실증확산 지원(R&D)	2,625
26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R&D)	1,872
27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기술 및 시스템 고도화(R&D)	6,000
28	비파괴검사 기술역량 강화(R&D)	1,500
29	국가전략기술 핵심역량 확보를 위한 중성자 활용 기술 고도화(R&D)	3,000
30	양성자가속기 성능향상 선행 R&D 사업(R&D)	2,274
31	EIC개발협력연구(R&D)	2,846
32	핵융합플러그인프로그램(R&D)	2,100
33	AI기반디지털가상핵융합로플랫폼개발사업(R&D)	4,500
34	CCU인증제도운영기반구축	1,000
35	개도국기후기술실증연구(R&D)	3,000
36	혁신연구장비핵심기술개발및상용화(R&D)	4,500
37	공공연구성과 실증 시범사업(R&D)	12,750
38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기술 현장화 지원(R&D)	2,500
39	AI기반 개방형 자율 디지털트윈 핵심기술 개발(R&D)	6,600
40	AI·블록체인 융합 기반 자율형 고신뢰 핵심기술 개발(R&D)	2,000
41	AI기반 안전 관리분야 디지털 트윈 선도	6,000
42	디지털포용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정보화)	1,200
43	전자문서 기반 디지털전환 확산 지원	3,000
44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지원	5,978
45	AI혁신을 위한 데이터 안전 활용 지원 사업	5,000
46	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Data-X) 지원	12,000
47	AI클라우드 경쟁력강화 기술개발(R&D)	6,000
48	경량·저전력 AI 한계극복기술개발(R&D)	9,000
49	실세계능동형에이전틱AI기술개발(R&D)	6,000
50	인간인지기반 AI 핵심원천기술개발(R&D)	10,000
51	컴퓨팅자원집중형인공지능응용기술개발(R&D)	4,500
52	AI 분야 오픈소스 생태계 조성	11,000
53	가상융합기반피지컬AI핵심기술개발(R&D)	5,063
54	가상융합지능화핵심기술개발(R&D)	10,000
55	ICT 전략융합 R&D 바우처 지원(R&D)	6,900
56	디지털딥페이크범죄대응핵심기술개발(R&D)	3,000
57	ICT기반 디지털서비스 탄소중립 혁신기술개발(R&D)	5,625
58	AX 혁신기업 창의 기술개발(R&D)	7,500
59	자율행동체 온디바이스 응용 지원 핵심기술개발(R&D)	6,000
60	고성능 AI(Hyper-AI) 네트워크 기반조성 사업	8,300
61	AI-RAN 글로벌 선도 프로젝트(R&D)	9,000
62	차세대 네트워크 AI파운데이션 모델(NFM) 개발(R&D)	4,000
63	데이터센터네트워크인프라기술선도사업(R&D)	7,000
64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디지털플랫폼 기술개발(R&D)	2,000

65	AI생태계 보안 내재화 핵심기술개발(R&D)	3,600
66	범국가 양자내성암호 전환 핵심기술개발(R&D)	3,600
67	디지털인프라 확장을 위한 전파 핵심기술개발(R&D)	3,000
68	AI 기반 민군 유무인 복합체계 주파수 공동사용 및 운용 기술개발(R&D)	2,800
69	차세대 특화망 융합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1,000
70	디지털미디어이노베이션기술개발(R&D)	17,007
71	광대역고출력무선전력전송전자파억제원천기술개발(R&D)	1,300
72	AI활용 미인증 기자재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76
73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지원	1,207
74	초거대산업AI연구지원(R&D)	4,500
75	국산NPU기반 AI CCTV 전환	10,000
76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	60,000
77	경쟁형 AI혁신인재 성장 지원	13,000
78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R&D)	15,000
79	AGI 준비 프로젝트	20,000
80	AI 공간 컴퓨팅 창업 생태계 활성화	1,500
81	AI AGENT 선도 국가 사업	20,000
82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기술개발(R&D)	8,000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83	미래소재디스커버리지원+(R&D)	2,250
84	첨단소재원천기술성장지원(R&D)	4,05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5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지원	500
86	AX실증밸리조성(R&D)	16,967
87	소프트웨어인재키움	1,228
88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AI 융합혁신 센터 구축	3,500
89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	1,000
90	해양문화도시 기반의 에이지테크 실증거점 조성	3,000
91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R&D)	7,920
92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40,000
93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40,000
94	도서형 기후·해양 재난 AX실증사업	2,0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95	AI·SW 중심대학	117,960
[우편사업특별회계]		
96	우정사업정보보호(정보화)	7,009
97	우편물류기술연구개발(R&D)	825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98	원자로 재료열화 대응 혁신기술개발(R&D)	3,000
99	사용후핵연료 통합관리 혁신기술개발사업(R&D)	1,000
[정보통신진흥기금]		
100	블록체인-AI·데이터 국가 혁신선도	9,000
101	전국민 AI활용서비스 개발환경 조성	12,500

102	AI통합바우처	89,775
[방송통신발전기금]		
103	AI기반가상융합산업육성	4,500
[기후대응기금]		
104	탄소 네거티브 DAC 기술 고도화 사업(R&D)	5,000
105	수소융합혁신기술개발(R&D)	4,000
106	Net-zero 구현 초격차 태양전지 개발(R&D)	5,000
107	청정수소원천기술밸류업(R&D)	4,500
108	AI기반무탄소에너지활용화학기술개발(R&D)	3,400
109	토양기반기후회복력진단및강화기술개발(R&D)	1,625
110	CO2동시포집-전환(RCC)융합기술개발사업(R&D)	4,500
총지출		918,231

주) 음영처리한 디지털미디어이노베이션기술개발 사업 170억 700만원 중 97억 6,700만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체 예정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구기반구축’ 사업, ‘AI 반도체 실증 지원’,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 사업 등 총 120개임.[4)]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행정사무정보화(정보화)	5,017	9,676	4,659	92.9
2	국가간협력기반조성(R&D)	38,070	49,934	11,864	31.2
3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R&D)	22,400	30,100	7,700	34.4
4	유럽연합 다자연구혁신프로그램 참여 지원(R&D)	9,086	12,514	3,428	37.7
5	과학기술 국제기구 부담금(R&D)	3,177	5,747	2,570	80.9
6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이해도 제고	1,586	2,086	500	31.5
7	한국연구재단 시설 지원(R&D)	370	744	374	101.1
8	기초과학연구원 시설 지원(R&D)	5,785	9,367	3,582	61.9
9	기초연구기반구축(R&D)	13,565	76,063	62,498	460.7
10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R&D)	11,194	68,431	57,237	511.3
11	리튬메탈 음극의 범용적 활용을 위한 모듈형 LEA 핵심기술개발사업(R&D)	3,000	11,240	8,240	274.7
12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15,400	30,182	14,782	96.0

4)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양자통신・센서)(R&D)				
13	양자과학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양자컴퓨팅)(R&D)	9,800	50,030	40,230	410.5
14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사업(R&D)	4,760	10,000	5,240	110.1
15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MELLODDY)(R&D)	3,050	4,550	1,500	49.2
16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R&D)	6,169	22,016	15,847	256.9
17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사업(R&D)	2,000	32,526	30,526	1526.3
18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R&D)	4,248	7,018	2,770	65.2
19	극한부품시험입증지원사업(R&D)	595	1,210	615	103.4
20	재난안전 임무용 육해공 무인이동체 개발(R&D)	1,000	5,000	4,000	400.0
21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연구운영비 지원(R&D)	14,828	19,921	5,093	34.3
22	방사선융복합산업지원(R&D)	3,500	4,700	1,200	34.3
23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R&D)	7,476	11,060	3,584	47.9
24	IAEA 기술협력부담금(ODA,R&D)	1,358	1,800	442	32.5
2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 운영비 지원(R&D)	247,439	370,614	123,175	49.8
26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운영비 지원(R&D)	112,587	159,323	46,736	41.5
2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시설 지원(R&D)	2,437	4,537	2,100	86.2
28	한국식품연구원 시설 지원(R&D)	500	1,500	1,000	200.0
29	한국화학연구원 시설 지원(R&D)	2,516	9,716	7,200	286.2
3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설 지원(R&D)	1,039	1,884	845	81.3
31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 지원(R&D)	53,195	93,052	69,677	74.9
32	협력융합 과학기술사업화 촉진지원(R&D)	5,785	7,916	2,131	36.8
33	K-HERO 육성・지원(R&D)	2,882	8,922	6,040	209.6
34	한국고등과학원 시설 지원(R&D)	930	6,321	5,391	579.7
35	인재활용확산지원(R&D)	54,449	84,519	30,070	55.2
36	울산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90,160	126,289	36,129	40.1
37	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218,356	287,242	68,886	31.5
38	광주과학기술원 시설 지원(R&D)	17,146	24,356	7,210	42.1
39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정보화)	1,534	3,300	1,766	115.1
40	건전정보문화조성(정보화)	4,194	10,157	5,963	142.2
41	디지털질서기반구축및글로벌확산지원	5,757	26,993	21,236	368.9
42	국방인공지능핵심기술개발(R&D)	1,000	2,926	1,926	192.6
43	AI연구용컴퓨팅지원프로젝트(R&D)	9,000	16,000	7,000	77.8
44	의료AI혁신생태계조성(닥터앤서3.0)	2,300	10,400	8,100	352.2
45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R&D)	13,500	21,000	7,500	55.6
46	생성AI선도인재양성(R&D)	5,200	27,000	21,800	419.2
47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사업(R&D)	6,000	34,000	28,000	466.7

48	디지털혁신기술국제공동연구(R&D)	6,460	9,751	3,291	50.9
49	디지털콜럼버스프로젝트(R&D)	2,813	6,563	3,750	133.3
50	AI 반도체 실증 지원	24,370	102,370	78,000	320.1
51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R&D)	36,620	60,751	24,131	65.9
52	칩렛 기반 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R&D)	4,000	5,330	1,330	33.3
53	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17,263	42,300	25,037	145.0
54	ICT융합 지능 디바이스 개발 활성화 및 확산 기반구축(R&D)	2,000	4,000	2,000	100.0
55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4,472	14,558	10,086	225.5
56	AI기반개방형5G-A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구축운영(R&D)	3,500	7,000	3,500	100.0
57	암호이용활성화	3,904	8,274	4,370	111.9
58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연구개발(R&D)	3,150	4,500	1,350	42.9
59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통신탑재체)(R&D)	8,470	11,920	3,450	40.7
60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R&D)	20,354	35,454	15,100	74.2
61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구축 및운영사업(R&D)	2,230	3,114	884	39.6
62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과기정통부)	3,194	4,194	1,000	31.3
63	총액비대상 비상안전기획관 기본경비	212	300	88	41.5
64	전파연구시험시설(정보화)	1,724	2,350	626	36.3
65	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 예측기술 개발(R&D)	1,000	3,070	2,070	207.0
66	EMP 등 전자파 침해 대응체계 마련	150	535	385	256.7
67	전파관리행정정보화(정보화)	775	1,064	289	37.3
68	기초과학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272,633	290,318	17,685	6.5
69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R&D)	1,905,258	2,265,651	360,393	18.9
70	집단연구지원(R&D)	430,445	470,581	40,136	9.3
71	국가신약개발사업(R&D)	41,161	51,586	10,425	25.3
72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361,072	434,276	73,204	20.3
73	방사광가속기공동이용연구지원(R&D)	67,586	80,944	13,358	19.8
74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203,744	241,008	37,264	18.3
7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94,484	105,590	11,106	11.8
7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97,218	109,909	12,691	13.1
77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	116,405	149,825	33,420	28.7

	지원(R&D)				
78	한국기계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R&D)	70,042	85,485	15,443	22.0
79	한국화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R&D)	83,863	99,509	15,646	18.7
8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R&D)	66,604	86,433	19,829	29.8
81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R&D)	59,850	76,881	17,031	28.5
82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지원	57,301	69,786	12,485	21.8
8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97,697	115,367	17,670	18.1
84	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97,634	117,461	19,827	20.3
85	차세대네트워크(6G) 산업기술개발(R&D)	86,958	106,754	19,796	22.8
86	프로그래머블 미디어핵심기술개발	3,000	4,000	1,000	33.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7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 지원(R&D)	11,594	15,423	3,829	33.0
88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154,061	165,256	11,195	7.3
8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R&D)	83,524	93,927	10,403	12.5
90	한국전기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R&D)	62,548	73,065	10,517	16.8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91	한국나노기술원지원(R&D)	2,110	3,110	1,000	47.4
92	한국화학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R&D)	15,264	24,007	8,743	57.3
93	나노・소재기술개발(R&D)	300,436	330,746	30,310	10.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4	보험모집보상금	191,400	206,400	15,000	7.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5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R&D)	69,700	118,800	49,100	70.4
96	중입자가속기구축지원(R&D)	4,837	19,315	14,478	299.3
97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R&D)	20,220	56,925	36,705	181.5
98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R&D)	17,400	89,016	71,616	411.6
99	연구개발특구육성(R&D)	106,104	160,843	54,739	51.6
100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	1,680	2,400	720	42.9
101	글로벌제조융합SW개발및실증(R&D)	1,500	13,500	12,000	800.0
102	지역과학관활성화기반조성	2,340	4,910	2,570	109.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03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60,000	83,043	23,043	38.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104	기본경비(자본계정,총액인건비 비대상)	116	841	725	625.0
105	창의전시관운영(자본계정)	4,347	7,650	3,303	76.0

106	시설관리(손익계정)	9,568	12,502	2,934	30.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107	전시관운영(자본계정)	4,012	5,538	1,526	38.0
[우편사업특별회계]					
108	국제우편배달취급비	58,750	76,553	17,803	30.3
109	우편총액기본경비	8	16	8	100.0
110	비공무원인건비	248,910	264,147	15,237	6.1
111	인건비	1,927,811	2,003,126	75,315	3.9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12	임대사업형청사건립	25,218	57,455	32,237	127.8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113	극한환경 원자력 전원공급 시스템개발(R&D)	2,520	3,360	840	33.3
114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기금,R&D)	36,590	87,350	50,760	138.7
[정보통신진흥기금]					
115	디지털전문·융합인재양성	50,752	91,188	40,436	79.7
116	미래디지털인재양성및저변확대	7,411	21,524	14,113	190.4
[방송통신발전기금]					
117	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R&D)	130,400	144,092	13,692	10.5
[기후대응기금]					
118	한계돌파형 4대 차세대이차전지 핵심원천기술개발(R&D)	6,200	9,500	3,300	53.2
119	글로벌 C.L.E.A.N(R&D)	4,025	5,366	1,341	33.3
120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R&D)	700	7,000	6,300	900.0

주) 음영처리한 프로그래머블 미디어핵심기술개발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체 예정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과천과학관) 등 9개 특별회계,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기후대응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로 756억원, 우편사업특별회계로 160억원이 각각 전출될 예정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0억원이 전출될 예정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944억원, 우편사업특별회계로 5,212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318억원이 각각 전출될 예정임.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9,070억원 예탁 및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874억원이 전출될 예정이고,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68억원이 전입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원금 4,300억원 회수 및 이자수입 194억원이 발생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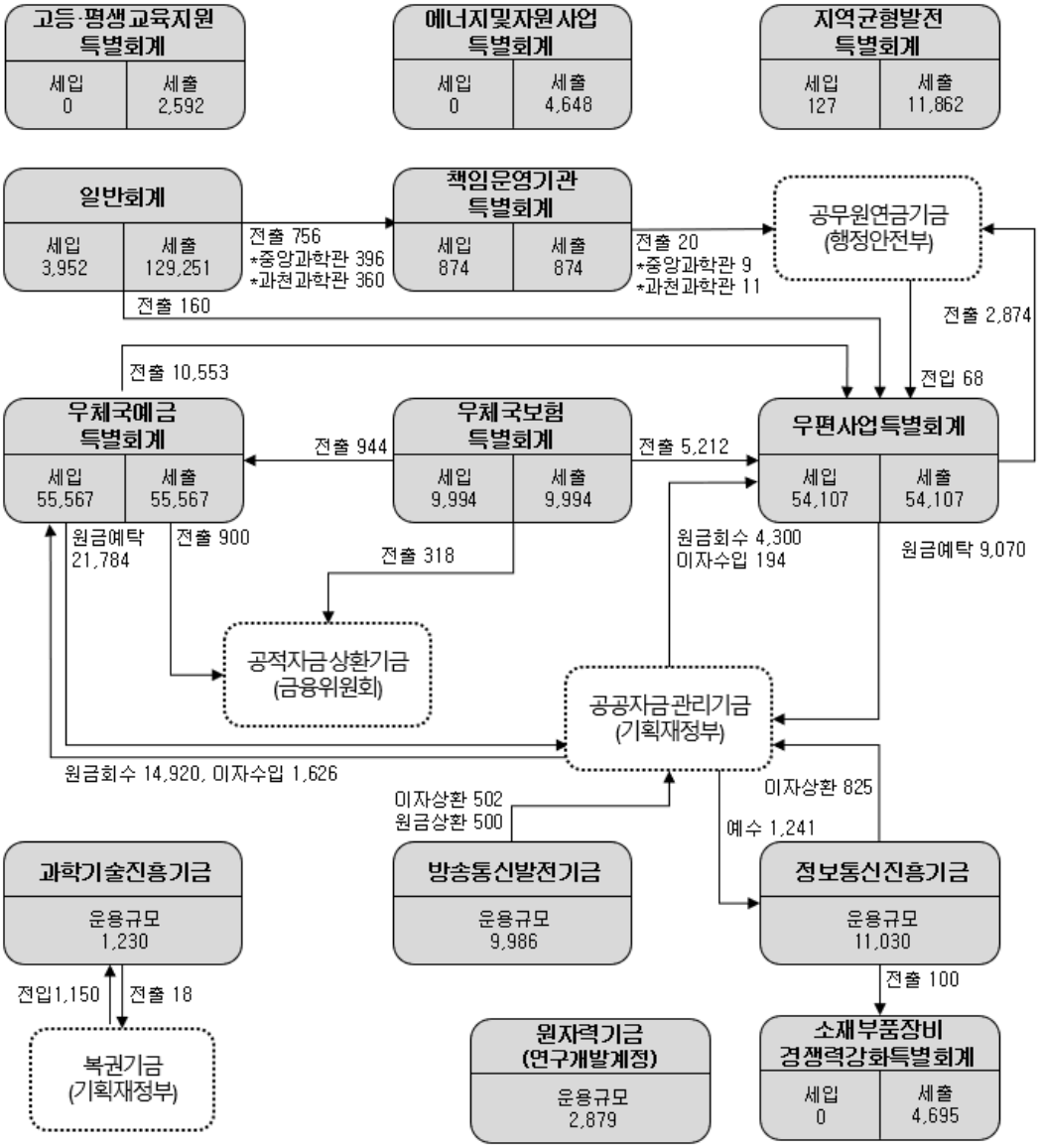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2조 1,784억원 예탁, 우편사업특별회계로 1조 553억원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900억원이 각각 전출될 예정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원금 1조 4,920억원 회수 및 이자수입 1,626억원이 발생할 예정임.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는 복권기금에 18억원이 전출되고, 복권기금으로부터 1,150억원이 전입될 예정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502억원 이자상환, 500억원 원금상환할 예정임.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825억원 이자상환 및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100억원 전출될 예정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241억원을 예수할 예정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1) 총계 기준
2) 정부안 제출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위한 AI 사업과 연구생태계 회복을 위한 R&D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정부조직개편으로 방송 진흥과 지식재산전략위원회 운영 사업이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가지식재산처로 이관된 것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서버 확충 사업 및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을 통하여 2026년 중 구축 예정인 GPU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이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GI 준비 프로젝트 사업에 민·관 협력 투자 방식의 국가 AGI 연구소 설립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국가 AGI 연구소의 형태나 설립 방안에 대한 기획을 통해 구체적인 설립 방안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국가맞춤인재양성(Bio Corelink) 사업은 사업 참여자인 의대·한의대 재학생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부재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를 담보할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넷째,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은 2025년도 5개 신규과제 선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5개 과제 중 1개 과제만 해외인재 채용이 완료되어 과제 수행 중이므로, 각 과제별 해외인재 채용 시점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 사업 예산에 ISP 수립 예산을 포함시키고, ISP를 수립 한 후 그에 기반하여 AI컴퓨팅 자원 및 자율실험실을 구축할 계획이나, AI컴퓨팅 자원 및 자율실험실 구축 예산은 ISP 수립 결과가 나온 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이관으로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총수입은 8조 71억 6,700만원으로 8조 72억 3,300만원에서 6,600만원이 감소하였고, 총지출은 23조 6,244억원으로 23조 6,671억원에서 427억원이 감소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총 17개 세출사업 및 지출사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식재산처 등 2개 부처로 이관되었고, 해당 사업들의 2026년도 예산안은 427억 2,000만원임.

주요 이관사업은 ‘디지털미디어이노베이션기술개발’ 사업 97억 6,700만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운영’ 사업 32억 1,600만원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이관 사업 현황(세출 및 지출)]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프로그래머블미디어 핵심기술개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프로그래머블 미디어핵심기술개발(R&D)	4,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4,1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방송통신재난관리 (재난방송온라인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방송통신재난관리 (자동자막송출시스템개발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미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디지털미디어이노베이션 기술개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9,7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총액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총액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AI 기반 방송미디어 혁신 융합인재 양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발기금	방송콘텐츠 진흥	미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미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총액비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총액비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1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총액대상 인건비(33명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총액대상 인건비	2,4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콘텐츠 진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콘텐츠 진흥	16,792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5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디지털미디어산업육성기반구축 (디지털미디어 실태조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정보화)	9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정보화)	1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지식재산처	일반회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3,2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총액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지식재산처	일반회계	총액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총액대상 인건비	지식재산처	일반회계	총액대상 인건비	156
합 계						42,720

세입예산안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에서 6,600만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이관 현황(세입)]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 /기금	목 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 /기금	목 명	2026년도 예산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과태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과태료	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가산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가산금	1
합계						66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과태료: 법률 제·개정을 고려한 세입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과태료’는 폐업 및 휴업 등의 미신고, 연구실 안전점검 미실시, 정보보호 관리체계 미인증 등 관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4,800만원(17.8%) 증가한 16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6년도 과태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과태료	1,396	1,396	1,644	248	17.8

[과태료 예산안 세부내역]

○ 직전 3개년(2022~2024) 평균 수납액 수준 편성: 16억 4,400만원
- 2022년 수납액: 11억 800만원 × 1/3
- 2023년 수납액: 16억 5,000만원 × 1/3
- 2024년 수납액: 21억 7,300만원 × 1/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태료 수입은 최근 3년(2022~2024년)간 수납액이 본예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2022~2024)간 과태료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799	799	799	1,402	1,108	138.7	79.0	287	7
2023	1,007	1,007	1,007	2,033	1,650	163.9	81.2	384	-
2024	1,396	1,396	1,396	2,741	2,173	155.7	79.2	563	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일반회계-과태료(56-563)(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과태료 세입예산안은 과거 3개년의 평균으로 산출됨에 따라, 법률 제·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 소요를 사전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태료 신설 조문 시행 후 계도기간 동안 위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태료를 세입예산안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예산안에 과태료 수입을 2022년 ~ 2024년동안 발생한 과태료 수입의 평균으로 편성하였는데, 해당 수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로 구성되어 있음.

[2022~2024년 과태료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련 법률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318	9	1
「방송법」」	131	36	4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1
「전기통신사업법」	483	149	275
「전파법」	170	130	11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311	1.741
「원자력안전법」	-	6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	1
합계	1,108	1,650	2,17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2025년 이후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파법」 개정안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근거가 신설되었고, 그 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디지털포용법」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26년 초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에 따른 과태료 수입 발생이 예상됨.

[2026년 중 시행 예정인 과태료 관련 조문(제·개정 모두 포함)]

관련 법률	신설 위반행위	위반 시 과태료	시행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0조제1항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3,000만원 이하	2025.3.27
「전파법」제89조의3제2호의2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	500만원 이하	2025. 4. 23.

관련 법률	신설 위반행위	위반 시 과태료	시행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	・고영향AI 사전고지의무 위반 ・국내주소가 없는 AI사업자 신고의무 위반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시정 명령 미이행	3,000만원 이하	2026.1.21. (예정)
「디지털포용법」 제37조제1항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미이행	3,000만원 이하	2026.1.22. (예정)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제3항	거짓・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 인정을 받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	500만원 이하 ~ 200만원 이하	2026.2.1. (예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6년 과태료 예산안 산출 근거는 2022년 ~ 2024년 과태료 발생액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률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태료 수입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2026년 사이에 과태료 관련 조문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예정이기는 하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어서, 실제 과태료 수입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이후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6년 예산안 산출 시와 같이 과거의 과태료 수입의 평균으로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법률 제・개정으로 신설된 과태료 조문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을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계도기간 동안 위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예상 수납액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사업: 참여자 모집실적 제고 필요

가. 개 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사업은 참여자 동의 기반 검체(혈액·소변 등)를 확보하고, 임상·유전체 및 공공데이터 등을 통합·개방하기 위한 R&D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7억 2,600만원(26.1%) 증액된 421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6)]

[2026년도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33,397	-	42,123	8,726	26.1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질병관리청이 함께 수행하는 다부처 사업으로, 2023년 6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시행 판단을 받고 2024년부터 수행되고 있음.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사업개요]

- 총사업비 : 5,806억원(질병청 직접사업 제외)
- 사업기간: 2024~2028년(총 5년)
- 참여부처: (주관)보건복지부, (참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 사업목적: 참여자 동의를 기반으로 검체(혈액, 소변, 조직)를 확보하고, 임상·유전체 데이터, 공공데이터 등을 수집·생산하여 R&D 인프라로서 ‘데이터뱅크’ 구축
- 사업내용: ①참여자 동의를 기반으로 희귀·중증 질환자(병원)와 일반인(검진센터 등) 참여자 모집, ②참여자의 검체(혈액·소변 등)를 채취해 인체자원(DNA·혈청 등) 제작 후 바이오뱅크(질병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보존, ③참여자의 임상(설문·검진 등)+유전체+공공데이터(건보공단 등) 등을 데이터뱅크(의정원 인체유래물은행)에 통합, ④정밀의료 등 연구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인체자원과 빅데이터 확보·검증 후 분양심의 통해 데이터 개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 일반회계-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1138-454)(기초원천연구정책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사업의 모집 대상 참여자의 질병 유형별로 적합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참여자 모집 과제별 실적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과제별 지연 사유를 파악하여 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부터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4년 신규과제 선정 과정에서 지원 저조로 인하여 공고가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과제 공고 일정표]

일정	내용
2024년 3월	사업기본계획 수립
2024년 4월	전문기관 협약체결 및 출연금 교부
2024년 4월	정책지정과제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협약체결
1차: 2024년 5월~6월 1차 재공고: 2024년 6월~7월 2차: 2024년 8월~9월 3차: 2024년 10월~11월 3차 추가공고: 2024년 11월	지정공모과제 수행기관 공모(1~3차)
1차: 2024년 7월 1차 재공고: 2024년 7월 2차: 2024년 10월 3차: 2024년 11월 3차 추가공고: 2024년 12월	지정공모과제 수행기관 선정(1~3차, 46개 기관(39개 과제)
1차・재공고: 2024년 7월 2차: 2024년 10월 3차・추가공고: 2024년 12월	지정공모과제 수행기관 협약체결 및 출연금 교부
1차・재공고: 2024년 7월~ 2차: 2024년 10월~ 3차・추가공고: 2024년 12월~	사업수행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기관들과 협의를 통하여 추후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기로 약속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였고, 2024년 12월 모든 과제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5년 2월 특정평가를 거쳐 참여자 모집 인센티브 추가, 모집기관에 대한 전담인력 인건비 추가 반영 등 사업 내용을 확대하였음.

[특정평가 결과 개요]

○ **(특정평가 개요)** 한국인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범부처(주관: 복지부, 참여: 과기부・산업부・질병청) 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미반영된 참여자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예산 등을 추가 반영하기 위한 특정평가 추진 ○ **(특정평가 결과)** 검토 결과 선정(경미한 계획변경) 및 평가 결과 확정: 514억원 증액 - ① 참여자 모집 인센티브(시간과 이동에 대한 보상) 제공을 위한 72만명 대상 5만원 증액: 363억원 - ② 참여자 모집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등 증액: 86억원 - ③ 대국민 대상 홍보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65억

주) 특정평가 결과보고서는 비공개 안건임에 따라 개요 및 결과만 요약하여 제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정평가를 통해 반영된 사항 중 참여자 모집 인센티브는 환자 1인당 5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 참여자의 경우 5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며, 중증 환자에 대하여는 해당 환자를 모집한 모집기관에 5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됨.

인센티브 지급 방식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반 참여자의 경우 주로 건강검진을 받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그 분량이 30장 이상으로 과다하여 사례금 지급을 통한 유인구조 도입이 필요하지만, 중증 질환자의 경우 5만원의 사례금 제공은 큰 효과가 없으므로, 2024년 병원의 참여 확보를 위하여 약속한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참여자 모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이 사업의 희귀・중증 질환자의 모집 실적이 일반 참여자 모집실적에 비해 더욱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참여자 모집기관에 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은 적절한 개선 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질병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7)]

[연도별 참여자 모집 계획 및 현황]

(단위: 명)

구분	~2025	모집실적	2026	2027	2028	합계
희귀	8,800	2,354	7,200	8,000	8,000	32,000
중증	36,000	3,547	34,800	34,000	34,000	138,800
일반	161,200	68,714	150,000	135,000	135,000	581,200
합계	206,000	74,615	192,000	177,000	177,000	752,000

주) 모집실적은 2025년 9월 22일 기준으로 집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정평가 과정에서 중증질환자에 대한 데이터 환류 보고서 제공이 검토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임.

또한 참여자 모집 과제의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중증 참여자 모집 과제의 경우 2025년 목표실적 대비 모집실적 비율이 최소 2%에서 최대 27.1%로 나타나고 있고, 일반 참여자 모집 과제의 경우 최소 12.7%에서 최대 72.6%로 나타나는 등 과제별 모집실적 편차가 크게 나타남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모집 실적이 저조한 만큼 과제별 지연 사유를 파악하여 조치하는 등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과제별 모집실적 현황]

(단위: 명, %)

공고단위	선정시기	주관연구개발기관	2025년 목표실적	모집실적	
					비율
희귀	1차	**병원	2,684	1,049	**39.1**
		**병원	2,684	890	33.2
		**병원	2,684	415	**15.5**
중증	1차	**병원	3,753	299	8.0
		**병원	3,703	63	1.7
		**병원	3,584	972	**27.1**
		**병원	3,756	674	17.9
		**병원	3,784	76	**2.0**
		**병원	3,753	458	12.2
	2차	**병원	5,080	58	1.1
	3차	**병원	5,080	595	11.7
		**병원	5,080	202	4.0
암	1차	**센터	1,316	7	0.5
일반	1차	**병원	8,500	3,366	39.6
		**병원	9,000	4,938	54.9
		**병원	8,975	3,877	43.2
		**병원	9,120	2,182	23.4
		**재단	9,400	6,825	**72.6**
		**병원	8,865	1,658	18.7
		**병원	8,500	3,539	41.6
		**병원	4,200	1,262	30.1
		**병원	4,376	2,135	48.5
		**병원	4,200	777	18.5
		**병원	2,750	1,060	38.6
	2차	**병원	11,900	5,306	44.6
		**병원	11,900	6,071	51.0
		**병원	11,900	3,898	32.8
		**병원	5,186	2,292	44.2
		**병원	5,200	1,666	32.0
		**병원	5,186	2,682	51.7

(단위: 명, %)

공고단위	선정시기	주관연구개발기관	2025년 목표실적	모집실적	
					비율
		**병원	5,186	1,928	37.2
	3차	**병원	7,200	2,426	33.7
		**병원	7,104	3,142	44.2
		**병원	7,159	906	**12.7**
		**병원	7,104	1,571	22.1
		**병원	7,104	1,549	21.8
		**병원	7,104	2,366	33.3
		**병원	7,104	1,292	18.2

주 1) 2차, 3차 선정 과제의 경우 단계별[1단계(2024~2026) + 2단계(2027 ~ 2028)] 목표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1단계 목표에 2/3를 곱한 값을 2025년까지 목표실적으로 추계

2) 모집실적은 2025년 9월 19일 기준으로 집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 GPU 활용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가. 개 요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은 AI 컴퓨팅 자원의 활용 및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서비스 개발 등 현장 수요 대응부터 생태계 조성까지 AI 산업 全 주기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892억 8,700만원(30.2%) 증액된 2조 1,087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8)]

[2026년도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AI컴퓨팅자원 활용기반강화	-	1,619,438	2,108,725	489,287	30.2
GPU 서버 확충	-	862,496	1,399,875	537,379	62.3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	598,342	683,250	84,908	14.2
공공AI클라우드 서비스개발지원	-	-	15,000	15,000	순증

내역사업인 **‘GPU 서버 확충’** 사업은 국내 AI 생태계 지원을 위한 GPU 서버를 확충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373억 7,900만원(62.3%) 증액된 1조 3,998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은 GPU 서버 확충에 따른 대규모 클러스터링 비용을 지원하는 등 통합운영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49억 800만원(14.2%) 증액된 6,83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서버 확충 사업 및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을 통하여 GPU 서버 1,875대(GPU 총 15,000장)를 구축할 계획임.

8) 일반회계-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2602-357)(인공지능기반정책관)

[GPU 서버 확충 계획 수량]

(단위: 대, 백만원)

서버	구성	수량	구매 단가	통합운영환경 구축 단가	총 구축 비용
DGX B200	B200 8장 (총 15,000장)	1,875	746.6	364.4	2,083,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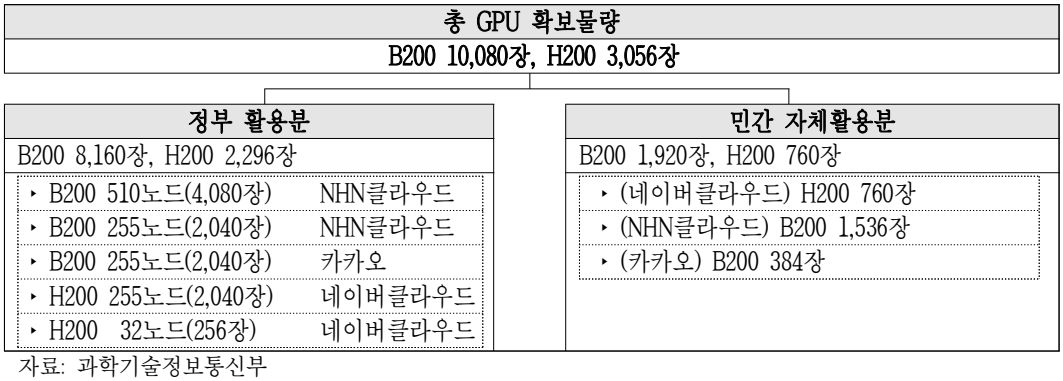
주) 단가 산정 시 환율은 $1=1,450원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예산 전액을 출연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모를 통하여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을 사업수행자로 선정하고 사업수행자가 GPU를 확보하고 구축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계획임.

GPU 서버의 구축은 사업수행자가 소유한 데이터센터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GPU 서버에 대한 소유권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갖고, 구축한 GPU 서버의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을 사업수행자에게 부여하여 GPU 서버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함.

참고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 예정인 GPU의 경우, 2025년 7월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및 카카오를 최종 참여 사업자로 선정하여 GPU 서버를 구축 중에 있으며, 확보 예정 GPU 13,136장 중 운영·관리비 충당을 위해 민간이 자체 활용하는 2,680장을 제외한 10,456장을 정부가 활용할 계획임.

[2025년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 GPU 확보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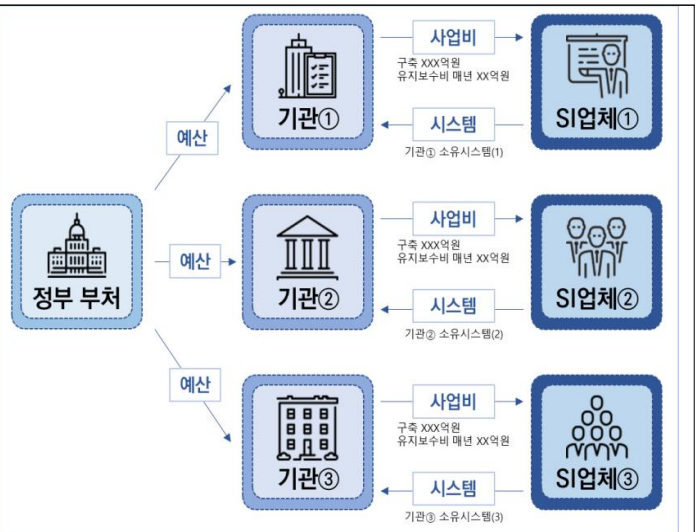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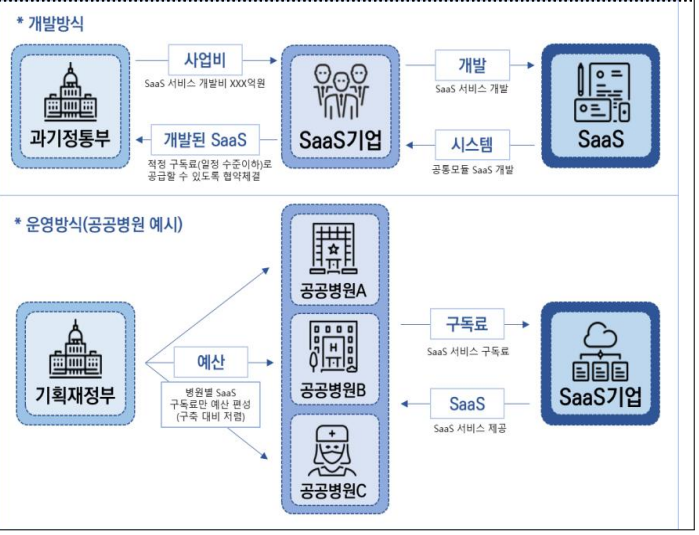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다른 내역사업인 **'공공AI클라우드서비스개발지원'** 사업은 공공부문 대규모 정보시스템(공공 의료기관 등) 대상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AI 클라우드 기반 SaaS 개발과 이용 기관 도입 및 시스템 간 연계 검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 의료기관들이 의료정보시스템(HIS) 노후화에 따라 이를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전환하면서, 기존에는 주로 시스템 통합 구축(System Integration: SI)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AI·클라우드 기반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개 시스템에 대한 SaaS 개발지원을 위한 예산 150억원이 편성되었음.

[기존 방식과 SaaS 전환 방식의 차이점]

○ (기존 방식) 기관별 유사한 시스템도 각 기관별로 구축함 - (예산) 기관별로 매년 구축 사업비와 유지보수비 편성 - (시스템 보유) 각 기관	
○ (공통모듈 SaaS 방식) 유사한 기능을 SaaS 기업이 통합 개발 - (예산) 기관별로 매년 SaaS 구독료만 예산 편성 - 총소유비용(TCO) 측면에서 기존 방식 대비 저렴하고 인프라 구입이 필요 없어 초기 구축 비용이 낮음 - (시스템 보유) 각 기관은 감가상각 및 물리적·기술적 관리가 필요한 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아도 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서버 확충 사업 및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을 통하여 2026년 중 구축 예정인 GPU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이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4조원을 투입하여 13,136장 규모의 GPU를 구축할 예정이고, 그 중 10,456장의 GPU 서버는 정부활용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해당 GPU를 활용한 다른 사업과의 연계 방안이나 국내 산학연에 대한 공급방안 등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음.

그에 따라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에는 AI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정부구매 GPU 활용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AI+S&T 혁신 기술개발(R&D)’ 사업은 별도 신규사업 추진을 통하여 GPU 자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내 예산편성 과정에서 동 사업에 대한 GPU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 신규사업은 정부 구매 GPU 활용 또는 슈퍼컴퓨터 6호기 활용 가능성을 보고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지 않은 반면에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사업은 GPU를 구축할 계획으로 250억원이 GPU 구축 비용으로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음.

한편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NAIS)’ 사업은 GPU H100 60장을 임차할 계획으로 시장 최저가 수준의 GPU 임차 비용 185억원을 반영하였는데, 정부 구매 GPU는 시장 최저가의 5% 수준의 비용으로 임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바, 정부구매 GPU와 연계했다면 그 93%인 172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을 것으로 보임.[9)]

이와 같이 AI 관련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활용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GPU 확보 방안을 각 사업별로 임차, 구축, 타 사업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추진 중인데, 2026년까지 정부가 확보할 예정인 GPU 33,952장 중 25,456장이 이 사업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므로 GPU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활용계획에 근거한 AI 분야 개별사업의 계획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직 활용계획을 수립 중이기는 하나, 정부 구매 GPU의 활용 비용은 시장최저가의 5%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임.

[GPU 구축 및 서비스 개시 일정]

구분	2026.1초	2026.6말	2026.n월	2027	2028
정부구매(10,456장)	개시(순차)				
슈퍼컴퓨터 6호기(8,496장)	-	개시			
정부구매(15,000장)	-	-	개시(순차)		
SPC(15,000장)	-	-		조기 개시	개시
합계	10,456	18,952	33,952	33,952+@	48,952

주) 구체적인 서비스 일정 미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서버 확충 사업 및 GPU 통합운영환경 구축 사업을 통하여 2025년 GPU 13,136장에 이어, 2026년 GPU 15,000장을 신규 구축할 계획인데 단기간에 대규모 GPU 서버를 구축하는 것인 만큼, 2026년 사업자 간 경쟁이 2025년에 비해 감소함으로 인해 GPU의 구축·운영 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GPU 10,000장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치고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하여 GPU 15,000장을 추가 구축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기간에 대규모 GPU 서버를 구축할 계획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GPU 구축의 경우 계약 체결이 모두 완료되어 현재 구축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말까지 GPU 서버 구축은 모두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임.

이어서 2026년 그 1.5배인 15,000장 구축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대규모 GPU 서버를 추가 구축하는 만큼, 2025년에 지원하였다가 GPU 서버 구축 역량 부족 또는 운영비용 과다 산정 등의 문제로 탈락한 사업자가 2026년에 선정될 경우 GPU 구축 조건이 기존보다 악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2026년 사업자 선정 시 2025년도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최소 기준을 마련하는 등 GPU의 구축·관리나 운영비용 등의 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공공 AI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은 데이터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면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도 커질 수 있으므로, 데이터 보안 방안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신규사업으로 ‘공공 AI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SI형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 의료정보시스템을 SaaS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그런데 SaaS형은 기존 SI형에 비해 초기 도입 비용이 낮고 확장성이 높으며 의료기관간 데이터 연동 가능성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병원의 특수한 수요사항을 반영하기 어렵고,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 또는 연계됨에 따라 기존 내부망을 활용하는 SI 방식에 비하여 정보 보안에 취약해지는 단점도 존재함.

[SI 구축형과 클라우드(SaaS)형 비교]

구분	SI 구축형(On-premise)	클라우드(SaaS)형
도입 비용	초기 도입 비용 높음 인프라 장비 구매 및 시스템 구축 작업 등 필요	초기 도입 비용 낮음 표준화된 서비스를 동일한 규격의 구독료 기반으로 이용
도입 속도	수개월~수년 소요 시스템 간 연계, 커스터마이징 수준에 따라 가변적	즉시 도입 가능
유지 보수	병원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또는 전문업체와 별도의 계약 필요	클라우드 업체에서 자동 업데이트, 패치 제공
확장성	의료기관별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확장성이 낮음	표준화된 서비스를 구독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확장성이 높음
유동성	이용량 과다 시 서버 과부하로 인한 시스템 중단 가능 이용량 과소 시 유휴자원 발생 가능	이용량 변동에 따라 즉시 확장/축소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가능
커스터 마이징	병원별 업무 프로세스 및 특수진료과 등 요구사항 밀착 반영	표준화된 서비스이므로 커스터마이징이 제한적
데이터 관리	**내부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여 외부유출 위협에 비교적 안정적**	**데이터가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 또는 연계**
신기술 적용	수요기관 주도적으로 가능	벤더의 정책과 일정에 의존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히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정보시스템을 SaaS형으로 전환함에 따라 하나의 기업이 여러 의료기관의 의료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게 되므로, 해당 기업에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기존 SI 구축형에 비하여 클 것으로 우려되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참여 기업의 데이터 보안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실제 과업수행 기간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은 공공부문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공공분야의 AI 대전환(AX) 가속화 및 AI 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50억원(566.7%) 증액된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10)]

[2026년도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공공AX 프로젝트	-	15,000	100,000	85,000	566.7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예산액 전액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출연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각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에 AI 솔루션 도입 수요조사를 거쳐 공공혁신 효과와 파급효과가 큰 부처 수요를 선별하여 해당 부처와 과제를 공동으로 기획한 후,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수행자(ICT기업)를 선정하여 AI 솔루션 개발 및 부처 대상 실증을 거쳐 현장 적용 및 확산을 수행하게 됨.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방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0) 일반회계-공공AX 프로젝트(2602-364)(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이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추진되었으며, 2025년 10월 13일 기준 수행기관 선정 절차가 진행 중임.

[2025년 사업추진 일정(안)]

일시	구분
2025. 7월 7일	전담기관(NIPA) 협약체결
2025. 7월 2주 ~ 4주 (약 2주)	부처 수요조사
2025. 7월 5주 ~ 8월 1주	부처수요 선정
2025. 9월 2주 ~ 9월 5주	수행기관 공고
2025. 10월 3주 ~ 10월 4주	수행기관 선정평가
2025. 10월 5주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2025. 12월 말	결과평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도 20개 신규 추진 과제(안)]

분과	분야
조세심판분과	AI 기반 범국민 조세불복 통합검색 및 사건조사서 작성 지원 솔루션 개발·실증
건강관리분과	AI 기반 건강습관 개선정보 제공 솔루션 개발 및 실증
복지행정분과	AI 기반 대국민 복지 안내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식품안전분과	국민 안심 식탁을 위한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산재보상분과	신속·공정한 AI 산재보상 플랫폼 개발·실증
생활화학분과	식품모양 생활화학제품의 오인·섭취 사고 방지를 위한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가뭄대응분과	농업용 지하수 예측·활용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감염병대응분과	건강한 내일을 위한 감염병 대응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교육훈련분과	중소기업 원격훈련 통합 관리 및 지원 AI 솔루션 개발·실증
분쟁조정분과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안전환경분과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개발 및 실증
검역관리분과	AI 기반 해외여행자 친화적 검역 시스템 개발·실증
농기계분과	농작업 사고제로! AI 농기계 안전운행 서비스 개발·실증
특허정보분과	모두를 위한 EASY 특허정보 Agent 개발 및 실증
법제정보분과	K-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혁신 AI 개발 · 실증
스마트팜분과	스마트팜 재배관리 AI 에이전트 개발 및 실증
근대자료분과	한국 근대 다문자 자료 활용 지원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근로감독분과	AI 기반 노동법 준수 지원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자상예방분과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고위험군 조기 발굴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인포데믹분과	인포데믹 관리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에 선정된 신규과제의 계속지원을 위한 예산 450억원과 신규과제 25개 선정을 위한 550억원이 편성되었음.

[공공AX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공공AX 계속과제) 20개 × 22억 5,000만원: 450억원 ○(공공AX 신규과제) - 20개 X 15억원: 300억원 - 5개 X 50억원: 250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첫째,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은 2026년도 신규과제의 경우 실제 과업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도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 20개 과제에 대하여 과제별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2026년에는 2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초 계획하였던 2025년도(1차년도) 과업수행 기간(4개월) 및 2026년도(2차년도) 과업수행 기간(12개월)을 고려했을 때, 연도별로 실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비율로 편성된 것으로 보임.[11]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신규선정 과제에 대하여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동일한 금액(1차년도:50%, 2차년도:50%)을 지원할 계획인바, 이는 1차년도 신규과제 선정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과업수행기간에 비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까지 과제 선정을 마치고 2026년 3월부터 신규 과제 수행에 착수할 계획인데, 이 경우 2026년도(1차년도) 3월 ~ 12월의 과업수행 기간(10개월) 및 2026년도(2차년도) 과업수행 기간(12개월)의 비율을 고려하면 1차년도 예산은 총 과제비의 45%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12]

11) 4개월:12개월 = 7억 5,000만원:22억 5,000만원

12) 참고로 현재 1차년도 신규과제 선정 예산 550억원은 총 과제비의 50%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45%만 반영할 경우 필요 예산은 495억원임.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의 2025년 신규 선정 과제에 대하여 약 2개월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평가를 진행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평가대상이 되는 과업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유효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는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제출한 계획은 2025년 9월 말까지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2026년 3월에 연차평가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2025년 10월 말까지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2025년 12월에 연차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이와 같이 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부합하게 국민 효능감이 높은 과제 선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과정이 당초 예상보다 길게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다만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과제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평가범위가 한정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과업의 질적 완성도나 과제 성공 가능성에 대한 유효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사업 공고서에는 연차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나 연차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사업수행기관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사업수행기관 선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연차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협약체결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AX 프로젝트 사업의 2026년도에 2년간 100억원을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하여 다부처 참여 과제를 지원할 계획인데, 기존 과제(2년간 30억원)에 비하여 규모가 3배 이상 증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제기획이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다부처 참여 과제이므로 참여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의체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부처 간 역할 및 이견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AX프로젝트의 2026년에 연도별 50억원, 2년간 100억원을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하여, 부처간 공통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부처의 데이터와 다양한 기능을 연계하는 다부처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제 기획이나 수요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체적인 과제는 부처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계부처, 전문가, 국가AI전략위원회 등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화할 계획이라는 입장인데, 기존 과제에 비하여 규모가 3배 이상 증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과제기획이 충실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다부처 협력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참여 부처별 역할 및 이견 조정을 위한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과제 선정 시 부처별 역할 분담 계획 및 협의체 운영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AI+S&T 혁신 기술개발(R&D) 사업(신규): GPU 자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AI+S&T 혁신 기술개발(R&D)’ 사업은 AI기반 첨단 R&D 혁신으로 6대 전략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 및 시장경쟁력 달성을 위한 신구조·신물성 탐색, 실험 설계·수행, 결과 분석 등 기존 R&D를 혁신하는 연구 분야별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3)]

[2026년도 AI+S&T 혁신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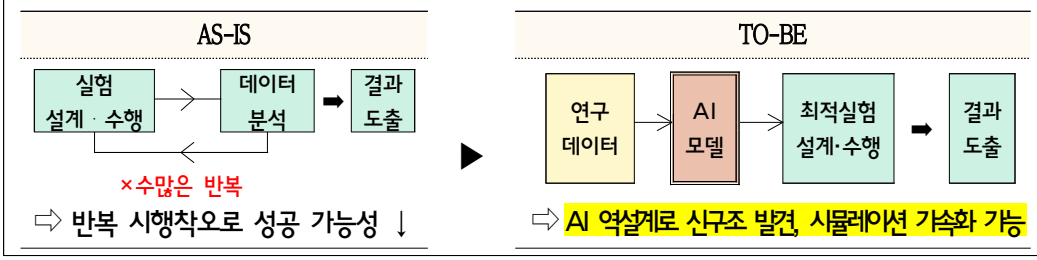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I+S&T 혁신 기술개발(R&D)	-	-	4,500	4,500	순증

이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연구재단에 출연금을 전액 교부하면, 한국연구재단은 초미세 반도체, 우주 탐사, 양자 컴퓨팅, 차세대 이차전지, 친환경 신기술, 미래 에너지 등 6개 분야의 AI+S&T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임.

[AI+S&T 관련 설명자료]

· AI+S&T는 AI를 S&T(Science & Technology)에 접목하여 대규모 데이터 분석, 장기 실험이 필요한 고난이도 연구에 AI 모델을 개발·적용하여 원천기술 R&D 혁신을 가속화하려는 것임.



자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AI+S&T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에서 발췌

13) 일반회계-AI+S&T 혁신 기술개발(R&D)(1159-445)(기초원천연구정책관)

2026년도 예산안에는 신규과제 6개를 선정 및 지원하기 위한 비용 45억원이 편성되었음.

[AI+S&T 혁신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45억원 - (산출) (신규) 6개 × 10억원 × 9/12개월 = 45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S&T 혁신 기술개발(R&D)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연구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지원 및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관리 체계는 별도 신규사업 추진을 통하여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GPU 자원 확보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3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AI+S&T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AI를 활용한 연구개발 체계 전환을 통해 고난이도 연구역량 확보 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과 다른 신규사업인 ‘차세대 AI+S&T 기반 기술개발(R&D)’ 사업[14]을 통해 AI 모델 개발 및 기반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AI+S&T 특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하여 AI+S&T 전용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연구 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었음.

그런데 AI+S&T 특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편성 과정에서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강화’ 사업 및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한 GPU 자원 확보가 예정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GPU 구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따라서 이 사업과 ‘차세대 AI+S&T 기반 기술개발(R&D)’ 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GPU 자원 확보 방안 및 데이터 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14) 일반회계-차세대 AI+S&T 기반 기술개발(R&D)(1159-446)(기초원천연구정책관)

6. AGI 준비 프로젝트 사업(신규): 사전 기획 및 구체적인 설립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AGI 준비 프로젝트’ 사업은 민·관 협력 투자 방식의 국가 AGI 연구소 설립이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초기 투자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5)]

[2026년도 AGI 준비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GI 준비 프로젝트	-	-	20,000	20,000	순증

이 사업은 해외 국가AI 연구소 사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국가 AGI 연구소 모델(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 민·관 협력 방식의 국가 AGI 연구소 설립이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초기 투자 비용을 출자하기 위한 예산 200억원이 편성되었음.

[AGI 준비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출자금(460-01) : 200억원
- 민관 협력 방식의 국가 AGI 연구소 설립이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초기 투자 등으로 연구소 기반 설립 출자 지원: (신규) 초기투자 : 1식 × 200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일반회계-AGI 준비 프로젝트(2602-365)(인공지능기반정책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GI 준비 프로젝트 사업에 민·관 협력 투자 방식의 국가 AGI 연구소 설립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국가 AGI 연구소의 형태나 설립 방안에 대한 기획을 통해 구체적인 설립 방안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GI 준비 프로젝트' 사업을 통하여 국가 AGI 연구소 설립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을 출자할 계획으로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는 범용인공지능을 의미하는 용어로 아직 전세계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나, 실세계를 이해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하며 추론하는 능력을 갖춘 AI를 AGI로 평가할 수 있음.[16)]

AGI는 미래 산업 판도를 바꾸고 일상·사회 전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는 만큼 세계 각국은 AGI를 향한 대규모 투자 및 기술 확보 경쟁 중으로, 우리나라도 AGI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는 있어 보임.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GI 연구소 설립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획 연구를 2026년도 상반기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기획평가관리비[17)]를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연구결과 민·관 협력 투자 방식을 통한 국가 AGI 연구소 설립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 예산을 한국산업은행에 출자할 계획임.

국가 AGI 연구소 설립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획 연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적의 연구소 형태 비교검토, 비전 및 미션 수립, 법적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위해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GI 연구소의 형태나 설립에 대한 기획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설립 방안에 대한 결론을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음.

---

16) AGI에 대한 설명은 이 사업의 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함.

17) 일반회계-정보통신기획평가원기획평가관리비(7602-301)(정보통신산업정책관)

7.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신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가. 개 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 사업은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AI 융합 제품・서비스를 발굴하고 AI 전환을 지원하여 全산업의 AI활용 극대화 및 국내 AI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8)]

[2026년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	-	-	60,000	60,000	순증

이 사업은 AI모델개발기업, 엔드프로덕트 제조기업, 보안기업 등이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AI 응용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보안・네트워크・생활 분야에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제품을 빠르게 보급·확산하려는 것으로, 2026~2027년 2년간 20개 과제에 대해 국비 800억원을 지원(국비 80% 이내, 민간 자부담 20% 이상)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네트워크・생활 각 분야별로 과제를 ① (유형1) 1년 내 즉시 개발하여 시장에 빠르게 침투 가능한 과제와 ② (유형2) 국민 활용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핵심 프로덕트로 개발에 시간이 필요한 과제(2년 지원)로 나누어 선정할 계획임.

2026년 예산안은 유형1 과제 10개(보안 분야 2개, 네트워크 분야 2개, 생활 분야 6개) 및 유형2 과제 10개(보안 분야 1개, 네트워크 분야 3개, 생활 분야 6개)를 선발하여 유형1 과제는 40억원을 지원하고, 다년도 유형2 과제는 2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600억원이 편성되었음. 참고로 2027년에는 유형2 과제 10개에 대해 각각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18) 일반회계-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2137-381)(정보통신산업정책관)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 사업 개요]

○ (목적) AI모델개발기업, 엔드프로덕트 제조기업, 보안기업 등이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AI 응용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보안・네트워크・생활 분야에 AX 제품을 빠르게 보급・확산 ○ (지원대상) AI모델개발기업, 엔드프로덕트 제조기업, 보안기업 등 ○ (지원규모) 2026~2027년, 2년간 800억원(민간부담 별도), 20개 과제 - 2026년: 유형1 10개 과제×40억원, 유형2 10개 과제×20억원(1년차) = 600억원 - 2027년: 유형2 10개 과제×20억원(2년차) = 200억원 ○ (사업방식) 과제당 정부지원금 75% 이내, 민간 자부담 25% 이상 ○ (지원분야) ①보안 분야, ②네트워크 분야, ③생활 분야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첫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요조사, 과제발굴 및 사전기획을 통해 사업 중복지원 방지 방안, 지원대상 선정 기준, 사업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AI 융합 제품・서비스를 발굴하고 AI 전환을 지원하여 全산업의 AI활용 극대화 및 국내 AI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0월 1일 ~ 24일에 걸쳐 다양한 업계 수요를 발굴하고, 11월 ~ 12월 과제 기획위원회를 통해 유망 후보 과제 군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으로, TRL 단계 역시 수요조사 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임.

[2025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 준비 계획]

o 과제 수요조사 추진(10.1~10.24)
- (조사개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방향 정립 및 공모를 위한 수요 발굴・기획

수요조사서 접수	→	지원 세부분야 도출	→	분야별 세부 사업 기획
3대 분야별로 Type1, Type2 수요조사서 접수		1) 수요제안서의 지원 세부분야(ex. 생활분야-안전, 치안, 편의 등) 분류 2) 세부분야별 우선순위 검토 및 유망 세부분야 도출 * 국산 NPU 적용 가능성, 시장성, 확산 가능성 등 검토		최종 지원 분야별 세부사업 기획 및 확정 * 추진배경, 목적, 적용분야, 주요산출물, 개발요구사항 등

- (조사방법) 생활 분야(NIPA), 보안 분야(KISA), 정보통신 분야(NIA)에서 자유 공모 방식으로 추진
- (조사대상) 생활(치안, 안전)·보안·정보통신(네트워크, 양자, 위성 등) 분야 AI응용제품 수요처, AI 서비스, AI반도체, 디바이스 기업 등 공급기업

o 세부 과제 기획위원회 킥오프 회의 개최(11.6)
- 분과별 운영계획 논의, 과제 수요조사 현황 및 애로사항·협력방안 논의

o 과제 기획위원회 분과별 워킹그룹 회의(11월~12월)
- 과제 수요조사 결과 검토 및 우선순위 도출, 후보과제 컨설팅 및 세부계획 검토, 사업기획 지원 등

o AI반도체 팹리스 기업 및 AI 상용화 실적 보유기업 현장방문(11월~12월)

o 사업 시행(2026.3월~)
- 유망분야 선정 및 사업기획 착수(2025.11), 사업계획 수립 및 과제 공모안내서 도출(2025.12), 사업 공고(2026.1~2), 신청접수 및 평가(2026.3월중), 과제 협약 및 사업 수행(3월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요조사, 과제발굴 및 사전기획을 통해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 중복지원 방지 방안, 구체적인 사업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 사업의 성과지표를 지원 건수로 관리할 계획이나, 상용화 성공 판단 기준을 마련하여 상용화 성공 건수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의 성과지표를 각 분야별 상용화 지원 건수로 관리할 계획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AI 기반 엔드프로덕트 상용화 지원 건수 (단위: 건)	목표	-	-	-	-	6	당해연도 지원 완료한 과제 수를 고려하여 설정	지원과제 상용화 지원 건수	사업결과보고서, 성과보고서 등
	실적	-	-	-	-				
	달성도	-	-	-	-				
AI 기반 차세대 정보통신 제품 상용화 지원 건수 (단위: 건)	목표	-	-	-	-	2	당해연도 지원 완료한 과제 수를 고려하여 설정	지원과제 상용화 지원 건수	사업결과보고서, 성과보고서 등
	실적	-	-	-	-				
	달성도	-	-	-	-				
AI 기반 차세대 보안 제품 상용화 지원 건수 (단위: 건)	목표	-	-	-	-	2	당해연도 지원 완료한 과제 수를 고려하여 설정	지원과제 상용화 지원 건수	사업결과보고서, 성과보고서 등
	실적	-	-	-	-				
	달성도	-	-	-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상용화 지원은 과제 선정 후 과제비 지급만 이루어지면 달성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1~2년 내 보안・네트워크・생활 분야에서 인공지능 전환 제품 보급 및 확산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별도로 상용화 성공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여 상용화 성공 건수를 성과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기업의 매출현황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얼마나 활용・확산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음.

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인건비 적정 규모 재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설립목적과 고유임무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비 및 주요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31억 7,500만원(49.8%) 증액된 3,706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2026년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R&D)	247,439	247,439	370,614	123,175	49.8
인건비	11,568	11,568	28,605	17,037	147.3
행정전문화 인력 신규채용	-	-	10,815	10,815	순증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NAIS)	-	-	40,000	40,000	순증
출연(연) 인재혁신 지원사업	1,800	1,800	6,120	4,320	240
우수연구자 성과상여금	-	-	5,120	5,120	순증
국가맞춤인재양성 (Bio Corelink)	-	-	4,200	4,200	순증

내내역사업인 **‘행정전문화 인력 신규채용’** 사업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행정인력 일부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력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8억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19) 일반회계-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R&D)(2241-401)(연구성과혁신관)

[행정전문화 인력 신규채용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행정전문화 인력 신규 채용 - 309명 × 1억 500만원 × 4/12개월: 108억 1,500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른 내역사업인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NAIS)’** 사업은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Vertical AI 국가특임연구원을 결집하여 AX 대전환에 필수적인 SOTA[20] Vertical AI 개발·지원을 위해 연구지원센터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부설기관으로 신설·운영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NAIS)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인건비: 97억원 **- 연구인력: 36명 × 2억 5,000만원 × 12/12개월, 90억원** **- 행정인력: 10명 × 7,000만원 × 12/12개월, 7억원** ○ 직접비: 100억원 - 도메인별 버티컬AI 모델 개발: 7개 도메인 × 14억 3,000만원, 100억원 ○ 연구시설장비비: 203억원 **- GPU 임차: 7개 모델 × 26.5억원(H100 60장) × 12/12개월, 185억원** **-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13억원 × 12/12개월, 13억원** - 사무환경 조성비: 5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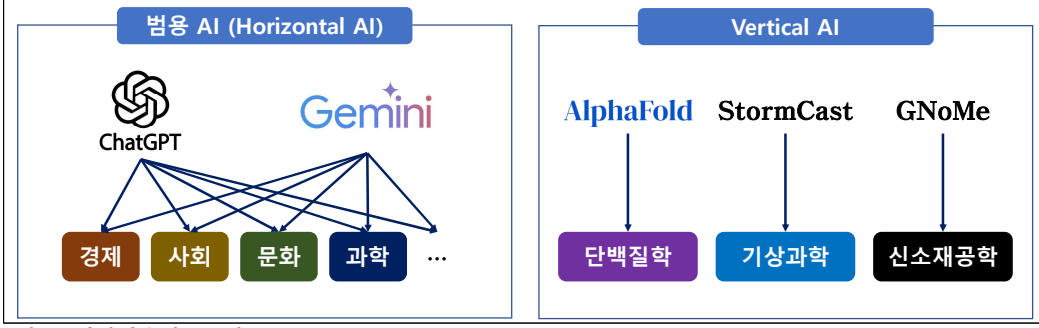
[Vertical AI 관련 설명자료]

□ Vertical AI 란

○ 도메인(기술, 산업 등) 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도메인에 전문화된 AI

○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범용 AI와 달리 도메인별 전문 데이터, 지식 등을 반영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범용 AI(Horizontal AI) vs Vertical AI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SOTA(State Of The Art): 특정 도메인에서 학습 속도, 의사결정 능력 등이 논문·실험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증명된 모델

다른 내내역사업인 **‘우수연구자 성과상여금’** 사업은 대형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한 최우수 연구자 대상으로 파격적 성과 상여금을 수여하여 성과중심 연구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1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2026년에 개편되어 도입될 예정인 기관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각 연구기관 연구직 정원의 1%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체 출연연이 우수등급을 받을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음.

[우수연구자 상여금 지급기준(안)]

기관평가등급	매우우수(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매우미흡(E)
우수 연구자 상여금 (연구직 1%)	6,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미지급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자 성과상여금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연구개발활동비(360-05): 51억 2,000만원 - 출연(연) 연구직 정원 10,240명(2023년 기준) × 1% × 5,000만원(우수등급기준): 51억 2,000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른 내역사업인 **‘국가맞춤인재양성(Bio Corelink)’** 사업은 의대·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의학적 지식과 R&D 연구 역량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로 양성·육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의학지식과 기초 과학 연구 역량을 융합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의대·한의대생(본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년간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출연(연) R&D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졸업 후 2년간 출연(연)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26년도에는 5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장학금, 연구장려금 등 4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Bio Corelink 단계별 주요 지원내용]

지원대상	1단계 (재학 中)	⇨	2단계 (졸업 後)
Bio 인재(50명) 의대·한의대 본과 3학년 재학생	• 장학금(기본 2년) • 출연(연) 인턴십 - 인턴 급여 - 연구장려금(연구인건비성) • 공동멘토링 • R&D 역량교육		• 출연연 의무복무(기본 2년) • 연구정착금(Seed) * 연구전공의 희망 시 • 단기 해외연수 • R&D 역량교육 • 연구수당 지급 * 과제 참여 시 • 정규직 전환 기회 * 병역특례 추가 적용 검토

[2026년 국가맞춤인재(Bio Corelink) 양성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장학금, 인턴 급여, 연구장려금, 공동멘토링 수당 등 총 42억원(50명) - 장학금: 1,000만원×50명= 5억원 - 인턴 급여: 1,800만원×50명= 9억원 - 연구장려금: 2,000만원×50명= 10억원 - 공동 멘토링 수당: 2,000만원×50명= 10억원 - 사업 운영비(KIRD 등 전문교육기관 활용, 사업 관리 등): 8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행정 전문화 추진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행정인력 일부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건비 108억 1,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나, 그 규모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행정 전문화 추진을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행정인력 일부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건비 108억 1,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함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산, 구매, 시설·안전 분야에 대한 공통행정 전문화를 추진 중으로, 각 분야별 전환 예상 인력 규모를 약 309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6년에 해당 인력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직 공통행정 전문화 추진 대상 분야별로 기관별 협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전문화 대상 분야가 조정되거나 필요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 전환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전액(108억 1,500만원)을 반영한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공통행정 전문화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전환 인력 역시 업무 분야별, 기관별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될 계획이나 2026년도 예산안은 309명의 4개월분 인건비를 일괄 반영하고 있는바, 단계별 전환 가능 인력 수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의견수렴 절차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연구행정 전문화를 위한 대상 분야 및 해당 분야별 필요 인원수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전환 가능 인력 수를 고려한 적정 인건비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NAIS) 사업은 5년간 국비 2,179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거나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보여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NAIS)'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2026년 국비 400억원을 지원하여 46명의 인력채용, 업무공간 임대 등을 진행하고 향후 2030년까지 152명 규모로 인력을 확대할 계획임.

이와 같은 계획에 비추어볼 때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최소 2,179억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보임.[21)]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 사업 최소 투입 예산 추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97	174	216	271	326	1,084
센터장	2.5 × 1명	2.5 × 1명	2.5 × 1명	2.5 × 1명	2.5 × 1명	-
연구인력	2.5 × 35명	2.5 × 63명	2.5 × 77명	2.5 × 99명	2.5 × 121명	-
행정인력	0.7 × 10명	0.7 × 20명	0.7 × 30명	0.7 × 30명	0.7 × 30명	-
GPU 임차	185	185	185	185	185	925
시설 임차	13	13	13	13	13	65
직접비	100	-	-	-	-	100
기타	5	-	-	-	-	5
합계	**400**	**372**	**414**	**469**	**524**	**2,179**

주) 2026년 예산안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인건비, 시설·장비 임차비용 등 매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최소 비용만 추계하였으며, 인력확충 계획 외 GPU 임차 확대, 시설임차 확대 계획은 따로 제출되지 않아 매년 2026년과 동일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NAIS) 사업은 500억원 미만인 내내역사업(내역사업 하위)에 해당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21)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그러나 이 사업은 1차년도 사업비가 400억원으로 500억원 미만이라고 하여도, 앞서 추계한 바와 같이 2030년까지 최소 2,204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세부사업) - 주요사업비(내역사업) -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NAIS)(내내역사업)의 구조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내내역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제2항은 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22)]

셋째,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NAIS) 사업은 실제 사업 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인건비 및 시설·장비 임차비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버티컬AI연구지원센터(NAIS) 구축·운영을 위하여 2025년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관 개정, 부설기관 설치·운영 규정 개정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완료한 후, 2026년 상반기 중 센터장 선임, 청사 임차, GPU 임차 등 센터 개소를 위한 제반 절차를 완료한 후 주요 과학기술 도메인별(바이오, 에너지 등) 버티컬AI 모델 개발에 착수할 계획임.

그런데 2026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 인력 4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장비 임차료가 모두 12개월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인력 채용이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임.

이와 같은 예산 편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계획 중인 부설기관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인력채용, 시설·장비 임차 등 센터 개소를 위한 제반절차 준비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실제 사업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인건비 및 시설·장비 임차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대상사업의 단위) ②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넷째, 우수연구자 성과상여금 사업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기관평가제도 도입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전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 편성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새로운 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현재 평가제도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평가절차, 평가항목·기준, 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10월 중에 「2026년 연구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통하여 발표할 계획임.

그에 따라 해당 기관평가제도의 결과에 근거한 '우수연구자 성과금 사업'을 2026년 신규 편성하였으나, 향후 기관평가제도 도입 및 시행 결과에 따라 우수연구자 성과금 규모가 결정될 것이므로, 개편된 기관평가제도 도입 이후 제도 운영 경과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기관이 우수등급을 받을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기관운영평가 등급이 총 6개로 운영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면 모든 기관이 우수등급(A)을 받을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국가맞춤인재양성(Bio Corelink) 사업은 사업 참여자인 의대·한의대 재학생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가 부재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를 담보할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국가맞춤인재양성(Bio Corelink)'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적인 기획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① 사업 참여자인 의대·한의대 재학생은 학사일정, 실습, 국가시험 준비 등으로 학기 중이나 방학 기간에 인턴십 또는 연구참여 시간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추진에 앞서 의대·한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참여 가능성이나 참여의사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사전조사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 참여자 모집 가능성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음.

② 또한 이와 같은 장학금 제공과 그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부여하는 사업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의무복무를 강제할 수단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의대·한의대생이 졸업 후 출연(연)에 종사하도록 하여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에 있으므로, 의무복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성과 달성이 어려워

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무복무 미 이행 시 장학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출연(연)과 병원의 처우 차이를 고려하면 장학금 혜택을 받은 의대·한의대 학생이 장학금을 반납하고 중도 포기하거나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됨.

9. 개인기초연구(R&D) 사업: 유형 개편 및 과제 수 확대에 대응한 관리강화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개인기초연구(R&D)’ 사업은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단위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가도록 산·학·연 소속 이공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03억 9,300만원(18.9%) 증액된 2조 2,656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23)]

[2026년도 개인기초연구(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개인기초연구(R&D)	1,905,258	-	2,265,651	360,393	18.9

이 사업은 크게 신진연구, 핵심연구(2025년까지는 중견연구), 리더연구로 구성되어 각 연구별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연구자들의 성장주기에 따른 과제 지원 구조를 갖추고 있어 국내 기초연구 분야의 줄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신진연구의 경우 주로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연구자를 지원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어 기초 연구를 시작하는 기초연구자가 지원 대상이 되고, 핵심연구의 경우 대학 이공계 분야의 교원이나 정출연·민간연구소 연구원 등 중견급 연구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리더연구의 경우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개발 경력을 갖춘 연구자가 지원 대상임.

[개인기초연구(R&D) 사업 과제 유형]

사 업		지원 대상	연구 기간	연간 연구비 (간접비 포함)	비 고
우수연구	1. 리더연구				
	유형 B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의 연구원	9년 (3+3+3)	16억원	
	유형 A			8억원	

23) 일반회계-개인기초연구(R&D)(1234-301)(기초원천연구정책관)

사 업			지원 대상	연구 기간	연간 연구비 (간접비 포함)	비 고
	2. 핵심연구					
	유형 C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최대 5년	3억원	
	유형 B				2억원	
	유형 A				1억원	
	도약형		기초연구 종료 예정 연구자	최대 3년	3억원	
	기본연구 B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최대 5년	0.62억원	
	기본연구 A				0.5억원	
	한우물형		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내인,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연구원	10년 (5+5)	2억원	
	글로벌매칭형		대학 이공분야 교원(전임)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최대 3년	2억원 내외	※ 협력국별 상이
	도전형				1억원	
	전략형				2억원	
	3. 신진연구					
	유형 B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또는 만 39세 이하)인 이공분야 전임교원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정규직 연구원	최대 5년	1.5억원	※ 전임교원 임용 5년 이내는 지원 가능
	유형 A			3년	1억원	
	인프라지원			1년	1~5억원	※ 외국인 불가
	세종 과학 펠로우십	국내	박사학위 취득 7년 이내(또는 만 39세 이하)인 이공분야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자 및 국(공)립·정부출연·민간 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원	5년 (3+2)	1.3억원	※ 외국인 불가 ※ 해외 박사학위자 신청 불가
		국외		1년	0.7억원 (인건비)	※ 외국인 불가 ※ 국내 학위 취득자 ※ 12대 전략기술
		복귀 정착	해외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이 아닌 연구자 또는 국(공)립 · 정부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원	3년	1.3억원	※ 외국인의 경우는 국내 박사학위자 신청 가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기초연구(R&D) 사업의 2026년 신규 과제수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이므로, 선정평가 소요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과제 선정 시점을 분산하고, 평가위원 POOL을 확충하는 등 과제 선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개인기초연구(R&D)' 사업을 통하여 총 15,311개의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고 이 중 기본연구 A·B 유형 2,000개, 우수신진(씨앗) 유형 1,000개 등 총 6,874개는 2026년에 신규과제로 선정할 계획임.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근 3년간 신규과제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3,321개, 2024년 3,296개, 2025년 3,643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2026년 선정 예정 신규과제 수 6,874개의 48~53% 수준임.

[개인기초연구 사업 과제 현황]

(단위: 개)

연도	2023	2024	2025	2026
신규과제	3,321	3,296	3,643	6,874
계속·종료 과제	11,178	9,784	8,186	8,437
총 과제수	14,499	13,080	11,829	15,311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정평가 소요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과제 선정 시점을 분산하고 평가위원 POOL을 확충하는 등 과제 선정 및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이후 매년마다 개인기초연구(R&D) 사업의 과제 유형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연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과제를 개편함으로써 개편 소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생애기본연구의 신규과제 선정을 중단하고, 각 과제를 글로벌 유형으로 개편하였으며, 2025년에는 과제 수를 축소하면서 과제 단가를 높이는 조정을 진행하였고, 2026년에는 2024년부터 신규 과제 선정이 종료되었던 기본연구의 복원 및 2024~2025년에 신설된 유형에 대한 단순화·구조화를 실시하는 등 '개인

기초연구(R&D)’ 사업의 과제 유형을 매년 개편하고 있음.

[개인기초연구 사업 과제 개편 현황]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리더연구 -유형1 -유형2	리더연구 -유형1 -유형2	리더연구 -유형1 -유형2	글로벌리더연구	글로벌리더연구	리더연구 -유형A -유형B(Top-tier) (신설)
중견연구 -유형1 -유형2	중견연구 -유형1 -유형2	중견연구 -유형1 -유형2	중견연구 -유형1 -유형2(글로벌형) -창의연구형 (신설)	중견연구 -유형1 -유형2(글로벌형) -창의연구형 -도약형 (신설)	핵심연구 (내역 개편) -유형B -유형C -유형A -도약형
				-한우물파기기초연구 (내내역개편)	-한우물파기기초연구
			글로벌매칭형 (신설)	글로벌매칭형	-글로벌매칭형
				개척연구 (신설)	-도전형
				국가아젠다기초연구 (신설)	-전략형
					-기본연구A (신설) -기본연구B (신설)
신진연구 -우수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신설)	신진연구 -우수신진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신진연구 -우수신진연구 -한우물파기기초연구 (신설) -세종과학펠로우십 (일반)	신진연구 -우수신진연구 -한우물파기기초연구 -신진연구자인프라지원 (신설)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	신진연구 -우수신진연구 -우수신진연구 (씨앗형) (신설) -신진연구자인프라지원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	신진연구 -유형B -유형A -신진연구자인프라지원 -세종과학펠로우십 (국내)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신설)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 -세종과학펠로우십 (복귀정착)
생애기본연구 -기본연구 -생애첫연구 -재도약연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같은 반복적인 과제 개편은 각 연구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이 사업의 신진연구·중견연구·리더연구 유형 과제 참여를 통하여 경력 경로를 설정함에 있어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연구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제 개편 시 연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침으로써 개편 소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셋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기초연구(R&D) 사업의 내역사업인 생애기본연구 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한 것과 내내역사업인 중견연구 사업의 유형 1,2 과제 예산을 감액한 것을 지출구조조정 성과로 공개하였으나, 두 사업은 모두 과제종료에 따른 감액과 과제유형 개편에 따른 사업 이관으로 인하여 감액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적인 의미의 지출구조조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8월 29일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을 발표하였는데, '개인기초연구(R&D)' 사업의 내역사업인 '생애기본연구' 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한 것과 내내역사업인 '중견연구' 사업의 유형 1,2 과제 예산을 감액한 것이 지출구조조정 성과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생애기본연구' 사업의 경우 2024년부터 신규과제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과제만 지원하던 것이 2025년을 마지막으로 모두 종료되면서 전액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종료가 이루어진 것임.

특히 동 사업은 2026년부터 '핵심연구' 사업에 기본연구과제 유형이 신설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다른 내내역사업의 과제 유형으로 재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바, 이를 실질적인 의미의 지출구조조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중견연구' 사업의 유형 1,2과제 예산 감액은 '중견연구' 사업을 '핵심연구' 사업으로 개편하면서 신규과제 유형이 A,B,C로 개편된 것이지 지원자체가 종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과제는 종료과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액이 감소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인 의미의 지출구조조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개인기초연구(R&D) 사업의 지출구조조정 실적]

구분	2025년			2026년			지출구조조정 금액(A-B)
	신규	계속	합계(A)	신규	계속	합계(B)	
생애기본연구	-	457억원	457억원	'핵심연구' 신규과제로 지원	-	-	△457억원
중견연구 (유형1·2)	1,974억원	8,376억원	10,350억원		7,798억	7,798억	△2,552억원
합계	1,974억원	8,833억원	10,807억원	-	7,798억	7,798억	△3,009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사업(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사업은 기초연구 인프라의 첨단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온라인 가상실험실 구축(+AI Agent 개발) 및 기초과학·AI 융합 인재 양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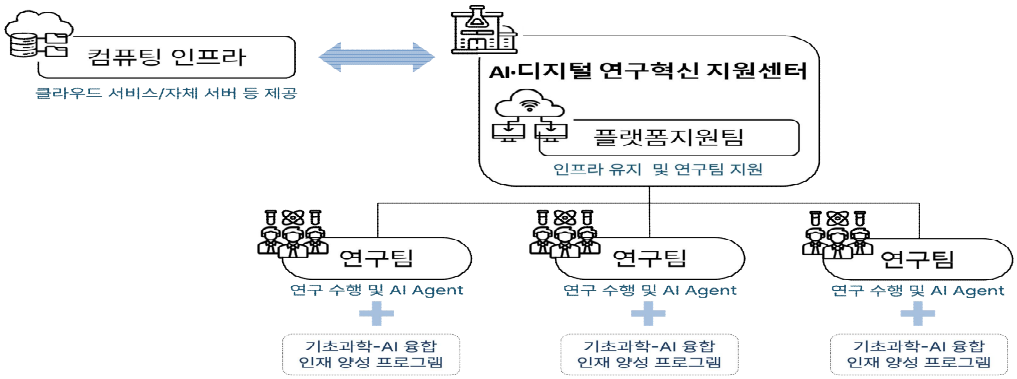
[2026년도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초연구기반구축(R&D)	13,565	13,565	76,063	62,498	460.7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	-	60,000	60,000	순증

이 사업은 ① 대학이 확보하기 어려운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연구데이터와 AI 모델을 공유·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② 대학을 선정하여 AI 융합연구 전문인력 확보 및 AI 기반 기초과학 난제 해결 연구를 지원할 계획임.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사업 체계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 일반회계-기초연구기반구축(R&D)(1235-410)(기초원천연구정책관)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인프라 구성을 위한 비용 300억원과 20개 대학에 대하여 각각 15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300억원이 편성되었음.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내용	세부 사항	예산(안)
핵심 컴퓨팅 인프라	고성능 GPU 서버	250억원
	대용량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35억원
	통합 포털(K-NAIRR) 개발 및 운영	10억원
	기반 소프트웨어 도입	5억원
	소계	300억원
대학별 AI 연구 허브 지원	AI 융합연구 전문인력 확보	7억원
	AI 기반 기초과학 난제 해결 연구	8억원
	× 20개 대학	
	소계	300억원
합계		**600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첫째,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사업은 2026년 국비 6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거나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보여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2026년 국비 600억원이 지원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보임.[25)]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이 2024년까지 추진된 '전문연구정보활용' 사업의 후속 개편사업으로서 신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이 사업은 GPU 등 AI컴퓨팅 인프라 신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포함하고

2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있고, 대학별 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구자간의 전문 연구 정보 교류를 지원하던 ‘전문연구정보활용’ 사업과는 다른 신규사업으로 보임.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제1항은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26)]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사업이 대규모 시설·장비 구축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신규 사업으로 ‘AI·디지털 기반 대학 연구혁신 및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300억원 규모의 AI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수립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그 구축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27)]

---

26)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27)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축, 확충했거나 구축, 확충할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상반기 협약체결 후 상시심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나,

상시심의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사업과 같이 AI컴퓨팅 인프라 구축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본심의를 거쳐 구축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1. 심의위원회 본심의(이하 “본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는 당해연도에 개최되는 본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 상시심의(이하 “상시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집행 단계에서 상시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본심의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장이 공문으로써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1. 국가 양자팹 혁신 생태계 조성(R&D) 사업(신규): 사업 초기 장비 구축 완료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국가 양자팹 혁신 생태계 조성(R&D)’ 사업은 국가 퀀텀칩 제조역량 확보를 통한 글로벌 양자기술 분야 공급망 진입 및 글로벌 선도 제조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68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8)]

[2026년도 국가 양자팹 혁신 생태계 조성(R&D) 사업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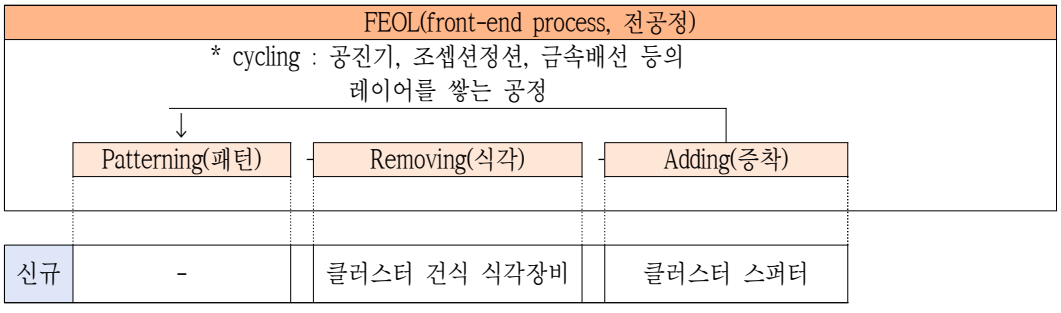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 양자팹 혁신 생태계 조성(R&D)	-	-	16,850	16,850	순증
양자 파운드리 기반 구축 및 팹 고도화	-	-	11,850	11,850	순증
양자공정산업확산기반구축	-	-	5,000	5,000	순증

내역사업인 **‘양자 파운드리 기반 구축 및 팹 고도화’** 사업은 글로벌 퀀텀칩 공급망 진입을 위한 퀀텀칩 제조기술의 초고도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18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한국나노기술원을 정책지정하여 한국나노기술원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에 더하여 신규 장비를 추가 구축하여 양자팹 전공정 및 후공정 고도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양자팹 구축 장비 현황]



28) 일반회계-국가 양자팹 혁신 생태계 조성(R&D)(1159-443)(기초원천연구정책관)

구축 장비		클러스터 원자층 식각장비 웨이퍼 습식 세정기(유기세정)	앵글 전자빔 증착기 전기도금장비
기구축 장비 (KANC)	전자리소그래피(멀티) 2점 레이저 직접 패터닝 장비 I-line 스태퍼	절연체용 건식 식각장비 금속용 건식 식각장비 Deep 실리콘 건식 식각장비	저온 고밀도 플라즈마 CVD TiN전용 원자층 증착장비

BEOL(back-end process, 후공정)		
Wafer testing(테스팅)	→	Interconnection(회로연결)
신규 구축 장비	상온~4K급 반자동 프로브 시스템 (냉동기) LD400급(fixed Frequancy only) (RF장비) 고주파 양자신호 분석 시스템	금속 와이어 본더 웨이퍼 본더(Adhesive bonding) 플립칩 본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사업은 초기 2년에 걸쳐 양자팹 고도화 완료 및 성능평가체계를 구축하고, 1~4차년도에 걸쳐 공정서비스 이용사이트 운영,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여 팹 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참여연구원 및 국내외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임.

[양자 파운드리 기반 구축 및 팹 고도화 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 지원내용	1단계			2단계	합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4차년도 (2029)	
지원내용1. 양자팹 고도화(전공정)			4,000	10,300			14,300
	증착	클러스터 스퍼터		4,500			4,500
		앵글 전자빔 증착기	1,500				1,500
		전기도금장비		1,800			1,800
	식각	클러스터 건식 식각장비		3,000			3,000
		클러스터 원자층 식각장비	2,500				2,500
		웨이퍼 습식 세정기(유기세정)		1,000			1,000
지원내용2. 성능평가체계 구축(후공정)			6,400	2,000			8,400
	테스팅	상온~4K급 반자동 프로브 시스템		2,000			2,000
		LD400급(fixed Frequancy only)	2,400				2,400
		고주파 양자신호 분석 시스템	600				600
	외부 연결	금속 와이어 본더	400				400
		웨이퍼 본더(Adhesive bonding)	1,500				1,500
		플립칩 본더	1,500				1,500
지원내용3. 팹 활용체계 고도화			1,450	1,700	2,150	1,800	7,100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 지원내용	1단계			2단계	합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4차년도 (2029)	
	팹 활용체계 구축	850	1,100	1,450	1,100	4,500
	팹 활용체계 운영	600	600	700	700	2,600
합계		11,850	14,000	2,150	1,800	29,8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른 내역사업인 **‘양자공정산업확산기반구축’** 사업은 양자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개방형 양자팹 구축 및 산업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기존 나노팹 또는 양자팹을 보유·운영 중인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통해 신규 구축할 장비와 기존 보유 장비의 연계·활용 방안을 심시하여 양자융합 디바이스의 산업화 실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 패키징 및 검증, 고수율 확보 등 전주기 인프라 확대를 지원하려는 사업임.

나. 검토의견

첫째, 양자 파운드리 기반 구축 및 팹 고도화 사업은 초기 2년간 227억원을 투자하여 장비 구축을 완료해야 하는데, 장비구축 본심의를 거치지 않아 장비구축 상시심의를 거쳐야 하고, 구축 예정 장비 대부분이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장비이므로 장비 구축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양자 파운드리 기반 구축 및 팹 고도화’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양자팹 고도화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으로 초기 2년간 227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양자팹 전공정 및 후공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모두 구축할 계획으로, 최소 4억원에서 45억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 12종의 구축을 예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수립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그 구축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29)]

29)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 관리·운영·공동활용 및 처분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기획 중 검토된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착수 이후, 상세계획에 따라 스펙·품목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본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향후 과제 개시 후 상시 심의를 통해 구축 타당성을 검토받을 예정이라는 입장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획대로 2026년 사업 추진 시 장비구축 상시 심의를 거치게 되면 심의 과정에서 장비구축의 필요성과 비용이 구체화 됨에 따라 구축대상 장비가 변경되거나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구축이 계획보다 지연될 우려가 있음.

또한 사업기획보고서 기준으로 구축 예정인 장비 12종 중 11종이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장비이므로 장비 수입 과정에서 환율 변동이나 통관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당초 계획한 2년 내에 장비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양자공정산업확산기반구축 사업은 양자 공정장비 고도화를 지원하여 산업확산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업종료 후에도 양자 관련 제품 실증을 원하는 외부기관의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사용자 비율을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고서나 협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양자공정산업확산기반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4년간 기존 나노팹 또는 양자팹 보유 연구개발기관의 공정 능력을 고도화하여 산업화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임.

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의2(표준지침의 적용대상 및 수립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축, 확충했거나 구축, 확충할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및 공동활용과 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심의위원회 본심의(이하 “본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는 당해연도에 개최되는 본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 상시심의(이하 “상시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집행 단계에서 상시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본심의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장이 공문으로써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시제품 제작, 패키징 및 검증, 고수율 확보 등 전주기 인프라를 양자 관련 기술을 보유한 외부 연구개발기관에서도 실증을 위해 해당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성과지표로 외부사용자 비율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하나,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외부사용자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공고서 및 협약서에 반영함으로써 국비가 투입된 장비가 공공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12.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R&D) 사업(신규):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R&D)’ 사업은 공간, 환경 등 물리세계를 인식,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동작하는 피지컬 AI 구현을 위해 실제 세계의 환경상태와 물리법칙을 유사하게 제공하는 월드모델 개발과 이에 기반한 가상공간에서의 시뮬레이션, 학습 등 선도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0)]

[2026년도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피지컬AI선도기술 개발(R&D)	-	-	15,000	15,000	순증

피지컬AI란 공간, 환경 등 ①물리세계를 인식하고 ②학습·판단하여 ③물리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정형 환경에서 사람처럼 행동하는 AI를 의미하며, 예기치 못한 환경이나 복잡·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여 운전(자율주행), 조립(제조), 운반(물류) 등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이 사업은 피지컬 AI 구현을 위해 실제 세계의 환경 상태와 물리법칙을 유사하게 제공하는 월드모델 개발과 이에 기반하여 학습이 가능한 가상공간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가상공간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환경에 적용하여 전이학습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개발된 월드모델과 시뮬레이터 기술은 민간·학계·스타트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임.

[연도별 추진 내용]

구분	2026년	2027년
연구 개발 주요 내용	기초 월드모델 설계 및 개발 학습 및 검증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환경 구축 및 시나리오 개발	학습된 정책의 실제 환경 적용 및 파인튜닝 전이학습 성능 측정 및 개선
예산	총 203억원 (국비 150억원, 민자 53억원)	총 257억원 (국비 190억원, 민자 67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 일반회계-피지컬AI선도기술개발(R&D)(2601-403)(정보통신산업정책관)

연구개발은 국내 역량있는 기업과 대학 등을 결집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컨소시엄을 통해 수행할 계획으로, 국내 역량 결집을 위해 공모 방식이 아닌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와 국가 AI위원회를 통해 컨소시엄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임.

나. 검토의견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R&D) 사업은 공모 없이 기업과 대학 등을 결집한 컨소시엄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인데, 민간 중심 컨소시엄을 정책 지정하는 사례가 처음이고, 연구개발성과를 연계·활용할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참여 조건과 성과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사업 준비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피지컬AI선도기술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업의 사업기획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은 별도 공모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와 국가AI전략위원회를 통해 국내 역량있는 기업과 대학 등을 결집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컨소시엄을 지정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계획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은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은 공모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31)]

다만, 기본적으로 참여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컨소시엄에 대한 정책지정 사례가 많지 않고 이 사업과 같이 민간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을 정책지정한 사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3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4.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최근 2년간 컨소시엄을 정책 지정한 사례]

연도	과제명	지정 근거	주관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2025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프로젝트 (1개, 90억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제5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24	AI기반 개방형 5G-A 융합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1개, 20억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대구테크노파크, (주)케이티
	전파서비스 진화에 따른 전자파 인체위험성의 체계적 규명 (1개, 14.1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국가독성과학연구소, 고려대, 제주대, 아주대, 단국대, 한국전자파학회 (위탁기관) 서울과기대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 연구시험망 구축운영 (1개, 90억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제3호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케이티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민간기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최소 25%이상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투자해야하는데, 이 사업의 경우 2년간 120억원의 민간자본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 만큼 지정에 앞서 참여 조건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월드모델 등 성과물을 기술적 성과 확산과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민간·학계·스타트업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인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주체가 민간기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구개발성과 활용·연계를 위한 사전협의도 필요할 것임.[32)]

3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신규): 수요기관 선정 시 관련 기술 보유 기업 현황 검토 필요

가. 개 요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은 공공 분야의 국산 NPU 수요 창출을 위하여 공공 CCTV의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및 신규 구축·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3)]

[2026년도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	-	10,000	10,000	순증

이 사업은 국내 지능형 CCTV 구축 시 다양한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관제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AI 반도체는 외산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산 NPU 활용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내 NPU 기반 AI CCTV 전환을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총 350억원, 12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임.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 국비지원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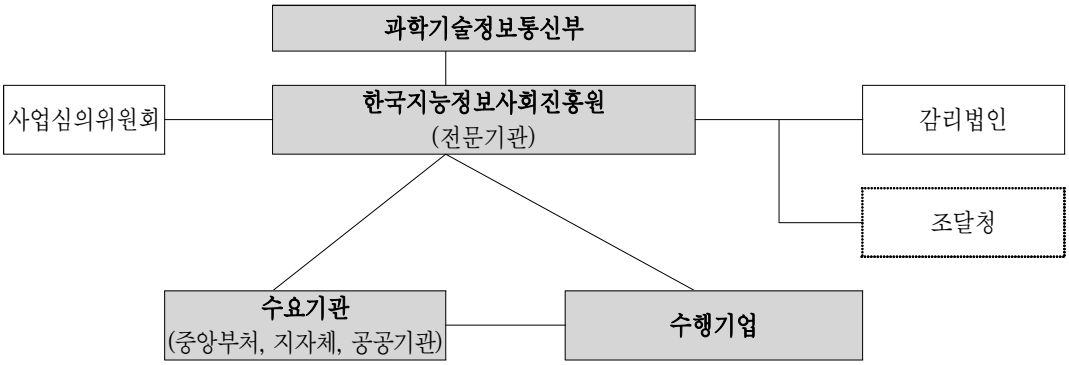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지원액 (과제수)	100억원 (3개과제)	100억원 (3개과제)	50억원 (2개과제)	50억원 (2개과제)	50억원 (2개과제)	350억원 (12개과제)

주) CCTV 1대당 약 81만원의 전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도에는 약 12,000대의 CCTV 전환 지원 예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AI CCTV 전환을 원하는 수요기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선정하고,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AI CCTV는 조달 일반용역을 통해 수행기업을 선정하여 공급할 계획임.

33) 일반회계-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2033-416)(정보통신정책관)

[사업추진체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을 통하여 수요기관을 선정한 후 수요기관의 CCTV가 AI CCTV로 성공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AI CCTV용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수요기관 선정 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현황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수요기관을 선정한 후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AI CCTV 공급업체는 조달 계약을 통해 선정할 계획임.

그런데 이 사업은 추론에 특화된 NPU를 기반으로 하는 AI CCTV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별도의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NPU를 활용한 AI CCTV 전환이 가능할지 우려됨.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학습이 필요하나, 본 사업의 주요 수행기업이 될 AI CCTV 전문 업체로부터 학습이 완료된 AI CCTV용 AI 모델을 납품받을 계획으로 AI모델을 보유하고 있거나, 추가 학습하여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로부터 학습이 완료된 AI CCTV 솔루션을 납품받을 계획이라는 입장임.

따라서 수요기관이 선정된 후 해당 기관의 CCTV를 AI CCTV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AI CCTV용 AI모델을 보유하고 있거나, 모델을 개발할 역량이 있는 공급기업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수요기관 선정 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현황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14.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전년도 실적을 고려한 개인형 신규 과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은 국내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해외 우수 과학자를 국내 연구기관에 초빙하여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국내 연구환경 국제화, 신성장동력 확보,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9억 1,700만원(38.4%) 증액된 537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음.[34)]

[2026년도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인재활용확산지원(R&D)	54,449	54,449	84,519	30,070	55.2
글로벌인재 교류·활용	48,397	48,397	64,269	15,872	32.8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38,817	38,817	53,734	14,917	38.4

이 사업은 국내 산·학·연에 대하여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유치 대상 과학자의 연구 역량과 지원 기간, 과제 참여기관의 유형(개인 또는 기관)에 따라 과제가 구분되어 있음.

이 사업을 통한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지원은 2024년까지는 1인의 국내 연구 책임자가 1인의 해외연구자를 초빙하는 개인형 과제만 지원되었으나, 2025년에는 1개의 연구개발기관이 1인 이상의 해외연구자를 초빙하는 기관형 과제가 신규 도입되었으며, 2026년에는 기관형 과제와 기존 BP+ 과제를 통합·개편한 통합기관형 과제(1개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의 해외연구자 초빙)가 추진될 예정임.

34) 일반회계-인재활용확산지원(R&D)(1744-412)(미래인재정책국)

[2026년도 과제개편 (안)]

<table>
<tr><th colspan="2" rowspan="2">2025년도 사업 현황</th><th rowspan="2"></th><th colspan="4">2026년도 개편(안)</th></tr>
<tr><th>유형</th><th>대상</th><th>지원 기간</th><th>지원내역</th></tr>
<tr><td rowspan="3">BP (Brain Pool)</td><td rowspan="2">개인</td><td rowspan="2">→</td><td rowspan="2">개인형</td><td>박사급 (신진)</td><td>1~3년</td><td>· 인건비(해외연구자 원소속기관 연봉 보전), 연구활동비, 체재비 등 최대 年 3.5억원 내외</td></tr>
<tr><td>석학급[1]</td><td>10년 (4+6)</td><td>· 해외 석학의 정규직 임용 및 국내 정착 목적으로 연구비, 연구활동비 등 최대 年 6억원 지원(유치장려금 포함)</td></tr>
<tr><td>기관 (2025년 신규)</td><td>→</td><td>BP+통합 기관형 (2026년 신규(안))</td><td>신진~ 석학</td><td>5년[2]</td><td>· 해외연구자를 기관이 주도하여 발굴·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 활동을 위한 활동비, R&D 연구비, 연구인프라 구축비, 인건비·체재비 등 기관 단위 풀 패키지 지원
· 연구비 지원규모 대폭 확대 예정</td></tr>
<tr><td colspan="2">BP+</td><td>+ →</td><td colspan="3"></td></tr>
</table>

주 1) 기존 BP+사업에 해당되며, 2026년도 신규과제 선정 없이 계속과제만 운영
2) 지원기간은 변동가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같은 과제 개편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는 계속과제 지원 예산 402억 3,400만원 외에 개인형(박사급) 과제 80개 및 신설 유형인 통합기관형 과제 5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35억원이 편성되었음.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도 본예산	2026년도 예산안
○ 계속과제 지원: 264억 4,200만원 - BP : 194개 × 9,795만원 × 12/12개월 = 190억 200만원 - BP+ : 14개 × 5억 3,140만원 × 12/12개월 = 74억 4,000만원 ○ 신규과제 지원: 123억 7,500만원 - BP : 63개 × 1억원 × ,6/12개월 + 52개 × 3억원 × 6/12 = 109억 5,000만원 - BP+ : 5개 × 5억 7,000만 × 6/12개월 = 14억 2,500만원	○ 계속과제 지원: 402억 3,400만원 - BP: 233개 × 1억 366만원 × 12/12개월 + 8개 × 8억 6,625만원 × 12/12개월 = 310억 8,300만원 - BP+: 18개 × 5억 840만원 × 12/12개월 = 91억 5,100만원 ○ 신규과제 지원: 135억원 - BP: 80개 × 1억 5,000만원 × 6/12개월 = 60억원 - (신설)통합기관형: 5개 × 30억원 × 6/12개월 = 75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은 2026년도 개인형 신규과제 지원 예산이 6개월 지원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2025년도 신규과제의 평균 수행 기간이 2.8개월인 점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우수과학자 유치’ 사업 과제 선정을 위하여 2025년 1차 공고를 2월부터 진행하여 총 117개 과제의 선정을 완료하였고, 2차 공고는 5월부터 진행하여 7개 과제를 선정하였음.

[2025년 신규과제 선정 현황]

(단위: 개, 원)

구분	유형	과제수	2025년 수행기간	수행 개월 수	평균 과제 단가[1]	지원액[2]
1차 공고 (2025년 2월)	BP	11	2025.8~12.	5	166,116,873	5,176,995,000
		18	2025.9~12.	4	221,732,500	
		29	2025.10~12.	3	183,528,138	
		42	2025.11~12.	2	209,731,000	
		12	2025.12.	1	286,535,000	
	BP(기관)	2	2025.7~12.	6	900,000,000	900,000,000
	BP+	1	2025.8~12.	5	600,000,000	600,000,000
		1	2025.9~12.	4		
		1	2025.10~12.	3		
2차 공고 (2025년 5월)	BP	-	-	-	-	
	BP(기관)	7	2025.9~12.	4	878,571,429	2,050,000,001
	BP+	-	-	-	-	
합계	-	124	-	363	-	8,726,995,001

주 1) 평균과제단가는 당해연도 협약된 신규과제 지원액을 12개월로 추정한 값임
2) 지원액 = 과제수 × 수행 개월 수 × 평균과제단가/12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과제 수행기간과 과제단가를 고려하면 2025년도 신규과제에 지원된 예산은 총 87억 2,699만 5,001원으로 2025년도 신규 과제를 위해 편성한 123억 7,500만원보다 36억 4,800만 4,999원이 덜 지원되었는바, 이는 신규과제의 평균 수행 기간(2.9개월)이 예산편성 기간(6개월)보다 짧았기 때문임.

이와 같은 2025년도 집행실적에도 불구하고 2026년 개인형 신규과제는 모두 6개월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5.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R&D) 사업: 과제 선정 현황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R&D)’ 사업은 기업 등이 해외 AI 우수연구자를 유치하여 도전적 AI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AI 고급인재 양성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AI 연구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억원(100%)이 증액된 100억원이 편성되었음.[35)]

[2026년도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최고급AI해외인재 유치지원	-	5,000	10,000	5,000	100

이 사업은 R&D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예산 전액을 출연하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①기업+대학 컨소시엄(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 ②기업
지원기간	3년
지원내용	해외 우수 연구자*(팀)의 인건비**, 체제비 및 연구활동비 등 연 20억원 *해외 우수대학 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경험과 R&D 연구성과가 있는 박사급 외국인 또는 재외한인 연구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필수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지원(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 최고급AI해외인재유치지원: 50억원 - (신규) 5개 × 20억원 × 6/12개월 = 50억원	○ 최고급AI해외인재유치지원: 100억원 - (계속) 5개 × 20억원 × 12/12개월 = 100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 일반회계-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R&D)(2232-327)(소프트웨어정책관)

나. 검토의견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은 2025년도 5개 신규과제 선정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5개 과제 중 1개 과제만 해외인재 채용이 완료되어 과제 수행 중이므로, 각 과제별 해외인재 채용 시점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 6월 WBL(World Best LLM) 참가팀 공모와 연계하여 공모를 진행하여 2025년 8월 1개 팀을 선정하였고, 이후 재공고를 통하여 4개 팀을 선정하였음.

[2025년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지원(R&D) 사업 일정]

일정	추진내용
2025.6.20.	사업 신규과제 공고(WBL 연계)
2025.8.4.	선정발표(1개 사업자 선정)
2025.8.11.~9.9.	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2025. 9.12~13	선정평가
2025. 9월 말	협약체결(4개 사업자 선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사업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신규과제 지원을 위한 6개월분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고, 2026년 예산안에는 계속과제 5개에 대하여 12개월분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그런데 2025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실제 인원을 채용하여 지원 중인 과제는 5개 과제 중 1개 과제밖에 없고 나머지 과제는 해외인재 채용을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은 해외인재에 대한 인건비, 체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해외인재가 채용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한 시점부터 과제비가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외인재 채용시점을 고려한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36)]

[과제별 인재채용 현황 및 계획]

과제명	협약체결일	인재채용일정	2025년 실제 과제 수행 기간
정예 연구진 결집을 통한 초거대 LLM/VLM 고도화 및 아세안 언어 확장 기술 개발	25.8.27.	2025.10월 중 채용예정	최대 3개월
AI 신약개발을 위한 글로벌 AI 인재 유치	25.9.29.	2025.10월 중 채용예정	최대 3개월

36) 참고로 2025년 신규 선정 과제의 실제 과제 수행기간이 최대 3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과제당 3개월 지원분(5억원)이 초과 지원된 것이므로 2026년 계속과제 지원예산에서 이를 차감한 총 25억원을 감액 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과제명	협약체결일	인재채용일정	2025년 실제 과제 수행 기간
멀티 에이전트형 AI 기반 기업정보 및 지식보호 통합 플랫폼	25.9.29.	25.10월 채용	3개월
산업 제조 설비의 자율 제어 프레임워크를 위한 Physics-Aware Physical AI	25.9.29.	2025.10월 중 채용예정	최대 3개월
실세계 조작과 보행을 위한 멀티모달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AI 모델 개발	25.9.29.	2025.10월 중 채용예정	최대 3개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박사 장학생 선정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기초연구 및 미래 국가전략 분야에 부응하는 창의적 우수 인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이공계 우수한 학부, 석·박사 인재들을 대상으로 학비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4억 8,500만원(21.8%) 증액된 697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음.[37)]

[2026년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57,301	57,301	69,786	12,485	21.8

이 사업은 대통령과학장학금과 국가우수장학금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장학금은 대상이 학부생인지, 대학원생인지에 따라 지원기준과 지원내용이 달라짐. 대통령과학장학금의 경우 학·석·박사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우수장학금은 학·석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는 박사대상 국가우수장학금 신설을 위한 비용이 편성되었음.

[학부생 지원 장학금 개요]

구분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지원 대상	국내외 대학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	국내 대학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
지원 내용	· 국내: 장학금(등록금 전액), 학업장려비(성적우수자 250만 원/학기),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250만 원/학기) · 해외: 연 $5만 내에서 학비 및 체재비	· 장학금(등록금 전액),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 250만 원/학기), 전문역량개발비(과기사관 250만 원/학기)
계속 지원 기준	· 성적: B+ 수준,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점수 100점 만점의 87점 이상 · 최소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 일반회계-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2240-300)(미래인재정책국)

[대학원생 지원 장학금 개요]

구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석사우수장학금	박사우수장학금
지원 대상	국내 일반 및 전문대학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우수학생	국내 대학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전일제(full-time) 석사과정 학생	국내 대학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전일제(full-time) 박사과정 학생
지원 내용	· 석사과정 年 18백만 원 (月 1.5백만 원) · 박사과정 年 24백만 원 (月 2백만 원)	· 최대 4개 학기 지원(연간 500만 원, 학기당 250만 원)	· 최대 8개 학기 지원(연간 750만 원, 학기당 375만 원)
계속 지원 기준	· 성적 등 정량적 평가 또는 연구수행역량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판단 - (성적) 연간 최소 6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심사연도 성적 평균이 백분위 92점 또는 평점 4.0/4.5(3.7/4.3) 이상인 자 - (연구수행역량평가) 장학생 선발 당시 동 심사위원군의 서류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타당성을 인정받은 자	- (성적)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점수 100점 만점의 87점 이상 - (최소 이수학점) 3학점 이상	수립 예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선발 및 지원 인원
대통령과학장학금	8,387	총 502명 내외 - 신규 : 157명 내외 - 계속 : 345명 내외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37,869	총 6,948명 내외 - 신규 : 1,850명 내외 - 계속 : 5,098명 내외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6,570	총 295명 내외 - 신규: 120명 내외 - 계속: 175명 내외
석사우수장학금	8,125	총 1,625명 내외 - 신규 : 1,000명 내외 - 계속 : 625명 내외
박사우수장학금 (신설)	7,500	총 1,000명 내외 - 신규 : 1,000명 내외
사업운영비	1,335	-
합 계	69,786	8,665명 내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2026년부터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예정인 박사우수장학금의 경우 박사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연구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인데, 연구 분야별 특성 차이로 인한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생 선정 조건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박사 장학생을 신규 선발할 계획으로, 박사 과정 학생의 경우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학생의 학업 성적보다는 연구실적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맞는 선정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부터 운영 중인 석사우수장학금의 경우 대학원 과정 학생의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우수성, 학업 및 연구계획, 사회공헌활동계획, 경제적 수준, 성적 등을 대학(원)별 실정에 맞게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박사 우수장학금 선발 시에도 유사하게 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그런데 논문 수나 연구개발과제 참여도 등의 연구실적은 연구 분야별 특성 차이로 인한 유·불리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대학 내에서 추천 장학생을 선정함에 있어 선정 조건이 특정 연구분야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등 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7. 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Data-X) 지원 사업(신규): 면밀한 사업기획 후 사업 추진 필요

가. 개 요

‘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Data-X) 지원’ 사업은 분야별 플랫폼을 중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유통 환경인 데이터 스페이스 조성, 고품질 AI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2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8)]

[2026년도 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Data-X)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 (Data-X) 지원	-	-	12,000	12,000	순증

이 사업은 5년간 총 6개 분야에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으로,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을 통한 고품질 데이터 제공에 기반하여 혁신을 이끌어 내고, 스페이스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함.[39)]

각 분야별 지원은 3년간 180억원(매년 60억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2026년에는 의료 분야를 포함한 2개 분야(나머지 1개 분야는 미정)에 대한 데이터스페이스 기획 및 구축 예산을 분야별로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운영 지원 계획(안)]

1년차 - 구축·실증(60억원)	2년차 - 고도화(60억원)	3년차 - 고도화·운영(60억원)
· 데이터 스페이스 구조 및 거버넌스 설계 ·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 및 데이터 파이프라인 시범 구축·운영	· 데이터 스페이스 고도화 및 연계 데이터 확대(1차) · 분산형 데이터 저장·관리 인프라 확충	· 데이터 스페이스 고도화 및 연계 데이터 확대(2차) · 데이터 스페이스 기반 AI 혁신서비스 실증 지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8) 일반회계-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Data-X) 지원(2604-311)(인공지능기반정책관)

39) 데이터 스페이스는 산업 분야별 다양한 주체(참여자)가 합의한 공통의 규칙·표준 하에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연합형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의미

[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Data-X)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 2개 분야 데이터 스페이스 × 60억원 = 120억원 - (의료분야, 선도) 1개 분야 × 60억원 - (일반분야, 공모) 1개 분야 × 60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Data-X) 지원 사업을 통하여 구축 예정인 데이터 스페이스는 데이터 제공에 따른 수익 발생을 전제로 하는데, 의료분야의 경우 이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데이터 개방(무료)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목적 간에 상충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기획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Data-X)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통하여 향후 5년간 총 6개 분야에 데이터 스페이스를 구축할 계획임.

데이터 스페이스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익 모델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의료 분야의 경우 기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R&D)' 사업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나, 대체로 데이터 개방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데이터를 수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이 사업과 기존의 데이터 구축 사업은 정책적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음.

예를 들어 공개 데이터의 범위와 품질이 확대·개선될수록, 이 사업을 통해 구축할 예정인 데이터 스페이스를 통해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는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및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기존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환자들의 동의가 필요 없는지, 의료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사용 대가가 의료기관에만 할당되는 것인지, 환자에게도 할당되는 것인지 등 고려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40)]

이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정책적 미비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나, 2026년 예산안에는 1차년도에 기획 및 구축 비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40) 이 사업의 기획보고서에도 기존의 의료데이터 플랫폼들은 동의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 등의 목적에 활용이 한정되는 등 제약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우선 충분한 기획을 거쳐 제도개선 사항, 기존 데이터 개방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둘째, 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Data-X) 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의 산출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Data-X)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총 2개 분야에 대한 데이터 스페이스 기획 및 구축을 지원할 계획으로 각 분야별로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60억원의 세부산출 근거를 보면 ①기획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일부 인건비가 13개월 또는 14개월로 편성되어 있는데, 12개월을 초과하는 지원액은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음.[41)]

또한 ② 기획 및 구축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임차비용의 개월수를 12개월로 산출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업수행자 공고에 필요한 기간, 공고 이후 구축 전까지 기획이 이루어지는 기간 및 기획 이후 구축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세부산출 근거]

구분	세부 과업	산출근거	금액(원)
데이터 스페이스 기획 (10억)	ㅇ 데이터 스페이스 아키텍처 설계	ㅇ IT 아키텍트 2명 × 10,147,745원/월 × 12개월 = 243,545,880원 ㅇ IT 기획자 1명 × 11,597,656원/월 × 12개월 = 139,171,872원 ㅇ 업무 분석가 1명 × 8,997,359원/월 × 13개월 = 116,965,667원	500,000,000
	ㅇ 참여자 간 신뢰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기획 (데이터 표준화, 거래 규칙, 수익 분배 등)	ㅇ IT 컨설턴트 1명 × 9,706,020원/월 × 14개월 = 135,884,280원 ㅇ 데이터 분석가 1명 × 7,751,183원/월 × 13개월 = 100,765,379원 ㅇ 정보 보안 전문가 1명 × 9,857,100원/월 × 13개월 = 128,142,300원 ㅇ IT PMO 1명 × 10,351,376원/월 × 13개월 = 134,567,888원	500,000,000
데이터 스페이스 시범구축 ·	ㅇ 데이터스페이스 플랫폼 구축 (커넥터, VC, 블록체인 연동)	ㅇ SW 개발: 3,636 FP × 550,000원/FP = 1,999,800,000원	2,000,000,000

41)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구분	세부 과업	산출근거	금액(원)
운영 (50억)	ㅇ 데이터스페이스 파이프라인 구축	ㅇ 데이터 엔지니어 12명 × 7,751,183원/월 × 12개월 = 1,116,170,352원 ㅇ 시스템 SW개발자 8명 × 6,099,042원/월 × 12개월 = 585,508,032원 ㅇ IT 테스터 1명 × 3,570,557원/월 × 12개월 = 42,846,684원 ㅇ 통합 엔지니어 2명 × 9,706,020원/월 × 12개월 = 232,944,480원	2,000,000,000
	ㅇ 데이터 스페이스 거버넌스 적용 및 개선	ㅇ IT 컨설턴트 2명 × 9,706,020원/월 × 6개월 = 116,472,240원 ㅇ 정보시스템 운영자 2명 × 10,154,626원/월 × 6개월 = 121,855,512원 ㅇ IT 지원기술자 10명 × 5,058,021원/월 × 6개월 = 303,481,260원	500,000,000
	ㅇ 분산형 저장·처리 인프라 구축	ㅇ 클라우드 스토리지 500 TB × 83,333원/TB·월 × 12개월 = 499,998,000원 → 500,000,000원	500,000,000
합계			6,000,000,000

주) 2025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 중 SW기술자 노임단가·FP당 단가 (2024.1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적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출 인원과 개월 수는 필요 총량을 표현한 것으로, 예를 들어 12명이 12개월간 필요한 업무는 24명이 6개월간 수행하는 것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기획 기간과 구축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 단기간에 필요한 인원수가 대폭 확대될 수 있는데, 참여기업이 해당 인원을 단기간에 확보하여 투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 가용인원과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42)]

또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임차비용의 경우 임차 기간이 짧아진다고 해서 용량이 늘어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2) 예를 들어 데이터스페이스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데이터 엔지니어 12명 등 총 23명이 12개월간 투입되어야 하나, 사업자 선정 및 기획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구축 시 6개월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6개월간 총 46명의 인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음.

18.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 사업(신규): GPU임차 비용 과다 편성 등

가. 개 요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 사업은 경쟁 방식을 통해 AI 혁신인재들이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여 AI 분야 혁신·제품·서비스를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3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3)]

[2026년도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	-	-	13,000	13,000	순증
인공지능 챔피언 프로젝트	-	-	10,000	10,000	순증
인공지능 활용 루키 프로젝트	-	-	3,000	3,000	순증

이 사업은 전문 AI 연구팀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AI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그 과정을 방송 등을 통해 홍보하여 국민의 AI 관심을 고취할 계획임.

내역사업인 **‘인공지능 챔피언 프로젝트’** 사업은 AI 인재가 겨루는 도전·경쟁형 AI R&D를 통해 산업 기술 수요에 기반한 AI 혁신 제품·서비스를 확보하고 국민적 AI 관심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기업, 대학, 출연연 등 전문 AI 연구팀을 대상으로 하는 AI 경진대회를 운영하여, 각 연구팀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AI 기술·제품·서비스를 구현·시연하며 기술·혁신·시장성을 중심으로 우수팀을 선발할 계획임.

43) 일반회계-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2232-331)(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 챔피언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개최 예정인 경진대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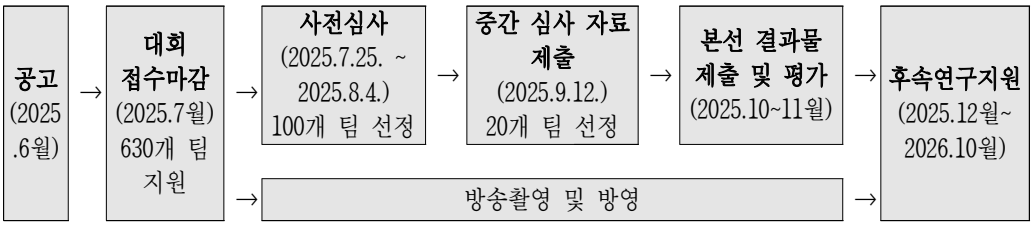
·(대회 주제(안)) 급변하는 AI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AI 분야 자유주제*
* 생성AI, 피지컬AI, AI에이전트, 헬스케어 등 연구개발 중인 혁신적인 AI 기술·제품·서비스 제시
·(참가 대상(안)) AI 분야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팀
·(지원 내용(안)) AI 연구인프라(GPU, API), 기술 워크샵 등 연구 환경 지원
· (추진 절차(안)) 사전 심사(1차) → 중간 심사(2차) → 대회 심사(발표 및 시연)

대회 공고	접수·사전심사	중간 심사	대회 심사	시상식
대회 공고 및 위원회, 평가 기준 등 수립	연구제안서 등 서류평가	결과물 제출 및 심사	발표 및 시연 평가	우수팀 시상
	사전심사 연구팀 선발 및 지원	본선 연구팀 선발	시연 가능한 결과물 최종 제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고로, 이 사업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된 ‘AI 챔피언 프로젝트’ 사업과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동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활용하여 「2025년 인공지능 챔피언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2025년 10월 14일 기준 20개 팀이 사전심사 및 중간심사를 통과하여 본선에 참여 중임.[44]

[AI 챔피언 프로젝트 사업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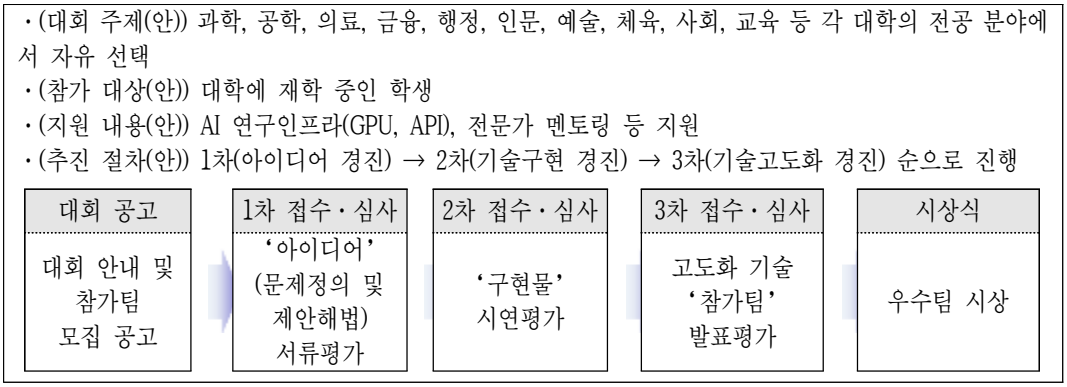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른 내역사업인 **‘인공지능 활용 루키 프로젝트’** 사업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적용·응용할 수 있는 학부 대상 AI활용 고급인재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대학생을 참가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1차적으로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2차적으로 기술구현 심사가 이루어지며, 3차적으로 기술고도화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각 심사 단계별로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여 아이디어 구현 및 기술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임.

44) 일반회계-AI 챔피언 프로젝트(R&D)(2232-326)(소프트웨어정책관)

[인공지능 활용 루키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개최 예정인 경진대회 개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은 참가팀에 대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한 GPU 등 연구인프라 지원 비용과 연구 지원 및 시상을 위한 하드웨어 비용, 홍보비, 우수팀 시상을 위한 시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음.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인공지능 챔피언 프로젝트	인공지능 활용 루키 프로젝트
경쟁환경 구축	3,000	1,000
연구 지원 및 시상	7,000	2,000
합계	10,000	3,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첫째,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 사업의 GPU 임차 비용은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경쟁형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으로, 인공지능 챔피언 프로젝트 사업과 인공지능 루키 활용 프로젝트 사업 모두 참가자에 대한 GPU 등 연구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GPU, 스토리지 임차료, 생성형 AI API 구독료 등을 이 사업의 예산안에 포함하였음.

[GPU, 스토리지 및 생성형 AI API 지원 예산 산출 근거]

(단위: 개, 백만원)

구분	품명/용도	세부내역	수량	월 단가	3개월 단가
GPU	H100	NVIDIA H100	170	1,071	3,213
스토리지	SSD NAS	SSD 1TB	130	30	90
생성형 AI API 지원	Gen AI API	Cursor AI/Claude/Gemini 등	500	270	810
합 계				1,371	4,11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PU H100 170장의 월 임차단가를 10억 7,1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를 환산하면 GPU H100 1장의 월 임차단가를 630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H100 1장의 월 임차비용이 시장 최저가 기준 약 300만원임을 고려하면, 과다한 측면이 있음.[45]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행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지능 챔피언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선행사업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사업의 추진 여부 및 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전담기관을 선행사업의 전담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므로 전담기관 간 성과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인공지능 챔피언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 중인 ‘AI 챔피언 프로젝트 지원’ 사업과 그 구조 및 내용이 매우 유사함.

따라서 ‘AI 챔피언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이 사업의 선행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45) 엘리스 클라우드 홈페이지 참고(https://elice.cloud/ko)

‘AI 챔피언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아직 참가팀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고, 2026년 10월이 되어서야 수상팀에 대한 후속연구가 종료될 예정이므로, ‘AI 챔피언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후속사업의 추진 필요성이나 추진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의 전담기관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고 사업도 비 R&D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선행사업인 ‘AI 챔피언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R&D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전담기관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었으므로 전담기관이 달라지게 됨.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사업 구조상 100개팀 대상 지원 방법의 한계(협약)가 존재하여, 급변하는 AI 분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AI 연구분야 및 후속 사업화 등 필요 요소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비 R&D 사업으로 개편하면서 비 R&D 사업 관리에 특화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변경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전담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선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사항을 후속사업에 반영하거나 선행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연계하는 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담기관 간 성과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9. AI 전사양성 사업(신규): AI 전임교원 확보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AI 전사양성’ 사업은 AI-native 인재 양성을 위하여 4대 과학기술원에 AI 거점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3억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6][47]

[2026년도 AI 전사양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B-A)/A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18,356	233,356	287,242	53,886	23.1
AI 전사양성	-	-	4,450	4,450	순증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90,160	97,660	126,289	28,629	29.3
AI 전사양성	-	-	2,650	2,650	순증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97,634	101,384	117,461	16,077	15.9
AI 전사양성	-	-	1,610	1,610	순증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97,697	101,447	115,367	13,920	13.7
AI 전사양성	-	-	1,610	1,610	순증

46) 세부사업: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1)(미래인재정책국),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2)(미래인재정책국),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3)(미래인재정책국),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2231-405)(미래인재정책국)

47) AI-native 인재는 AI의 단순 활용자가 아닌 AI를 구성, 제어 통합하는 복합 역량의 인재를 의미함.

AI 전사 양성사업은 ① 4대 과학기술원에 각각 AI 거점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과 ②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하여 AI-Literacy 확산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 AI 거점대학 프로그램 운영은 4대 과학기술원에 AI 단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AI 단과대학에서는 AI-native인재와 AI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강의를 제공하여 AI 인재를 양성할 계획임.

[4대 과기원의 AI 거점대학 프로그램 운영 준비 현황]

구분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026년 예산안(백만원)	3,950	2,650	1,610	1,610
AI 단과대학 기획 시점	2025년	2026년 연내	2026년 연내	2026년 연내
AI 단과대학 운영 시점	(학부) 2026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2026학년도 가을학기	2027년 연내	2027년 연내	2027년 연내
운영예정 학과 목록	AI코어학과, AI반도체학과, AX학과, FX학과	기획 예정	기획 예정	기획 예정
AI 단과대학 학년별 규모	(학부) 연간(학년별) 100명 (대학원) 연간(학년별) 100명	기획 예정	기획 예정	기획 예정
AI 전임교원 수 (2025년 9월말 기준)	20명	14명	23명	29명
전임교원 요구 조건	핵심 연구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 우수 연구업적 및 교육 발전가능성, 공동 연구 협력의 기여가능성 등	기획 예정	기획 예정	기획 예정
전임교원 인건비(연단위)	기존 교원과 동일	기획 예정	기획 예정	기획 예정

구분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AI 공통과목	운영(안) 수립 중	기획 예정	기획 예정	기획 예정
AI 심화과정 수강 과목	운영(안) 수립 중	기획 예정	기획 예정	기획 예정
AX 과정 수강 과목	운영(안) 수립 중	기획 예정	기획 예정	기획 예정
지역산업 연계 방안	지역산업 연계 추진 예정(예시 : 지역 기업수요 맞춤형 공동연구, 현장 밀착형 AI 융합인재 양성, 지역 AI 융합 클러스터 거점역할 수행 등)	기획 예정	기획 예정	기획 예정

주) 기획과정에서 세부사항은 변동 가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AI-Literacy 확산기반 조성은 AI 활용역량 확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비전공자를 위한 AI 활용 교육을 한국과학기술원이 보유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KAIST Open Online Course, KOOC)을 통해 공개하여 전 국민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억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AI 전사양성 사업을 통한 AI 거점대학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4대 과학기술원에 AI 단과대학을 설치하여 학사과정에서부터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으로, 연도별 전임교원 확보 및 학과 커리큘럼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각 과학기술원이 AI 거점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AI 학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임교원 수를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이 사업 외에도 ‘AI·SW 중심대학’ 사업을 통하여 AI 중심대학 선정을 추진하는 등 대학의 AI 관련 교육과정 확대를 지원하고 있어, 국내 AI 전임교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2025년 9월 말 기준 각 과학기술원의 AI 전임교원 수는 2026년에 필요한 AI 전임교원 수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전임교원을 계획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에 대한 기준을 면밀히 수립하고, 해외 인재 초빙을 병행하는 등 양질의 전임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대 과학기술원의 AI 전임교원 현황 및 확보방안]

(단위: 명)

구분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AI 전임교원 현황		20	14	23	29
전임교원 확보 방안		・Search Committee 등을 운영하여 국내외 후보자 적극 발굴 ・임용확정 교원 대상 미국 주요 IT 기업 경력 확보 지원	・통합채용을 통한 학과 경계 없이 전방위적 AI 인재 물색 ・미국 유수대학 교수채용 설명회 개최 ・범용AI, 효율적AI 등 집중분야 후보 탐색 추진	・해외 우수연구자 신속 유치 로드쇼 등 참석을 통해 해외 AI분야 우수연구자 발굴 및 초빙 ・신임교원 초빙위원회 운영 및 AI 분야 우수연구자 인재풀 마련	・적극적 대규모 초빙을 위해 정기채용 방식에서 상시채용 방식으로 전환
연도별 필요 교원	2026년	40	18	28	32
	2027년	49	19	30	35
	2028년	57	20	32	38
	2029년	65	21	34	40
	2030년	68	22	36	42

주 1) AI 전임교원 현황은 2025년 9월말 기준임
2) 기획과정에서 세부사항은 변동 가능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AI 단과대학을 설치하여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특화된 커리큘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과학기술원은 운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기존 전산학과 또는 컴퓨터공학과 수업과 차별화되는 신규 강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48)]

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원을 제외한 3개 과학기술원은 2027년부터 AI 거점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2026년 예산은 학사정원 확대 없이, 기획비 및 시범운영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운영계획은 2026년에 기획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20.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은 국내 대학이 기업과 함께 AI융합 특화 및 AI 핵심 교육을 통해 실전형 AI혁신(AX : AI Transformation) 고급인재를 집중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9)]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R&D)	13,500	13,500	21,000	7,500	55.5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	-	15,000	15,000	순증

이 사업은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을 대상으로 석·박사 인재 양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내 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석·박사 과정 학생에게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기회 제공, 우수학생에 대한 해외 인턴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실전형 AI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 추진 방안]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9) 일반회계-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R&D)(2232-302)(소프트웨어정책관)

그간 다른 사업을 통하여 AI대학원 및 AI융합혁신대학원 운영 등이 지원되고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대학(원)에 대하여도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할지 여부를 검토 중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인재양성 사업 목적 달성 및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지속 검토하고 있으며, 과제 공모 전 확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AI 대학원 및 AI융합혁신대학원 선발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AI 대학원	고려대	-	28	-	56	20	41	23	39	31	27
	성균관대	30	8	36	18	42	16	41	17	39	10
	KAIST	22	10	58	43	75	52	76	45	81	49
	GIST	-	-	-	41	-	40	15	18	35	21
	포항공대	-	-	24	19	30	20	27	25	43	27
	연세대	-	-	21	11	21	20	22	15	30	44
	UNIST	-	-	11	5	35	21	46	30	34	25
	한양대	-	-	18	5	37	36	37	23	32	29
	서울대	-	-	-	-	11	44	17	52	22	68
	중앙대	-	-	-	-	29	5	39	7	47	10
	소 계	52	46	168	198	300	295	343	271	394	310
AI 융합 혁신 대학원	경희대	-	-	-	-	-	-	11	9	35	6
	이화여대	-	-	-	-	-	-	13	4	36	11
	인하대	-	-	-	-	-	-	8	3	35	12
	충남대	-	-	-	-	-	-	13	5	35	12
	한양대ERICA	-	-	-	-	-	-	4	1	55	12
	동국대	-	-	-	-	-	-	-	-	15	5
	부산대	-	-	-	-	-	-	-	-	11	6
	아주대	-	-	-	-	-	-	-	-	15	-
	전남대	-	-	-	-	-	-	-	-	6	3
	소 계	-	-	-	-	-	-	49	22	243	67
합 계		52	46	168	198	300	295	392	293	637	377

자료: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 기획보고서

이 사업은 2026~2031년까지 10개 과제에 대하여 각각 연도별 30억원(과제당 총 16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개 신규과제에 대한 6개월 지원을 전제로 150억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은 6년간 국비 1,6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거나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보여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2026년 국비 150억원이 지원되며 2031년까지 총 1,650억원 이상이 지원될 예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여「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보임.[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이 2026년 종료되는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의 후속 개편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이미 검토된 바 있는 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점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X 인재 육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 사업은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 사업과는 별개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고,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제1항은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51]

---

50)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5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6조(대상사업의 단위)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한다.

21.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 사업(신규): ISP 수립 이후 구축 예산 반영 필요

가. 개 요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 사업은 AI 바이오 분야의 기술축적·인재양성·산업확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AI바이오 혁신 거점을 시범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2)]

[2026년도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	-	-	10,200	10,200	순증

이 사업은 AIxBio 혁신 연구거점 구축을 위하여 산·학·연·병 컨소시엄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바이오 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 개발 및 검증과 이에 필요한 AI컴퓨팅 자원 및 자율실험실 구축을 지원할 계획임.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AI바이오 혁신연구단 운영비	융합연구비	25	30	30	30	30	145
	인재유치 및 양성비	8	12	12	12	12	56
	기타운영비	3.5	6	6	6	6	27.5
	연구단인건비	5.5	8	8	8	8	37.5
	소계	42	56	56	56	56	266
AI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AI컴퓨팅장비 및 유지관리	30	40	40	2	2	114
	자율실험실장비, AI 가상화 실험실 구축 및 운영비	27	36	36	6	6	111
	소계	57	76	76	8	8	225
ISP		3	-	-	-	-	-
합계		102	132	132	64	64	49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2) 일반회계-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1138-502)(기초원천연구정책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 예산에 ISP 수립 예산을 포함시키고, ISP를 수립 한 후 그에 기반하여 AI컴퓨팅 자원을 구축할 계획이나, AI컴퓨팅 자원 구축 예산은 ISP 수립 결과가 나온 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AIxBio 혁신 연구거점 조성 시범사업(R&D)'을 신규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AI컴퓨팅 자원 및 자율실험실을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예산 및 구축 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전까지 ISP를 수립하고 그에 기반하여 AI컴퓨팅 자원 구축을 수행할 계획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ISP 수립을 위한 예산 3억원을 별도로 반영하였음.

그러나 AI컴퓨팅 자원에 대한 구축 필요성이나 필요 예산은 ISP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구축을 위한 예산은 ISP 수립 결과가 나온 이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차원의 연구거점 조성과 조기 가동을 시급히 추진하기 위해 이전 유사사업을 참조하여 인프라 구축과 ISP 수립을 동년도에 병행 추진한 것으로 구축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에 따라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구축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ISP 수립 결과에 기반한 공모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SP수립 직후인 4월부터 과제를 개시할 계획으로 9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공모절차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입>

22. 기타경상이전수입: 수입 전망을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정부 출연금 및 보조금 등 과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기타 과오지급 반환금 등으로 구성되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5,500만원(6.0%) 증가한 116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53)]

[2026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10,957	10,957	11,612	655	6.0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세부내역]

○ 직전 3개년('22~'24) 평균 수납액 수준 편성: 116억 1,200만원
- 2022년 수납액: 104억 100만원 × 1/3
- 2023년 수납액: 115억 3,900만원 × 1/3
- 2024년 수납액: 128억 9,800만원 × 1/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최근 3년간 수납액이 본예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2022~2024)간 기타경상이전 수입 현황]

연도	예산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8,854	8,854	10,401	10,401	117.5	100.0	-	-
2023	9,532	9,532	11,539	11,539	121.1	100.0	-	-
2024	9,583	9,583	12,902	12,898	134.6	99.9	4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최근 3년간 수납액이 본예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구성되는 특성상 사업비 지출 규모 확대에 따른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예산안에 기타경상이전수입을 2022년 ~ 2024년 동안 발생한 기타경상이전수입의 평균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의 사업비 지출 규모 증가에 따른 집행잔액 증가 소요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2022결산	2023결산	2024결산	2025본예산	2026본예산
사업비 지출	480,020	614,331	726,851	920,355	1,186,154
전년대비 증가액	-	134,311	112,520	193,504	265,799
전년대비 증가율	-	28.0	18.3	26.6	28.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비 지출 규모 증가가 집행잔액 증가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시 사업비 지출 규모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 예상액을 산출하여 계상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의 사업비 지출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집행잔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26년에도 사업비 지출 규모 증가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규모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기타경상이전 수입 구성]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2025년 7월말
출연금 사업비 집행 잔액	7,911	9,214	12,668	14,880
보조금 사업비 집행 잔액	2,139	1,904	192	94
소계	**10,050**	**11,118**	**12,860**	**14,974**
기타	351	421	38	-
합계	10,401	11,539	12,898	14,97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 출>

23.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신규): 선행절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은 일상생활 및 지역 특화산업(모빌리티, 에너지)의 AX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실증과 AX 실증지원 인프라인 AX 실증 밸리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69억 6,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4]

[2026년도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X실증밸리조성 (R&D)	-	-	16,967	16,967	순증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6,000억원인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2025년 8월 같은 조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음.[55]

---

5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AX실증밸리조성(R&D)(2601-413)(인공지능기반정책관)

55)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동 사업을 통해 확보된 실증 시설·장비 등의 인프라를 연계·활용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임.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개요]

·(사업목적) 미래사회 기반 선도와 사회 전반의 AX를 촉진하는 AI 기술 확보 및 개방형 AI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한 AX R&D·실증의 핵심 거점 조성 ·(기간/예산) 5년(2026~2030) / 6,000억원(국비 3,600(과기부 2,545, 산자부 360 기후에너지환경부 695), 지방비 1,473, 민자 927) ·(사업내용) ① 광주형 ‘모두의 AI’ 구현 (과기정통부/총사업비 1,010억원) - 시민참여·시니어케어·공공미디어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실증, 도시·생활 AX(대중교통노선 최적화, 비침습 임산부 건강관리 등) ② 자율주행 AX (과기정통부-산업부/총사업비 1,597억원) - 기존 규칙 기반 시스템을 넘어, 다양한 주행상황에서 스스로 학습·판단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기정통부) - 유연생산을 위한 인간-로봇 협업 기반 차량 제조 공정 최적화(산업부) ③ AI 기반 에너지 운영 최적화·안전 (기후에너지환경부/총사업비 1,069억원) - 분산에너지 확산으로 인한 전력망 공급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전력망 자율운영 기술 및 ESS 화재 예방 기술 개발 ④ AX 인프라 조성 (과기정통부/총사업비 2,234억원) - AI 개발부터 실증·사업화 One-Stop 지원센터(AI InnoSpace) 및 AI 연구개발·실증 지원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 제공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69억 6,700만원 - ‘모두의 AI’ 구현: 63억 8.500만원 · [광주형 ‘모두의 AI’ 개발] 3개 과제 × 42억원 × 4.5/12개월 · [도시·생활혁신 AX] (지정) 2개 과제 × 16억 5,000만원 × 4.5/12개월 + (신규, 자유) 5개 과제 × 2억 2,550만원 × 4.5/12개월 - 미래 모빌리티 AX 혁신: 63억 5,200만원 · [자율주행 모빌리티 AX 핵심 기술개발] 2개 과제 × 84억 7,000만원×4.5/12개월 - AX 촉진 거점 구축 (42억 3,000만원) · [AI InnoSpace 구축] 국산 AI 반도체 검증장비 1개 × 14억 6,700만원 × 4.5/12개월 · [AX R&D 인프라 제공(GPU)] GPU 서버 31개 × 3억 1,660만원 × 4.5/12개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첫째,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은 총사업비 6,000억원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2025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고,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면제와 적정성 검토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후 기본계획 수립, RFP 작성,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별도로 지방비 확보도 필요하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AX실증밸리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000억원의 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나, 같은 조 제2항제10호를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현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음.

그런데 이 사업은 AX 인프라 조성 등 시설구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여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그 결과에 기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함.[56)]

56) **「국가재정법」**

또한 기본계획 수립이 되더라도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RFP 작성 및 공모 절차가 예정되어 있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AI 컴퓨팅인프라(GPU) 지원을 위한 사업수행자 공모 절차 등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과제 수행에 앞서 많은 행정절차가 예정되어 있음.[57]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선행절차 고려 시 2026년 사업 추진 일정]

일정	내용
2025.9월 ~ 2026.4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2026.5월	사업기본계획 수립
2026.5월~6월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협의 및 확정
2626.6월	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협약체결 및 출연금 교부
2026.6~7월	연구개발기관 공모·선정
2026.7월	NIPA-연구개발기관 협약체결 및 출연금 교부
2026.7월~ 8월	GPU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수행자 공모 및 임차
2026.8월~12월	연구개발 수행 ※2026년 중 4.5개월 지원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AI 기반 에너지 운영 기술의 실증과 확산을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개별 기술개발(R&D) 성과를 실제 지역 현장에 적용·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나, 광주광역시는 국비가 확정된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지자체 예산안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다만, 광주광역시에서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은 2025년 11월 중순 경으로,[58]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57) 이와 유사한 사례로 우주항공청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사업이 있는데, 동 사업의 경우 2023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2024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 등을 거치면서 2025년 7월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58) 출처: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main.do)

해당 시점은 이 사업 예산안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 경우 국비는 확보되더라도 광주광역시에서 매칭하여야 할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만일 지자체 예산이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시일이 더 소요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지방비가 적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4.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신규):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은 국내 강점 산업에 특화된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AI모델, 시뮬레이션, 제어, 표준화 등) 개발을 통하여 글로벌 기술표준 선점 및 AI메타팩토리 기반기술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9)]

[2026년도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	-	40,000	40,000	순증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원인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2025년 8월 같은 조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음.[60)]

---

5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4231-302)(소프트웨어정책관)

60)「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3.「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

이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 중인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의 내역사업인 ‘피지컬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여 기획·추진할 계획임.[61]

[피지컬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내 중견·중소기업 현장 특화 기술 도입 및 국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전략 설계 및 PoC 실증으로 피지컬AI 추진전략 마련
- 사업기간/소요예산: 2025년/총 399억 4,500만원(국비 229 지방비 18.45 민자 152)
- 사업내용
  - (피지컬AI 전략 모델 수립 및 기획) 협업 지능 피지컬AI Factory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로 주요 R&D 과제 추진 전략 및 사업 로드맵 수립
  - (피지컬AI 통합 플랫폼 설계) 피지컬 AI 기술 구현을 위한 기반 파운데이션모델, SDF 및 시뮬레이션·디지털트윈, 개발 인프라 설계
  - (기술검증 랩 기반 PoC 확산 사업) 피지컬AI 도입 수요기업 대상 PoC를 통해 협업 지능 기술 설계 고도화 및 기획 구체화 추진
- 추진현황

7월 25일~ 8월 18일	→	8월 29일	→	10월 말	→	12월
주무부처 협약체결 및 주관기관 공모		주관기관 사업협약		중간점검		2025년도 결과평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개요]

- 사업목적: 한국형 강점산업에 특화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AI모델, 시뮬레이션, 제어, 표준화 등)·솔루션 개발로 글로벌 기술표준 선점
- 기간/예산: 5년(2026~2030) / 6,000억원 이상(국비 6,000, 지방비 1,500, 민자 2,500)
- 사업내용

① (핵심기술 개발) 협업지능(Collaborative intelligence) 피지컬AI(Physical AI)의 기반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기술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개발 수행
  -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 산업에 적용 가능한 피지컬AI 기술 중심 개발

② (핵심 연구 인프라 구축·활용) 기술 실증용 개방형 플랫폼 구축
  - (피지컬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실제 산업 환경 기반의 리빙랩 운영을 통한 연구개발 기술의 검·인증 및 실증 테스트 환경 구축
  - (개방형 연구클러스터 조성) 피지컬AI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글로벌 협업연구 등을 위한 공간 및 장비 인프라 마련

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61) PoC(Proof of Concept)는 아이디어나 기술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함.

③ (글로벌 협업 및 연구클러스터化) 글로벌 연구 협력을 통한 기술 표준 선점과 글로벌 AI연구 생태계 구축하고, 연구・실증・확산이 연계된 인프라 집적으로 개방 ・2026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 혁신도전형 협업지능 피지컬 AI 연구개발 · 10개 × 24억 5,000만원 × 9/12: 181억 6,000만원 - 기술확산형 협업지능 피지컬AI 연구개발 · 12개 × 8억 2,500만원 × 9/12: 74억 4,000만원 - 피지컬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플랫폼化 · 8개 × 22억 6,000만원 × 9/12: 135억 6,000만원 - 사업단 운영(글로벌 연구 협업생태계 수립 등) · 1식 × 11억 7,500만원 × 9/12: 8억 8,000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 사업은 총사업비 1조원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2025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고,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면제와 적정성 검토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5.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사업(신규):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사업은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을 기반으로 초정밀 제어가 필요한 분야에 활용 할 수 있는 LAM(PINN 기반 물리지능행동모델) 원천기술 개발 및 글로벌 실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2)]

[2026년도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	-	40,000	40,000	순증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1조원인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2025년 8월 같은 조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음.[63)]

---

6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4231-301)(소프트웨어정책관)

63)「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3.「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이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 중인 ‘피지컬AI 핵심기술 PoC’ 사업의 내역사업인 ‘PINN 모델 제조 융합데이터 수집·실증’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여 기획·추진할 계획임.[64][65]

[PINN 모델 제조 융합데이터 수집·실증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기반으로 현장 융합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및 실증으로 글로벌 제조 피지컬AI 시장 선도
- 사업기간/소요예산 : 2025년/총 325억원(국비 197 민자 128)
- 사업내용
  - (제조 PINN 모델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빅테크기업-국내·미국·유럽 대학(연구기관)과 피지컬AI 특화 PINN 모델 기반 기술 협력
  - (제조융합데이터 수집을 위한 기반 구축) 초정밀 행동제어를 위한 PINN 모델 개념 설계 및 제조 융합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반 조성
  - (융합데이터 수집·실증) 산업 현장 접목에 기반한 행동 최적화를 위한 고신뢰성 융합데이터 수집 및 실증
- 추진현황

7월 25일~ 8월 18일	→	8월 29일	→	10월 말	→	12월
주무부처 협약체결 및 주관기관 공모		주관기관 사업협약		중간점검		2025년도 결과평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사업개요]

- 사업목적: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을 기반으로 초정밀 제어가 필요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LAM(PINN 기반 물리지능행동모델) 원천기술 개발 및 글로벌 실증
- 기간/예산: 5년(2026~2030) / 1조원(국비 6,000, 민자 4,000)
- 사업내용

① (융합데이터 수집·활용체계) 국내 제조·의료 현장에 기반하여 초정밀 제어가 가능한 고신뢰성 융합데이터 수집·활용체계 구축 및 실증 추진
  - 데이터스페이스 기술 기반 4,000개 이상 융합데이터 통합·관리·공유 플랫폼 구축 및 LAM 개발을 위한 융합 데이터셋 구축

② (LAM 핵심기술 개발) 물리법칙이 내재화된 융합데이터 기반의 LAM 원천기술 개발 및 인간-AI 협업형(AI-Embodied) 모델 구현·실증
  - 융합데이터를 활용한 PINN 모델 개발 및 WM 등을 통합하여 특정 과업(Action) 수행 시 의사결정을 내리는 LAM 개발
  - 인간-AI 협업 환경에서 LAM과 실시간 상호작용·학습이 가능한 양방향 제어 디지털 트윈 FAB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64) PoC(Proof of Concept)는 아이디어나 기술의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을 의미함.

65) PINN 모델은 물리법칙이 내재화 된 AI모델로, 외산 범용 모델(Nvidia Cosmos, Isaac SIM 등)보다 정확한 물리적 움직임 구현이 가능하여, 제어공학, 의료 등 정밀도 필요 분야에 확산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센터 구축 및 자율적 데이터 보안 운영 체계 AI Agent 개발 - AI-Embodied Digital Twin 개발로 AI-인간 협업형(AI-Embodied) 물리모델을 구현하고, 시범 적용·실증 통해 LAM 고도화 추진 ③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테크기업-국내 대학·연구기관-미국·유럽 대학-데이터 제공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화, 공동연구 등 추진 - (글로벌 허브 구축) 글로벌 수준의 LAM, 융합데이터 플랫폼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해 글로벌 표준화 협력 등 과제 발굴·추진 및 사업단 운영 ·2026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 융합데이터 수집·활용체계 구축: 1식 × 245억 7,100만원 × 9/12, 184억 2,800만원 · (현장 데이터수집): 8개 기업 × 20억 8,200만원, 166억 5600만원 · (디지털 트윈 설계): 4개 기업 × 4억 4,300만원, 17억7,200만원 - LAM 핵심기술 개발: 1식 × 252억 700만원 × 9/12, 189억 500만원 · (플랫폼 구축): 1식 × 52억 6,500만원, 52억 6,500만원 · (핵심기술 개발): 5개 과제 × 27억 2,800만원, 136억 4,000만원 -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1식× 23억 8,300만원 × 9/12, 17억 8,700만원 - LAM 사업단 구축·운영: 1식× 11억 7,300만원 × 9/12, 8억 8,000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 사업은 총사업비 1조원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나, 2025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고,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 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면제와 적정성 검토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 출>

26.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 전년도 실적을 고려한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개 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은 대학 기관 중심 학생인건비 지급·운용 관리체계 구축 및 학생인건비 지급 수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최저지급액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0억 4,300만원(38.4%) 증액된 830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66]

[2026년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R&D)	60,000	60,000	83,043	23,043	38.4

학생인건비는 R&D 과제의 연구비 중 직접비에 포함되어 있는데,[67]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실의 연구개발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가 불안정하게 변동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68] 이에 보다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이 2025년에 신설되었음.

---

66)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1731-301)(미래인재정책국)

6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 ①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다.

68) 예를 들어, A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가 5개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하고 B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가 1개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한 경우, 연구책임자가 과제별 연구비 각각에 대하여 학생인건비를 자율 계상하므로 A 연구자와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자가 보다 많은 인건비를 수령할 가능성이 높음.

이 사업은「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9조의3에 근거하여 추진 중으로, 학생인건비 최저지급액(석사과정 월 80만원, 박사과정 월 110만원) 미만의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대학원생에게 최저지급액 수준까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69]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 개요]

・사업 개요 - (목적) 이공계 대학원생 경제적 안전망 구축 및 연구 몰입환경 조성 - (법령상 근거)「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9조의3 - (기간 / 수행기관) 2025년 ~ 2033년 / 한국연구재단 - (선정 대상) 이공계 대학원을 운영 중인 대학* * ① 대학 단위 기관계정 운영, ②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계획서 수립 必 - (지원 학생)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자 - (지원 내용)석사과정 월 80만원, 박사과정 월 110만원 ・ 운영 체계 - (정부) 대학에 재정지원금 지급 및 학생인건비 운용 실태점검*** *** 학생인건비 지급 수준의 유지·상승 여부, 기본 지급액 보장 여부, 지속가능한 학생인건비 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점검 - (대학) 대학 기관계정 필수 설치·운용(하위 학과 계정 설치·운용 방식 자율 결정), 이공계 대학원생 학생인건비 운용 정보 통합관리 ・ 2025년도 대학 선정 현황 및 2026년도 대학 선정 계획 - (선정 현황) 2025년 대학 35개교(상반기 29, 하반기 6) 선정 후 지원 중 - (선정 계획) 2026년 상반기 중 15개교 추가 선정 예정 ・ 2026년도 예산안 세부편성계획: 830억 4,300만원 ○ (계속과제 지원) 700억 9,900만원 - (상반기 참여) 580억 4,000만원 = 29개교 × 20억 100만원 - (하반기 참여) **120억 5,900만원 = 10개교 × 12억 600만원** ○ (신규과제 지원) **121억 1,400만원 = 15개교 × 8억 800만원** ○ 사업관리비 : 8억 3,000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9)「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3(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이공계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에 대하여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R&D) 사업의 2025년 하반기 참여대학 모집 결과 당초 계획한 10개 대학 중 6개 대학만 선정된 점과, 2026년 신규 참여대학을 15개 선정할 계획이나 지원자격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연구개발기관단위 지정대학이 2025년 10월 22일 기준 7개, 추가 지정 검토중인 대학이 10개뿐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수립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대상 대학을 선정하기 위하여 2025년 상반기 공고를 4월부터 진행하여 총 29개 대학의 선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선정 공고는 6월부터 진행하여 10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6개의 대학이 선정되었음.[70]

[2025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일정]

일정	내용
2025.2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및 2025년 시행계획 수립
2025.2~3월	2025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규과제 공고
2025.4월	2025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규과제 선정(29개)
2025.5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2025.6~7월	2025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하반기 신규과제 공고
2025.8월	2025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6개)
2025.10~11월	2025년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점검
2025.12월	2026년 사업 시행계획 수립 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에 따르면 하반기 참여대학 10개에 대한 계속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선정되지 않은 4개 대학에 대한 계속과제 지원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71]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에 15개의 신규 참여대학을 선정할 계획으로, 2026년 1월까지 신규과제 공고 및 접수를 완료하고 2월 말까지 선정을 마쳐 2026년 3월부터 협약체결 및 지원할 계획임.

---

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추가 선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임.

71)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신규대학 선정에 해당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자임.

[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일정(안)]

일정	내용
2025.12월	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규과제 공고
2026.2월	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규과제 선정
2026.3월	2026년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신규과제 협약체결 및 지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런데 이 사업의 참여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이 연구개발기관단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하나, 2025년 10월 22일 기준으로 미 참여대학 중 연구개발기관단위로 지정되어 있는 대학은 총 7개로 확인되고 있고, 추가 10개 대학에 대한 연구개발기관단위 지정이 검토 중으로 2025년 11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임.

따라서 2025년 11월 지정 결과 및 대학의 2026년 연구개발기관단위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제 선정 가능한 대학은 상반기에 모집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27. AI중심대학 사업(신규): 전환 대상 대학의 조속한 선정 필요

가. 개 요

‘AI·SW중심대학’ 사업은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이끌 핵심인재 및 디지털 전 산업에 가치를 창출할 융합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179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2)]

[2026년도 AI·SW중심대학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I·SW중심대학	-	-	117,960	117,960	순증
AI중심대학	-	-	25,500	25,500	순증

이 사업은 ‘대학디지털교육역량강화’ 사업으로부터 이관받은 ‘SW중심대학’ 사업과 신규 내역사업인 ‘AI중심대학’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중 내역사업인 **‘AI중심대학’** 사업은 대학(학부) 교육을 AI 중심으로 혁신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모두의 AI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5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AI중심대학 사업 개요]

- (지원대상) AI 관련 학과가 설치된 국내 4년제 대학
  ※ (전환대학) SW중심대학(58개교), (신규대학) 非 SW중심대학
- (지원내용) 대학 AI 전문교육 혁신 등에 필요한 사항(기반구축 포함)
- (주요 추진 과제) ①전교생 AI 교육 의무화, ②AI 전공학과 개설, ③유연한 학제 도입(학·석사 패스트 트랙), ④지역 주력산업 AI전환 및 창업 활성화, ⑤전국민 AI교육 확산
- (지원기간/지원규모) 최대 8년(3+3+2년) / 대학당 연간 약 30억원 이내
- 2026 ~ 2030년 연차별 투자 계획(안)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합계
총 운영대학(개)	10	15	20	25	30	30
신규(개)	3	2	2	2	2	11
전환(개)	7	3	3	3	3	19
총 지원예산(억원)	255	425	575	725	875	2,85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AI·SW중심대학(2232-301)(소프트웨어정책관)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신규 선정 예정 3개 대학에 대한 6개월 지원비 45억원과 전환 예정 대학 7개에 대한 12개월 지원비 210억원이 편성되어있음.

[AI중심대학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AI중심대학: 255억원 - (신규) 신규 3개 대학 × 30억원 × 6/12개월: 45억원 - (신규) 전환 7개 대학 × 30억원 × 12/12개월: 210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중심대학 사업을 통하여 기존 SW중심대학 일부를 AI중심대학으로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인데, 전환 대상 대학 선정을 위한 공고가 2025년 12월 초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SW중심대학에서 AI중심대학으로 전환되는 선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AI중심대학’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으로, 2026년 신규 선정 예정인 10개의 AI중심대학 중 7개는 기존 ‘SW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지원 중인 SW중심대학 중에서 전환하여 지원할 계획인바, 2026년도 예산안에는 1월부터 전환 대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 12월 경 AI중심대학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SW중심대학 중 AI중심대학으로 전환할 대학을 결정하기 위한 공고 및 선정평가 절차는 2025년 12월 이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AI중심대학 추진 일정]

구분	추진일정
~2025.10월	AI중심대학 추진방안(안) 관련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2025.12월	2026년도 AI중심대학 추진계획 수립
2025.12월~2026.5월	AI중심대학 전환 및 신규대학 선정 공고 및 평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환대학 선정은 2025년 12월 초 공고를 거쳐 2026년 2월 평가 및 선정을 실시할 계획이고, 2026년 ‘SW중심대학’ 사업의 수행대학 58개교 중 51개 대학 예산만 편성하고, 전환 대학 7개교 예산은 SW중심대학 예산에 미반영 되었기 때문에 AI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은 12개월분 예산(3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선정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존 SW중심대학에서 AI중심대학으로 전환되는 대학이 2026년도 1학기부터 AI중심대학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진흥기금】

<지 출>

28.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활용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특정자금[73]으로,「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주요 재원인「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을 포함하여 기술료 수익,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과학관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74]

---

73)「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74)「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7.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복권기금 전입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는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는「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이 매년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 지출은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잔여 재원이 여유자금으로 누적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누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년 결산	2023년 결산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액	2026년 계획액
수입(A)	110,276	113,081	130,279	143,134	120,513
사업비지출(B)	108,226	112,240	94,275	105,127	90,907
(A-B)	2,050	841	36,004	38,007	29,606
여유자금 누적액	24,207	25,048	61,052	99,059	128,665

주) 사업비 수입과 지출은 여유자금 누적 추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여유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은 제외하고 산출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에 따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2024년 결산 기준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610억 5,200만원이나, 2026년 계획액 기준으로는 그 두배 이상인 1,286억 6,500만원이 되어 사업비 지출 규모인 909억 7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유자금 누적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사업비 확대, 일반회계 사업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이관 등을 통해 여유자금을 활용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정부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제한되고, 2023년 이후 매년 수입 대비 사업비 지출 규모가 축소되면서 여유자금이 누적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기금의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일반회계 사업을

립된 법인 · 단체 또는「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7.「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9.「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지원

기금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하는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수 입>

29.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실적 및 수입 전망을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필요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수입’ 은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운용 과정 및 집행잔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75)]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350	350	350	-	-

[기타재산이자수입 계획안 세부내역]

○ 기타재산이자수입: 3억 5,000만원
- 2026년 예상 예치금평균잔액(70억원) × 기준금리(2.50%): 1억 7,500만원
- 집행잔액 예치계좌 발생이자 등: 1억 7,500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5)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기타재산이자수입(54-546)(공공융합연구정책관)

나. 검토의견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여유자금 증가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가 반영되지 않아 2024년 및 2025년 수납액이 계획액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동일한 사유로 2026년에도 수납액이 현재 계획액보다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수입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2026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치금의 평균잔액에 기준금리를 곱한 값(1억 7,500만원)과 집행잔액 예치계좌 발생이자 등(1억 7,500만원)을 활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계획액 산출 방식은 2024년 및 2025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두 해 모두 계획액 대비 수납액이 2배 이상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계획액 산출에 활용한 예치금의 평균잔액이 계획보다 크게 발생한 점에서 기인하였음.

[2024년 및 2025년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년도 계획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계획	2025년도 실적 ('25 8월말 기준)	2026년도 계획
금액	350	965	350	822	350
예치금 평균잔액	6,000	28,887	5,000	20,189	7,000
수익률[1]	3.5	3.74	3.5	3.18[2]	2.5
보정금액[3]	-	△296	-	270	-
집행잔액 예치계좌 발생이자 등	170	182	175	123	175

주 1) 해당 기간 동안의 잔고 평균대비 순익금(기간 총 수익/기간 평균잔액), 회계연도별 계획에는 예상 기준금리 활용
2) 2025년도 수익률은 연 수익률로 환산한 값으로 금액 계산 시 8/12를 곱하여 계산함
3) 이자 발생시점과 실제 수납 시점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당기 이자수익은 제외하고 전기말 이자수익을 반영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및 2025년의 예치금 평균잔액이 계획보다 크게 발생한 것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의 경우 R&D 사업비 감액으로 인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과 달리 여유자금이 증가하였고, 2025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비 지출 규모가 반영되지 않아 여유자금이 증가하면서 예치금 평균잔액이 증가하여 기타재산이자수입이 초과 수납되었다고 설명함.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여유자금 운용 규모를 562억 5,400만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연기금투자풀에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2025년 586억 2,600만원과 유사한 수준의 여유자금 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따른 이자수입도 2025년의 현재 실적을 고려하여 계획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치금 평균잔액을 70억원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2025년도 8월말 기준예치금 평균잔액인 201억 8,900만원의 34.7%에 불과한바, 기타재산이자수입을 과소 계상한 문제가 있으므로 수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1)]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1조 1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6억원(13.0%) 증가함.

예산은 2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원(△33.9%) 감소한 반면, 기금은 9,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1억원(14.7%) 증가함.[2)]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310	310	205	△105	△33.9
기 금	8,705	8,805	9,986	1,281	14.7
총수입	9,015	9,115	10,191	1,176	13.0

문의 : 김영빈 예산결산조사관 kyb@assembly.go.kr (02-6788-5698)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정부안 제출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이관사업 현황은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참조

2)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2,373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억원(△2.1%) 감소함.

예산은 522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억원(7.0%) 증가한 반면, 기금은 1,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84억원(△4.3%) 감소함.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487	487	522	34	7.0
기 금	1,935	1,941	1,851	△84	△4.3
총지출	2,423	2,428	2,373	△50	△2.1

나. 예산안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2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원(△33.9%) 감소함.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310	310	205	△105	△33.9
합 계	310	310	205	△105	△33.9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522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억원(7.0%) 증가함.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487	487	522	34	7.0
합 계	487	487	522	34	7.0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1개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계획안은 9,98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1억원(14.7%) 증가함.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금 수입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방송통신발전기금	8,705	8,805	9,986	1,281	14.7
합 계	8,705	8,805	9,986	1,281	14.7

주 1)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통위·과기정통부 공동관리기금으로 수입은 통합하여 작성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1개 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851억원으로 전년 대비 84억원(△4.3%) 감소함.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금 지출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방송통신발전기금	1,935	1,941	1,851	△84	△4.3
합 계	1,935	1,941	1,851	△84	△4.3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1개(2억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됨.[3)]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은 공동체라디오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방송통신발전기금]		
1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200
총지출		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받은 2026년도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9,767

3)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사업,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사업 등 총 3개임.[4)]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법정위원회 운영	202	347	145	71.8
2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841	3,530	2,689	319.7
[방송통신발전기금]					
3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1,466	2,291	825	56.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받은 2026년도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프로그래머블 미디어핵심기술개발	3,000	4,000	1,000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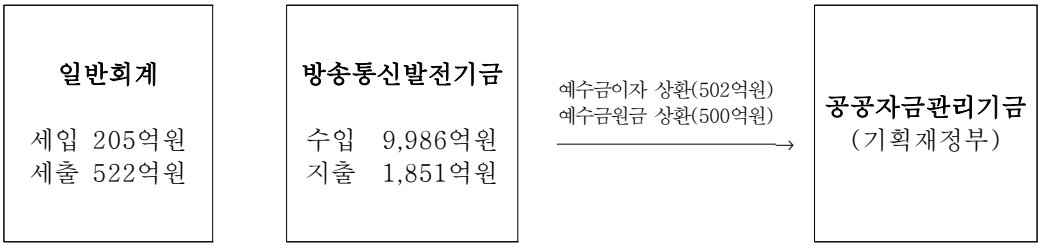
4)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금 이자 502억원과 예수금 원금 500억원을 상환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1) 총계 기준
2)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금액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는 경우 지출은 총 9,986억원임
3) 정부안 제출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이용자 중심의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음.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에 포함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자문비나 운영비가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도 지원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되는 예산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이미 이 사업의 운영비를 활용하여 사례집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6년 예산안에 사례집 제작 예산을 신규 반영할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은 2026년 신규 추진 예정으로, 사업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인력 채용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업무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디지털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은 2026년 신규 추진 예정으로, 사업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인력 채용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업무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인건비 및 구독료 예산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이관으로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총수입은 206억원으로 205억원에서 6,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총지출은 2,765억원으로 2,373억원에서 393억원이 증가하였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총 14개 세출사업 및 지출사업을 이관받았고, 해당 사업들의 2026년도 예산안은 393억 3,500만원임.

주요 이관사업은 ‘디지털이노베이션기술개발’ 사업 97억 6,700만원,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사업 41억 5,700만원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도 이관 사업 현황(세출 및 지출)]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프로그래머블미디어 핵심기술개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프로그래머블 미디어핵심기술개발(R&D)	4,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	4,1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방송통신재난관리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3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방송통신재난관리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개발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미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9,7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총액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총액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8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AI 기반 방송미디어 혁신 융합인재 양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발기금	방송콘텐츠 진흥	미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World Best LLM 데이터 활용 지원	미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총액비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총액비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1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총액대상 인건비(33명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총액대상 인건비	2,431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콘텐츠 진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콘텐츠 진흥	16,7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디지털콘텐츠 코리아 펀드	5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디지털미디어산업육성 기반구축 (디지털미디어 실태조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디지털미디어산업 육성기반 구축(정보화)	9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 (방송사업 허가심사 지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조성(정보화)	170
합계						39,335

세입예산안 중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에서 6,600만원을 이관받았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도 이관 현황(세입)]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목 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목 명	2026년도 예산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과태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과태료	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가산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회계	가산금	1
합계						66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 중복지원 예산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정책수립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500만원(71.8%) 증액된 3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6년도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법정위원회 운영	202	202	347	145	71.8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 4,900만원
- 10개 위원회×100,000원×9명(위촉)×연 평균 5.4회

○ 사전 자료 수집 및 회의 안건 검토비 : 7,800만원
- 10개 위원회×150,000원×9명(위촉)×연 평균 5.4회

- 통신분쟁위원회 법률자문비 500만원

○ **위원회 회의 운영비 : 300만원**
- 10개 위원회×55,000원×연 평균 5.5회

○ 위원회 운영 간담회비 : 500만원
- 10개 위원회×30,000원×9명(위촉)×연 평균 1.8회

○ 위원회 참석 여비 : 200만원

○ 통신분쟁위원회 상임위원 인건비 : 2억 1,000만원
- 상임위원 2인×500만원×12개월 + 상임위원 3인x500만원x6개월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5) 일반회계-법정위원회 운영(7131-304)(기획조정관)

이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10개의 법정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사전 자료 수집 및 회의 안건 검토비, 위원회 회의 운영비, 여비 및 상임위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법정위원회 현황]

위원회	근거 법률	설립일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법」 제76조의2	2008.7.11.
방송평가위원회	「방송법」 제31조	2000.8.13.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9조~제16조	2008.8.19.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법」 제35조의3	2007.11.1.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법」 제35조	2008.9.26.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법」 제35조의4	2010.3.31.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방송법」 제35조의5	2012.4.13.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	2011.5.27.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23조	2013.6.10.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2019.6.12.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에 포함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자문비나 운영비가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도 지원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되는 예산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을 통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10개의 법정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미디어다양성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 법정위원회에 대하여는 관련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별도 수행하고 있음.

[법정위원회 관련 제도 운영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법정위원회	관련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기반조성(방송 내용·편성·운영 영역 평가)	136	136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미디어다양성증진	3,290	2,155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위원회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457	457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564	760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중 내역사업인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사업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인 통신분쟁조정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을 통하여 통신분쟁조정 사건 접수 및 처리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6)]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및 지원시스템 운영, 통신품질 현장측정 운영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
- 사업내용: 통신분쟁조정 사건 접수 및 절차별 처리,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건에 대한 품질측정 및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효율적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 지원
- 2026년 예산안: 7억 6,000만원
  -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구축·운영: 3억 5,000만원
  - 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2억 4,000만원
  - 통신분쟁조정 품질측정체계 운영: 1억 7,000만원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그런데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사업을 통해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비가 지원되고 있어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의 회의 운영비 지원과 중복되고, 동 사업에 편성된 통신분쟁조정 기술·법률 자문 운영비 1,000만원은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을 통한 통신분쟁위원회 법률자문비 500만원과 중복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비 500만원은 위원회 안건 심의 등 의결 과정에 필요한 법률 검토를 위한 것이고,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사업의 통신분쟁조

6)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정 기술·법률 자문 운영비 1,000만원은 통신품질측정 항목 및 판단 기준 수립, 측정 결과에 대한 기술적·법적 검토 등 전문 자문을 위해 사용된다는 입장임.

그러나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사업의 2024년 정산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법률 자문비로 350만원을 지출하는 등 동 사업을 통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심의에 필요한 법률 자문비도 지원이 되고 있어 예산의 혼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사업의 법률자문 지원 내역]

집행일자	금액(원)	용도
2024-06-27	2,000,000	전기통신사업법 직권조정결정 관련 법률검토 비용
2024-06-27	1,500,000	전기통신사업법 직권조정결정 관련 법률검토 비용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사업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지원 내역]

집행일자	금액(원)	용도
2024-04-19	38,7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 개최 결과(1월)
2024-04-19	39,7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결과
2024-03-28	20,8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제3차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 개최 결과 회의비
2024-03-28	22,2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회의비
2024-03-28	77,0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회의비
2024-04-12	21,0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업무 안내 회의 개최
2024-04-12	5,8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업무 안내 회의 개최
2024-04-12	38,2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업무 안내 회의 개최
2024-04-12	51,0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개최 결과
2024-04-12	29,0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제4차 직권조정결정소위원회 개최
2024-05-16	42,6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결과 회의비
2024-05-16	228,0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결과 회의비
2024-05-16	53,6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제5차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 개최 결과 회의비
2024-06-13	61,6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결과 회의비
2024-06-13	324,0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결과 회의비
2024-06-13	318,0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제6차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 개최 결과 회의비
2024-08-14	62,2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결과 회의비
2024-08-14	214,000	제3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결과 회의비
2024-09-12	66,000	제3기 18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비
2024-09-12	224,000	제3기 18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비
2024-12-27	52,400	제3기 25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비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와 같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안검심사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운영 지원이 여러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감액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구축·운영 사업: 사례집 제작 예산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통신분쟁조정 지원 시스템 및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600만원(37.8%) 증액된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7)]

[2026년도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구축·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1,940	1,940	2,338	398	20.5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한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564	564	760	196	34.8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구축·운영	254	254	350	96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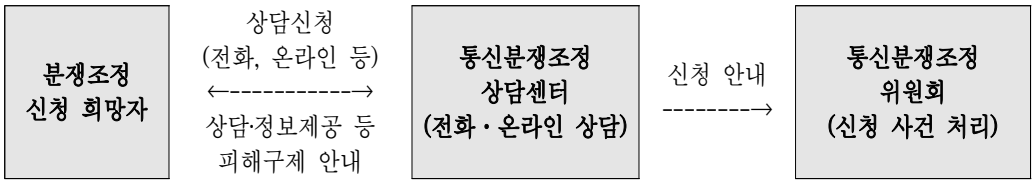
이 사업은「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통신분쟁에 대한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분쟁 관련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통신분쟁 관련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은 국민이 상담센터에 상담 접수를 하면 센터에서는 상담원이 관련 법령 및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음.[8)]

---

7) 일반회계-방송통신 이용자보호 환경조성(2141-301)(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8)「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2.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3.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통신분쟁조정 상담 절차]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참고로, 2023년 1월 3일「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 5명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의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비용이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반영되었음.[9)]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구축·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구축 : 3,600만원
○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운영 : 2억 2,200만원
○ 통신분쟁조정 사무공간(상임위원) 조성 : 5,600만원(신규)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위촉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비용: 2,000만원
- 전산기자재 구매((PC・모니터・노트북・전화기 등 360만원 x 5명): 1,800만원
- 사무기자재 구매(책상・의자・캐비넷 등 360만원 x 5명): 1,800만원
○ 통신분쟁조정제도 홍보 및 협력체계 운영 : 3,600만원(신규)
- 사례 분석 및 사례집 제작 : 500만원
- 온・오프라인 홍보 : 2,100만원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10백만원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5.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6.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9) 상임위원에 대한 인건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다른 세부사업인 '법정위원회 운영' 사업을 통하여 지원될 예정임.

나. 검토의견

이미 이 사업의 운영비를 활용하여 사례집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026년 예산안에 사례집 제작 예산을 신규 반영할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사례집 제작 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미 2020년부터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있었으며, 제작에 필요한 예산은 이 사업의 운영비를 활용하여 충당했으므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사례집 제작 관련 예산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집행액	4,400	4,400	6,800	6,300	6,105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그간 운영비 내 일반수용비를 절감하여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여 사례집을 작성한 것으로, 예산 신규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 홍보라는 정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사례집 제작 예산 500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과 별도로 온·오프라인 홍보 비용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므로, 통신분쟁조정제도 홍보 목적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근 3년간 매년 2,000만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운영비 내 일반수용비 절감 노력을 통하여 사례집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최근 5년간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보조금	660	377	713	681	562
집행액	656	374	674	659	522
반납액	4	3	39	22	40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사업: 면밀한 수요검토에 기반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사업은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 지역에 라디오, DMB 수신환경 개선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안전 확보 및 재난피해 예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억 8,900만원(319.7%) 증액된 3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10)]

[2026년도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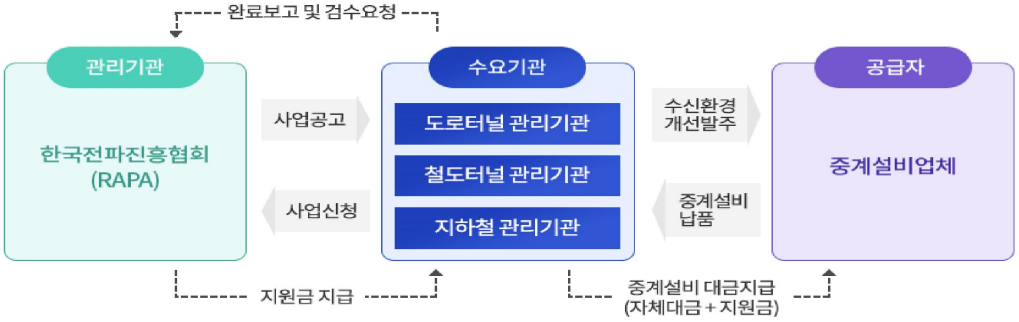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841	841	3,530	2,689	319.7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585	585	3,258	2,673	456.9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178	178	2,178	2,000	1,123.6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97	97	570	473	487.6

내내역사업인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도로·철도터널, 지하철 시설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중계설비 비용 지원을 통해 재난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원(1123.6%) 증액된 21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조사업자(한국전파진흥협회)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자는 수요기관(도로·철도터널, 지하철 시설관리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되, 국비로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하면 차액 및 공사비는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매칭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짐.

10) 일반회계-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7131-307)(방송정책국)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지원 지원절차]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에는 총 218대의 중계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에 지원한 18대의 12.1배 규모임.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도 예산 산출근거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 1억 7,800만원 - 중계기 지원 **18대** x 990만원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 21억 7,800만원 - 중계기 지원 **218대** x 1,000만원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내역사업인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사업은 재난방송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지만, 수신환경 조사결과 불량인 터널과 중계기 미설치 터널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통하여 음영지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7,300만원(487.6%) 증액된 5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조사업자(한국전파진흥협회)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보조사업자는 시설관리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 신청을 받아 재난방송 중계기 설치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관련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 터널을 우선 선정하여 현장 정밀 측정을 통한 수신불량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사업 추진 절차]

① 사업공고	→	② 대상선정	→	③ 정밀점검	→	④ 결과분석	→	⑤ 사후관리
대상 시설 모집		대상 시설 선정		전문가 현장 파견 및 정밀 측정		측정결과 분석 및 유지보수 방안 도출		유지보수 이행여부 및 계획 파악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6년에는 총 190개 터널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에 지원한 51개의 3.8배 규모임.

참고로 지원 단가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측정 난이도가 높은 철도터널의 기술 지원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증액하였다는 입장임.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도 예산 산출근거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 9,700만원 - **51개소** x 측정장비 및 인력 190만원	○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 5억 7,000만원 - **190개소** x 측정장비 및 인력 300만원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첫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2026년에 중계기 218대를 지원할 계획인데, 중계기 설치 기관의 자부담(50%이상)이 존재하는 점과 2015년 이후 구축한 중계기가 총 250대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실제 설치 가능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중계기 설치지원 규모 18대의 12.1배인 218대의 중계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27억 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27개 터널에 총 250대 중계설비를 지원하였음에도, 2026년 한 해 동안 그 87% 수준인 218대의 중계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실제 설치 가능한 규모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임.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통한 중계기 설치 지원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신청시설 수		15	4	10	16	45
선정시설 수		2	4	9	12	27
중계기 설치 수	112	40	20	60	18	250
지원예산	1,362	370	200	593	178	2,703

주) 시설마다 신청하는 중계기 수가 상이하여 선정시설 수와 중계기 설치 지원 수가 일치하지 않음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중계설비 비용의 일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담하나, 그 외의 공사비, 운용비용 등은 시설관리기관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비 지원에 상응하는 시설관리기관의 수요와 재정여력이 충분한지에 대하여도 사전에

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설관리기관에 사전 수요 조사(공문발송, 사업예고, 방문 협의 등)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나, 사전 조사 없이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이므로 실제 설치 가능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여 2026년에 최근 4년간 연 평균 신청 건수 166건보다 많은 190개소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므로, 기술지원 대상시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기술지원 규모 51개의 3.8배인 190개 터널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최근 5년간 기술지원 신청시설이 감소하는 추세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 평균 166건의 신청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190개소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시설의 신청이 그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연도별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시설수]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술지원 대상시설[1]	기술지원 신청시설[2]	기술지원 대상시설	기술지원 신청시설	기술지원 대상시설	기술지원 신청시설	기술지원 대상시설	기술지원 신청시설	기술지원 대상시설 (조사중)	기술지원 신청시설
도로터널	1,684	532	1,684	153	1,655	133	1,630	91	1,630	43
철도터널	162	22	162	-	286	-	296	-	296	70
지하철역사	179	12	179	87	268	-	305	90	305	-
합 계	2,025	566	2,025	240	2,209	133	2,231	181	2,231	113

주 1) 기술지원 대상시설은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수신 불량으로 확인된 시설을 의미
2) 기술지원 신청시설은 시설관리기관이 기술지원을 신청하고 세부자료를 제출한 시설을 의미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근 4년 신청 대비 선정비율은 33%(신청 667개 시설, 선정 217개 시설)로 나타나고 있고, 2026년부터 중계기 미설치 시설도 사업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인 점과 철도 터널의 지원 수요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전 수요 조사(공문발송, 사업예고, 방문 협의 등)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최근 4년간 신청 건수를 합한 667건은 매년 신청건수를 모두 더한 값으로

중복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수요라고 보기 어렵고, 예년 대비 지원 규모가 증가하였으므로 기술지원 대상시설의 신청 확대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2025년의 경우 기술지원 대상시설이 2,231개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중 113개(5.1%)만 기술지원 신청을 하였으므로, 기술지원 대상시설이 적극적으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모집에서 이를 확대하거나 수시 접수로 변경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방송통신발전기금】

<지 출>

4.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신규): 실제 업무수행 기간을 고려한 예산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정보(도박·마약·성매매)’의 유통방지를 위한 SNS플랫폼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10억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1]

[2026년도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1,466	1,466	2,291	825	56.3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	-	1,045	1,045	순증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도박·마약·성매매 알선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주요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상시점검 결과 분석 및 운영 : 6,750.만원×3명, 2억 250만원**
- **모니터링 지원시스템 운영 관리 : 6,750.만원×1명, 6,750만원**
- **상시점검 모니터링 : 240만원 ×12개월×22명, 6억 3,400만원**
- 모니터링 지원시스템 구축 : 1억 2,000만원×1식, 1억 2,000만원
- **모니터링 운영경비 : 2,100만원×1명, 2,100만원**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1) 방송통신발전기금-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3251-306)(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이 사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 제6호·제6호의4·제9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신고함으로써 SNS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 보조사업자는 국내외 주요 SNS플랫폼 서비스 운영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도박·마약·성매매 등 불법정보의 온라인 유통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여 감시대상 SNS 플랫폼을 선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에 연계할 계획임.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절차]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	모니터링 기준 수립	→	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실시	→	자체 플랫폼 및 방심위 신고 접수
모니터링 대상 사업자 조사 및 선정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 수립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마련		상시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결과 자체 플랫폼 및 방심위 신고 접수
SNS플랫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등		IDC센터		점검요원		신고 진행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나. 검토의견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은 2026년 신규 추진 예정으로, 사업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인력 채용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업무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2025년 12월 말부터 2026년 1월까지 공모계획 수립, 수행기관 공모 및 접수를 거쳐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계획임.

[유해 SNS플랫폼 모니터링 사업 추진 계획]

일정	추진절차
2025.12월	공모계획 수립
2025.12월 ~ 2026.1월	수행기관 공모 및 접수
2026.1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2026.1월	수행기관 선정
2026.1월 ~ 12월	사업수행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 22명을 포함한 총 26명에 대하여 12개월분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인데, 수행기관이 모니터링 인원을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모니터링 대상 사업자 조사 및 선정, 모니터링 기준 수립,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선행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수행기관에서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해 대상 사업자 조사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 추진, 모니터링 대상 사업자 및 세부 기준 마련 등에 약 2개월이 소요되고, 모니터링 수행기관이 선정되는 3월부터 모니터링 개시는 가능하며,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은 상반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따라서 실제 업무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12개월분으로 편성된 모니터링 인건비를 10개월만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디지털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신규): 실제 업무수행 기간을 고려한 예산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디지털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의 동향 파악과 모니터링을 통해 구독형서비스에 대한 불법음란정보 동향파악 및 유통방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5억 6,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2)]

[2026년도 디지털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마련	4,195	4,195	4,991	796	18.9
디지털구독형 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562	562	순증

[디지털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분석 및 사업운영: 운영요원 2명×6,750만원, 1억 3,500만원**
-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상시점검 모니터링: 점검요원 5명×252만원x12개월, 1억 5,000만원**
-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모니터링 구독료: 250만원×5명×12개월, 1억 5,000만원**
-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운영· 구축: 1억 2,000만원
- 정책지원 등 사업 운영경비: 700만원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사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제6호의4・제9호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신고함으로써 SNS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12) 방송통신발전기금-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마련(3251-314)(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면 보조사업자는 국내외 주요 SNS플랫폼 서비스 운영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도박·마약·성매매 등 불법정보의 온라인 유통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여 감시대상 SNS 플랫폼을 선정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저장·관리하는 시스템에 연계할 계획임.

나. 검토의견

디지털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은 2026년 신규 추진 예정으로, 사업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인력 채용에 필요한 기간 등을 제외한 실제 업무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인건비 및 구독료 예산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디지털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2025년 12월 말부터 2026년 1월까지 공모계획 수립, 수행기관 공모 및 접수를 거쳐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계획임.

[디지털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업 추진 계획]

일정	추진절차
2025.12월	공모계획 수립
2025.12월 ~ 2026.1월	수행기관 공모 및 접수
2026.1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2026.1월	수행기관 선정
2026.1월 ~ 12월	사업수행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계획을 바탕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 5명을 포함한 총 7명에 대하여 12개월분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인데, 수행기관이 모니터링 인원을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모니터링 대상 구독형 서비스 및 크리에이터 조사 및 선정, 모니터링 기준 수립,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선행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관련 인건비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모니터링 구독료도 12개월 구독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기간만 구독하면 되므로 업무수행 기간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수행기관에서 모니터링 업무수행을 위해 대상 사업자 조사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 추진, 모니터링 대상 사업자 및

세부 기준 마련 등에 약 2개월이 소요되고, 모니터링 수행기관이 선정되는 3월부터 모니터링 개시는 가능하며,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은 상반기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따라서 실제 업무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12개월분으로 편성된 모니터링 인건비 및 구독료를 10개월만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1,785억원으로, 전년 대비 143억원(8.7%) 증가함. 예산은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8.9%) 증가하고, 기금은 1,761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원(8.7%) 증가함.[1)]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22	22	24	2	8.9
기 금	1,619	1,619	1,761	141	8.7
총수입	1,641	1,641	1,785	143	8.7

문의 : 김영빈 예산결산조사관 kyb@assembly.go.kr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지출은 2,9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억원(5.7%) 증가함. 예산은 1,044억원으로 전년 대비 443억원(△29.8%) 감소한 반면, 기금은 1,88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1억원(46.9%) 증가함.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488	1,488	1,044	△443	△29.8
기 금	1,281	1,281	1,882	601	46.9
총지출	2,769	2,769	2,926	157	5.7

주) 2026년도 예산안 금액은 2025년도 일반회계 6개 계속사업의 2026년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관에 따른 금액임

나. 예산안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24억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8.9%) 증가함.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22	22	24	2	8.9
합 계	22	22	24	2	8.9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044억원으로 전년 대비 443억원(△29.8%) 감소함.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488	1,488	1,044	△443	△29.8
합 계	1,488	1,488	1,044	△443	△29.8

주 1) 총계 기준
2) 2026년도 예산안 감소는 2025년도 일반회계 6개 계속사업의 2026년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관에 기인함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1개 기금(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4,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479억원(12.6%) 증가함.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3,801	3,801	4,281	479	12.6
합 계	3,801	3,801	4,281	479	12.6

주 1)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2026년도 원자력기금 계획안 증가는 2025년도 일반회계 6개 계속사업의 2026년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이관에 기인함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2개(79억 1,0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선진화(R&D)’ 사업은 원자력통제 4대 이행분야(안전조치, 수출입통제, 물리적방호, 사이버보안) 전주기 기술역량 제고 및 규제현안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6억원이 편성되었음.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사업은 비경수형 SMR 인허가 심사 등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규제검증기술 개발을 통한 비경수형 원자로 예상 규제현안 해결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원자력통제 규제기술 선진화(R&D)	5,600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2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2,310
총지출		7,91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R&D)’ 사업,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시설 지원(R&D)’ 사업 등 총 5개임.[3)]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R&D)	2,925	4,785	1,860	63.6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R&D)	27,480	36,453	8,973	32.7
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시설 지원(R&D)	210	810	600	285.7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4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R&D)	3,520	7,200	3,680	104.5
5	기타운영비(안전규제계정)	687	1,404	717	1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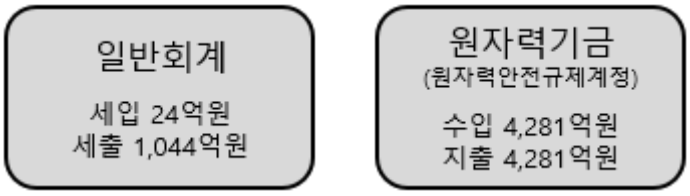
주) 2026년도 주요 증액 사업 중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R&D)’ 사업의 경우 2026년도부터 일반회계 사업에서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사업으로 이관되어, 2025년도 당초계획액 금액을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금액으로 작성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간 내부 거래는 없음.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기술 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 등을 위해 원자력안전연구개발(R&D) 사업에 재정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원자력 안전·안보·핵비확산 관련 전문인력의 계속운전, 표준설계인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을 비중 있게 편성했다는 점임.

또한, 2026년도부터 기존 일반회계 6개 계속사업[4]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이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에는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통해 지원되는 R&D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와 원자력기금은 그 용도와 재원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향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통해 신규 R&D 사업 추진 시, 이에 대한 기획평가관리비는 분리하여 별도의 기금 사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둘째, ‘원자력분야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자 포상금’ 사업은 2022년부터 집행규모가 감소하여 2024년부터는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부처의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 사업의 추진 경과 및 기술개발 현황을 토대로 인허가 수요에 적합한 규제검증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4) 기존 일반회계 6개 계속사업(‘방재환경기반구축’,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R&D)’, ‘사용후 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R&D)’,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개발(R&D)’,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개발(R&D)’,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 구축’)이 2026년도부터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이관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 일반회계 사업을 통한 원자력기금 R&D의 기획평가관리비 지원 부적정

가. 개 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R&D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분석, 연구과제의 기획·평가 등 전주기적인 연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300만원(9.7%) 증가한 9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6년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 (R&D)	860	860	943	83	9.7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기획·평가·관리비: 9억 4,300만원 - 기획·평가비: 3억 3,100만원 - 관리비: 5억 6,200만원 - 간접비: 5,000만원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5) 일반회계-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R&D)(1501-403)(안전정책국)

나. 검토의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R&D) 사업에는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통해 지원되는 R&D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와 원자력기금은 그 용도와 재원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향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통해 신규 R&D 사업 추진 시, 이에 대한 기획평가관리비는 분리하여 별도의 기금 사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하 “기금”)을 활용한 R&D 사업을 추진한 바 없으나, 2026년부터는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의 일부 R&D 사업을 이관하고, 일부 신규 R&D 사업을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임.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서 추진 예정인 R&D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기간	2026년 계획액
■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R&D)**	**'21 ~ '26**	**19,692**
■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 구축(R&D)**	**'23 ~ '26**	**1,350**
■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R&D)	'21 ~ '29	5,325
■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R&D)	'22 ~ '28	12,950
■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R&D)	'25 ~ '32	7,200
■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신규)	'26 ~ '32	2,310
합계		**48,827**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러나 이들 기금 R&D 사업 중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전문기관인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R&D)’ 사업 및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 구축(R&D)’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기획평가관리비는 여전히 일반회계에 편성된 이 사업에만 반영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기금 R&D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기금으로 지원되고 기획평가관리비는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결과가 초래됨.

이는 그 재원과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되는 회계와 기금의 예산을 혼용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해당 사업이 2026년 종료 예정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향후 재원을 달리하는 R&D 사업 추진 시 기금 R&D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비는 분리하여 별도의 기금 사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도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대하여 지원되는 기획평가관리비 지원 사업을 회계와 기금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편성하고 있음.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계정)】

<지 출>

2. 원자력분야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자 포상금 사업: 집행 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원자력분야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자 포상금’** 사업은 원자력 분야 비위행위 신고·제보자 포상금 지급을 통해 원전의 비리·부패를 근절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6)]

[2026년도 원자력분야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자 포상금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당초 (A)	2025년도 수정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B-A)/A
원자력안전기반조성		26,125	26,125	27,202	1,077	4.1
	원자력분야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자 포상금	26	26	26	-	-

[원자력분야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자 포상금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원자력분야 비위행위 신고·제보자 포상금: 2,600만원 - 10건(예상 신고 건수) X 260만원(최근 5년간 평균 지급액)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사업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의2(포상금의 지급)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임.[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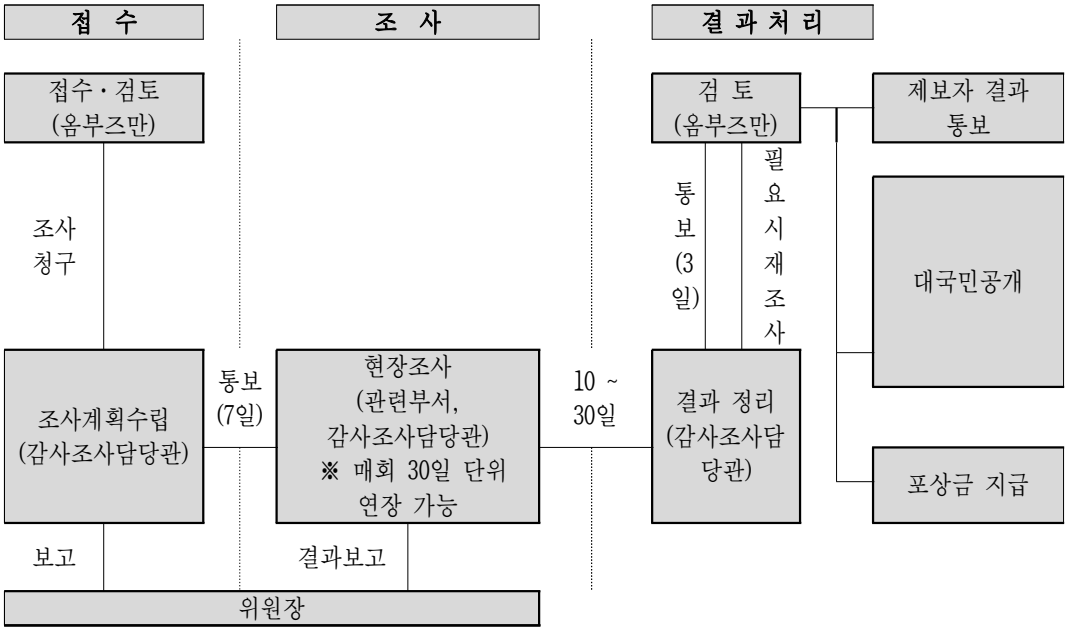
---

6)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원자력안전기반조성(1701-401)(안전정책국)

7) 「원자력안전법」
제11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제보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부서 또는 감사조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가 완료되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관련부서 등에 재조사 요구 또는 제보자에게 결과를 통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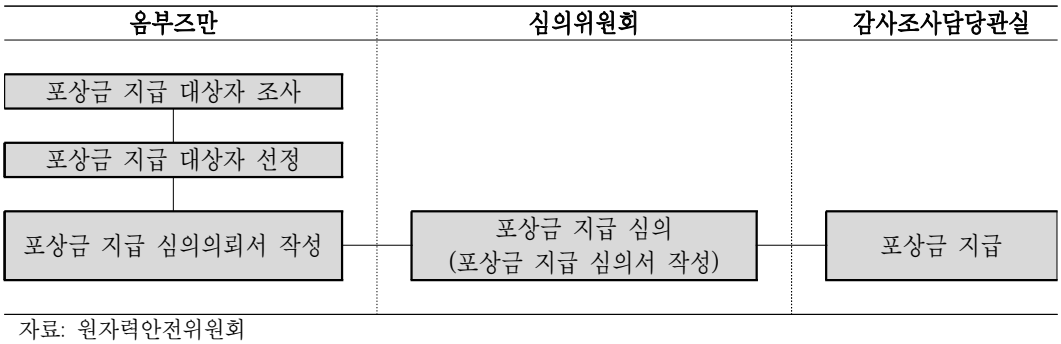
[원자력 옴부즈만 제보 처리절차]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후 옴부즈만이 포상금 지급 심의의뢰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짐.

[포상금 지급 절차]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나. 검토의견

원자력분야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자 포상금 사업은 2022년부터 집행규모가 감소하여 2024년부터는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년부터 '원자력분야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자 포상금' 사업을 통하여 「원자력안전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22년에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하여 집행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집행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4년부터는 집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

[포상금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진행중)
예산	50	50	55	50	100	100	100	55	26	26
집행	37	50	33	39	77	92	26	20	-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집행이 부진한 이유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2년 이후 제보 건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2022년 12월 초에 제보 내용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 위반 사항이거나, 제도개선에 직접 기여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와 같이 2022년부터 옴부즈만 제보건수 및 포상금 지급심의의뢰서 제출 건수가 감소하면서 포상금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옴부즈만 제보건수, 포상금 지급심의의뢰서 제출 건수 및 지급 건수]

(단위: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진행중)
옴부즈만 제보 건수		47	26	22	21	20
포상금 (건)	지급심의의뢰서 제출	30	9	5	1	-
	지급건수	30	9	4	-	-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3.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사업(신규): 국내 비경수형 SMR 개발 현황을 고려한 규제검증 기술 개발 필요

가. 개 요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사업은 비경수형 SMR 인허가 심사 등(2030년대 초)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 및 규제검증기술개발 등을 통해 비경수형 원자로 관련 예상 규제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23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8)]

[2026년도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A)	수정			(B-A)/A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	-	2,310	2,310	순증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 23억 1,000만원
-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 (신규)5개 x 5억 6,000만원 x 9/12 = 21억원
-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운영비: 2억 1,000만원 x 12/12 = 2억 1,000만원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는 전기 출력 30만KW 이하의 작은 규모 원자로로, 주요 원자로 기기를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형 설계가 특징임. 이는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건설 기간이 짧고 초기 투자 비용이 낮으며, 안전성과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음.

기존의 SMR은 냉각재로 물을 활용했으나 비경수형 SMR은 냉각재로 물 대신 헬륨, 소듐 등을 사용함으로써 경수형 SMR의 단점인 낮은 열효율 및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SMR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상용화를 위한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8)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2001-415)(안전정책국)

이 사업은 비경수형 SMR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활용 용도가 확대(발전용→선박 추진 등)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원자력안전법」 등 규제체계는 발전용으로 활용되는 경수형 원자로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규제검증 기술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추진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출연금을 교부하면, 전문기관은 각 과제별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비경수형 SMR 규제 및 검증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사업 추진 체계]

부처	⇨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23억 1,000만원 교부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추진단 2억 1,000만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연구수행기관 21억원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나. 검토의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타 부처의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 사업의 추진 경과 및 기술개발 현황을 토대로 인허가 수요에 적합한 규제검증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검증기술 개발(R&D)' 사업을 신규 추진할 계획으로,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비경수형 소형 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노형 개발사업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임.

[정부 내 차세대 비경수형 SMR 관련 사업 목록]

(단위: 억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 규모(안)	사업주요내용
용융염원자로 원천기술 개발	2023~ 2026년	401	·노형: MSR(용융염원자로) - 해양용 MSR 노심·계통 기술, 해양용 MSR 안전성 기술개발 등
민관합작 차세대원자로 개발 프로젝트	2024~ 2027년	456	·노형: HTGR(고온가스로) - 산업공정열 공급용 고온가스로 기본설계 및 플랜트 종합설계 등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 구축	2025~ 2029년	580	·노형: SFR(소듐 냉각 고속로) - SFR 기반 차세대 SMR 핵심기술 및 기본설계 개발 등
극한환경 원자력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초소형 히트파이프 원자력 전원공급 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2025~ 2029년	217	·노형: HPR(히트 파이프 원자로) - 히트파이프 원자력 전원공급시스템 설계/제조기술 개발 등

주) 표에 있는 4개 사업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임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세계 각국이 비경수형 SMR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다양한 비경수형 SMR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비경수형 SMR 노형 및 목적별 인허가 규제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규제체계 및 안전기술기준을 개발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차세대 비경수형 노형의 설계 방향과 규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제대로 된 규제와 검증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므로, 규제검증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차세대 비경수형 원자로 개발 관련 사업의 추진 경과와 기술개발 방향을 고려하여 규제검증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총수입은 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억원(순증) 증가함.

예산은 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억원(순증) 증가함.[1)]

[2026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	-	17	17	순증
총수입	-	-	17	17	순증

문의 : 김영빈 예산결산조사관 kyb@assembly.go.kr (02-6788-5698)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총지출은 1조 1,1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2억원(15.4%) 증가함.

예산은 1조 1,1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7억원(15.8%) 증가한 반면, 기금은 0원으로 전년 대비 35억원(△100.0%) 감소함.

[2026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9,614	9,614	11,131	1,517	15.8
기 금	35	35	-	△35	순감
총지출	9,649	9,649	11,131	1,482	15.4

나. 예산안

2026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은 총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 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억원(순증) 증가함.

[2026년도 우주항공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	-	17	17	순증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 1조 1,13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7억원(15.8%) 증가함.

[2026년도 우주항공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9,614	9,614	11,131	1,517	15.8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우주항공청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19개(1,814억 6,0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①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은 기업 성장단계별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우주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및 사업화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

② ‘궤도수송선 비행모델 개발 및 실증(R&D)’ 사업은 우주공간의 궤도를 이동하며 다양한 임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0억원이 편성되었음.

③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R&D)’ 사업은 국가안보, 지리정보, 해양/지상관측, 재난관측 등을 목적으로 최첨단 초고해상도 영상레이더 위성을 개발하여 광역고해상도 및 멀티스태틱 표준 레이더 영상의 신속/지속제공, 공공서비스 강화, 우주산업 산업생태계 육성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87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④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 사업은 국가R&D 성과를 바탕으로 고도화를 통해 Deep Tech 기반의 우주분야 기술창업기업 설립 및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2억원이 편성되었음.

⑤ ‘임무수요기반 성층권드론 실용화 플랫폼개발(R&D)’ 사업은 선행사업을 통해 도출된 제약사항의 극복방안을 마련하여 핵심부품 국산화, 임무수요 기반의 실증기, 운용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통해 고고도 무인기 분야 국내외 신시장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80억원이 편성되었음.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2026년도 우주항공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태양관측위성 수신국 구축	8,820
2	우주항공청 청사 관리 및 기관 운영사업	1,000
3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R&D)	3,000
4	국가 우주상황인식시스템(K-SSA) 개발(R&D)	4,000
5	우주항공정책종합조정사업(R&D)	1,450
6	AI기반위성정보활용서비스확산사업	1,000
7	우주기술 상용화 실증 지원(Space-MaCS) 사업	500
8	뉴스페이스투자지원	100,000
9	궤도수송선비행모델개발및실증(R&D)	3,000
10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R&D)	18,760
11	초고해상도광학위성핵심기술개발(R&D)	6,190
12	우주소형무인제조플랫폼실증사업(R&D)	3,000
13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	3,200
14	임무수요기반 성층권드론 실용화 플랫폼개발(R&D)	8,000
15	전기화 항공기용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핵심 기술 개발(R&D)	3,640
16	항공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임무 신뢰성 보증기술 개발(R&D)	3,000
17	지속가능 열가소성 항공기 부품 핵심기술개발(R&D)	2,000
18	전기-터빈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핵심기술 선행개발(R&D)	6,000
19	항공 가스터빈 엔진용 구조물 고강도 소재부품 개발(R&D)	4,900
총지출		181,460

한편, 우주항공청의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은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사업(R&D)’,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 등 총 16개임.[3)]

[2026년도 우주항공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그린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2,900	6,292	3,392	117.0
2	드론로봇연계도심지 고중량화물멀티모달배송 기술개발(R&D)	2,739	7,458	4,719	172.3
3	항공우주부품공정고도화 기술개발(R&D)	2,475	6,228	3,753	151.6
4	우주항공중점기술개발(R&D)	3,000	12,703	9,703	323.4
5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R&D)	8,000	10,500	2,500	31.3
6	우주물체능동제어선행 기술개발(R&D)	12,400	18,800	6,400	51.6
7	미래우주경제주춧돌사업(R&D)	2,000	5,100	3,100	155.0
8	Space-K BIG 프로젝트(R&D)	1,800	3,300	1,500	83.3
9	국가위성 운영 및 검보정 인프라 고도화(R&D)	7,217	10,989	3,772	52.3
10	우주항공청 기획평가관리비(R&D)	1,821	2,685	864	47.4
11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	42,000	59,000	17,000	40.5
12	차세대영상레이더핵심기술 선행개발(R&D)	2,000	6,000	4,000	200.0
13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R&D)	11,296	15,336	4,040	35.8
14	정지궤도기상·우주기상위성 개발사업(R&D)	5,000	42,657	37,657	753.1
15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 사업(R&D)	45,000	80,907	35,907	79.8
16	국제 거대전파망원경 건설 사업(R&D)	2,000	6,883	4,883	244.2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우주항공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내부 거래 현황은 없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전체 사업 중 R&D 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임. 83개 세부사업 중 절반이 넘는 52개가 R&D 사업으로, 금액으로는 1조 1,131억원 중 9,455억원(84.9%)임.

회계·기금별로는 총 83개 모든 사업이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항공청의 주요사업비는 주요 임무인 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탐사, 항공, 우주·항공정책, 우주·항공산업 분야로 구분되어 2026년 예산안이 편성됨.

2026년도 우주항공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우주항공청은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을 통하여 뉴스페이스펀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나, 기존 자펀드 운용사 및 투자처에 대한 사전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앞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결성된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실적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임.

둘째,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청사 관리 및 기관 운영사업을 202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의 예산과 우주항공청 소관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은 그 목적이 일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유사 목적의 예산은 하나의 세부사업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

셋째, 우주항공청은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면제받은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본체 개발과 탑재체 개발 등을 수행할 국내 기업체 선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넷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료 수입 누적이 지속되고 있고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 기술료가 전혀 집행되지 않고 누적만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료 수입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지출구조조정 사업: 지출구조조정 실적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정부가 2025년 8월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 홍보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수준을 절감하여 핵심과제에 재투자하였다고 밝힘.

[2022~2026 지출구조조정 규모]

(단위: 조원)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출구조조정 규모	△12.8	△24.1	△22.7	△23.9	△27

자료: 2026년 예산안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정부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번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된 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였는데, 우주항공청의 경우 ‘다목적실용위성개발(R&D)’ 사업, ‘민간 항공기건전성 진단 인공지능(AI) 시스템개발(R&D)’ 사업 등 총 1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291억 2,200만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함.

[우주항공청 지출구조조정 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사업명	’25년 본예산	’26년 정부안	구조조정 실적	구조조정 유형
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지원(R&D)	5,600	2,500	△3,100	사업 우선순위 조정
다목적실용위성개발(R&D)	6,510	-	△6,510	사업 우선순위 조정
단일통로 항공기(Part 25급)의 순수주익(Clean Wing) 모듈 개발(R&D)	428	-	△428	집행부진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00	-	△200	사업 우선순위 조정
민간달착륙선 탑재체	7,300	2,770	△4,530	사업 우선순위 조정

(단위: 백만원)

사업명	'25년 본예산	'26년 정부안	구조조정 실적	구조조정 유형
국제공동연구사업(R&D)				
민간항공기건전성 진단 인공지능(AI) 시스템개발(R&D)	3,869	-	△3,869	사업 우선순위 조정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드론캄 및 라이브포렌식기반)(R&D)	2,880	-	△2,880	사업 우선순위 조정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R&D)	2,794	-	△2,794	사업 우선순위 조정
스페이스챌린지(R&D)	4,900	3,167	△1,733	사업 우선순위 조정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발사체 중점기술개발 사업)	8,202	7,852	△350	사업 우선순위 조정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사업단운영비)	3,610	2,490	△1,120	사업 우선순위 조정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위성 중점기술개발 사업)	14,574	6,850	△7,724	사업 우선순위 조정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신규프로젝트탐색연구)	8,200	6,000	△2,200	제도개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민간발사장 구축)	2,600	100	△2,500	집행부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3,600	2,700	△900	집행부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10,000	6,420	△3,580	집행부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3,200	2,348	△852	집행부진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	35,043	17,580	△17,463	사업 우선순위 조정
차세대발사체개발(R&D)	150,816	120,429	△30,387	집행부진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R&D)	147,800	123,300	△24,500	사업 우선순위 조정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 (사업단 운영비)	550	-	△550	사업 우선순위 조정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	6,250	-	△6,250	사업 우선순위 조정
헬리콥터 전기식 다중 테일로터 기술개발(R&D)	2,402	-	△2,402	사업 우선순위 조정
433MHz기반 드론 응용통신 기술개발(R&D)	2,300	-	△2,300	사업 우선순위 조정
합계	**433,628**	**304,506**	**△129,122**	

자료: 우주항공청

나. 검토의견

우주항공청이 공개한 지출구조조정 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른 종료 사업과 총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실질적인 의미의 지출구조조정은 공개 규모 1,291억 2,200만원의 3.0%인 39억 3,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지출구조조정 실적을 과다집계한 측면이 있어 보임.

우주항공청이 이번에 공개한 지출구조조정 사업은 ①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예산이 감소한 경우, ②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으나, 총사업비의 조정 없이 집행일정을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경우 및 ③ 사업 내용 중 일부를 계획 대비 축소하면서 감액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우주항공청 지출구조조정 사업 재분류]

(단위: 백만원)

분류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5년 본예산	'26년 정부안	구조조정 실적
종료 시점 도래	국산소자부품우주검증지원(R&D)	5,600	2,500	△3,100
	다목적실용위성개발(R&D)	6,510	-	△6,510
	단일통로 항공기(Part 25급)의 순수주익(Clean Wing) 모듈 개발(R&D)	428	-	△428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200	-	△200
	민간달착륙선 탑재체 국제공동연구사업(R&D)	7,300	2,770	△4,530
	민간항공기건전성 진단 인공지능(AI) 시스템개발(R&D)	3,869	-	△3,869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드론캅 및 라이브포렌식기반)(R&D)	2,880	-	△2,880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R&D)	2,794	-	△2,794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 (사업단 운영비)	550	-	△550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 ((혁신도전형)상시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R&D))	6,250	-	△6,250
	헬리콥터 전기식 다중 테일로터 기술개발(R&D)	2,402	-	△2,402
	433MHz기반 드론 응용통신 기술개발(R&D)	2,300	-	△2,300
	소계			**△35,813**

(단위: 백만원)

분류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25년 본예산	'26년 정부안	구조조정 실적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총사업비가 정해진 사업 (총사업비 조정 없음)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발사체 중점기술개발 사업)	8,202	7,852	△350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사업단운영비)	3,610	2,490	△1,120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R&D) (위성 중점기술개발 사업)	14,574	6,850	△7,724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민간발사장 구축)	2,600	100	△2,500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3,600	2,700	△900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10,000	6,420	△3,580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3,200	2,348	△852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R&D)	35,043	17,580	△17,463
	차세대발사체개발(R&D)	150,816	120,429	△30,387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R&D)	147,800	123,300	△24,500
	소계			**△89,376**
사업 내용 축소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신규프로젝트탐색연구)	8,200	6,000	△2,200
	스페이스챌린지(R&D)	4,900	3,167	△1,733
	소계			**△3,933**
총계				**△129,122**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①번 유형의 경우 원래 사업이 종료 예정임에 따라 관련 예산을 계획대로 감액한 것으로서 이를 실질적인 의미의 지출구조조정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②번 유형의 경우 총사업비가 정해져 있으므로, 2026년도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집행 시기를 연기하는 것일뿐 최종적으로는 정해진 금액이 지출되므로 이 역시 실질적인 의미의 지출구조조정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음.

따라서 우주항공청이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출구조조정한 규모는 2025년 8월 29일 우주항공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1,291억 2,200만원이 아닌 그 3.0%에 불과한 39억 3,300만원으로 보여지는바, 지출구조조정 실적을 과다 집계한 측면이 있어 보임.

【일반회계】

<세 출>

2.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신규): 투자실적 및 수요를 고려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은 우주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용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6년도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뉴스페이스투자지원	-	-	100,000	100,000	순증

[뉴스페이스펀드 조성(안) 주요내용]

- 펀드 조성규모 : 2,000억원(정부 1,000억원, 민간 1,000억원 이상)
-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① 우주기술사업화 펀드(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성공(보통이상) 판정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에 60% 이상 투자)
  ② 스케일업 펀드(우주산업 및 연관산업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에 60% 이상 투자)
- 존속/투자기간 : 10년/5년
- 주요 내용

출자예산	결성 목표액	정부 출자비율	선정 운용사수	자조합별 최대출자액
1,000억원	2,000억원	50%	2	700억원
			1	600억원

※ 운용사 설문조사('25.9.) 및 간담회('26.2.) 등을 통해 펀드운영 계획(운용사수 및 자조합별 최대출자액 등) 결정 예정

자료: 우주항공청

4) 일반회계-뉴스페이스투자지원(1337-327)(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청은 한국벤처투자를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하여 1,000억원을 출자하고, 이후 한국벤처투자가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하면 자펀드 운용사는 자펀드를 결성하여 투자를 수행할 계획임.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 수행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공고		- 출자사업 운용계획 공고
		⇩
제안서 접수		- 출자 제안서 접수 (펀드운용사→한국벤처투자)
		⇩
1차 심사	서류심사	- 펀드운용 및 준법성 심사
	현장실사	- 신청사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및 확인
		⇩
2차 심사	출자심의회 (프레젠테이션)	- 각 운용사별 펀드 운용전략 발표 - 출자심의회 의원별 질의, 응답 및 평가
	최종 선정	- 출자심의회에서 출자 여부 최종 확정
		⇩
결성	출자자 모집 및 규약 합의	- 운용사의 출자자 모집 - 조합원 간 규약(계약서) 협의, 합의도출
	결성 총회	- 펀드 결성총회 개최
		⇩
자펀드 사후관리		

자료: 우주항공청

참고로, 우주항공청은 앞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을 통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35억원의 국비를 투입하고, 민간 매칭을 통하여 총 301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하였음.[5)]

[과학기술진흥기금 내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의 자펀드 결성내역]

(단위: 억원)

연도	모태펀드 구성액	자펀드 구성액	주목적 투자비율
2023	50	100	60%
2024	50	120	60%
2025	35	81	60%
합계	135	301	-

자료: 우주항공청

5) 과학기술진흥기금-뉴스페이스투자지원(1333-301)(우주항공산업정책국), 2025년 종료

나. 검토의견

우주항공청은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을 통하여 뉴스페이스펀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나, 기존 자펀드 운용사 및 투자처에 대한 사전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앞서 과학기술진흥기금을 통해 결성된 자펀드의 주목적 투자실적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관리가 필요해 보임.

우주항공청은 2026년부터 사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던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이하 “기금사업”)은[6] 종료하고,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뉴스페이스투자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음.

우주항공청은 2023년 수행한「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모태펀드 활용 전략」연구에서 국내외 펀드 결성 사례 및 정부 벤처캐피탈 담당자 인터뷰 및 운용사 인터뷰를 통해 연간 2,000억원 수준의 펀드자금 배정 필요성이 도출된 바 있고, 기금사업을 통해 결성한 펀드 운용사가 투자 협의 중인 37개 우주기업의 투자 단계별(규모별) 희망 유치금액(3,721억원) 현황에 비추어 볼 때 2,000억원의 펀드 규모가 적정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우주항공청은 이 사업을 통해 국비 1,000억원을 투입하여 모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앞서 기금사업을 통해 결성된 자펀드 규모 80~120억원의 5~9배 수준인 600~7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인바, 펀드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자펀드 운용사 및 투자처에 대한 수요조사나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존 기금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자펀드의 투자 실적을 보면 투자기간 5년 중 초기 1~2년 내 주목적 투자실적이 67억 5,000만원으로 집계되어, 남은 3~4년의 투자기간 동안 주목적 투자실적을 확대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므로, 기존 펀드 및 향후 결성될 펀드에 대해 투자처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7]

[기금사업의 자펀드 투자 실적]

(단위: 억원)

연도 (2025.10.1. 기준)	모태펀드 구성액	자펀드 구성액	자펀드 투자실적	주목적 투자실적	주목적 투자의무비율
2023	50	100	40	40	60%
2024	50	120	42	27.5	60%
2025	35	81	결성중	-	60%
합계	135	301	82	67.5	-

자료: 우주항공청

6) 과학기술진흥기금-뉴스페이스투자지원(1333-301)(우주항공산업정책국), 2025년 종료

7) 현재 결성된 자펀드 기준 최종적으로 132억원 이상의 주목적 투자실적이 필요함.

3. 우주항공청 청사 관리 및 기관 운영사업(신규): 유사목적 예산의 단일 세부사업 편성 필요

가. 개 요

‘우주항공청 청사 관리 및 기관 운영사업’은 우주항공청 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공사비・시설장비유지비,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정책연구 수행 및 언론스크랩 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8)]

[2026년도 우주항공청 청사 관리 및 기관 운영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우주항공청 청사 관리 및 기관 운영사업	-	-	1,000	1,000	순증

[우주항공청 청사 관리 및 기관 운영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관리・운영: 1억원**
- 본청사 유지보수(냉난방기 등) : 5,000만원
- 본청사 국가지도통신망 공사 : 5,000만원

○ **국가위성운영센터 청사 관리・운영: 2억원**
- 국가위성운영센터 유지보수(무정전원장치 등) : 1억원
- 노후시설 공사 : 1억원

○ **우주환경센터 청사 관리・운영: 2억원**
- 우주환경센터 청사 유지보수(노후화 시설 등) : 8,000만원
- 노후시설 공사 : 1억 2,000만원

○ 정책연구
- 자체 조직진단 연구 용역: 5,000만원
- 정책만족도 조사: 2,000만원
- 정책연구: 2억 1,000만원(5,250만원 * 4개 과제)

○ 언론스크랩
- 대행사 용역: 2억 2,000만원

자료: 우주항공청

8) 일반회계-우주항공청 청사 관리 및 기관 운영사업(7128-301)(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청사 관리 및 기관 운영사업을 202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의 예산과 우주항공청 소관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은 그 목적이 일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유사 목적의 예산은 하나의 세부사업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우주항공청 청사 관리 및 기관 운영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과 우주항공청의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그 목적이 유사하여 중복될 소지가 있음.

① 우주항공청이 이 사업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인 본 청사의 유지보수 비용은 ‘총액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에 편성된 청사관리비 및 청사, 시설물 등 유지보수 비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본 청사 유지보수 관련 예산편성 내역 비교]

이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총액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관리·운영: 1억원 - 본청사 유지보수(냉난방기 등) : 5,000만원 - 본청사 국가지도통신망 공사 : 5,000만원	○ 관서운영경비 - 청사 관리비: 5,520만원 - 청사, 시설물 등 유지보수: 7,820만원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우주항공청이 이 사업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인 국가위성운영센터 청사의 유지보수 비용은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 사업에 편성된 시설장비 유지보수, 시설관리 비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국가위성운영센터 청사 유지보수 관련 예산편성 내역 비교]

이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가위성운영센터 청사 관리·운영: 2억원 - 국가위성운영센터 유지보수: 1억원 - 노후시설 공사 : 1억원	○ 운영비 - 시설장비 유지보수: 2,800만원 - 시설관리용역: 11억원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③ 우주항공청이 이 사업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인 우주환경센터 청사의 유지보수 비용은 ‘우주환경센터 운영’ 사업에 편성된 시설장비 유지보수, 시설관리 비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우주환경센터 청사 유지보수 관련 예산편성 내역 비교]

이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우주환경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우주환경센터 청사 관리・운영: 2억원 - 우주환경센터 청사 유지보수: 8,000만원 - 노후시설 공사 : 1억 2,000만원	○ 운영비 - 청사・관사 건물유지비: 7,400만원 - 시설관리용역: 5,500만원

자료: 우주항공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이 사업과 우주항공청의 다른 세부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그 용도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동일・유사한 용도의 예산이 여러 사업에 중복하여 편성되지 않도록 유사 목적의 예산은 하나의 세부사업에 편성할 필요가 있음.[9)]

9) 이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예산 세목 및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중복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효율적인 독립 청사의 운영・관리 등을 위해 목적이 유사한 세부내역에 대해 단일사업으로 통합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는 입장임.

4.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신규): 고도화 R&D 지원 전 기술이전 관련 논의 필요

가. 개 요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 은 국가R&D 성과를 바탕으로 고도화를 통해 Deep Tech 기반의 우주분야 기술창업기업 설립 및 사업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0)]

[2026년도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우주기술실용화촉진 지원사업(R&D)	-	-	3,200	3,200	순증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 예산안 세부내역]

○ 우주분야 유망 기술발굴 및 BM[주)] 수립,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 검증 등을 위한 기획 - 기획 : 32개×1억 3,300만원 × 9/12개월 = 32억원

주) 사업모델(Business Model)의 약칭
자료: 우주항공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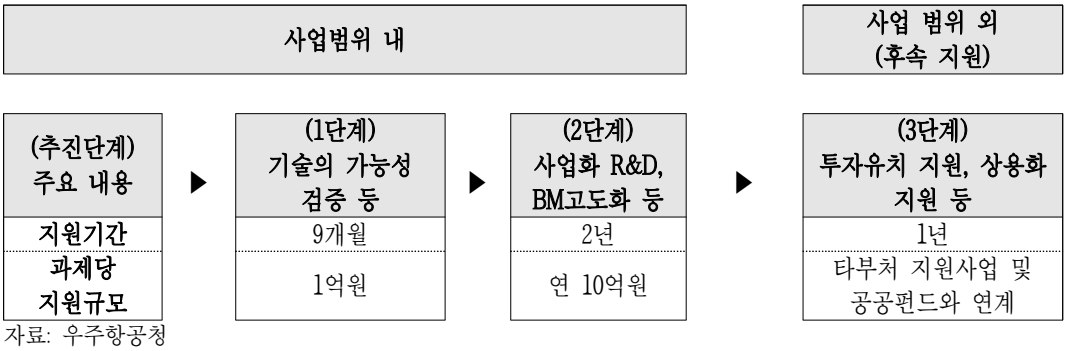
이 사업은 공공연구성과기반의 창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과 기관 소속 연구자를 선정하여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임.

이 사업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2026년)는 유망 기술발굴 및 사업모델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고, 2단계(2027년)는 사업화를 위한 고도화 R&D, 실증 및 최적화 등을 진행함. 우주항공청은 1단계 수행 과제의 25%만 선발하여 2단계를 지원할 계획임.

우주항공청은 2단계 과제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는 이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타부처 지원사업이나 펀드와의 연계를 통하여 투자유치 지원, 상용화 지원 등 1년간 후속 지원을 할 계획임.

10) 일반회계-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1634-314)(우주과학탐사부문)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 수행 절차(안)]



자료: 우주항공청

나. 검토의견

첫째, 우주항공청은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의 목표대로 참여연구자가 성공적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이후의 기술이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고도화 R&D가 시작되는 2단계 지원 전에 기술이전 관련 사항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2026년 신규사업으로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은 그 목표가 우주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확보된 연구개발성과를 바탕으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창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므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연구자는 소속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게 됨.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라 소속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야 하는데, 기술료 규모 등 기술이전 조건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창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사업이 성과 없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11)]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화를 위한 고도화 R&D가 시작되는 2단계를 지원하기 전에 1단계 사업모델 수립 및 가능성 검증 단계에서 기술이전과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이후의 기술이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둘째, 우주항공청은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의 2단계 탈락 과제에 대하여 탈락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 자체기획을 거쳐 다시 2단계 과제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유형을 구성하는 등 1단계 국비 지원의 성과가 매몰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R&D)'의 연구개발과제를 2단계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으로 1단계(사업모델 및 기술 검증)를 수행한 과제 중 25%만 선발하여 2단계(사업화를 위한 고도화 R&D 등)를 지원할 계획임.

그런데 1단계 수행 과제에 대하여 각각 1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므로, 해당 비용이 매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2단계에 선정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도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가 1단계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체적으로 사업화 연구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임.

예를 들어 2028년부터는 2026년에 1단계 지원을 받았으나 2027년 2단계 진입에 실패한 과제들을 대상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과제를 구성하는 등 탈락한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가 기획을 보완하여 재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탈락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자가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고도화 R&D를 이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산 지원은 어렵더라도, 사업화에 필요한 자문 제공 등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12)]

12) 참고로 우주항공청의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R&D)' 사업의 경우 단계평가결과 탈락한 기업이 자체예산으로 후속 단계 개발을 이어나가는 경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공하는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과제공고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 바 있음.

5.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R&D) 사업(신규): 조속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R&D)’ 사업은 국가안보, 지리정보, 해양/지상관측, 재난관측 등을 목적으로 최첨단 초고해상도 영상레이더 위성을 개발하여 광역고해상도 및 멀티스태틱 표준 레이더 영상의 신속/지속제공, 공공서비스 강화, 우주산업 산업생태계 육성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87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3)]

[2026년도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다목적실용위성8호 개발(R&D)	-	-	18,760	18,760	순증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8호 개발 사업착수, 요구조건 분석, 시스템 기본설계, 주위성 본체/탑재체 개발기관 선정 및 계약 등을 위한 예산 소요 187억 6,000만원 (1개×250억 1,300만원 ×9/12개월)
- 시스템 요구조건 분석 및 기본설계 : 29억 6,000만원
- 주위성 본체 개발 계약/착수 : 70억원
- 주위성 탑재체 개발 계약/착수 : 88억원

자료: 우주항공청

이 사업은 총사업비 6,481억원, 사업기간 2026년 ~ 2032년의 대규모 R&D 사업으로 추진되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이나 같은 조 제2항제3호(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에 해당하여 2025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음.[14)]

---

13) 일반회계-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R&D)(1533-313)(인공위성부문)

1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이 사업은 초고해상도 영상레이더 위성을 독자 개발하려는 것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위성 개발·발사·운영과 관련된 총괄조정 과제를 수행하고, 그 외 ①주위성의 본체 개발 과제, ②주위성의 탑재체 개발 과제 및 ③ 동반위성의 본체 및 탑재체 개발은 민간기업이 수행할 계획임.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R&D) 사업 추진체계]



자료: 우주항공청

[다목적실용위성 1~7호기 운영 현황]

구분	다목적실용위성						
	1호	2호	3호	3A호	5호	6호	7호
개발 목적	지구관측 (광학)	지구정밀관측 (광학)	지구정밀관측 (광학)	지구정밀관측 (광학+적외선)	전천후지구관측 (영상레이더)	전천후지구관측 (영상레이더)	지구정밀관측 (광학+적외선)
사업 기간	1994.11~ 2000.1	1999.12~ 2006.11	2004.8~ 2012.8	2006.12~ 2015.12	2005.6~ 2015.6	2012.12~ 2026.6	2016.8~ 2026.3
발사체	Taurus(미)	Rockot(러)	H2-A(일)	Dnepr(러)	Dnepr(러)	VEGA C(프)	VEGA C(프)
발사일	1999.12.21	2006.7.28	2012.5.18	2015.3.26	2013.8.22	2026 (예정)	2025 (예정)
운용 현황	임무 및 운용종료	임무종료	임무수행 중	임무수행 중	임무수행중	개발 중	개발 중

자료: 우주항공청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나. 검토의견

우주항공청은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면제받은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본체 개발과 탑재체 개발 등을 수행할 국내 기업체 선정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면제된 후 2025년 9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2026년 예산안 편성시 활용한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 기획연구보고서」가 2021년 4월에 작성되어, 기획연구보고서 작성 시기와 실제 사업 추진 시기의 시차가 5년 이상 되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그간의 환경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15)]

우주항공청은 2026년 1분기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후 총괄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정책 지정할 계획이고, 그 외 주위성 본체 및 탑재체와 동반위성의 개발업체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할 계획임.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 사업 추진 일정 (안)]

일정	구분	주요 내용	비고
2025.8.2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예타면제 확정 (면제 근거 : 3호 국가안보 관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면제 (면제 근거 : 3호 국가안보 관련)
2025.9월~11월	사업계획 수립	연구개발계획서 준비 및 수립	-
2025년말~2026년초	사업계획 심의	우주실무위 및 국가우주위원회 상정 예정	사업계획 심의·의결
2026년 초	사업추진위원회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사업 추진계획(안) 상정	사업 착수를 위한 추진계획 심의·의결
2026년 4월 1일	개발사업 착수	다목적실용위성8호개발 사업 착수	총괄주관연구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 우주항공청

따라서 2026년에 주위성 본체 및 탑재체 개발 계약·착수 용도로 편성된 예산 158억원은 별도 공모 절차를 거쳐 수행기업을 선정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한데, 2026년에

15) 관련하여 우주항공청은 개청 이후 2024년 4월 ~ 6월 2개월간 기획연구 보완 용역을 수행했다는 입장이나, 보완한 사항은 사업 추진체계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수정한 것으로, 사업내용이 보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9개월간 해당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하고 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계획 수립 후 공모를 거쳐 국내 기업체 선정까지 3개월내로 완료해야하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6. 차세대발사체개발(R&D)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차세대발사체개발(R&D)’ 사업은 대형위성 발사, 우주탐사 등 국가 우주 개발 수요 대응 및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3억 8,700만원(△20.1%) 감소한 1,204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차세대발사체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차세대발사체개발 (R&D)	150,816	150,816	120,429	△30,387	△20.1

[차세대발사체개발(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차세대발사체개발: 504억 9,400만원
- 차세대발사체 예비설계, 엔진 예비설계, 발사체 서브시스템 설계/제작/시험
○ 설비 및 장비구축: 699억 3,500만원
- 발사대 시스템 상세설계, 차세대발사체용 엔진・구조・열공력 시험설비 등

자료: 우주항공청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조 132억원, 사업기간 2023~2032년으로 예정되어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사업으로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를 이용한 발사가 불가능한 대규모 위성이나 달 탐사선 등을 국내 기술을 활용하여 발사하기 위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려는 사업임.

이 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고,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차세대발사체개발을 총괄하며, 핵심기술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운영을 수행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차세대발사체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기업으로 발사체 설계·제작· 조립·발사운영에 참여하며 발사체 구성품 제작 참여기업을 관리함.

16) 일반회계-차세대발사체개발(R&D)(1433-303)(우주수송부문)

[사업추진 체계]



자료: 우주항공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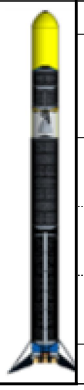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차세대발사체개발(R&D) 사업은 재사용발사체로 개발 방향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2025년 5월부터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2026년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사업 지연이 계속될 경우 2032년 달탐사선 발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우주항공청은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우주항공청은 2023년부터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당초 한국형 발사체(누리호) 대비 3배 이상 증대된 우주 수송 역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엔진 성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기획하였음.

그러나 사업 착수 이후 글로벌 발사체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발사체의 재사용화, 메탄 추진제 기반 발사체 활용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2025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정평가를 신청하였음.

[당초 개발 계획한 발사체와 변경 예정인 발사체 비교표]

변경 장점		기획·예타안		변경안		(참고, 美)스페이스X社 팰콘9	
기술혁신		소모성		재사용		재사용	
저비용		~$8,900/kg		~$2,500/kg (10회 재사용기준)		$2~3,000/kg	
성능확상	지구 저궤도	10톤		17톤(안)		22톤	
	태양 동기궤도	7톤		10톤(안)		10톤	
	달 전이궤도	1.8톤 이상		2.6톤(안)		n/a	
고빈도		연 2회		연 10회 이상		연 134회('24)	

자료: 우주항공청

이후 사업 근간(소모성 발사체 → 재사용 발사체)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 예산 증액 규모가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특정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차세대발사체개발 사업 추진 일정]

일자	내용
2022.11.	예비타당성 통과
2023.7.	사업착수
2024.5.	체계종합기업선정
2023.12.	시스템요구조건검토회의(SRR)

일자	내용
2024.7.	시스템요구조건 2차 검토회의(Delta-SRR)
2024.8. ~ 2025.1.	(1~5차)설계 검토회의
2025.2.	사업추진위원회(2.7.)/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2.14.)/국가우주위원회(2.25.)
2025.2.	특정평가 신청
2025.4.	특정평가 미대상 선정
2025.5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진행 중)**
2026	시스템 설계검토회의(SDR) 및 엔진 기본설계검토회의(PDR)
2027	시스템 기본설계 검토회의(PDR)
2028	상세설계검토회의(CDR) 수행
2031	FM1 발사준비검토회의 개최 및 차세대발사체 1차 발사(안)
2032	FM2,3 발사준비검토회의 개최 및 차세대발사체 2,3차 발사(안)

자료: 우주항공청

최근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 우주분야 선도국에서 개발 중인 발사체가 모두 재사용 발사체로 계획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재사용 발사체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아직 진행 중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반영되지 못하였으므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

또한 이 사업의 본질적인 사항인 발사체의 운영방식, 형식 및 소요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개발할 차세대발사체는 추후 '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17]을 통해 개발 중인 달 탐사선 발사에 활용할 계획이므로, 우주항공청은 사업 지연이 연계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7) 일반회계-달탐사2단계(달착륙선개발)사업(R&D)(1634-301)(우주과학탐사부문)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기술료 활용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인건비, 경상경비 및 기관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8억 4,000만원(5.4%) 증액된 1,147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18)]

[2026년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108,886	108,886	114,726	5,840	5.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기관운영비 : 642억 5,900만원 - 인건비 : 624억 4,900만원 - 경상경비 : 18억 1,000만원 ○ 주요사업비 : 504억 6,700만원

자료: 우주항공청

18) 일반회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1334-302)(우주항공정책국)

나. 검토의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료 수입 누적이 지속되고 있고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 기술료가 전혀 집행되지 않고 누적만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료 수입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과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9)]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를 민간에 기술이전하고 그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2025년 8월말 기준 미집행 기술료가 67억 9,00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술료 수입 및 미집행액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기술료 수입		212	1,110	3,814	3,573	7,857
기술료 집행액		872	877	1,768	2,701	5,055
미집행 기술료		-	233	2,046	872	2,802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 미집행액		21	111	382	357	786
미집행 기술료 누적액	1,497	837	1,070	3,116	3,988	6,790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 미집행 누적액	454	475	586	968	1,325	2,111

주) 2025년은 8월말 기준으로 작성
자료: 우주항공청

1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2년 6월「우주개발 진흥법」개정으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고,「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촉진을 위하여 공공 분야 위성·발사체 개발 및 서비스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최근 우주 분야의 민간참여 확대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술료 수입의 10% 이상을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 없어 이를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지분의 기술료는 2025년 8월말 기준 21억 1,100만원이 누적되어 있음.[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도록 하고, 해당 성과를 기술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상,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이유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이 새로운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임.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징수된 기술료가 집행되지 못하고 누적되는 것은 기술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료 수입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2. 기술이전 ·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 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3.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4.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